
세출절감 분야 우수사례

2020. 12.



행 정 안 전 부
[지방재정경제실]

목 차

1. 폐교를 활용한 공공도서관 조성을 통한 예산 절감(부산 북구) 1
2. 지금까지 이런 서비스는 없었다! 협업인가? 통합인가?(경기 수원시) 6
3. 상수관로 병행 매설을 통한 예산절감 및 이중굴착 방지(경기 광주시) 18
4. 지역상생협력을 통한 세출절감(인근 지자체와 하수 연계처리)(충북 진천군) 23
5. 전국 최초 광역기반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으로 국민안전과 예산절감 두 마리 토끼 잡다(강원도) 30
6. 전국최초 민간기관·단체 인건비 단일화 체계 구축으로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충남 서산시) 37
7. 재활용품 선별시설 광역화로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비대면 선별효과(전북 남원시) ... 45
8.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폐기물 운반차량 지능형 검색서비스(경북 영천시) 56
9. “끝까지 찾아서 반드시 잡는다!” 상수도 누수전담팀 운영으로 예산절감!(경북 문경시) · 60
10. 가축분뇨 처리공법 개발 적용으로 예산절감 기여(경남 김해시) 66

□ 사례명 : 폐교를 활용한 공공도서관 조성을 통한 예산 절감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485-1 덕천여자중학교 ○ 추진기간 : '18. 12. ~ '20. 04. ○ 사 업 비 : 11,100백만원 ○ 사업내용 : 폐교를 활용한 덕천권역 공공도서관 조성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 12. : 북구 도서관 장기 발전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프라 확충 방안 '학교 체육관 재생형 도서관 건립' ○ '19. 5.13.~'20. 3. 27. : 북구형 교육 정책 수립 용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도과제 덕천권역 공공도서관 조성 ○ '19. 11. : 덕천중·덕천여중 학교통합 행정예고 ○ '19. 12. : 폐교활용 공공도서관 조성 교육감 공식 발표 ○ '20. 01. : 시 교육청, 덕천여중 강당동 건물·토지 사용 승인 ○ '20. 01. : 덕천도서관 건립 기본 계획 수립 ○ '20. 04. : 생활 SOC 복합화사업 신청 ○ '20. 09. : 생활 SOC 복합화사업 선정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 조성 재정 부담 경감을 위한 국공유 유휴부지 활용 계획 ○ 폐교시설 무상 사용 근거 모색을 위한 관련법규 검토 ○ 부지비 무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 공익적 명분을 통한 교육청과의 공감대 형성 및 지속적 협의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 조성 부지, 폐교 무상 사용에 따른 부지매입비 예산 절감 ○ 생활 SOC 사업 예산 투자 합리성 확보 및 효율성 제고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공도서관 부지매입비 2,263백만원 절감

폐교를 활용한 공공도서관 조성을 통한 예산 절감

1. 과제 선정 내용

- 사회·산업 자본이 빈약한 북구의 지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문화 환경 개선 정책 발굴 및 추진
 - 북구 도서관 장기 발전 계획('18.12.), 북구형 교육정책수립 용역('19.05.)
- 국민 삶의 질에 주목하는 정부 생활SOC 정책 기조에 따라 일상의 편익을 증진시키는 생활 SOC 인프라 확충, 공공도서관 조성 기획
 - 생활 SOC 복합화 시설 조성 지원 사업(공공도서관 조성)
- 전국 최하위권 재정자주도 등 열악한 재정 여건을 감안, 공공도서관 부지 매입비 경감을 위하여 국·공유지 활용을 계획
 - 관내 적정규모 이하 학교 시설 파악 등 유휴 국·공유 부지 모색
 - ▷ 덕천중·덕천여중 학교 통합 결정('19.11.) 및 폐교예정 덕천여중 활용 공공도서관 조성 결정('19.12.)

2. 문제원인 분석

- 공공도서관 조성 균특예산 신청을 위한 사업실행 기본 여건, 사업부지 확보계획 마련 필요
 - 폐교예정 재산 소유기관 교육청과의 사용 협의, 문서화 제출
- 공공도서관 조성부지 폐교시설 사용에 대한 교육청, 북구청 의견교환 및 협의
 - (북구청) 폐교 예정 시설 무상사용 승인 요청
 - ▶공동 현안 투자사업 추진에 따른 교육청 협조 요청(사업비 11,100백만원)
 - (교육청) 일반재산 폐교시설의 매수 권유 및 유상 대부 원칙
 - ▶'폐교활용법'근거, 폐교재산의 대부 및 매각

3. 방안 마련 및 실행

- 폐교시설 무상사용 근거 모색을 위한 법률가 관련법규 검토
 - 변호사 법률자문(장국진/박옥봉, 20.1.15.)
 - ▶ 공유재산 사용수익 및 대부 관련 법규검토(공유재산법, 폐교활용법)
 - ◇ 폐교시설 무상사용 법적 근거 없음
- 덕천도서관 조성 부지(덕천여중 강당동) 비용 무상화 방안 모색을 위한 관계부처 협의 및 교육청 협상
 - 관계부처(행정안전부, 교육부) (20.1월)
 - ▶ 덕천여중 강당동 양여계약 체결을 통한 소유권 이전 방안 제시(행정안전부)
 - ◇ 교육청 수용 거부

4. 장애극복

- 생활 SOC 학교시설 복합화 예산투자의 효율성 확보를 위한 폐교 무상대부 등 사용요건 완화 관계부처 건의
 - 학령인구 감소 대응 및 지자체의 부지·재원 등 설치 부담 대응을 위하여 폐교 활용 사업 개선 방안 마련 필요
 - ▶ 생활 SOC 학교시설복합화 건의사항 제출(국무조정실, 2020.1.29.)
- 공익적 명분을 통한 교육청과의 공감대 형성을 위한 지속적 협의
 - 북구청·교육청 각각의 덕천권역 공공도서관 조성, 덕천여중 폐교 활용 현안의 공동 해결을 위한 배려와 협력관계 강조 (19.1월~20.1월)
 - ▶ 시교육청 재정과 협의(5회, 20.1월), 지역구의원 공동 협의 (1회, 20.1.28.)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교육청, 덕천여중 장기 무상사용 승인을 통한 공공도서관 부지 무상 확보('20. 01) 및 생활 SOC 조성 사업 신청('20. 04.)
 - 부지매입비, 총 2,263백만원 예산 절감
 - ▶ 교육청 공유재산관리대장 건물 재산가액 기준

공유재산관리대장 (건물)

대장번호		C100001215-02-11									
출발기관		부산광역시교육청									
관리기관		부산광역시북부교육지원청									
사용기관		덕천여자중학교									
재산구분		행정재산(공용)		지번	485-1	소재지	부산광역시 북구 덕천동			등기부	
취득	구분	종여	현재면적	964.89	현재금액	2,263,070,356	배당면적	868.86	색인	건물대장	
	일자	2012.07.20	일자	2012.07.26	재산종목	사무소	건물명	강당동		내치도	
	면적	964.89	등기	기관	부산북부산등기소	주사용실태	강당	건물구조	철근콘크리트조	내용년수	40
	금액	2,263,070,356	번호		층수(지상/지하)	2/0	지정형태	합리강판	준공년월일	2012.06.20	
	비고										

증감내역	연월일	증감사유	증감면적(㎡)	증감금액	현재면적(㎡)	현재금액	비고
증감내역	2012.07.20	종여	964.89	2,263,070,356	964.89	2,263,070,356	

[수원시]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출 효율화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지방세)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세외수입)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 례 명	지금까지 이런 서비스는 없었다! 협업인가? 통합인가? 전국최초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 협업기관 예산회계 통합관리 서비스
기 관 명	경기도 수원시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type="checkbox"/> 시 <input type="checkbox"/> 군 <input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정보통신과

< 요약 >

- **범정부 클라우드 활성화** 기조에 따른 공공기관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
 · 한국판 뉴딜정책(2020. 7. 14.)
 공공기관 및 지자체 정보시스템 **2025년까지 클라우드 대전환 추진**
- **협업기관 예산회계관리 효율성 향상** 및 **자료 관리 투명성 확보**
 · **업무처리 시간 50% 단축** (22시간 → 10시간)
- **전국최초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로 전국 공공기관 확산 용이**
 · (1단계) 13개 수원시 협업기관 → (2단계) 경기도 확산 →(3단계) 전국확산
- 표준화된 협업기관 **예산회계 통합관리 서비스로 획기적 예산절감** 추진
 · 협업기관 통합관리 서비스로 **9,145백만원 예산절감** 효과
- 전국 공공기관(340여개) **예산회계업무 통합관리서비스 디지털 전환 가속화** 계기 마련
 · 예산회계 업무를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서비스 제공으로 **정보화 수준 향상**

위와 같이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0. 10. .

수원시장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지금까지 이런 서비스는 없었다! 협업인가? 통합인가?
전국최초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 협업기관 예산회계 통합관리 서비스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관 : 경기도 수원시(13개 협업기관) ○ 추진기간 : 2019. 5. ~ 2020. 12. ○ 사업비 : 300백만원 ※ 과기부(한국정보화진흥원) 공모사업 ○ 사업내용 : 전국최초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 협업기관 예산회계 통합관리 서비스로 업무 효율성 향상 및 자료관리 투명성 확보(업무처리 50% 단축, 예산액 9,145백만원 절감효과)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업기관 시스템 통합방안 ISP 추진 : 2019. 5. 7. ~ 7. 31. ○ 협업기관 시스템 통합관리 운영 방안 검토 : 2019. 10. 23. ○ 과기부,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 공모 추진 : 2020. 3. 24. ※ 선도사업 공모선정 (협업기관 예산회계 통합관리서비스) : 2020. 5. 6. ○ 협업기관 예산회계 통합관리서비스 계획 수립 : 2020. 6. 15. ○ 협업기관 예산회계 통합관리서비스 개발 : 2020. 9. ~ 12.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협업기관은 엑셀 등 수기작업과 열악한 정보화 환경으로 예산회계 업무 효율이 저하되어 투명성 담보를 위한 한계성 극복 · 협업기관 예산회계 통합관리서비스 구축으로 업무효율화 및 투명성 확보 ○ 협업기관 개별 시스템 구축에 따른 예산 과다 소요 및 전국 공공기관 선도모델 방안 제시로 디지털 전환 가속화 계기 마련 · 과기부 클라우드 선도 공모사업으로 표준화된 통합관리서비스 선도 모델 제시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범정부 클라우드 활성화 기조에 따른 클라우드 선도 사업 추진 ○ 전국최초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으로 전국 공공기관 확산용이 ○ 협업기관 예산회계 표준화로 업무효율성 및 자료관리 투명성 확보 ○ 13개 협업기관 예산회계 통합관리 서비스로 획기적 예산절감 ○ 그룹웨어 및 금융기관 내·외부 시스템 자동화 연계 추진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로 전국 공공기관(340개) 확산가능 · (1단계) 13개 수원시 협업기관 → (2단계) 경기도 확산 → (3단계) 전국 확산 ○ 수원시 13개 협업기관 업무처리시간 단축(50% 단축) · 재무회계처리 및 금융기관 연계처리 소요시간 : 22시간 → 10시간(주) ○ 예산회계 통합관리 서비스로 9,145백만원 획기적 예산절감 효과 · 13개 협업기관 개별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비 대비 효과

- 지금까지 이런 서비스는 없었다! 협업인가? 통합인가? -
**전국최초,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
협업기관 예산회계 통합관리 서비스**

1. 과제 선정 내용 (WHY)

- 수원시 13개 협업기관 정보화 수준 향상과 예산회계 자료관리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표준화된 예산회계 통합관리 서비스 구축 필요
- 수원시 산하 협업기관은 수원시로부터 출자출연금 예산을 지원받아 예산을 집행하고 있으나, 행정기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지방재정시스템 e-호조와 같은 예산회계 정보화 시스템이 존재하지 않아 예산집행 통제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임
- 13개 협업기관중 정보화 조직과 시스템을 갖춘 기관은 수원도시공사 단 한곳 뿐이며 대부분 기관은 시스템 운영과 보안을 담당할 정보화 전문 인력이 없고 일부 협업기관은 엑셀 등 수기 업무로 처리되고 있으며 그룹웨어 및 금융기관과 연계처리가 단절된 상태로 예산회계 업무 효율화가 저하되어 있음
- 이로 인해 2018년 9월 협업기관에서 예산회계시스템 통합에 대한 니즈가 스스로 발생하여 수원시는 정보통신과, 예산재정과, 협업기관과 TF를 구성하여 예산회계 업무 효율화 향상과 자료관리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19년 5월부터 7월까지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추진 등 해결 방안을 장시간 함께 고민해 왔음

- **전국최초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 협업관리 예산회계 통합관리 서비스 구축으로 업무 효율화 및 획기적 예산절감**
- 수원시는 **범정부 클라우드 활성화 기조**에 따른 **한국판 디지털 뉴딜 정책**의 일환으로 협업기관 예산회계 통합관리서비스 과제를 발굴하여 과기부(한국정보화진흥원) **클라우드 선도 공모 사업**에 도전하여 높은 경쟁률을 뚫고 공모사업에 선정됨에 따라 **전국최초로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 기반의 협업관리 예산회계 통합관리 서비스**를 구축하게 됨
- **협업관리 예산회계 통합관리 서비스**를 활용하면 예산·회계 업무처리 시간이 **주당 22시간에서 10시간으로 50%이상 단축**될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 업무처리 시간 단축 ▲ 협업기관 업무 표준화 ▲ 전표 자동분개를 통한 자동화된 재무회계 처리 ▲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을 통한 자료 관리 투명성 확보 ▲ 그룹웨어 및 금융기관 연계로 업무처리가 자동화 됨
- **13개 협업기관 예산회계 통합관리 서비스**로 기관별 시스템 개별 구축시 시스템 도입비, 개별 유지관리비, 업무처리시간 단축 등을 금전적 가치로 환산할때 **9,145백만원의 획기적 예산절감 효과 발생**
- 협업관리 예산회계 통합관리 서비스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서비스**로 **전국 공공기관 배포 및 확산이 용이**하여 ▲ 1단계 수원시 13개 협업기관 배포 ▲ 2단계 경기도 확산 산수화(오산·수원·화성)시 우선배포 ▲ 3단계 **전국 공공기관(340여개) 확산 배포**를 목표로 함
- 수원시에서 선도적으로 추진하는 **전국최초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 협업기관 예산회계 통합관리 서비스**는 **전국 공공기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가 되었음

2. 문제원인 분석 (WHY)

- **열악한 정보화 수준**에 따른 협업기관 **예산회계 업무 효율화 저하**
 - 수원시 13개 협업기관(시스템 전담인력 부재, 엑셀 수기처리 등)
 - 전국 공공기관 340여개(표준화된 재정정보 시스템 부재)
- 범정부 **클라우드 활성화 기조**에 따른 효율적인 정보화 추진 필요
 - 행정기관 및 공공기관 정보자원 통합기준(행안부 고시) 및 한국판 디지털뉴딜 정책으로 2025년까지 공공기관 100% 클라우드 전환 추진
- 예산·회계 관리의 **전국 확산**이 용이하도록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필요
 - 공공기관에 표준화된 예산·회계 통합관리·분석·활용 서비스 필요
 - 협업기관 예산회계 효율화 향상과 배포 확산이 용이한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필요
-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 적용 개선방향(AS-IS, TO-BE)**

	AS-IS	클라우드기반 서비스 구축 후
정보 활용	엑셀 수기 업무 및 중소기업용 ERP 활용 • 공공의 업무특성을 반영하지 못함 • 수기 업무에 따른 자료 유실 및 통계정보 산출이 어려움	실시간 현황의 통합 정보 활용 기반 • 단계별 이력관리 및 실시간 모니터링체계 마련 • 정보산출 및 통계정보 산출비용 최소화
건전 재정	자료산출 시간 과다 소요, 예산통제 불가 • 예산회계 자율통제 운영 불가 • 회계사고(부정사용) 등 사전통제 불가	실시간 모니터링, 정보산출 시간 단축 • 실시간 예산회계 자율 통제 및 모니터링 가능 • 회계사고(부정사용) 방지 및 신뢰성 강화
업무 수행	단위업무 위주의 부분 효율화, 수기업무 • 개별업무 인사·급여, 예산·회계 업무간 연계 미흡 • 정보 공유 불가, 중복 이중작업으로 효율성 저하	업무간 연계 강화를 통한 최적화 • 인사/급여(고도화시), 예산·회계 간 프로세스 단위의 업무 통합 일원화 정보 관리
효율화	외부시스템 연계 미흡 및 비 표준화 • 전자결재, 금융기관 연계 미흡으로 이중 업무 및 회계사고 통제 불가	외부기관 통합연계 통한 업무 효율화 • 전자결재, 금융기관 연계로 업무효율화 • e나라도움 연계 및 주무부처 및 지자체 단위의 정보공유
IT 모델	개별 업무처리 위주의 기능중심 • 사용자 편의성, 시스템 유연성, 확장성 미흡 • 시스템 중심의 업무처리	사용자 중심의 유연한 시스템 • 사용자 이해하기 쉬운 화면 구성 • 유연성/확장성이 보장된 프레임워크 반영

3. 방안 마련 및 실행 (HOW)

○ 추진목적

전국최초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 수원시 협업기관 예산회계 통합관리 서비스		
협업기관간 협업 소통 강화	표준화된 예산·회계시스템 구축	시스템 확대를 위한 체계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3개 협업기관의 협업 소통기능 확대 구현 • 미 구축기관의 별도 자료입력 보고 체계 마련 • 자료요구에 협업기관 요청 없이 본 시스템을 통한 자료 추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하 협업기관의 업무특성을 반영한 시스템 구축 • 예산통제 및 모니터링 기능 구현 • 각 협업기관 그룹웨어 연계 및 금융기관 표준 연계 기반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규로 신설되는 기관 및 신규도입기관의 확장성을 고려한 클라우드 기반 시스템 구축 • 각종 현황관리 및 통계정보 산출 기능 개발 • 전국 공공기관의 확산보급의 표준 및 선도 모델로 구축

○ 협업기관 예산회계 통합관리 방안 검토를 위한 ISP추진

- 추진기간 : 2019. 5. 7. ~ 7. 31.

- 주요내용

- 협업기관 현황 조사 및 기관별 업무 메뉴구조도 작성
- 협업기관 담당자 의견 수렴
- 시스템 운영 및 인력 운영 방안 검토
- 벤치마킹 및 소프트웨어 개발 비용 산정

○ 과기부(한국정보화진흥원) 디지털뉴딜,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 사업 선정

- 과 제 명 : 클라우드 기반 협업기관 예산회계 통합관리 서비스

- 예산규모 : 300백만원(전액 국비)

- 선 정 일 : 2020. 5. 6.

○ 수원시 협업기관 예산회계 통합관리서비스 사업 추진

- 사업명 : 클라우드 기반 협업기관 예산회계 통합관리 서비스
- 사업기간 : 2020. 9월 ~ 12월
- 사업비 : 300백만원 ※ 과기부 국가공모사업으로 추진
- 적용대상 : 수원시 13개 협업기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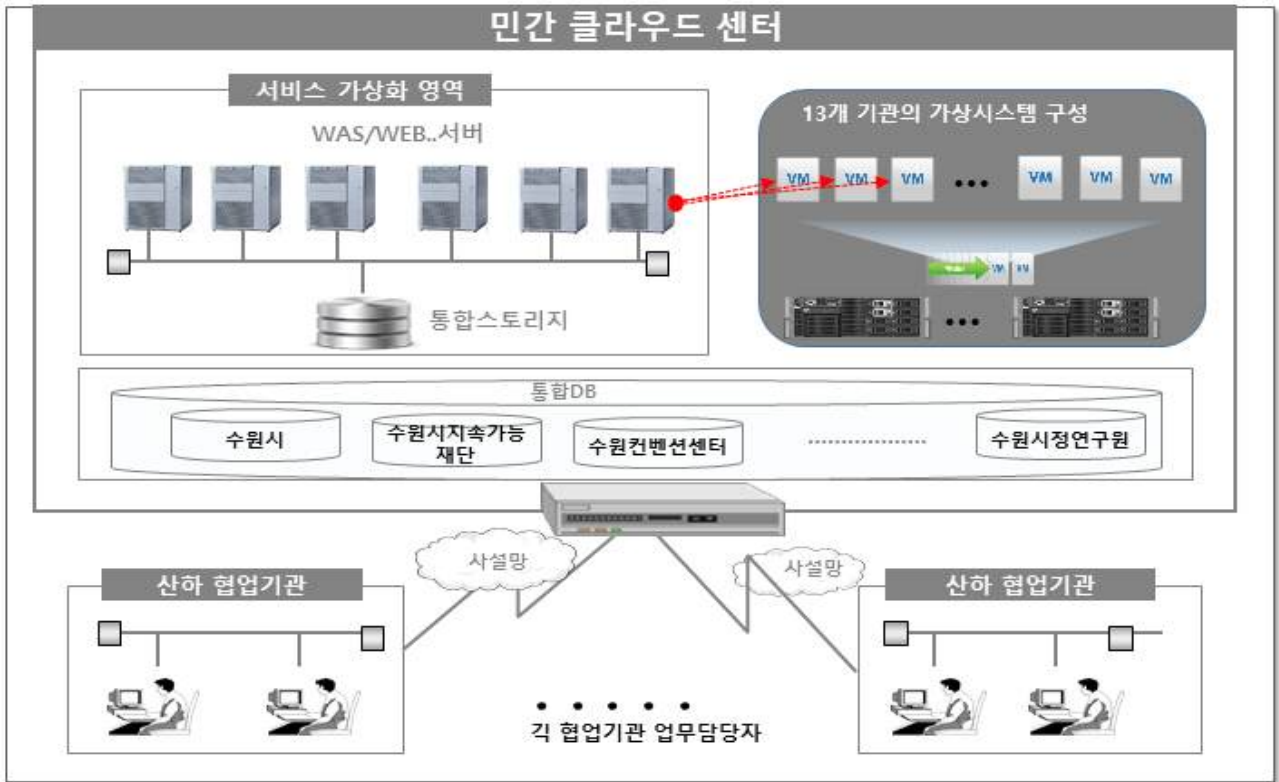
시범기관 (2)	시스템 부재기관 (3)	시스템 전환기관 (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속가능도시재단 · 수원컨벤션센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사랑장학재단 · 지역사회보장협의체 · 장애인체육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원FC · 국제교류센터 · 수원문화재단 · 수원시체육회수원 · 시정연구원 · 수원도시공사 · 청소년육성재단 · 종합자원봉사센터

- 주요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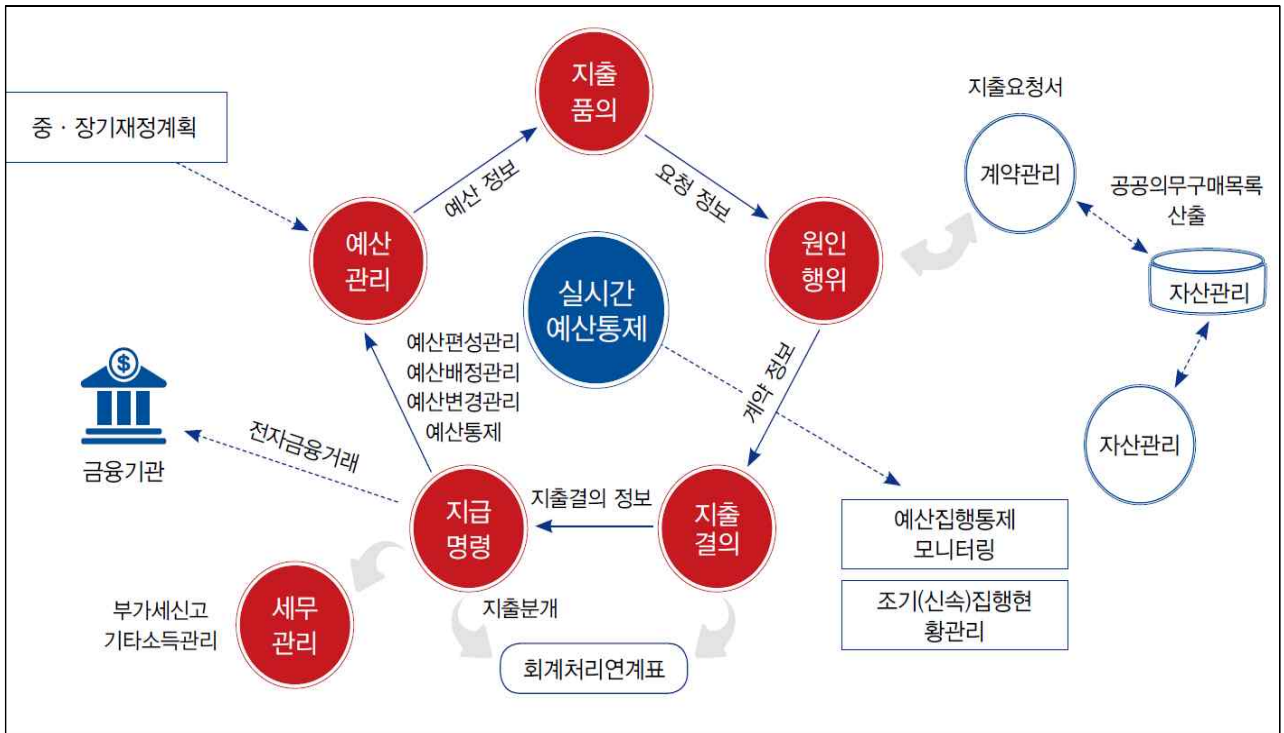
- 예산·회계 시스템 통합 구축
 - 예산회계, 재무회계, 회계결산
 - 자산관리, 결재관리, 시스템관리
- 경영관리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 시↔협업기관 간 예산통제 및 모니터링 기능 구현
- 데이터베이스 자료변환(이관)
 - 기존 시스템 자료 신규 시스템으로 이관 구축
- 지출업무 One-Stop 재정 지출 프로세스 구현
 - 주거대 은행과 자동 연계 구축
 - 전자결재시스템과 연동을 통한 지출품의 구축

○ 목표 개념도

수원시 협업기관 예산회계시스템 클라우드 서비스 구축 적용



○ 협업기관 예산회계 업무 프로세스 표준화



4. 장애극복 (HOW)

○ 한국판 디지털 뉴딜 도전으로 한계성 극복

- 수원시와 협업기관은 예산회계 통합관리서비스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추진방안을 장시간 고민해 왔으나, 과도한 예산 소요로 사업 추진이 지연됨
- 코로나19로 촉발된 **한국판 디지털 뉴딜 클라우드 선도 사업**에 도전하여 높은 경쟁률을 뚫고 사업비 확보

○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 서비스로 확산 저해 요인 극복

- 수원시는 협업기관 통합관리 서비스를 표준화하여 민간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서비스**로 개발하여 **배포 및 확산 용이**
- 배포 및 확산을 위해 인근 생활권을 공유하고 있는 오산시와 화성시 산수화(오산·수원·화성) 3개시 정보화부서간 ICT정보화 업무협약을 맺고 거버넌스 행정을 추진
- **1단계 수원시 13개 협업기관 배포, 2단계 경기도 오산시·화성시 배포, 3단계 전국 공공기관 배포**는 과기부(한국정보화진흥원)와 성과공유회를 통해 홍보와 전국 공공기관 배포 확산을 목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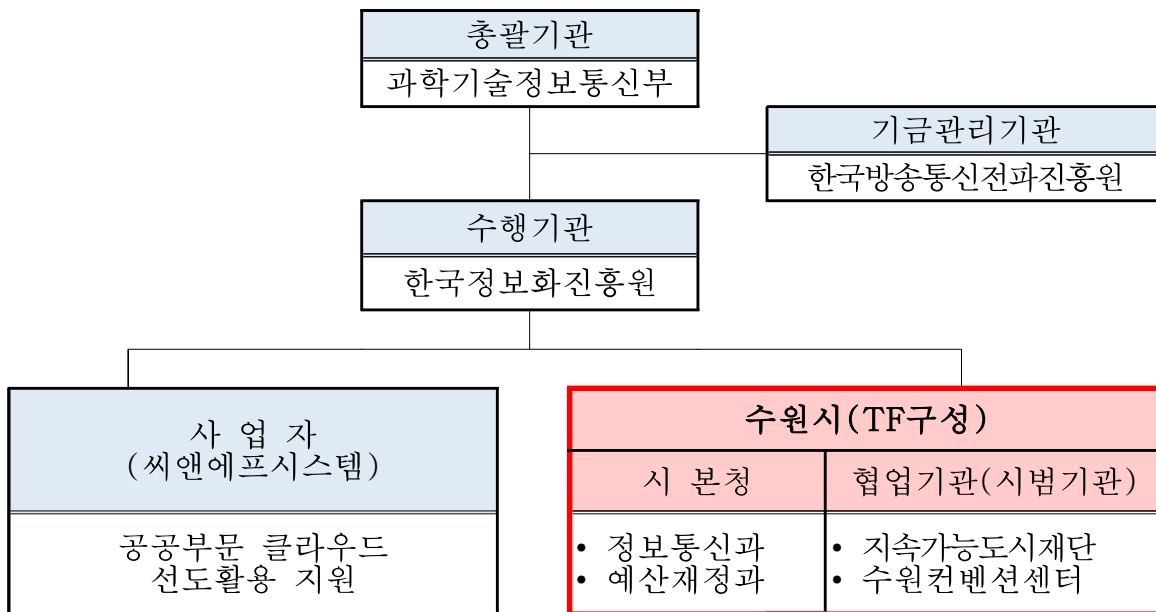
○ 협업기관 예산회계 디지털 전환으로 열악한 정보화 환경 극복

- 수원시는 디지털 뉴딜 사업을 통해 **협업기관 예산회계서비스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는 계기를 마련하여 전국 공공기관(340여개) 예산회계 업무 효율화 향상 및 열악한 정보화 환경 극복
- 클라우드 이용으로 정보보안 및 시스템 운영에 대한 안정적 대응가능

○ 협업 추진체계 TF 구성으로 협업 장애 요인 극복

- 성공적 사업추진을 위해 협업 과기부(한국정보화진흥원), 수원시(정보통신과, 예산재정과), 협업기관 등 거버넌스 구성

○ 거버넌스 TF 추진 체계도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WHAT)

○ 정성적 성과

- 클라우드 기반 플랫폼 서비스로 노후 정보시스템 교체에 따른 **비용 절감** 및 운영에 따른 유지보수, 전력비 절감
- 클라우드 기술적용으로 **가용성 및 안정성 향상** 및 서버 등 이중화 구성, 통합백업으로 정보시스템 운영 보안 및 안정성 확보
- 협업기관의 예산집행정보 및 결산정보취합 편리함으로 **업무효율화 및 자료관리 투명성 확보**
- 예산수립 및 사용내역의 데이터를 향후 빅데이터 연계를 통해 예산수립 업무의 편리화, 효율화
-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클라우드** 기반 공공기관용 협업기관 예산 회계 통합관리 서비스 확산 용이로 **정보화 수준 향상**

○ 정량적 성과

- 예산절감 효과 : 9,124백만원 절감

구분	기대효과	산출내역
계	9,145백만원	
협업기관 자료 요구 자료 추출 자동화 업무효율	131백만원	20,995원 × 2시간 × 20일 × 12개월 × 13개 기관 ※ 조건 : 7급 18호봉 시간당 단가 20,995원 2020년 지자체 예산편성기준
협업기관 결산업무 단축	44백만원	20,995원 × 2명 × 8시간 × 10일 × 13개 기관 ※ 조건 : 예산 및 재무결산을 수기로 할 경우 기관당 2명 * 소요기간 : 40일 => 30일 (10일 단축) 7급 18호봉 시간당 단가 20,995원/ 2020년 지자체 예산편성기준
정보시스템 구축	7,800백만원	600백만원 × 13개 기관 ※ 조건 : 기관별 개별 구축시 평균 6억 소요 구축비용 6억은 나라장터 ERP 구축 사업비 참조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1,170백만원	((600백만원 × 13개 기관) × 0.15) × 1년 ※ 조건 : 기관별 연간 유지보수비 구축비 × 15%

- 업무 처리시간 50% 단축 (주 22시간 ⇒ 10시간)

- 금융기관 자동 연계 및 예산서 작성 : 12시간 ⇒ 5시간
- 재무 회계 처리 : 10시간 ⇒ 5시간

○ 언론보도 : 주요 일간지 및 인터넷 등으로 약 30건 이상 보도

2020년 09월 17일

연남뉴스

수원시, 13개 협업기관 예산·회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수원시, 13개 협업기관 예산·회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수원시, 13개 협업기관 예산·회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업무처리 시간 평균 50% 이상
축·자료관리 투명성 확보

(수원=연남뉴스) 김인우 기자 = 경기 수원시는 올해 말까지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한 '수원시 협업기관 예산·회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17일 밝혔다. 대상 기관은 수원도시공사·수원시국제교류센터·수원시청연구원·수원문화재단·수원컨벤션센터·수원시지속가능도시재단 등 13곳이다. 이들 기관 중 일부는 별도 예산·회계 프로그램이나 정보화 시스템이 없어 엑셀과 같은 프로그램만 활용하고 있으며, 기관별 업무 시스템이 단절돼 업무연계가 안 되는 상황이 통합관리시스템이 구축되면 13개 기관의 평균 회계·예산업무 처리 시간(22시간)이 10시간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협업기관 업무 표준화, 자동화된 재무회계 처리,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으로 투명한 관리, 금융기관과의 연계로 업무처리 자동화 효과도 기대된다. 수원시가 도입하려는 시스템은 전속 최초로 클라우드 기반의 오픈소스 플랫폼 '파스-1(Pass-1A)'를 활용해 표준화된 예산·회계 통합관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모델이며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전국 공공기관으로 확산할 것으로 기대된다. 파스-1A는 정부의 연구개발지원을 받아 국내 5개 기업이 1단계 연구개발에 참여해 만드는데, 2016년 6월 1.0 버전이 나온 이후 5.0버전까지 업그레이드했다. 시스템 구축비는 과학기술정보통신사업부의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 공모에 원시기가 선정되면서 받은 국비 3억 원으로 충당한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클라우드 기반 협업기관 예산·회계 통합관리 서비스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자료관리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원시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클라우드 산업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hedgehog@yna.co.kr

2020년 09월 18일 (금)
인물 25면

전자신문

수원시 협업기관 예산·회계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맨 왼쪽)과 수원시, 씨엔에프시스템 관계자들이 수원시 협업기관 예산·회계 통합관리 서비스 구축 착수보고회를 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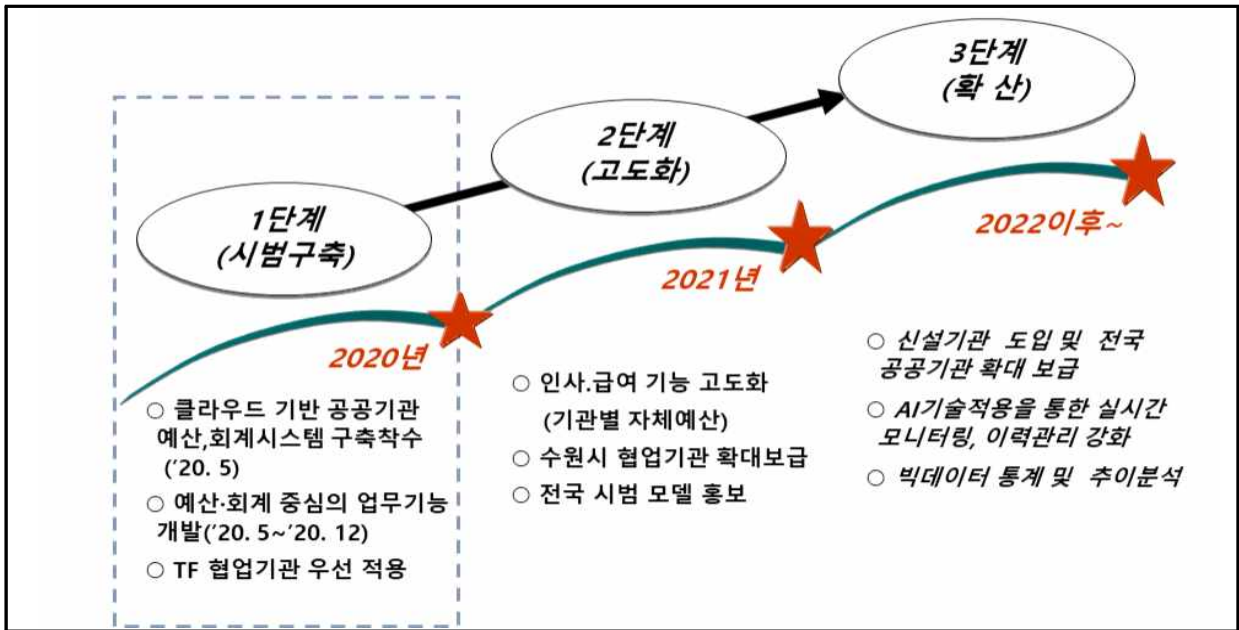
수원시, 13개 기관과 예산·회계 관리시스템 구축

씨엔에프시스템 수행

수원시가 클라우드 기반 '수원시 협업기관 예산·회계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한다. 수원시는 17일 시청 영상회의실에서 '협업기관 예산회계 통합관리 서비스 구축 착수보고회'를 열었다. 수원시는 연말까지 수원도시공사를 비롯해 수원시국제교류센터, 수원시청연구원 등 13개 협업기관 예산·회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시스템이 구축되면 △업무처리 시간 단축 △협업기관 업무 표준화 △전표 자동 분개(分介)로 자동화된 재무회계 처리 △실시간 통합 모니터링으로 자료관리 투명성 확보 소프트웨어·금융기관 연계로 업무처리 자동화 등 효과가 기대된다. 사업은 공공 전자자원관리(ERP) 시장 1위 사업자인 씨엔에프시스템이 수행한다. 이번 사업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공부문 클라우드 선도 프로젝트' 공모사업으로 선정돼 전액 국비(3억 원)로 추진된다. 조청식 수원시 제1부시장은 "클라우드 기반 협업기관 예산·회계 통합관리 서비스는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자료관리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수원시가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인 클라우드 산업 발전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지선기자 river@etnews.com

○ 전국 공공기관(340여개) 단계별 확산 추진

- 전국 최초, 오픈소스 클라우드 플랫폼을 활용한 협업기관 예산회계 통합관리 서비스를 선도적으로 추진하여 **표준화 모델 제시**로 경기도 및 전국 공공기관에 단계별 확산 추진



[경기도 광주시]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 세출 효율화 □ 세입증대(지방세) □ 세입증대(세외수입) □ 기타 ※ 벤치마킹 사례는 “2018년, 000자치단체 000사례를 벤치마킹” 기재
사 례 명	상수관로 병행 매설을 통한 예산절감 및 이중굴착 방지
기 관 명	경기도 광주시 □ 광역 ■ 시 □ 군 □ 구
담 당 자	상하수도사업소 수도과
< 요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도로개설 공사 및 교량 공사 시 상수관로 병행매설 추진○ 오수관로 매설 시 상수관로 병행매설 추진○ 부서간 협업을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이중 굴착 방지 등 주민불편 최소화로 행정 신뢰도 향상○ 토공사, 포장공사, 폐기물 처리 비용 등 공사비 절감으로 약 60~70% 예산 절감	

위와 같이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0. 9 . .

경기도 광주시장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상수관로 병행매설을 통한 예산절감 및 이중굴착 방지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곤지암읍 봉현리, 이선리, 수양리, 목동 일원 ○ 추진기간 : 2019. ~ 2020.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개설 공사 및 교량 공사 시 상수관로 병행 매설 - 오수관로 매설공사 시 상수관로 병행 매설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6. : 농어촌도로(봉현리) 확포장공사 상수관로 병행매설 ○ '20. 6. : 농어촌도로(이선2리) 확포장공사 상수관로 병행매설 ○ '20. 6. : 오수관로 매설공사(수양리) 상수관로 병행매설 ○ '20. 9. : 오수관로 매설공사(목동푸른마을) 상수관로 병행매설 ○ '20. 10. : 문형리 세월교 건설공사 상수관로 병행매설 예정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하수관로 및 도로포장사업 등 사업 추진 시기가 상이하여 이중굴착, 재포장 등 예산낭비 사례 빈번. ○ 반복적인 굴착으로 도로 차단 등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불편 문제로 민원 발생. ○ 부서간 협업을 통한 사업시기를 조정하여 이중굴착 재포장 등 최소화하여 예산절감 및 주민불편을 최소화함.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간 업무협의를 통한 상·하수관로 부설 및 도로포장사업 등 사업시기 조정. ○ 토공 터파기 작업 후 상수관로 및 하수관로 동시 부설. ○ 교량 공사중 상수관로 관매달기 공사 동시 진행으로 구조물 천공 등 저축 최소화. ○ 토공 되메우기 및 구조물 작업 완료 후 전면 포장 및 차선도색 완료.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서간 협업을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 이중 굴착 방지 등 주민불편 최소화로 행정 신뢰도 향상 ○ 토공사, 포장공사, 폐기물 처리 비용 등 공사비 절감으로 약 60~70%이상의 예산 절감효과

상수관로 병행매설을 통한 예산절감 및 이중굴착 방지

1. 과제 선정 내용

- 부서간 협업을 통한 사업시기 조정 등으로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등 행정기관의 신뢰성 향상을 도모하고자 상수관로 병행매설을 추진함.

2. 문제원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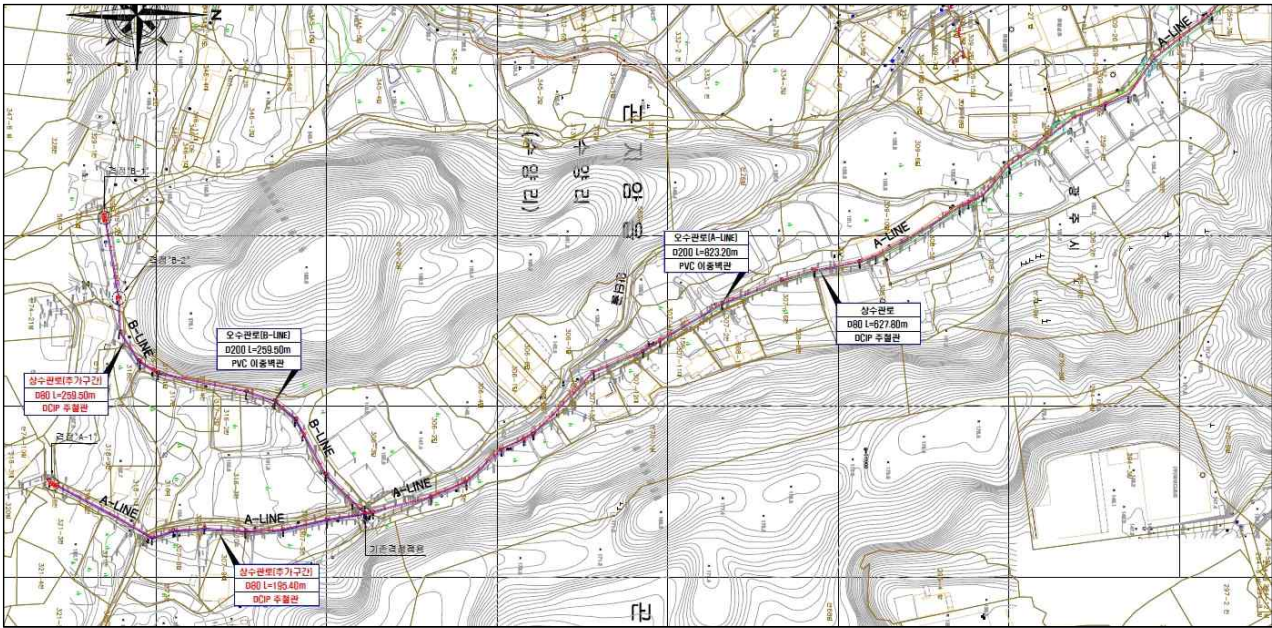
- 도로개설 사업 및 각종지하매설물(상·하수관로, 통신, 전기, 가스 등) 공사 시 사업 추진 시기가 상이하여 이중굴착 및 재포장 등 예산 낭비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며,
- 반복적인 굴착공사로 도로 차단 및 소음 등 차량 및 보행자의 통행 불편 문제로 지속적인 민원이 발생하는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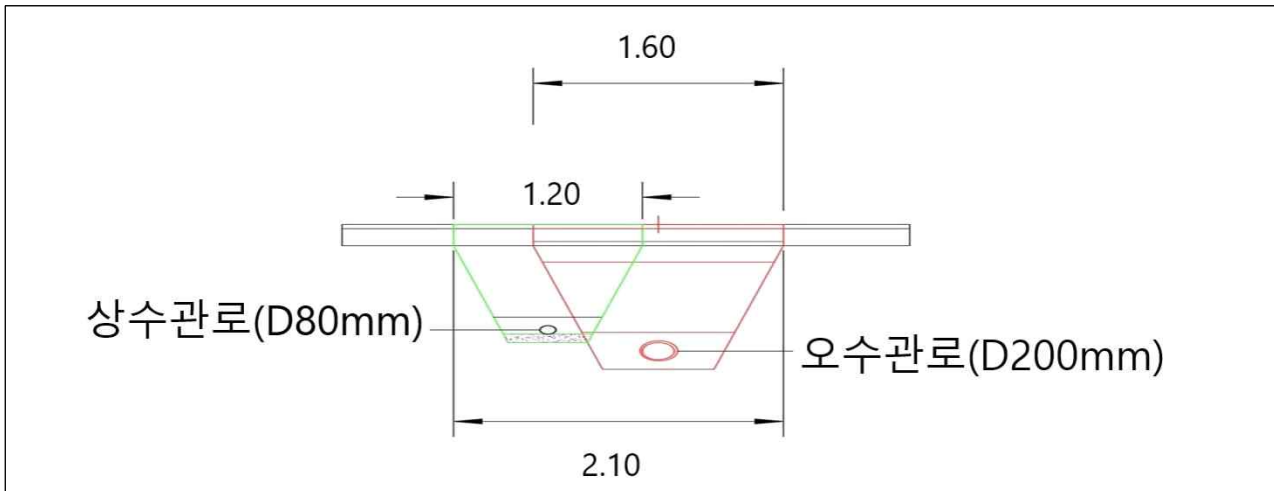
3. 방안 마련 및 실행

- 부서(기관) 간 업무 협의를 통하여 사업시기 조정 협의.
 - 분기별 도로굴착서면 심의 등 연차별 사업 추진 계획 시 굴착 계획, 포장 계획 등에 대하여 사전 협의 실시
- 사업시기 및 공사 가능 대상지에 대하여 토공 및 관로 부설 등 동시 추진 후 포장공사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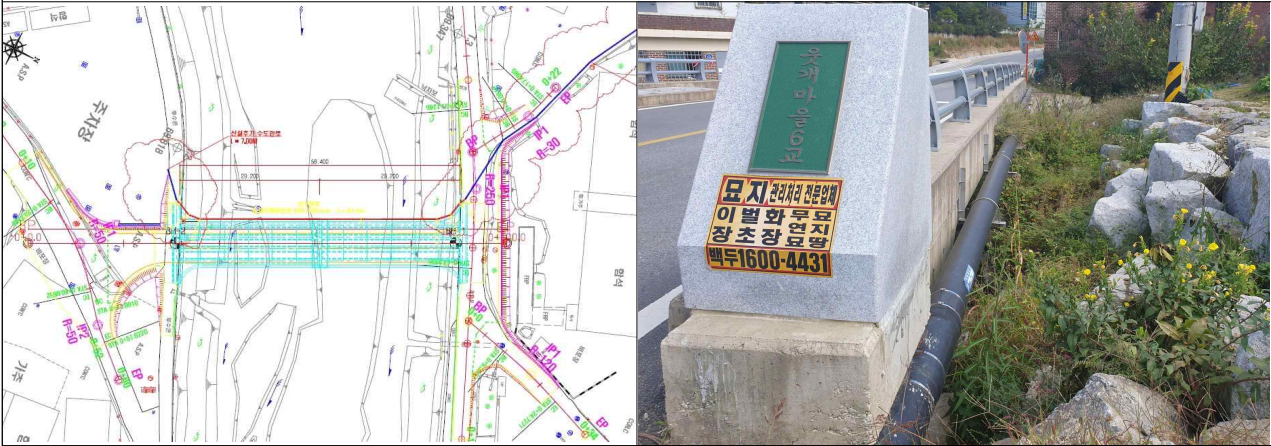
- 2020년 상·하수관로 병행매설(곤지암읍 수양리)
 - L=1,083m : 상수관(D80mm), 하수관(D200mm)



- 2020년 상·하수관로 병행매설(목동 푸른마을 일원)
 - L=399m : 상수관(D80mm), 하수관(D200mm)



교량 공사 상수관로 병행 매설 계획 및 설치 사례



4. 장애극복

- 사업별 추진 시기가 상이한 경우 행정 절차 추진(실시설계 용역, 도로굴착 점용 허가 등) 지연에 따른 적기에 공사 추진 불가.
 - 지속적인 업무협의를 통한 행정절차 간소화 등 적기에 공사 추진이 가능하도록 노력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부서간 협업을 통한 업무 효율성 극대화.
- 이중굴착 방지 등 주민불편 최소화로 행정 신뢰도 향상.
- 토공 및 포장 작업 등 동시 공사 추진으로 예산 절감.
 - 상수관로 단일 사업 추진 시

급수취약지역 중대동223번지	급수취약지역 지월리697-1번지
- 배수관로(D100mm), L=1,000m - 관급자재포함 총공사비 290백만원	- 배수관로(D80mm), L=360m - 관급자재포함 총공사비 172백만원

- 병행매설 추진 시 관급자재 비용만 발생

곤지암읍 수양리 병행매설	목동 푸른마을 병행매설
- 배수관로(D80mm), L=1,083m - 관급자재비 23백만원	- 배수관로(D80mm), L=399m - 관급자재비 19백만원

[기관명]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출 효율화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지방세)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세외수입)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 례 명	지역상생협력을 통한 세출절감 (인근 지자체와 하수 연계처리를 통한 세출절감 및 세입증대 사례)
기 관 명	충청북도 진천군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type="checkbox"/> 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군 <input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상하수도사업소

< 요약 >

- 진천군 문백면 도장배마을 발생하수에 대한 하수도설치 건의사항 접수에 따라, 처리방안을 모색하던 중 자체적으로 하수도를 설치하지 않고 인근 지자체 청주시 오창처리구역으로 연계처리 함으로써, 진천군은 세출절감하고 청주시는 세입증대 방안 사례임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진천군·청주시 하수연계처리 사업
 - 마을현황 : 처리구역 0.03km²(27가구), 발생하수량 9.4m³/일
 - 사업내용 : 하수관로 신설(D200, L=760m)
 - 총사업비 : 658백만원(국비 461, 도비 59, 군비 138)
 - 사업기간 : 2019 ~ 2023
- 지자체간 협력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진천군 사업비(군비) 약 1,117백만원 절감 (자체처리 시 군비 1,255백만원 → 연계처리 시 군비 138백만원[1,117백만원 절감]) (총사업비 1,255백만원 → 658백만원 [597백만원 절감])**
- **인근 지자체 청주시의 경우 세외수입 증가를 가져와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들을 지역간 공유를 통해 해결하여 지자체간 상생.협력발전 도모**

위와 같이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0. . . .


충청북도 진천군수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지역상생협력을 통한 세출절감

(인근 지자체와 하수 연계처리를 통한 세출절감 및 세입증대 사례)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천군 문백면 도장배마을 발생하수에 대한 하수도설치 건의사항 접수에 따라 처리방안을 모색하던 중 인근 지자체 청주시 오창처리구역으로 연계처리 함으로써, 진천군은 세출절감하고 청주시는 세입증대되는 사례임 ○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진천군·청주시 하수연계처리 사업 - 마을현황 : 처리구역 0.03km²(27가구), 발생하수량 9.4m³/일 - 사업내용 : 하수관로 신설(D200, L=760m) - 총사업비 : 658백만원(국비 461, 도비 59, 군비 138) - 사업기간 : 2019 ~ 2023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백면 도장배마을 발생하수의 경우 진천군 자체처리하는 방안과 인근 지자체로 연계처리하는 방안 비교 검토 ○ 추진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4. 4. : 도장배마을 하수도 설치 건의사항 접수 - '19. 5. 27. : 하수처리방안 협의를 위한 출장(청주시) - '19. 5. 31. : 도장배마을 하수처리방안 검토보고(군수) - '19. 8. 22. : 연계처리사업 세부사항 협의를 위한 출장(청주시) - '19. 8. 23. : 도장배마을 하수 연계처리 가능여부 검토 요청 (진천군→청주시) - '19. 9. 20. : 도장배마을 하수 연계처리 가능 회신 (진천군→청주시) - '19. 12. 20. : 진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안) 승인신청 (도장배마을 청주시 오창처리구역 편입) - '20. 3. 26. :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사업 공모 신청 - '20. 8. :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사업 공모 선정 (특별교부금 50백만원 확보) ○ 향후계획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9. : 진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안) 승인 - '20. 9. : 도장배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1. 1. : 하수처리가격 협의, 협약체결, 원인자 부담금 납부협의 (진천군 ↔ 청주시) - '21. 2. : 도장배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1. 3. : 2022년 하수도분야 예산신청 - '22. 3. ~ '23.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p>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백면 도장배마을 하수도설치 건의사항 접수에 따라 처리방안 필요했으나, 해당 처리구역은 전액 군비로 추진해야했음. ○ 청주시와 하수연계처리 방안에 대해 지속 협의하고, 연계처리 협의가 되어 진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하고 사업 착수
<p>④ 우수사례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간 협력사업으로 추진하여 자체적으로 하수도를 설치하지 않고 인근 지자체 청주시 오창처리구역으로 연계처리 함으로써, 진천군은 세출절감하고 청주시는 세입증대 도모
<p>⑤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들을 지역간 공유를 통해 해결하여 지자체간 상생·협력발전에 기여 ○ 지자체간 협력사업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진천군 자체처리보다 사업비 약 1,117백만원(군비기준) 절감 ○ 인근 지자체 청주시의 경우 세외수입 증가를 가져와 지자체간 상생·협력 발전에 기여

지역상생협력을 통한 세출절감

(이웃사촌 지자체와 하수 연계처리를 통한 세출절감 및 세입증대 사례)

1. 과제 선정 내용

- 문백면 도장배마을 하수도설치 건의사항 접수에 따라 처리방안 필요
- 문백면 도장배마을 발생하수의 경우 진천군 자체처리하는 방안과 인근 지자체로 연계처리하는 방안 비교 검토
- 진천군 문백면 도하리 669-186번지 일원 도장배마을 발생하수의 청주시 오창처리구역으로 연계처리 협의
-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들을 지역간 공유를 통해 해결하여 지자체간 상생·협력발전 도모
- 사업개요
 - 사업명 : 진천군·청주시 하수연계처리 사업
 - 마을현황 : 처리구역 0.03km²(27가구), 발생하수량 9.4m³/일
 - 사업내용 : 하수관로 신설(D200, L=760m)
 - 총사업비 : 658백만원(국비 461, 도비 59, 군비 138)
 - 사업기간 : 2019 ~ 2023

2. 문제원인 분석

- 하수처리방안 비교

구분	개요		비고
	1안 오창처리구역 연계	2안 진천군 자체처리	
계획하수량	9.4m ³ /일		일최대
계획 시설	오수관로신설	D200, L=760m	D200, L=600m D80, L=1,330m 펌프장 1개소 처리장 10m ³ /일 증설
	배수설비정비	27가구	27가구
연계처리 하수처리구역	청주시 오창하수처리구역	진천군 봉죽처리구역	
사업비	658백만원 (국 461, 도 59, 군 138)	1,255백만원 (군 1,255)	군비 1,117백만원 절감 (사업비 597백만원 절감)
경제성평가결과	공동처리	개별처리	
문제점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변경, 원인자 부담금 납부필요	경제성이 없어 전액 군비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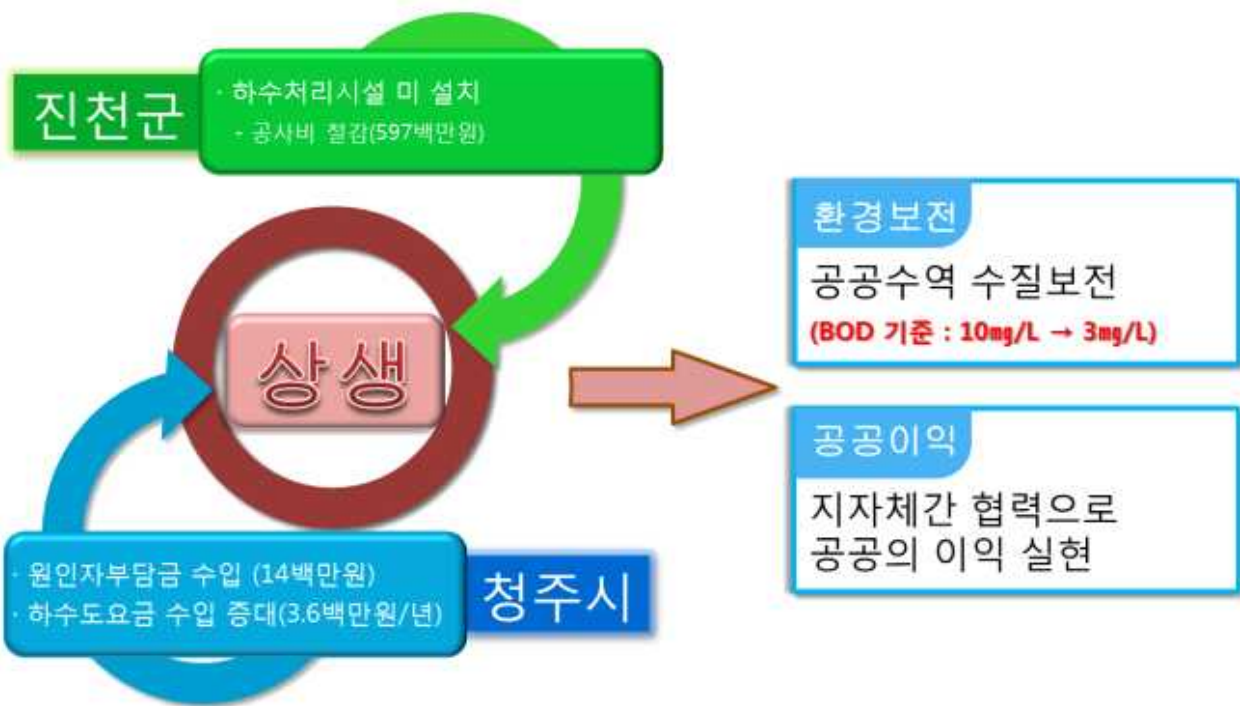
- 1안에 따른 협의
 - 청주시 하수도 사용료는 600원정도이나 하수처리원가 960원 정도
(청주시 하수도 요금에 대한 주민 홍보 필요)
 - 계획하수량이 10m³/일 미만이나 원인자 부담금 납부 필요
(약 14백만원/1회)

3. 방안 마련 및 실행

- 문백면 도장배마을 발생하수의 경우 진천군 자체처리하는 방안과 인근 지자체로 연계처리하는 방안 비교 검토
- 청주시와 하수연계처리 방안에 대한 지속 협의
- 협의가 되어 진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 추진
-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사업 공모신청 및 선정(기본 및 실시설계비 50백만원 확보)
- 추진경위
 - '19. 4. 4. : 도장배마을 하수도 설치 건의사항 접수
 - '19. 5. 27. : 하수처리방안 협의를 위한 출장(청주시)
 - '19. 5. 31. : 도장배마을 하수처리방안 검토보고(군수)
 - '19. 8. 22. : 연계처리사업 세부사항 협의를 위한 출장(청주시)
 - '19. 8. 23. : 도장배마을 하수 연계처리 가능여부 검토 요청
(진천군→청주시)
 - '19. 9. 20. : 도장배마을 하수 연계처리 가능 회신
(진천군→청주시)
 - '19.12. 20. : 진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안) 승인신청
(도장배마을 청주시 오창처리구역 편입)
 - '20. 3. 26. :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사업 공모 신청
 - '20. 8. :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화사업 공모 선정
(특별교부세 50백만원 확보)

○ 향후 추진계획

- '20. 9. : 진천군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부분변경(안) 승인
- '20. 9. : 도장배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 '21. 1. : 하수처리가격 협의, 협약체결, 원인자 부담금 납부협의
(진천군 ↔ 청주시)
- '21. 2. : 도장배마을 하수도정비사업 기본 및 실시설계 완료
- '21. 3. : 2022년 하수도분야 예산신청
- '22. 3. ~ '23. 12. : 공사 착공 및 준공



4. 장애극복

- 지자체간 협력으로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진천군 자체처리보다 사업비 약 1,117백만원(군비기준) 세출절감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사회적, 경제적, 환경적 문제들을 지역간 협력 및 공유를 통해 해결하여 지자체간 상생·협력발전에 기여
- 진천군 자체처리보다 군비 약 1,117백만원 절감
 - 자체처리 시 군비 1,255백만원 → 연계처리 시 군비 138백만원 [1,117백만원 절감]
 - 총사업비 1,255백만원 → 658백만원 [597백만원 절감]
 - 지방상하수도 경영효율사업 공모신청을 통한 특별교부세 50백만원 확보
- 청주시의 경우 세외수입 증가를 가져와 지자체간 상생·협력발전 도모
- 본 사례가 우수사례로 전국 지자체에 전파되면, 인근 지자체간 지역상생 우수사례로써, 하수도 중복설치를 막고 운영비용 절감을 통해 재정효율성 및 건전성이 도모될 것임.

[강원도]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 세출 효율화 □ 세입증대(지방세) □ 세입증대(세외수입) □ 기타
사 례 명	전국 최초! 광역기반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으로 국민안전과 예산절감, 두 마리 토끼 잡다
기 관 명	강원도청 ■ 광역 □ 시 □ 군 □ 구
담 당 자	정보산업과

< 요약 >

- **(개요)** 시군 및 도내 유관기관에서 운영 중인 **CCTV 14천여 대를 도청으로 통합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소방·경찰·군부대 등과 공유하여 **비상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스마트 도시안전서비스 구축**
- **(성과)** 전국 최초! CCTV 영상정보 공동 활용 기반을 구축하여 강원도 전 지자체에 국민안전서비스를 지원하게 되었으며,
 - ① 도에서 통합 추진으로 **사업비 177억 절감,**
 - ② 환경부서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사업비 5억 절감,**
 - ③ 도↔시군 간 기존 국가정보통신망 활용으로 **통신요금 60억/년 절감**
 - ④ 4기관(소방, 경찰, 법무부, 국방부)과 CCTV 14천여대 공동 활용으로 **1조원대 이상의 안전자산 취득효과**

위와 같이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0. 9. .

강원도지사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전국 최초! 광역기반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으로
국민안전과 예산절감, 두 마리 토끼 잡다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기간 : '18. 3월 ~ '20. 6월 ○ 사업비 : 3,924백만원(국 1,200 특 1,500 도 324 시군 900) ○ 연계기관 : 18시군, 소방, 경찰, 국방부, 법무부, 국토관리청, 도로공사 ○ 사업내용 : 시군 및 유관기관 CCTV 14천여대 통합 및 이를 필요로 하는 소방·경찰·법무부 등과 연계, 스마트서비스 지원 등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 3월 : 'CCTV 영상기반 재난·위기 통합지원 추진계획 보고(도지사) ○ '18. 4 ~ 12월 : 시군 및 유관기관 연계 협의, 사업설명회, 실시체계 등 ○ '18. 10월 : 광역을 통한 영상중계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 ○ '19. 2 ~ 9월 : 세부 추진계획 보고(도지사) 및 사업 발주 ○ '19. 11월 : 도↔유관기관 간 상호협력 업무협약(MOU) 체결 ○ '19. 9 ~ '20. 6월 : 각 기관 정보시스템 연계 및 센터 구축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이해관계자와 소통) 관련 기관과 협업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를 운영하는 지자체와 이를 필요로 하는 유관기관과의 이해관계 절충을 위한 적극적 소통창구 운영(설명회, 보고회, 간담회 등) ○ (법적근거 마련) CCTV 영상정보 제공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제2018-18-190호, '18.10.1.) - '도-시군 간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체결('20.7.3.)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제적 정책마련) 도내 시군 및 유관기관의 CCTV 영상정보 통합 및 국민안전 기관과 연계방안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스마트 도시안전서비스 구축 '도↔유관기관 간 업무협약 체결('19.11월) ○ (강원도형 모델발굴) 타 지자체 구축사례 벤치마킹 및 강원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정보시스템 운영상황 현장실사를 통해 최적의 사업모델 도출 ○ (사업추진협의체) 소통과 협력을 통해 각 기관 의견수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4개 기관 32개 부서 / 10회 이상 운영('18.4 ~ '20.5)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최초) 사각지대 없는 스마트 도시안전서비스 구축 ○ (예산절감) 사업비 총 182억원 및 운영비 연간 60억원 절감 ○ (공동활용) CCTV 공동 활용으로 1조원대 이상 안전자산 취득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CCTV 14천여대 / 4기관(소방, 경찰, 법무부, 국방부)

전국 최초! 광역기반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으로 국민안전과 예산절감, 두 마리 토끼 잡다

1. 과제 선정 내용

○ (문제파악) 최근 범죄예방, 안전지원 등을 위해 CCTV 설치가 급증하고 있으나, 각 기관별 별도 운영 및 제도적 한계로 긴급 상황 발생 시 CCTV 활용에 제한적

- 재난·범죄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현장상황 파악과 신속한 대응에 CCTV 영상정보의 활용 필요

※ 2017.12.21. 충북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망29, 부상37), 불법주정차로 초기 진압 실패

○ (해결방안) 국토부에서는 대도시(20만 이상) 위주의 국비(6억) 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재정이 열악하고 중·소도시가 대부분인 강원도의 상황을 고려하여 최소한의 사업비, 운영비 절감방안이 포함된 강원도형 스마트 도시안전서비스 사업을 추진

- 지자체별 추진 대비 道 통합 추진으로 18개 시군 도시안전서비스 일괄 수혜
- 기존 운영 중인 도·시군 간 국가정보통신망의 공동 활용으로 회선료 “Zero” 설계

※ (도시안전서비스) ①112 긴급영상 지원, ②112 긴급출동 지원, ③119 긴급출동 지원, ④재난상황 지원, ⑤사회적약자 지원 등



2. 문제원인 분석

- (정보공유 시급) 각종 사건·사고, 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국민안전 기관(소방·경찰·군부대 등)과 CCTV 영상정보 실시간 공유 필요
 - 현재 각 기관별 CCTV통합관제센터에서 별도 관리·운영 中
 - 소방(119), 경찰(112), 군부대, 재난부서 등과 정보공유 인프라 부재
- (광역기반 협업) 도내 시군 및 유관기관 간 소통·협조 등 기관 협업으로 신속한 지원 및 대응체계 마련이 시급
 - ※ 기초→광역지자체간 정보공유 기반 구성 및 안보·재난·범죄·사고 등 긴급 상황정보 공유
- (자원효율화) 기존 CCTV, 통신망 등 현재 운용중인 시스템의 자원 공동 활용과 광역 단일 시스템 구축으로 예산절감 및 효율성 제고
- (도시문제해결) 최근 4차 산업혁명 기본 기술(AI, IoT, 빅데이터 등) 이 발전되면서 이를 통한 도시문제 해결 등 정부혁신 요구



[추진배경]



[통합플랫폼 구축모델]

3. 방안 마련 및 실행

- (선제적 정책마련) 도내 18개 시군과 유관기관의 CCTV 영상정보를 통합하여 소방·경찰 등 국민안전 기관과 공유할 수 있는 기반 마련
 - 소방·재난 및 예산 등 관계부서와 최종 결정권자(도지사)의 의견 수렴
 - 스마트 도시안전서비스 구축을 위한 '도→유관기관 간 상호협력 업무협약 체결(19.11.5)'

- (강원도형 모델발굴) 서울·대전 등 타 지자체 구축사례에 대한 벤치마킹과 강원도 지자체 및 유관기관의 정보시스템 현장실사, 광역 연계방안 등을 고려한 **최적의 사업모델 도출**
 - 전국 최초! 클라우드기반 스마트 도시안전서비스 구축
- (사업추진 협의체) 시군 CCTV 영상정보 제공 및 유관기관 정보시스템 연계방안 등 **소통과 협력**을 위한 사업추진 협의체 구성 운영
 - (구성) 24개 기관 32개 부서 / (운영) 10회 이상('18. 4월 ~ '20. 5월)



[사업추진 협의체 운영('18.4)]



[도↔유관기관 간 업무협약('19.11)]

4. 장애극복

- (이해관계자 소통) CCTV를 운영·관리하는 지자체와 이를 필요로 하는 소방·경찰·군부대 등 유관기관과의 **이해관계 절충**을 위해 **설명회, 보고회 등 적극적 소통창구 운영**
- (법적 근거마련) 각 기관별 운영되는 CCTV의 **광역기반 연계**를 위한 **영상정보 제공 동의 및 법적근거 절차 이행**
 - 개인정보보호법 상 광역(道) 단위에서 경찰과의 영상정보 공유가 불가 하였으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해 법적 근거 마련
 - ※ '시군 영상정보의 광역자치단체 연계에 관한 건', 제2018-18-190호, 2018.10.1.
 - 영상정보의 안전한 활용을 위한 **'도-시군 간 개인정보처리위탁 계약 체결'**(20.7.3.)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도시안전망 확보) 전국 최초! 도내 18개 시군 및 유관기관의 CCTV 영상정보 공동활용 기반 구축으로 범죄·재난 등 긴급 상황 발생 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스마트 도시안전망 구축
 - (경찰) 112센터, 112순찰차의 긴급영상 지원, 수배차량 실시간 추적
 - (소방) 119상황실 긴급영상 지원
 - (법무부) 전자발찌 위치추적을 위한 긴급영상 지원
 - (국방부)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긴급영상, 문제차량정보, 영상회의 지원
 - (환경부) 미세먼지 저감조치 대응 운행제한차량 단속 지원
 - (재난상황실) 재난지역 주변 CCTV, 3D지도·모바일 현장영상 지원

〈스마트강원 도시안전서비스 구축 사업개요〉

- 사업명: 스마트강원 영상 통합지원체계 구축
- 사업기간: '18. 3. ~ '20. 6.
- 사업비: 3,924백만원(국비 1,200 특교세 1,500 도비 324 시군비 900)
- 연계기관: 18시군, 소방, 경찰, 국방부, 법무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한국도로공사
- 사업내용: 시군 및 유관기관 CCTV 14천여대 통합 및 이를 필요로 하는 소방·경찰·법무부 등과 연계, 스마트서비스 지원 등

- (예산절감) 道에서 통합 사업추진으로 기존자원 공동 활용을 통한 사업비 절감 및 효율성 증대
 - 다수의 기관을 통합·연계하는 도시안전서비스 컨트롤타워 역할을 위해 강원도 주관으로 사업 추진, 사업비 177억 절감
 - ※ 시군별 추진(18시군×12억=216억) 대비 도 일괄 추진(39억)으로 사업비 절감
 - 배출가스 5등급차량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구축 시('20.9월), 기존 번호인식 CCTV 공동 활용으로 카메라 설치 사업비 5억 절감 및 향후 운영비 절감
 - ※ 운행제한 단속시스템 신규 구축(8.8억) → 스마트강원 연계 변경(3.8억)
 - 도↔시군 간 국가정보통신망(행정업무용)을 CCTV 전송망으로 공동 활용함으로써 통신요금 연간 60억 절감

※ 18개 시군 1Gbps 전용회선비 월 5억원 소요

- 지자체 CCTV 14천여대에 대한 기관별 자원 공유로 1조원 이상의 안전자산 취득효과

※ 4기관(소방, 경찰, 법무부, 국방부) × CCTV 약 2,800억원(1개 구축 20백만원 기준)

○ (정부혁신) 영상정보·공공데이터 등의 빅데이터, 스마트폰·각종 센서의 IoT 연계 등 4차 산업혁명 기술을 통한 도시문제 해결 기반 마련

- (정보연계) CCTV, 기상·대기 환경, 재난정보, 시설물정보 등

- (도시문제) 사회·자연재난, 범죄, 통합방위 등 위험으로부터 안전 확보

➔ 사각지대 없는 **스마트 도시안전서비스** 지원으로 국민안전을 지키는 「**골든타임**」 확보



[광역기반 영상정보 연계]



[스마트 도시안전서비스]

[충청남도 서산시]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출 효율화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지방세)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세외수입)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 례 명	전국최초 민간기관·단체 인건비 단일화 체계 구축으로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기 관 명	충청남도 서산시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 <input type="checkbox"/> 군 <input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기획예산담당관실

< 요약 >

- 중앙부처 소관, 부서마다 다른 기준으로 유사업무 민간단체의 경우 인건비 지급액 격차 발생하여 근로자의 최저 임금 보장, 임금 지급 기준 체계 마련을 위해 전국 최초 “민간기관·단체 인건비 단일화 체계 구축”으로 유사업무 단체 임금격차 축소 및 불필요한 예산 편성 사전 차단과 투명한 보조금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급규정 가이드라인 제시로 보조금 건정 운영 및 재정집행 투명성 확보 등 세출의 효율성 극대화 마련

위와 같이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0. 10. 7.

서산시장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전국 최초! “민간기관·단체 인건비 단일화 체계 구축”** 으로
지방보조금의 투명한 관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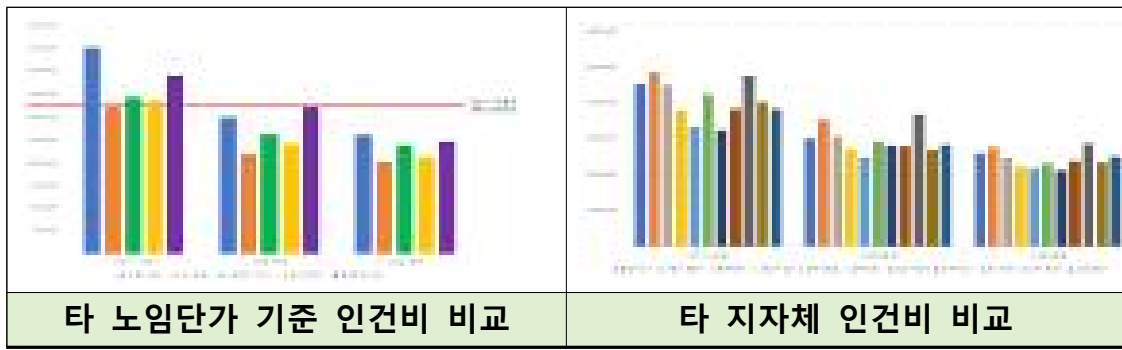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기간 : 2019. 3. ~ 2020. 12. ○ 사업대상 : 서산시 보조금 지원 민간기관·단체 54개소 ○ 사업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산시 보조금 지원 민간 기관·단체 인건비 지급규정 제정 - 서산시 보조금 지원 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4. : 민간단체 등 인건비 지원 개선 계획 수립 ○ '19. 5. ~ 12. : 민간단체 등 인건비 예산지원 개선 연구용역 추진 ○ '19. 8. ~ '20. 2. : 교육 및 설명회 등 4회, 방문컨설팅 10회 ○ '20. 1. : 서산시 인건비 지급규정 제정 및 적용 ○ '20. 9. :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 지원 조례 공포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앙부처 및 부서별 보조금 지원 인건비 지급기준이 상이 하여 걱정된 운영비 산정 곤란 ○ 민간기관·단체별 처우개선비, 인건비 추가 수당 등 격차 발생에 따른 형평성 문제 제기 <p style="margin-left: 20px;">⇒ 서산시 인건비 지급규정 제정을 통해 임금체계 단일화</p> <p>※ 충분한 사전설명회, 면담, 교육 등을 통해 문제점 극복을 하여 상호 충돌없이 문제를 해결하고 법적근거 마련함</p>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업무 임금격차 축소 등 임금 단일화 체계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근로자의 최저 임금 보장, 임금 지급 기준 체계 마련 ○ 불필요한 예산 편성 사전 차단을 위한 예산 편성 기준 정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건비(인원), 사업비, 운영비를 구분하여 표기 ○ 합리적 예산 운영을 위한 의회 및 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 단체별 운영비 내역서, 비교표 작성 제출 ○ 지방보조금 지원 민간기관, 단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 추진 기반 마련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투명한 보조금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급규정 가이드라인 제시 ○ 보조금 건전운영 및 재정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한 보조금 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 지원 근거 없는 처우개선비, 추가 지원 등 자체수당 326백만원 삭감(23개소, 112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생복지 지원조례로 54개소, 214명(117백만원) 형평성 있는 지원 및 예산절감 209백만원 ⇒ 기관·단체간 차별성을 혁파하고 근무 동기를 부여함.

1. 과제 선정 내용

- 보조금 지원으로 운영되는 민간기관·단체의 인건비 지급 규정 부재로 예산 낭비와 민원 발생
 - 인건비는 정원, 승진, 직위·직급, 징계여부에 따라 변동되는 만큼 객관적인 인사관리 필요
 - * 처우개선비, 인건비 추가 수당 등 지급 격차 발생으로 형평성 문제 제기
- 중앙부처·부서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인건비 지급 기준이 상이하여 적정한 운영비 산정 곤란
 - 중앙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인건비 지급 기준 상이하여 인건비 격차 발생 등 적정한 운영비 산정 곤란
 - 보조금 지원 단체 자체 임금 인상, 민간기관·단체별 임금인상 요구 등 인건비 운영 체계 불투명

2. 문제원인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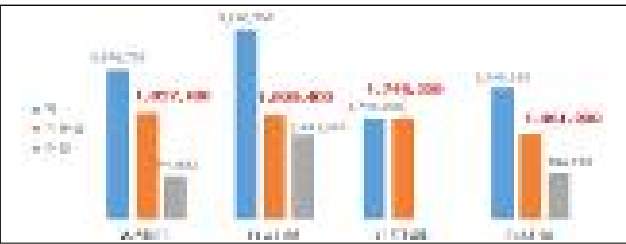
- 민간단체 등 인건비 예산지원 개선계획 수립(2019.04.) 및 현황 파악
 - ① 서산시 민간기관 등 인건비 지원 단체 현황 분석(58개, 180억)
 - 사무현황, 정원, 직위, 직급별 직원 현황
 - 개인별 인건비 2018년 정산, 2019년 지급계획 현황 분석
 - ② 인건비 지급 기준 제시를 위한 관련 법·조례·지침·정책 검토
 - 타 지자체 등 관련 조례(사회복지사업법 등 25개 하위법률, 사업관련 94개)
 - 민간위탁 사무 분야별 인건비 지침 등(지급기준) 및 정부정책
 - 민간기관·단체 근로자 복지제도
 - * 통상임금 기준, 퇴직금 적립, 근로시간, 연장근로, 휴일 등
 - ③ 타 지자체 민간위탁 등 인건비 체계 사례 조사
 - 민간위탁 사무 분야별 인건비 기준 사례 조사
 - * 9개시도 77개 사업 / 공공기관 12개소 / 전국생활임금, 계약, 직종별 13분야 등
 - 서산시 민간단체별 타 지자체 비교분석, 임금수준 도출
 - 민간단체별 공무원, 사회복지, 타 민간위탁 인건비와 비교 분석



○ 민간단체 등 인건비 예산지원 개선 연구용역 추진(2019.5.)

- 서산시 보조금 지원 민간기관·단체 등의 사무 분야별 현행 개별 법령, 중앙정부 및 타지자체의 각종 인건비 산정 지침 기준 등을 조사 분석을 통하여 인건비 산정을 위한 구체적인 임금 가이드라인 제시 필요
- 민간단체 근로자의 근무환경 개선, 보조금 집행의 책임성 강화 및 시민서비스 향상 방안 강구

구분	계	기본급	수당
A센터	2,576,732	1,832,100	744,632
B시설	3,250,757	1,809,400	1,441,357
C단체	1,745,200	1,745,200	
D시설	2,245,320	1,461,200	784,1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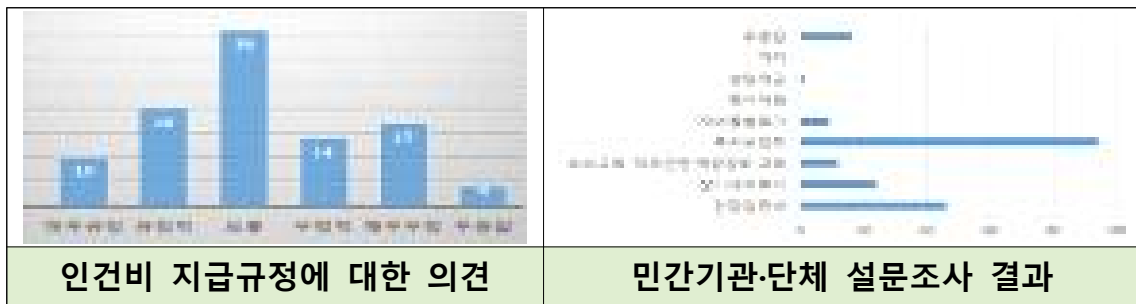
민간기관·단체별 월평균 인건비(기본급, 수당) 지급 현황(6급 1호봉 기준)

※ 최저임금 미달, 민간기관·단체별 기본급 격차, 근거 없는 수당 지급 문제 발견

3. 방안 마련 및 실행

○ 가이드라인 적용을 위한 방문 컨설팅으로 민원사항 청취, 조정수당, 후생복지 지원 종합계획 수립 등 보완 방안 마련

- * 교육 및 설명회 등(4회, 425명), 방문컨설팅(재단, 시설 등 10회), 설문조사 101명
⇒ 서산시 보조금지원 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 보조금지원 기관 종사자 인건비 지급규정 적용 및 근거가 없거나 자체규정에 의한 수당 불인정(2020. 1.)

▶ 목적 : **인건비 지급규정 제시로 책임성 있는 보조금 집행 확립**
 ▶ 대상 : 54개(41개 시설, 13개 단체), 214명
 ▶ 개선 : 최저임금 보장, 임금 격차 축소, 보조금 지원 운영비 공개 및 집행·정산의 책임성 강화, 처우개선 방안 연구



인건비 지급규정 설명·정산 교육(2020. 2. 1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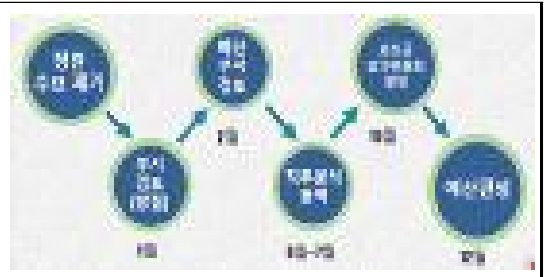


인건비 지급규정 설명회(2020. 2. 18.)

- 인건비 지급 프로세스 체계 및 정원관리 규정 마련(2020. 1. 시행)



인건비 지급 프로세스



민간기관·단체별 정원 관리

4. 장애극복

- 처우개선비, 수당, 인건비 추가수당 등의 급여 불인정에 대한 불만 고조
 ⇒ 지급 근거 없는 처우개선비, 수당 등에 대한 불인정 이유 설명 및 후생복지지원 방안 방문 컨설팅
- 중앙부처(보건복지부, 여성가족부 등) 지침 적용 지역아동센터, 성폭력 상담소 등 동일 업무임에도 인건비 격차발생, 호봉 불인정
 ⇒ 보조금 지원 민간기관·단체에 대한 임금 지급 현황 조사 후 격차 발생 문제 분석 후 임금단일화 지급 규정 제정

- ▶ 지역아동센터, 성폭력상담소, 단체 : 호봉제 도입
- ▶ 대표자 시간외 수당(80~100만원) 제외 : 관리수당(30만원) 도입
- ▶ 모든 시설 단체에서 지급되던 각종 수당을 불인정하고
- ▶ 서산시 인건비 지급규정에서 제시한 수당만 인정하여 형평성 있는 임금 지급을 위한 임금단일화 체계 구축



임금단일화로 인한 2019년 대비 인건비 감액대상자 조사 후 조정수당 지급으로 문제점 해소

- 인건비 기준 적용 급여 인상에도 불구하고, 불명확한 경력인정, 민간 기관·단체의 모호한 기준을 임의로 적용시켜 직급 상승 요구 쇄도
 ⇒ 기관장 면담, 관련 부서별 자체기준 교육 및 안내 반복으로 민간기관·단체 요청을 사전에 배제하여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 적용으로 책임성 강화

반칙과 특권 없는 “신뢰받는 정부 구현” 을 위한 혁신 행정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전국 최초 “보조금 지원 민간 기관·단체 인건비 지급 규정” 제정(2020. 1.)**
 - 인건비 지급규정 적용을 위한 연구용역(22,000천원) 실시 및 보조금 설명회, 설문조사, 보조금 관리교육 추진
 - * 민간시설·단체 월평균 인건비 비교(6급 1호봉 기준)

구 분	민간기관·단체 자체 기준 적용			서산시 가이드라인 적용			증 감
	계	기본급	수당	계	기본급	수당	
A센터	2,576,732	1,832,100	744,632	2,347,511	1,832,100	515,411	△229,221
B시설	3,250,757	1,809,400	1,441,357	2,427,511	1,832,100	595,411	△823,246
C단체	1,745,200	1,745,200		2,307,511	1,832,100	475,411	562,311
D시설	2,245,320	1,461,200	784,120	2,307,511	1,832,100	475,411	62,191

가이드라인 적용 전 임금지급 현황

인건비 가이드라인 마련(2020. 2. 19)

○ 투명한 보조금 운영을 위한 인건비 지급규정 가이드라인 제시

- 최저임금 시설(지역아동센터, 공동생활가정, 국도비 지원 시설) 동일임금 체계 구축, 민관기관·단체별 자체 규정에 의한 무분별한 임금체계 개선
- 조례 근거 없는 처우개선비, 시설별 자체규정에 의한 수당 불인정 등으로 효율적인 인건비 지급규정 마련

* 타 자치단체 확산 ⇒ 당진시 용역 실시, 벤치마킹 문의(보령, 논산, 홍성, 태안, 예산 등)



- 사업부서의 관리사항 점검 및 감사팀 협업을 통한 정산내역 감사

- ▶ 시간외, 근태관리 준수여부 확인
- ▶ 인건비 규정 내 임금 지급 현황, 후원금, 퇴직금, 소득세 신고 등 보조금 정산
- ▶ 보조금 평가, 환수, 감서처분 사항을 다음연도 보조금 편성 시 반영 서산시 인건비 지급규정에서 제시한 수당만 인정하여 형평성 있는 임금 지급을 위한 임금단일화 체계 구축

○ 서산시 보조금 지원 기관 종사가 처우개선 및 후생복지를 위한 조례 제정 (2020. 9월 공포, 2021. 1월 시행)

- 후생복지 관련 설문조사(101명) 실시 결과를 반영하여 종사자 처우 개선 및 후생복지 지원 예정

* 1위) 복지포인트 1인 40만원, 2위) 종합건강검진비 1인 30만원 격년 지원,

○ 불필요한 예산편성 사전차단, 예산낭비 예방 활동 강화로 투명하고 합리적인 예산 운영

- 인건비(인원표기), 사업비, 운영비를 예산서에 표기하여 전용방지 및 인건비 지급 관리 철저

- ▶ 시설·단체 운영비 내역서 비교표 작성 의회 제출 ⇒ 불필요한 예산편성 사전차단
- ▶ 보조사업자 자부담 비율 변경, 정원변경 등 예산변경 사유 발생 시 방침결재 후 보조금 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한 관리 강화
- ▶ 보조금관리지침의 성과평가 : 부정수급 및 부적정 보조 사업자 패널티 부여(△30점)
- ▶ 예산·감사팀, 사업부서 협업을 통한 자체 점검 및 의심기관 감사의뢰 체계 마련

○ 보조금 건전운영 및 재정집행 투명성 확보를 위해 보조금심의위원회 기능 강화

- 자체 인건비 지급 규정 불인정, 정원 변경 승인 및 인원 요청 시 서산시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후 결정
- 후생복지로 채우는 개선하되, 정산은 투명하고 철저하게 관리하기 위해 보조금 부정수급 사례 발생 시 대표자 인건비 자부담 계획 수립 예정(2021년)

○ 후생복지 지원 등 처우 개선을 통한 일·가정 양립 제도 마련

- 후생복지를 위한 종합계획 수립 후 종사자의 근무환경 개선
 - * 복지포인트, 종합검진비 지원을 위한 예산편성 근거, 장기재직휴가, 돌봄휴가 등 제공 기반 마련

▶ 지원 근거 없는 처우개선비, 추가지원 등 326백만원 삭감(23개소 112명)
 ▶ **후생복지비 반영 117백만원(54개소 214명) 및 예산 절감(209백만원)**

○ 지방보조금 지원 민간기관, 단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인력 적정성 검토 연구 용역 추진 기반 마련

- 객관적이고 보편타당한 효율적 운영방식 설정으로 투명하고 건전한 보조금 운영을 위한 근거 제시

▶ 기관단체 운영현황 분석 및 인력운영 방식 제도적 검토
 ▶ 타 유사기관 현황 및 인력운영 실태 사례조사 등을 통해 적정인력 도출 및 인력 운영방향 제시, 효율적 인력 요청을 위한 프로세스 마련

<p>전국 최초 조례제정 관련 보도자료(2020. 9. 21.)</p>	<p>서산시장 페이스북 홍보자료</p>
<p>전국 최초 조례제정 관련 보도자료(2020. 9. 21.)</p>	<p>서산시장 페이스북 홍보자료</p>

[남원시]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출 효율화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지방세)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세외수입)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 례 명	재활용품 선별시설 광역화로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비대면 선별효과
기 관 명	전라북도 남원시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 <input type="checkbox"/> 군 <input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기획실

< 요약 >

- 선별장 광역화를 통한 **2개 자치단체 비대면 분리** 선별 효과 거양
- 각 시군 매립장 **매립 연한 기간연장**
- 전형적인 **남비(NIMBY)시설을 인근 지자체와 연계협력으로 활용 극대화**
- 일방적인 행정추진이 아닌 매립장 주변 **주민협의체와 적극 소통으로 갈등 최소화**
- 기관 간 **협업을 통한 3개 시군 공동 활용으로 예산절감 실현**
 - 총사업비 3,600백만원(국비 900백만원, 도비 600백만원, 시군비 2,100백만원)
 - ※ 남원시 50%(1,050백만원), 임실군 23%(483백만원), 순창군 27%(567백만원)

위와 같이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0. 10. .

남 원 시 장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재활용품 선별시설 광역화로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비대면 선별효과**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남원시 대산면 노산하대길 134(대산매립장 내) ○ 추진기간 : 2016년 ~ 2020년 * 2018.10월부터 3개시군 반입 ○ 사 업 비 : 36억원(국비 9, 도비 6, 시군비 21) ○ 운영방법 : 자치단체 3개시군(남원,임실,순창) 재활용 쓰레기 반입 비율에 의거 운영비 부담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5. 02. 27 : 도청, 남원, 임실, 순창 실무 협의(남원시) ○ '15. 04. 29 : 양해각서 체결 및 지방비 부담 방안 실무협의 ○ '15. 05.~12. : 매립장주변마을 주민협의체 협의(완료) ○ '15. 04.~'16.1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16. 12.~'19.12 : 광역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및 보완공사 ○ '20. 6. : 광역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사업 정산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의 일방적 추진 배제와 매립장 주변 주민 협의체와의 적극 소통 ➡ 재활용품 선별시설은 자원순환사회 기반 마련 ○ 주민협의체와의 6개월간의 마라톤 협상, 남원시장 주재 현안 토론 해결방안 마련 ➡ 주민지원 협약서 체결 ○ 업무추진을 위한 지자체간 지속적인 실무협의 및 벤치마킹 시행 ➡ 광역 재활용품 선별시설 운영 및 제반사항 협약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수작업 선별에서 기계화 선별시설 전환 ➡ 유능한 행정 구현 ○ 매립 최소화를 통한 각 시군 매립장 매립연한 기간 연장 ○ 기관간 협업을 통한 3개 시군 공동활용으로 예산절감 기여 ○ 선별장 광역화를 통한 2개 자치단체 비대면 선별 가능 ○ 재활용품 자동 선별 처리로 비대면 선별 및 재활용률 향상 ○ 대형폐기물(플라스틱류 포함) 모바일 신고제를 통한 ➡ 비대면 접수 실시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950백만원 예산 절감 ○ 재활용품 매각 : 957톤 / 214백만원 세외수입 효과 ○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일자리창출 : 20명 ○ 2개 자치단체 선별 인원 비대면 효과 : 40여명

재활용품 선별장 광역화를 통한 예산절감과 효율적인 비대면 선별

1. 과제 선정 내용

- (남원) 쓰레기 매립장 사용연한이 2017년 종료 예정으로 대책 시급
 - 2017년 쓰레기 매립장 포화시기 도래로, 생활폐기물 처리 최소화를 통한 매립장 사용 효율화 필요
 - 기존 재활용 선별창고에서 70~80세 노인들이 수작업으로 선별하고 있어 작업 능률 저하 및 노령으로 인한 사고 위험 증가

※ <표 1-1> 남원, 임실, 순창 생활폐기물 발생 및 처리현황

(단위 : 톤/일, %)

기관	구분	발생 총량 (생활폐기물)	재활용품	
			발생량	비율
남원시		71.7	20.5	34.9
임실군		12.6	3.9	30.9
순창군		17.6	7.3	41.4

- (임실, 순창) 재정 여건이 열악하여 단독 처리시설 설치 어려움
 - 발생하는 생활폐기물 총량 중 재활용품 비율이 30~40%로 매우 높으나 이를 처리하기 위한 시설·인력이 턱없이 부족한 실정
 - 3개 시군 모두 낮은 재정자립도로 인해 단독으로 시설을 설치하기에는 예산상 부담이 큰 상황

※ <표 1-2> 남원, 임실, 순창 재정자립도 현황(2016년)

(단위 : 백만원, %)

기관	구분	자체수입(A)	예산규모(B)	재정자립도(B) (A/Bx100)
남원시		56,204	472,921	11.88
임실군		46,345	296,735	15.62
순창군		37,441	285,344	13.12

2. 추진내용

○ 사업개요

- 위 치 : 남원시 대산면 노산하대길 134(대산매립장 내)
- 사업내용 : 기계화선별시설 1식(처리용량 : 12ton/일)
 - ※ 반입장, 투입호퍼, 경사이송 콘베이어, 수선별 콘베이어, 자력선별기, 스티로폼 파쇄기·감용기, 선별플라스틱 저장조·압축결속기, 캔압축기
- 선별품목 : 6종(12품목)
 - ※ 종이류, 플라스틱(PET, PE, PP, PS), 필름류, 캔류(철, 비철), 병류(갈색, 투명, 청색), 발포합성수지
- 사 업 비 : 36억원(국비 9, 시군비 21, 도 6)
- 운영인력 : 20명(차량관리 1, 기계관리 1, 선별인부 18)
- 운영위원회 : 9명(3개 시·군 과장, 담당, 담당자)
- 운영방법 : 3개시·군(남원·임실·순창) 재활용 쓰레기 반입 비율로 운영비 부담

○ 추진경과

- '15. 02. 27 : 도청, 남원, 임실, 순창 실무 협의(남원시)
- '15. 04. 29 : 양해각서 체결 및 지방비 부담 방안 실무협의
- '15. 05. ~ 12. : 매립장주변마을 주민협의체 협의(완료)
- '15. 04. ~ '16. 11. :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 '16. 12. ~ '19. 12. : 광역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 및 보완공사
- '20. 6. : 광역재활용품 선별시설 설치사업 정산



광역 재활용품 선별사

3. 문제원인 분석

- (매립장 사용종료 도래) 대산매립장 사용이 2017. 7 종료됨에 따라 쓰레기를 위생적이고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매립장 증설이 시급
- (낮은 재활용율) 전국폐기물통계 조사에 따르면 쓰레기 종량제 봉투 내에서 재활용품이 차지하는 비중이 70%라고 할 정도로 쓰레기 분리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 남원시 생활폐기물 발생량 중 재활용 비율은 34.9%(표1-1 참고)
- (재활용품 처리비용 증가) 3개 시·군 모두 재활용품을 수작업으로 선별하여 처리하다 보니 매년 처리비용이 증가

구분	선별 인원	인건비(천원)			판매액(천원)			비고
		2017년	2018년	2019년	2017년	2018년	2019년	
남원시	20명	348,516	376,580	421,597	90,000	76,385	197,785	

- (님비(NIMBY)현상 만연) 광역 재활용 선별시설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시민 모두가 공감하지만, 대다수 주민들이 우리지역에 설치하는 것을 기피
-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 개선 필요) 선별장에 유입되는 재활용품 중에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제품이 섞여 있어, 수거된 재활용품을 재분류해야 하는 실정으로 많은 작업시간과 인력이 필요



4. 방안 마련 및 실행

- 협오시설 설치에 따른 행정과 주민과의 협업
 - ➔ 광역선별장 설치에 따른 주민과의 소통 추진 : 주민 일자리 창출 등의 인센티브 확대로 행정과 주민간의 공동체 의식 함양
- 자치단체간의 협업을 통한 예산절감
 - ➔ 국비, 시군 부담금 등을 통한 예산절감 및 운영비 절감
- 재활용 쓰레기 분리선별을 통한 매립 최소화
 - ➔ 매립장 매립연한 연장, 연장에 따른 기회비용 발생
- 재활용 선별시설 광역화로 2개 자치단체지역(임실, 순창) 재활용 선별 인부 미채용 등 비대면 작업 가능
- 수작업으로 처리했던 재활용품 선별작업을 자동 선별시설 활용
 - ➔ 비대면 선별 효과 거양 및 재활용률 향상
- 읍면동사무소 방문 없이 대형폐기물 모바일 배출 신고를 통한 **비대면 접수 실시** : 대형폐기물, 가전제품, 플라스틱류 포함

당 초

읍면동사무소 방문 → 신청 및 수수료 납부 → 스티커 배부 → 스티커 부착 및 배출 → 수거





변 경

'여기로' 어플 접속 → 모바일 작성 → 수수료 결제 → 배출번호 기재 → 접수확인 → 수거

가구류, 가전제품류 등

대형폐기물 배출!

간편하게 모바일 앱 "여기로" 신청하세요!



- 시민 홍보를 통한 인식 전환으로 올바른 재활용품 배출 유도
 - 읍면동사무소, 아파트, 통·이장 회의 등 홍보자료 배부



- 주민간담회 및 교육을 통한 시민 인식전환



-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를 통한 재활용품 분리배출 유도
 -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어려운 외딴 지역에 비가림 설비와 품목별 배출이 가능하도록 분리수거함인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



5. 장애극복

- 행정의 일방적 추진을 배제하고 주민 협의체와의 적극 소통
 - 타지역의 재활용품 반입 기피 민원 발생으로, 매립장 인근 주민들과 지속적인 대화를 통해 재활용품 선별시설이 자원순환사회 기반을 마련하기 위함임을 설득

- 주민협의체와의 6개월간의 마라톤협상 및 남원시장 주재 현안 토론회
해결방안 마련
 - 광역 재활용품 선별장으로 반입된 재활용품 매각 수익금의 일부를 인근 금강마을 외 11개마을에 지원하기로 주민지원협약서 체결
- 자치단체간의 업무추진을 위한 지속적인 토론과 논쟁 대두
 - 임실·순창군 담당자와 타지차제 선진지 견학(김천, 영주시)을 통하여 사례 검토 후 설치 및 운영 추진 협의
 - 재활용품 매각대금 사용방안, 운영비 분담 비율, 반입 재활용품 중 잔여 쓰레기 처리 문제 등 지속적인 소통으로 협약 완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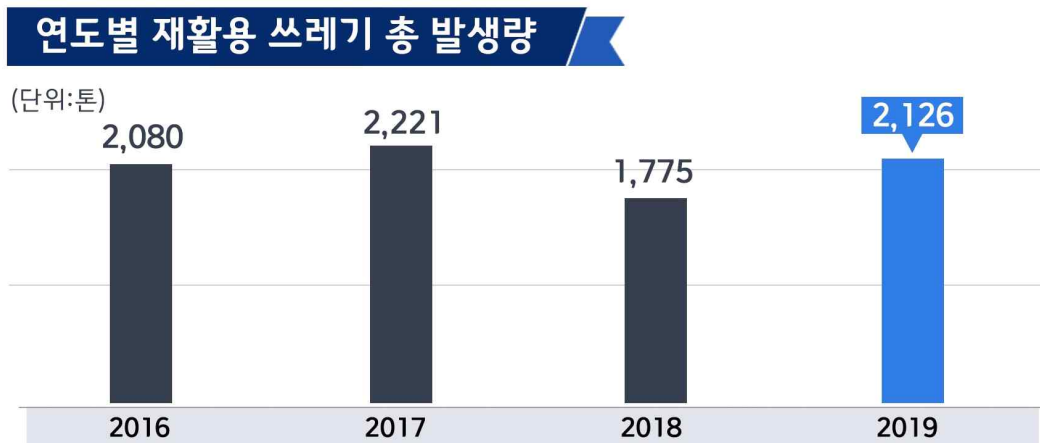


끝장토론 3개시·군 실무협의



매립장 주변마을 주민협의체 협의

6.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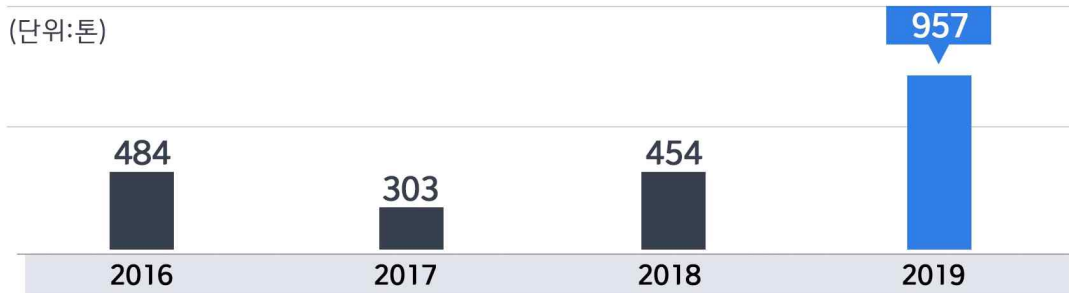
연도별 재활용 쓰레기 선별률

(단위:%)



연도별 재활용 쓰레기 매각량

(단위:톤)



- 전형적인 님비(NIMBY)시설을 인근 지자체와 연계 협력
 - 총 10여차례 실무협의 등을 통해 양해각서(MOU)체결 등 가시적인 성과를 3개 시·군이 기관간 협업으로 추진(소통.협력)
- 행정 일방적인 추진이 아닌 매립장 주변 주민협의체와 적극 소통
 - 매립장 주변 마을 주민협의체와 6개월 간의 협의를 하고, 민원사항에 대해 남원시장 주재 현안토론(18.2.17.)을 통해 해결방안 강구(소통.협력)
- 정부시책(환경부)에 부합하는 사업 추진으로 타지자체 확산 가능
 - 정부시책인 '폐기물처리시설 최적화 전략'에 적합하도록 추진되는 선도사업으로 타지자체 확산 가능성이 매우 큼(개방.공유)
- 광역 선별시설 설치에 따른 선별률 및 매각량 증가로 세외수입 증가
 - 선별률 21.3% → 45.6%(증46%), 매각량 454톤 → 957톤(503톤)
 -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58,697천원 → 214,138천원(155,441천원 증)
- 2개 자치단체(임실, 순창) 선별 인원 미채용으로 비대면 효과 : 40여명

- 기존 3개 시·군 재활용품 선별시설 각 자치단체에서 운영함에 따라 별도의 선별인원이 필요 (남원 20명, 임실 6명, 순창 11명)
- ➔ 광역재활용품 자동 선별시설 설치로 임실·순창은 선별 인원 미채용으로 예산절감 및 비대면 효과 증대

○ 광역화에 따른 자치단체간 협업

- 설치비 및 운영비 공동분담을 통해 지자체의 예산 절감 1,950백만원
- 남원시에서는 기반시설 건설 및 운영, 수익금 중 인건비 지급 및 주민 지원 사업 추진
- 임실군, 순창군에서는 재활용쓰레기를 손쉽게 처리 가능

○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의식 전환

- 재활용 분리배출에 대한 시민 홍보 및 교육, 현장 견학을 통해 쓰레기 불법 투기와 소각을 줄이고, 재활용률을 높여 자원순환사회 기반조성

문서번호	환경과-32811
발령일자	9월
발령일자	2020. 09. 28.
발령처	다목적 물가

구분	최소달성	최고달성
목표		
진도		

- 2020년도 주민1인당 재활용품 -
상반기 분리수거량 실적 보고

자원 재활용을 제고하기 위해 폐건전지, 종이팩 수거를 추진하고 그에 따른 상반기 실적을 다음과 같이 보고함

□ 변동사항

- 2020년부터 폐형광등이 지표에서 제외
- 지표산식 : (폐건전지*0.7 + 종이팩*0.3) / 인구수

□ 연 황

- 2019년도 수거실적(목표 달성)
 - 수거량 : 폐건전지 4,890kg / 종이팩 7,950kg
 - 인구수 : 82,654명
 - 1인당 분리수거량 : (4,890*0.7+7,950*0.3)/82,654 = 0.069
- 2020년도 수거실적

구분	수거량(kg)	목표량(kg)	달성률(%)	비고
1인당 분리수거량	0.039	0.054	72.2%	
폐건전지	2,580	4,503	57.3%	
종이팩	4,470	4,944	90.4%	

- 인구수 : 81,441명
- 1인당 분리수거량 : (2,580*0.7+4,470*0.3)/81,441 = 0.039

□ 금우개혁

- 지속적인 수거 추진 및 홍보

사람의 도시 건강한 남원
2020년도 주민1인당 재활용품 -
상반기 분리수거량 실적 보고



재활용 가능자원 수거

이행과제

기본정보	추진계획/실적	예산계획/실적	모니터링																											
진도율 100%																														
<p>월별 누적 진도율 [※ 색칠된 부분 : 현월, 월별 누적진도율 : (해당월까지의 진도합)/(해당월까지의 목표합)]</p> <table border="1"> <thead> <tr> <th>월</th> <th>1월</th> <th>2월</th> <th>3월</th> <th>4월</th> <th>5월</th> <th>6월</th> <th>7월</th> <th>8월</th> <th>9월</th> <th>10월</th> <th>11월</th> <th>12월</th> </tr> </thead> <tbody> <tr> <td>누적진도율</td> <td>-</td> <td>-</td> <td>-</td> <td>-</td> <td>-</td> <td>100%</td> <td>100%</td> <td>100%</td> <td>100%</td> <td>100%</td> <td>60%</td> <td>60%</td> </tr> </tbody> </table>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적진도율	-	-	-	-	-	100%	100%	100%	100%	100%	60%	60%	
월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누적진도율	-	-	-	-	-	100%	100%	100%	100%	100%	60%	60%																		
<p>진도율 월별 진도</p> <table border="1"> <thead> <tr> <th rowspan="2">핵심활동</th> <th colspan="3">누적 진도율</th> <th colspan="3">연 진도율</th> </tr> <tr> <th>목표</th> <th>진도</th> <th>진도율</th> <th>목표</th> <th>진도</th> <th>진도율</th> </tr> </thead> <tbody> <tr> <td>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 홍보</td> <td>60%</td> <td>60%</td> <td>100%</td> <td>100%</td> <td>60%</td> <td>60%</td> </tr> <tr> <td>재활용분리수거 관련 시설 관리 및 수거</td> <td>60%</td> <td>60%</td> <td>100%</td> <td>100%</td> <td>60%</td> <td>60%</td> </tr> </tbody> </table>				핵심활동	누적 진도율			연 진도율			목표	진도	진도율	목표	진도	진도율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 홍보	60%	60%	100%	100%	60%	60%	재활용분리수거 관련 시설 관리 및 수거	60%	60%	100%	100%	60%	60%
핵심활동	누적 진도율				연 진도율																									
	목표	진도	진도율	목표	진도	진도율																								
재활용품 분리배출방법 홍보	60%	60%	100%	100%	60%	60%																								
재활용분리수거 관련 시설 관리 및 수거	60%	60%	100%	100%	60%	60%																								

□ 관련 보도자료

홈 > 뉴스 > 뉴스 > 남원 | 사회

메일보내기 | 프린트 | 크기 | 뒤로가기

남원 대산면 광역재활용품 선별시설 본격 가동

2018년 10월 11일(목)

김영수 기자 | news2200@naver.com



▲ 대산면 광역재활용품 선별시설 본격 가동

남원시가 대산면에 설치한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을 지난 8일부터 본격적으로 가동하면서 분리배출 정착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시스템은 수거해온 재활용품을 호퍼에 투입해 컨베이어를 거쳐 1차 선별실에서 스티로폼 유리병 대형 재활용품을 먼저 선별한다. 이어 발리스틱선별기로 비닐을 분리 처리한 뒤, 자력 선별기에서 캔 알루미늄 부탄가스를 선별한다. 최종적으로 광학선별기를 통해 플라스틱을 4가지 종류로 분류, 압축시켜 처리한다.

이처럼 자동화 시스템인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이 효과를 발휘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시민들의 분리배출 습관이 정착되어야 한다.

남원시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건립

- ACI En Tech

1. 수요기관 : 전라북도 남원시
2. 계약명 :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조달요청
발리스틱 선별기
가스캔 절단기 및 페트타공기
3. 완료년월 : 2018. 08.
4. 주요기계 : 근적외선(NIR) 과점유율 기반 자동제어 방식의 재활용 선별장치 1식
발리스틱 선별기 1,
가스캔 절단기 및 페트타공기 각 1
5. 설치완료료 및 운영사진



‘쓰레기는 자원’...재활용품 분리배출 모범도시 남원

경희안 임은연 기자 | 2019. 7. 24. 15:09

URL 복사 | 이웃추가



전북 남원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어려운 외산지역에 거점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 12개소를 설치하고 오는 8월 1일부터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환경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총 사업비 2억원(국비 7.4,82만5,000원, 시비 1억2,517만5,000원)을 들여 비어 있지 않도록 버가림 설비와 품목별로 배출하도록 비치된 분리수거함과 함께 마을 주민들의 분리배출 실천을 돕기 위한 분리배출 안내단 등을 갖는다.

이 사업을 통해 마을 주민이 주체적으로 관리와 운영을 맡아 무분별한 불법투기와 소각을 예방하고 재활용률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남원시는 대산면에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을 지난해 가동하면서 재활용품 분리배출 모범도시로 정착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시설 시스템은 수거해온 재활용품을 호퍼에 투입하면 컨베이어를 거쳐 1차 선별실에서 스티로폼 유리병 대형재활용품을 먼저 선별한다.

UPDATE: 2019-10-23 12:05 (수)

釜北日報

기사 검색

Q Q

유신미래 LINC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스포츠 지역 사람들 오미나인 기획 주말

HOME > 지역 > 남원

남원시, 재활용품 분리배출 유도

신기철 | 2019.07.24 16:42 | 댓글 0



남원시는 재활용품 분리배출이 어려운 외산 지역에 거점시설인 '재활용 동네마당' 12곳을 설치하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재활용 동네마당은 환경부 국비 공모사업으로 2억 원을 들여 마련했다. 비 가림 설비와 품목별 배출이 가능하도록 분리수거함을 설치했다. 주민이 주체적으로 관리와 운영을 맡아 불법투기와 소각을 막고 재활용률 높이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대산면에 광역재활용품 기계화선별 시설을 지난해 가동하며 재활용품 분리배출 모범도시로 거듭나기 위해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

남원시는 불법투기를 막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분리배출 방법 교육과 캠페인 등을 진행하고 있다.

왕길성 남원시 환경과장은 "재활용 동네마당 설치로 쓰레기의 불법 투기와 소각이 줄어들어 환경오염을 감소시키고 재활용률은 높여 자원순환사회를 앞당길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디지털 뉴스콘텐츠 이용규칙

신기철

□ 사례명 :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을 위한 폐기물 운반차량 지능형 검색서비스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영천시 관내 ○ 추진기간 : 2019. 8. ~ 2020. 8. ○ 사 업 비 : 50,000천원 ○ 사업내용 : 폐기물 운반차량 지능형 검색서비스 구축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 영상정보 활용 협의(자원순환과, 회계과) - 2019. 8. ○ 폐기물 운반차량 DB 연계협의(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2019. 8.~ 11. ○ 행정정보 공동이용 신청 - 2019.11.~12. ○ 정보통신보안성 검토요청(도 정보통신과)-2019.12.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폐기물 운반차량 DB 연계에 따른 개인정보 보안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DB연계 ○ 한국환경공단의 시스템 노후로 DB 연계 문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계정보 최소화 : 차량번호, 차종, 용량 - DB 연계주기 1일 1회에서 1주일 1회로 변경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 영상정보와 한국환경공단의 전국 폐기물 운반차량 52,000여대의 DB를 연계하여 폐기물 운반차량의 실시간 정보 및 이동경로 분석으로 폐기물 운반차량의 단속과 불법처리 원인자 규명 등 행정처리 기능이 강화되어 폐기물 발생에 따른 행정력 및 사후처리 소요비용 절감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폐기물 발생에 따른 행정대집행 등 사후처리 소요비용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천시 2019~20년도 행정대집행 65억원 소요 ○ 영상정보 및 폐기물 운반차량 DB 등의 빅데이터 활용으로 구축비용 약 20억여원 예산 절감

폐기물 운반차량 지능형 검색서비스로 세출예산 절감

1. 과제 선정 내용

- 최근 폐기물 불법처리로 국토를 오염시키는 대형 환경사범 사례 적발 급증
- 폐기물의 무허가 및 허가용량 초과 등 불법처리에 따른 사후 처리 비용문제 발생
- 침출수 등 주변지역 오염으로 주민건강 문제 발생 우려
- 폐기물 관리에 수동적인 관리 시스템에서 탈피한 ICT 기반의 지능형 시스템 도입

2. 문제원인 분석

- 현행 폐기물처리 시스템으로는 현장의 규정준수 확인 어려움
 - 폐기물처리업체가 올바른시스템에 자가신고 처리방식으로 적정 처리 여부 확인과 불법처리 예방에 한계
- 관내에 진입하는 전국폐기물운반차량 현황 확인불가
- 불법폐기물 발생 시 처분 상대자인 원인자 파악이 용이하지 않아 처리명령, 대집행 등의 처분절차이행 애로

3. 방안 마련 및 실행

- 리빙랩 방식을 활용한 문제분석 및 해결방안 수립
 - 폐기물 처리업무에 영상정보 활용 방안 마련을 위한 부서간 협업 : 회계과, 자원순환과, 개발업체
 - 전국 폐기물 운반차량 DB 연계 기관간 협업 : 영천시,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 차량번호 실시간 분석기반 구축
 - 기존 운영중인 차량번호인식용 CCTV 86대의 데이터 활용 : 1일 20여만대 분석

- 전국 폐기물 운반차량 DB 연계 구축
 - 한국환경공단에 등록된 전국폐기물 운반차량 52,000여대 DB 연계
- 폐기물 운반차량 지능형 분석시스템 구축
 - CCTV 영상정보와 폐기물 운반차량 DB 연계
 - 관내 운행중인 모든 폐기물 운반차량정보 실시간 분석 및 상황 전파
- 주요기능(서비스)
 -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이력 검색서비스
 - 폐기물 운반차량 이동경로 검색서비스(GIS 기반)
 - 폐기물 운반차량 통행 실시간 알림서비스

4. 장애극복

- 전국폐기물 운반차량 DB 연계에 따른 개인정보 보안문제로 난색
 - 행정정보공동이용센터를 통한 DB연계로 문제 해결
- 한국환경공단의 시스템 노후로 DB 연계 문제
 - 연계정보 최소화 : 차량번호, 차종, 용량
 - DB 연계주기 1일 1회에서 1주일 1회로 변경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폐기물 운반차량의 지능형 분석으로 폐기물 불법처리 근절기반 조성
 - 폐기물 발생시 행정 대집행 등 사후처리 비용 절감
 - ※ 영천시 폐기물 처리비용 '19년 40억원, 20년 25억원
 - 폐기물 운반차량 이동경로 빅데이터 분석으로 원인자 규명 강화
- 영상정보 및 폐기물 운반차량 등의 빅데이터 활용으로 구축비용 약 20억원 예산 절감
 - 기존 운영중인 차량번호인식용 CCTV 영상정보 데이터 활용
 - 한국환경공단의 전국 폐기물운반차량 데이터 활용

[문경시]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출 효율화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지방세)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세외수입)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 례 명	<i>“끝까지 찾아서 반드시 잡는다!” 상수도 누수전담팀 운영으로 예산절감!</i>
기 관 명	경상북도 문경시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 <input type="checkbox"/> 군 <input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문경시 상수도사업소

< 요약 >

- 집중적인 누수탐사로 연간 17.6억 원 예산 절감
- 연간 누수량 약112만 톤 절약(생산원가로 환산 시 17.6억 원)
- 고지대 마을 주민들의 저 수압 문제 해결
- 누수를 막음으로써 고지대 저 수압 문제 해결, 주민만족도 증가

위와 같이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0. 10. .

경상북도지사(문경시장)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끝까지 찾아서 반드시 잡는다!**” 상수도 자체 누수전담팀 운영으로 예산절감!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문경시 일원 ○ 추진기간 : 2020년 1월 ~ 현재 ○ 사업내용 : 자체 누수전담팀 운영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1. 1. : 자체 누수탐사 T/F팀 결성 ○ '20. 3. 1. : 기간제 근로자 2명 채용 ○ 현재까지 : 읍면지역 누수탐사 및 긴급수리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관망도(GIS)와 실제 현장의 관망 불일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사업소 근무경력 20년 이상인 직원을 팀장으로 임명, 오랜 경험과 노하우로 누수탐사 및 수리 ○ 누수탐사 자체 인력 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수도 경험이 풍부한 기간제 근로자 2명 채용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수탐사 및 긴급수리로 단수 사고 미연 방지 ○ 증가하는 배수량 절감으로 정수장 동력 소모 절감 ○ 고지대 저 수압 문제 해결로 주민만족도 증가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누수방지로 1,759백만 원 예산 절감(생산원가로 환산)

“끝까지 찾아서 반드시 잡는다!”

- 상수도 자체 누수전담팀 운영으로 예산절감! -

1. 과제 선정 내용

○ 지방상수도 누수탐사 선정

문경시 지방상수도의 유수율¹⁾은 2019년 기준 52%로 전국 평균 80%대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즉 수돗물 생산량의 48%가 누수로 인해 각 가정까지 도달하지 못하는 것이다. 누수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가장 큰 문제로 관로의 노후화를 들 수 있다. 문경시의 경우 경년관²⁾의 비율이 2019년 기준 61%로 전체적으로 노후관의 비중이 크고 이로 인한 노후관의 파손이 누수의 가장 큰 원인으로 볼 수 있다. 때문에 수돗물 실공급량 대비 생산량이 많아 장기적으로 사업소 적자 운영 및 물 부족 현상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문경시 상수도사업소는 올해 초 회의를 열어 누수에 관한 심도 있는 회의를 하였고, 그 결과 누수탐사 용역을 계약하는 대신 자체 누수전담 T/F팀을 구성 및 운영을 결정하였다.

자체 누수전담팀을 구성함에 있어 인력부족을 해결하기 위해 상수도 경험이 풍부한 기간제 근로자 2명을 채용하였다. 또한 상수도 관망도와 현장이 상이한 경우가 많음을 감안, 상수도사업소 근무경력 20년 이상인 직원을 팀장으로 임명하여 누수탐사를 하는 동시에, 팀장의 오랜 경험과 노하우를 팀원들이 배움으로써 누수 전담 팀을 일시적 운영이 아닌 지속적인 운영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였다.

이렇게 구성된 누수전담팀은 지역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탐사를 실시하였다.

1) 유수수량을 배수량으로 나눈 것을 백분율(%)로 나타낸 것으로, 정수장에서 생산하여 공급된 총 송수량 중에서 요금수입으로 받아들여진 수량의 비율을 말한다.

2) 포설 후 상당 연수 경과한 관로이다. 일반적으로 사용연수의 경과와 함께 노후해 누수사고 발생의 위험도가 높게 되는 한편, 적수발생이나 출수불량의 원인이 된다.

1차 누수탐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1차 누수탐사 결과

탐사구역	탐사전 (t)	탐사후 (t)	일누수량(t)	연누수량(t)	연간 예산절감액 (천원)	비고
호계 건탄리	585	125	460	167,900	263,603	
호계 안태봉	641	591	50	18,250	28,652	
호계 선암리	57	17	40	14,600	22,922	
합 계	1,283	733	550	200,750	315,177	

2차 누수탐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2차 누수탐사 결과

탐사구역	탐사전 (t)	탐사후 (t)	일누수량(t)	연누수량(t)	연간 예산절감액 (천원)	비고
가은읍	2,427	1,640	787	287,255	450,990	
농암면	849	595	254	92,710	145,554	
문경읍(고요)	559	296	263	95,995	150,712	
불정동	178	75	103	37,595	59,024	
합 계	4,013	2,606	1,407	513,555	806,000	

3차 누수탐사 결과는 아래 표와 같다.

□ 3차 누수탐사 결과

탐사구역	탐사전 (t)	탐사후 (t)	일누수량(t)	연누수량(t)	연간 예산절감액 (천원)	비고
마성면(야간)	26,310	20,905	772	281,780	442,394	
동로면	87	81	6	2,190	3,438	
가은공단(야간)	14	0	336	122,640	192,544	
합 계	26,411	20,986	1,114	406,610	638,376	

□ 누수탐사 언론보도 자료

<p>문경시, 누수탐사로 예산절감 효과...일누수량 550t 해결</p>  <p>문경시는 올해 1월부터 자체 누수탐사팀을 구성해 체계적인 배수구역의 누수탐사를 실시했다.</p> <p>일반의 경우를 3명과 기간제 근무자 2명으로 구성된 누수탐사팀은 오천 강철과 노적울을 바탕으로 3개 일간 조개만 내 유수율이 낮은 인화리와 신왕리 일대를 집중 탐사 및 수리했고, 그 결과 일누수량 550t 절감 효과를 이루었다.</p> <p>일누수량 550t을 연간 누수량으로 계산하면 20만 4천여 리터 물을 생산원가로 환산하면 3억 원이다.</p> <p>즉 이번 누수탐사로 연간 3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셈이다.</p> <p>또한 누수를 막음에 따라 자연스레 고지대 저수압 문제가 해결되어 그동안 저수압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주민들의 불편이 해결된 것이다.</p> <p>문경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효율적인 누수탐사를 위해 누수탐사팀 영육상과 전문성을 더욱 향상시켜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보다 풍부하게 공급하고, 지속적인 누수탐사로 예산 절감 및 고지대 수압안정을 기대하겠다"고 말했다.</p>	<p>문경시, 지방상수도 누수탐사로 '11억원 예산절감'</p>  <p>문경시 지방상수도 누수탐사로 11억원 예산절감(대구·문경시)</p> <p>[문경=에너지경제신문 정재우 기자] 문경시 상수도사업소는 가운뎃농장면 일대, 문경읍 고요리 일원과 안동정 배수구역에 누수탐사 및 수리를 실시해 8억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고 밝혔다.</p> <p>시 상수도사업소는 지난 3월 보개면 누수탐사 2만 2천을 완료했고 가운뎃농장면 일대, 문경읍 고요리 일원과 안동정읍 정동 누수탐사 실시한 결과 16개소의 누수관로 긴급복구를 완료해 연간 51만 원의 지방상수도를 절약했으며, 아말 1400톤의 수돗물을 절약해 생산원가 기준 총 연간 11억 이상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p> <p>문경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효율적인 누수탐사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보다 풍부하게 공급하고, 지속적인 누수탐사로 예산절감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p>	<p>문경시, 지방상수도 야간 누수탐사로 4억 예산절감</p>  <p>문경시 상수도사업소는 지난 7월 가운뎃농리, 마성면 남호리 주민들이 상수도를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인 새벽에 정밀 누수탐사를 실시한 결과, 27개소의 누수관로를 확인하고 긴급복구를 완료해 일 726톤의 수돗물 누수를 방지했으며 연간 26만 원의 지방상수도를 절약해 생산원가 기준 총 연간 4억 원의 예산절감 효과를 거뒀다.</p> <p>문경시 상수도사업소 관계자는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고 효율적인 누수탐사를 위해 수돗물을 사용하지 않는 시간대인 새벽시간에 지속적인 누수탐사를 실시해 보다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풍부하게 공급해 예산절감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p>
<p>2020.03.20. 언론보도</p>	<p>2020.04.30. 언론보도</p>	<p>2020.08.24. 언론보도</p>

상기 결과를 요약하면 현재까지 누수탐사를 통해 연간 누수량 3,071톤을 방지하였으며, 이를 생산원가로 환산하면 1,759백만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또한 배수량이 감소함에 따라 정수장의 동력 소모도 절감되었다.

뿐만 아니라, 상수도사업소의 최우선 목표인 ‘시민들에게 원활한 수돗물 공급’에 있어 누수로 인한 단수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 누수를 막음으로써 자연스레 고지대 저수압 문제도 해결되어 시민들의 만족도가 높아졌다.

위의 성과는 일시적인 긴급수리로 인한 성과로써 이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노후관로의 정비가 필요하다. 이에 누수전담팀은 누수탐사결과를 토대로 노후 관 정비 대상지를 선정하여 해당 팀에게 인계하고, 관로 확인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하는 등 해당 팀과의 협업을 통해 장기적인 누수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노후관로 인계자료

읍면 배수구역 및 급수구역 노후관로 조사표

구분	구역	조사번호	시점주소	종점주소	설치연도	관종	구경(φ)	연장(m)	포장상태(m)	비고
1	가운읍	1-1	가운 143-1	왕산리 9-1	PVC	50	234	아스콘		
		1-2	왕산리 4	왕산리 11	PVC	20	80	아스콘		
		1-3	왕산리 12	왕산리 13-4	PVC	20	80	아스콘		
		1-4	왕산리 7	왕산리 20-5	PVC	25	112	아스콘		
		1-5	왕산리 28-5	왕산리 35-3	PVC	25	105	아스콘		
2	가운읍	2-1	왕산리 19-1	왕산리 15-4	PVC	25	38	아스콘		
		2-2	왕산리 20-2	왕산리 15-4	PVC	25	46	아스콘		
		2-3	왕산리 20-2	왕산리 15-4	PVC	25	46	아스콘		
		2-4	왕산리 20-2	왕산리 15-4	PVC	25	46	아스콘		
		2-5	왕산리 20-2	왕산리 15-4	PVC	25	46	아스콘		
3	가운읍	3-1	왕산리 20-2	왕산리 15-4	PVC	25	46	아스콘		
		3-2	왕산리 20-2	왕산리 15-4	PVC	25	46	아스콘		
		3-3	왕산리 20-2	왕산리 15-4	PVC	25	46	아스콘		
		3-4	왕산리 20-2	왕산리 15-4	PVC	25	46	아스콘		
		3-5	왕산리 20-2	왕산리 15-4	PVC	25	46	아스콘		
4	가운읍	4-1	왕산리 20-2	왕산리 15-4	PVC	25	46	아스콘		
		4-2	왕산리 20-2	왕산리 15-4	PVC	25	46	아스콘		
		4-3	왕산리 20-2	왕산리 15-4	PVC	25	46	아스콘		
		4-4	왕산리 20-2	왕산리 15-4	PVC	25	46	아스콘		
		4-5	왕산리 20-2	왕산리 15-4	PVC	25	46	아스콘		
5	가운읍	5-1	왕산리 20-2	왕산리 15-4	PVC	25	46	아스콘		
		5-2	왕산리 20-2	왕산리 15-4	PVC	25	46	아스콘		
		5-3	왕산리 20-2	왕산리 15-4	PVC	25	46	아스콘		
		5-4	왕산리 20-2	왕산리 15-4	PVC	25	46	아스콘		
		5-5	왕산리 20-2	왕산리 15-4	PVC	25	46	아스콘		
6	농암면	6-1	농암리 100-1	농암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6-2	농암리 100-1	농암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6-3	농암리 100-1	농암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6-4	농암리 100-1	농암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6-5	농암리 100-1	농암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7	농암면	7-1	농암리 100-1	농암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7-2	농암리 100-1	농암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7-3	농암리 100-1	농암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7-4	농암리 100-1	농암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7-5	농암리 100-1	농암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8	문경읍	8-1	문경리 100-1	문경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8-2	문경리 100-1	문경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8-3	문경리 100-1	문경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8-4	문경리 100-1	문경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8-5	문경리 100-1	문경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9	문경읍	9-1	문경리 100-1	문경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9-2	문경리 100-1	문경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9-3	문경리 100-1	문경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9-4	문경리 100-1	문경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9-5	문경리 100-1	문경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10	동로면	10-1	동로리 100-1	동로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10-2	동로리 100-1	동로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10-3	동로리 100-1	동로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10-4	동로리 100-1	동로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10-5	동로리 100-1	동로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11	동로면	11-1	동로리 100-1	동로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11-2	동로리 100-1	동로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11-3	동로리 100-1	동로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11-4	동로리 100-1	동로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11-5	동로리 100-1	동로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12	동로면	12-1	동로리 100-1	동로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12-2	동로리 100-1	동로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12-3	동로리 100-1	동로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12-4	동로리 100-1	동로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12-5	동로리 100-1	동로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13	마성면	13-1	마성리 100-1	마성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13-2	마성리 100-1	마성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13-3	마성리 100-1	마성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13-4	마성리 100-1	마성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13-5	마성리 100-1	마성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14	마성면	14-1	마성리 100-1	마성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14-2	마성리 100-1	마성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14-3	마성리 100-1	마성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14-4	마성리 100-1	마성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14-5	마성리 100-1	마성리 100-1	PVC	100	384 / 43	아스콘(노후노출 50%)		

- 가운 5k구위소 ②
- 가운 관동새터길 ③
- 가운 상류리 ④
- 농암리 ⑤
- 문경읍 ⑥
- 동로면 ⑦
- 문경읍 ⑧
- 문경읍 ⑨
- 문경읍 ⑩
- 문경읍 ⑪
- 문경읍 ⑫
- 문경읍 ⑬
- 문경읍 ⑭
- 문경읍 ⑮
- 문경읍 ⑯
- 문경읍 ⑰
- 문경읍 ⑱
- 문경읍 ⑲
- 문경읍 ⑳
- 문경읍 ㉑
- 문경읍 ㉒
- 문경읍 ㉓
- 문경읍 ㉔
- 문경읍 ㉕
- 문경읍 ㉖
- 문경읍 ㉗
- 문경읍 ㉘
- 문경읍 ㉙
- 문경읍 ㉚
- 문경읍 ㉛
- 문경읍 ㉜
- 문경읍 ㉝
- 문경읍 ㉞
- 문경읍 ㉟
- 문경읍 ㊱
- 문경읍 ㊲
- 문경읍 ㊳
- 문경읍 ㊴
- 문경읍 ㊵
- 문경읍 ㊶
- 문경읍 ㊷
- 문경읍 ㊸
- 문경읍 ㊹
- 문경읍 ㊺
- 문경읍 ㊻
- 문경읍 ㊼
- 문경읍 ㊽
- 문경읍 ㊾
- 문경읍 ㊿

노후관(가운읍-양산계림)



- 가운 5k구위소 ②
- 가운 관동새터길 ③
- 가운 상류리 ④
- 농암리 ⑤
- 문경읍 ⑥
- 동로면 ⑦
- 문경읍 ⑧
- 문경읍 ⑨
- 문경읍 ⑩
- 문경읍 ⑪
- 문경읍 ⑫
- 문경읍 ⑬
- 문경읍 ⑭
- 문경읍 ⑮
- 문경읍 ⑯
- 문경읍 ⑰
- 문경읍 ⑱
- 문경읍 ⑲
- 문경읍 ⑳
- 문경읍 ㉑
- 문경읍 ㉒
- 문경읍 ㉓
- 문경읍 ㉔
- 문경읍 ㉕
- 문경읍 ㉖
- 문경읍 ㉗
- 문경읍 ㉘
- 문경읍 ㉙
- 문경읍 ㉚
- 문경읍 ㉛
- 문경읍 ㉜
- 문경읍 ㉝
- 문경읍 ㉞
- 문경읍 ㉟
- 문경읍 ㊱
- 문경읍 ㊲
- 문경읍 ㊳
- 문경읍 ㊴
- 문경읍 ㊵
- 문경읍 ㊶
- 문경읍 ㊷
- 문경읍 ㊸
- 문경읍 ㊹
- 문경읍 ㊺
- 문경읍 ㊻
- 문경읍 ㊼
- 문경읍 ㊽
- 문경읍 ㊾
- 문경읍 ㊿

□ 사례명 : 가축분뇨 처리공법 개발 적용으로 예산절감 기여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김해시 안하로 117 (김해시가축분뇨처리시설) ○ 추진기간 : 2019 ~ 2022 ○ 사 업 비 : 45백만원 (공정개선 사업비) ○ 사업내용 : 가축분뇨 처리공법 개발 적용 총 3건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심탈수기 탈리여액 재이용방법 개선 계획수립 (19. 4) - 후속 약품공급 펌프 등 공정개선 실시 (19. 4 ~ 12월) ○ 미생물 자산화위한 외부탄소원 투입방법개선계획 (20. 6) ○ 순산소 약취 저감시스템 Pilot-Test 계획수립 (20. 6) - 전파를 위한 농가 적용 실증 테스트 진행 (20. 9)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분뇨시스템의 공정 재분석을 통한 처리용량 증설과 미생물 자산화를 공법에 전국 최초 적용하여 예산절감 기여 ○ 처리물량 증대에 따른 안정적 방류수질 확보를 위해 최종 방류전 PAC 투입시설 설치하여 40% 수질개선 효과 확보 ○ 물량 증대에 따른 고농도 약취발산 저류조에 순산소 약취 저감시설 설치 60~80% 약취저감 효과 발생 ○ 고질적 양돈농가 약취 저감을 위해 약취저감 시스템을 접목 호기상태 유지로 H₂S, NH₃ 발생 근원 억제 (역발상)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축분뇨의 처리효율 증대 (Q=200 →400톤) 및 수질안정화 - 김해시 증설 공사기간 중 1일 350톤 발생에 따른 시 분뇨처리 대란 사전 차단 ○ 공정 안정화에 따른 전 시설별 예산절감 효과 발생 (탈수슬러지 폐기물, 응집약품, 외부탄소원, 전기E) ○ 신기술 개발로 김해시 양돈 약취문제 해결 실마리 제공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시설용량(200톤/일)을 초과하는 일평균 352.2톤의 가축분뇨의 안정적 처리가능 ○ 약취저감 기술도입으로 환경민원 해소 및 양돈조합에 약취저감 기술이전 (타 지자체 사례전파) ○ 방류수 수질개선 (법정기준치 보다 월등히 양호) ○ 획기적인 예산절감 (총예산절감 507백만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류수 공정개선으로 연간 100,072천원 - 미생물 자산화를 통한 외부탄소원 절감 등 공정개선 407,460천원

가축분뇨 처리공법 개발 적용으로 예산절감 기여

1. 과제 선정 내용

□ 20년 증설공사 진행시 가축분뇨 처리 대란 발생 우려

- 김해시 가축사육두수(돼지 178천두) 증가 및 전국 최초 준공된 공공 처리시설의 노후화에 따라(93년 준공, Q=130톤) 개선 공사 진행기간 중 지자체의 분뇨처리 문제점 대두
- Covid-19 영향으로 돼지 수입차단 및 외식 문화 변화에 따라 사육 두수는 30% 증가되었으나 민간 액비 생산업체의 살포지 부족현상과 시민의 환경 인식도 증가로 해마다 액비생산 살포 애로(고질민원)

□ 전문 파트 T/F상설화 및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아이디어 창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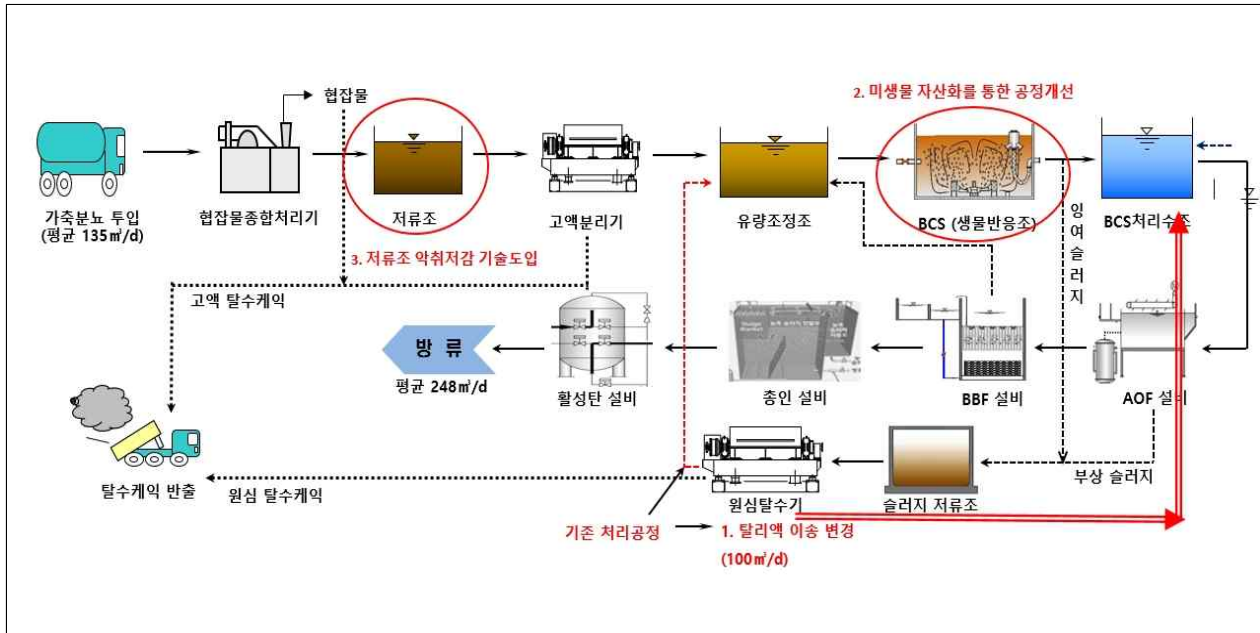
- 김해시 수질환경과 협의후 공사의 기계, 전기, 환경 3개 파트 직원 8명으로 상설T/F팀을 구성하여 2019년 4월부터 처리용량 증대를 위한 공정개선 회의를 실시하였으며, 파트별 다양한 아이디어를 지속적 피드백을 거쳐 직렬별 대립 관계를 넘어 공동 해결 목표를 위한 팀-웍(Team-work) 형성으로 일하는 방식 개선의 새로운 모델을 도입·운영 하였으며
- 가축분뇨처리는 표준화된 공법특히 적용으로 용량증설이 상당히 어려우나, 회의를 거쳐 최종 2개 분야에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파트별 용량 증설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내 업체와 성과공유 2건 업무협약 3건 체결 등 총 15개 분야 공정개선을 이루어 現. 350톤/일 이상 처리할 수 있는 시스템 확보와 예산절감에 기여할 수 있었다.

□ 새로운 근무방식 정착으로 예산절감 및 지역사회 기여방안 도출

- 민관 협업을 통한 새로운 근무방식으로 2019년 처리용량(Q=200톤)을 350톤 이상 처리 가능하게 하였으며, 추가 연구를 거쳐 2022년 6월부터 미생물의 자산화 특징을 적용하여 획기적 처리물량 증대의 성과를 이루었다

- 처리물량 증가에 따른 악취방지시설(Q=200톤) 효율 저하 현상을 개선하기 위하여 역발상을 통한 고농도 순산소 악취 저감 시스템을 새로 개발(80% 추가제거효과) 하여 보강하였으며 현재 양돈농가 현장 검증 마무리후 양돈협회를 통한 기술 이전 및 확대를 통해 기술 공유 예정임.

《가축분뇨 처리공정 및 공정개선도》



2. 문제원인 분석

2-1 문제인식

- 환경기초시설은 통상 20년 후의 인구수 등 정책을 반영하여 설계를 하며 설계 단계부터 설계사 및 전문기관의 정밀 검토를 거쳐 준공됨에 따라 운영자는 공정개선 및 용량 증설에 대해서는 고려하지 않음
- 다만 우리시의 경우 가축사육두수가 점차 증가(관내 돼지사육두수 18만 마리) 하고, 기존 처리시설(93년 준공, Q=130톤)의 노후화로 증설이 불가피한 상황으로, 올 연말 증설공사 진행시 기존 시설 (Q=130톤)폐쇄에 따라, 잔여 200톤 처리시설로서는 400톤 정도 발생으로 인한 엄청난 가축분뇨 처리 민원이 발생할 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에 직면

- 이에 단기간에 시설증설이 불가능한 현실적 한계에 대응하기 위해 19년부터 장기 연구 끝에 처리용량 증설 공정개선 3건을 시행하여 목표를 달성함에 따라, 전국 95개 사업장과 매년 2~3개 신설되고 있는 지자체 신설 가축분뇨처리시설에 노하우를 공유한다면 시설 설치비 및 대행사업 운영비 절감에 획기적 기여할 수 있는 사례로 전국 전파 하고자 함 (가축분뇨처리시설 시설비 : 1톤당 1.5~2억)

2-2 개선필요성 및 대상공정

- 가축분뇨처리 특징은 고농도 폐수 처리를 위해 생물학적 처리 공법이 적용되어야 하고, 고비용 처리 비용이 발생한다는 문제점으로 과다 예산 집행 되는 사례가 발생됨
- 이에 공정개선 아이디어 회의로 도출된 3건의 개선사례는 아주 간단한 이론을 생물학적 처리에 적용하거나, 관련 직원의 오랜 실무 노하우를 적절히 반영하여, 예산절감 실적이 발생하였으며 사례별 원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첫째, 가축분뇨 단계별 처리공정 수질 현황과 원심탈수기 탈리여액 등 재회수 되는 공정수 수질 특성은 매우 중요하며 축적된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공정수 투입지점 변경으로 처리용량 증대효과를 거두었으며,
 - 둘째, 생물학적 질소 제거는 적정 C/N비 (탄소/질소비)가 3~4 : 1 확보되어야 하며 안정적 수질확보를 위해 통상 메탄올을 보충하고 있어 고비용 예산집행이 불가피 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해, 혐기 조건에서 미생물 자산화되는 특징을 이용하여 미생물 분해시 발생 탄소원을 공정 투입하여 공정개선 하였으며
 - 셋째, 음식물 및 가축분뇨는 여름철 혐기 발효시 황화수소(H_2S) 및 암모니아(NH_3) 가스가 다량 발생하여 악취를 유발함에 따라, 이를 해소하기 위해 공공폐수처리장 혐기성 분뇨 저류조를 고농도 순산소 용해 장치를 통해 다량의 산소를 공급하여 근본적 발효에 의한 악취 발산물질을 억제할 수 있다고 직원들의 오랜 실무 경험으로 판단하였고 실제 효과가 검증되어 공정개선에 적용한 사례임

3. 방안 마련 및 실행 (구체적 적용사례)

3-1 원심탈수기 처리효율 분석을 통한 반류수 공정개선

- 관내 탈수기 업체와 기술 협약을 통해 탈수기 성능 개선과 탈수 효율을 향상시켜 탈리 여액 농도가 상당히 개선됨에 따라, 기존 저류조에 유입하던 탈리여액을, 처리용량을 결정하는 생물반응조를 우회하여 후단 오존 고도시설에 투입하여 결론적으로 탈리여액 발생량 100톤/일 만큼 시설용량 증설 효과가 발생
- 불필요한 공정 반류수 조정에 따라 약품 및 전기에너지 사용량이 크게 줄었으며 슬러지발생량 또한 공정운영 변경에 따라 10%의 예산절감 효과가 발생하였다.
- 시설용량 증대효과 (100톤)에 따라 후단 공정개선 사례 (총 15건) 완료
 1. 생물반응조 냉각설비 설치 (김해시 요청 완료)
 2. AOF(고도산화부상설비) 유입 정량펌프 개선 (처리물량 증가)
 3. 원심탈수기 탈리여액 이송 배관 공정 개선 (처리물량 증가)
 4. 처리물량 증가 따른 방류수 배출펌프 교체(단위 방류량 증가)
 5. 생물막여과시설 (BBF) 유입배관 개선공사 (시간당 처리량 증가)
 6. AOF(오존부상분리) 정량펌프 용량 증가 외 1건
 7. 악취방지시설 공법 변경 효율 향상 (생물막 → 3단 약액세정)
 8. 신규 악취저감제(생초BM) 발굴로 슬러지발생 감량 (성과공유)
 9. 공정제어용 메인 PLC 등 이중화 선로 구축
 10. 생물반응조 외부탄소원 신규 발굴 접목(년 110백만원 절감)
 11. BBF 역세수 배출라인 공정개선 외 2건 (유량조정조 → 처리수조)
 - 생물막여과 역세척수(22톤), 입상활성탄 역세척수(7톤) 추가 개선
 12. 수중포기기 기존 4대→6대 가동 (수처리 시간 단축)

3-2 미생물 자산화를 통한 외부탄소원 절감 등 공정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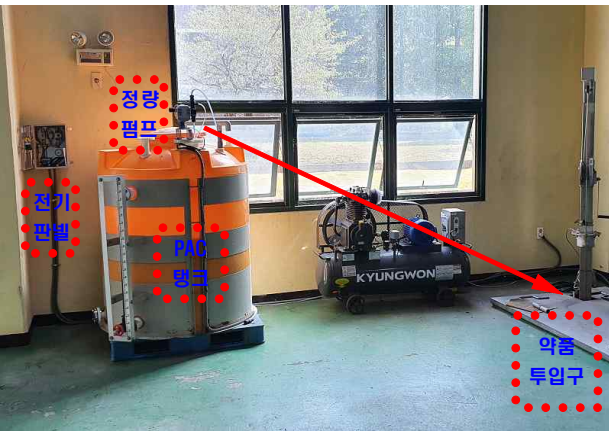
- 공정개선 원리는 생물반응조 질소 탈질시 사용되던 외부탄소원 사용량을 줄이고 활성미생물(잉여슬러지)의 자산화를 통한 내생탈질을 유도함으로써 슬러지 발생량 격감 및 외부탄소원 투입량 절감을 통해 예산절감 유도
- 추진방법은 회분식 생물반응조 (혐기-호기 4회 반복)시 1, 2회차 탄소원을 투입않고 미생물 자산화를 유도하고 3, 4회차는 안정적 탈질 및 침전 위해 메탄올 일부 투입 (40% 절감효과)
- 또한 대행사업 예산의 7.5% (년 1.8억) 해당하는 외부탄소원 예산 절감을 위해 관내 업체와 성과공유를 통한 신규 외부탄소원을 개발 적용함으로써 20년 7월부터 공정개선을 통해 연간 407,460 천원 예산절감이 예상되며, 21년도 획기적 예산절감 기대됨.

3-3 순산소 악취저감시스템 개발 및 농가 적용(기술공유)

- 가축분뇨 처리물량(Q=200→400톤) 증가에 따라 악취방지시설 공법을 생물막 탈취시설에서 제거 효율이 높은 3단 약액 세정시설로 변경 하였으며, 고농도 악취 발생지점인 저류조의 악취농도 개선을 위해 연간 80백만의 락토-바실러스균에 의한 BM 미생물을 투입 공정개선을 하였으며
- 이와 별도로 고농도로 유입되는 폐수의 악취 농도 저감을 위해 혐기상태에서 악취물질인 황화수소(H_2S) 및 암모니아(NH_3) 가스가 발생한다는데 착안하여 역발상으로 고농도 순산소 발생장치와 가스 용해장치를 개발하여 용존산소(DO)가 10ppm 이상 유지시키는 발효를 억제하는 공정개선을 하여 가축분뇨 물량증가에 따른 악취 문제를 해결 하는데 큰 기여를 하였음.

4. 장애극복

- 현재 김해시의 가축분뇨처리 상황은 한계에 다다른 상황으로, 현재 공공처리장은 적정처리 용량의 2배 가까운 양을 처리하고 있어, 시민 누구나 처리시간 단축에 따른 방류수질 악화 및 악취 기준 초과 되는 문제를 예상 할 수 있는 상황임
- 이에, 가축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가 시급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주민은 지속적인 공사반대 집단 민원을 제기하였고, 20년 7월 공사 반대추진위 국민의당 장기표 위원장 외 15명이 불시에 사업장 방문하였으나, 악취 농도 및 방류수질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정도로 처리용량의 2배 가까운 물량을 완벽하게 처리함으로써 주민과의 갈등을 원만히 극복한 사례가 있음.
- 또한, (사)김해한돈협회와 업무 협약을 통해, 가축분뇨 반입 농가 수질을 설계기준 이하로 항상 유입토록 계도를 하였으며, 시설용량 (Q=200톤)으로 평균 일 352.2톤 처리할 수 있었던 것도 상생협약을 기반으로한 농가 반입수질 안정적 협조가 큰 역할을 하였음
- 앞서처럼 사업장 자체 공정개선을 통해 순산소 악취저감시설 도입으로 안정적 악취배출기준 준수 및 최종방류수의 법적 수질확보를 위해 최종 방류 전 오염물질제거 PAC 투입 공정개선을 신규로 도입하여, 완벽한 방류수 수질을 준수할 수 있었음.



PAC 농도별	BBF처리효율		총인 처리효율	
	COD	PO4-P	COD	PO4-P
5ppm	36%	-	11%	-
10ppm	25%	83%	16%	
20ppm	40%	91%	21%	
50ppm	27%	74%	고농도 투입 시 응집제 분산으로 의미 없음.	
200ppm	22%	91%		
500ppm	8%	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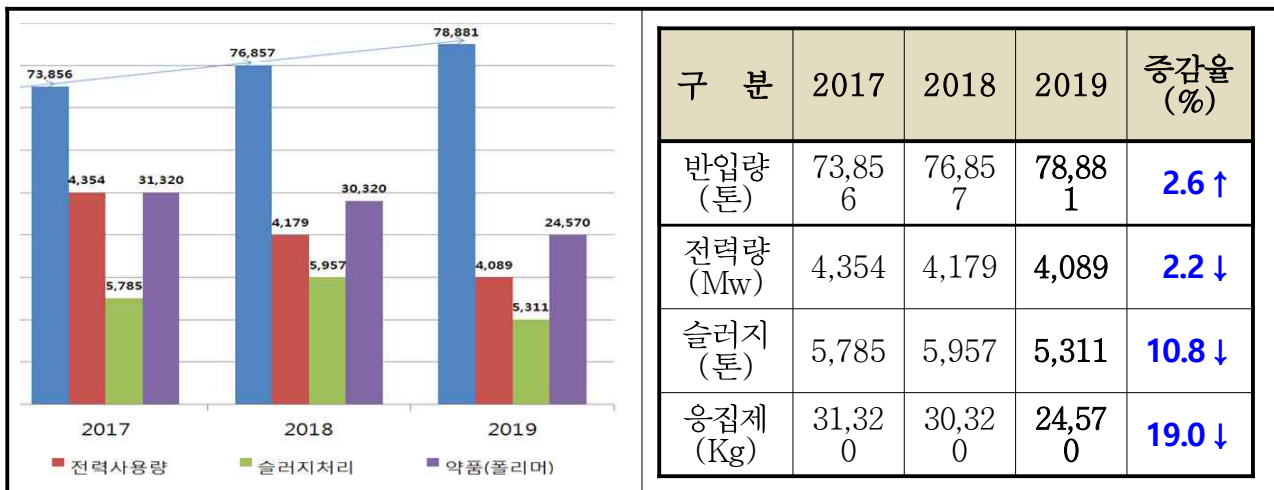
수질개선을 위한 약품투입시설 설치

수질검사 개선자료

5. 성과 (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5-1 증설공사 기간중 용량 초과물량 안정적 처리

- 시설용량은 Q=200톤/일 임에도 일 평균 352.2톤을 안정적 처리할 수 있었던 것은 관내 탈수기 업체와 기술협약을 통한 탈수기 효율 향상으로 공정수가 깨끗해 짐에 따라 유입 저류조에서 처리 용량 결정하는 생물반응조를 우회하여 후단 오존 시설에 변경 투입함에 따라 탈리액 발생량 100톤 만큼 시설용량 증설 효과
- 또한 불필요한 공정수 발생을 최대한 억제시키고 입상활성탄 등 공정수 수질특성을 고려하여 투입방법을 변경함에 따라 결론적 처리용량 증대를 할 수 있었음.



- 예산절감효과 : 100,007 천원 (시설비 톤당 1.5~2억/톤 절감효과)

5-2 미생물 자산화를 통한 외부탄소원 사용절감 ⇒ 획기적 예산절감

- 생물반응조 질소 탈질시 반드시 사용되던 외부탄소원을 사용량은 줄이고 활성미생물의 자산화 특징을 이용한 내생탈질을 유도함으로써 슬러지 발생량 격감 (84톤/월) 시켰으며, 추진 원리는 회분식 생물반응조 (혐기-호기 4회 반복)시 1, 2회차는 외부탄소원 투입하지 않고 미생물 분해후 발생된 탄소부산물을 이용케하고 3, 4회차 운영시 안정적 공정 운영을 위해 메탄올 일부 투입 (40% 절감효과)

◇ 20년 공정개선 효과

(단위:톤, 기준 6월)


일별	원 수 반입량	외부탄소원 (Kg)	슬러지발생량		
			고액슬러지	잉여슬러지	총 량
6	8,037	50,200	333.38	301.70	635.08
7	8,912	34,500	276.12	232.06	508.18
8	8,709	29,400	201.57	209.36	410.93
9	8,800	30,100	178.0	217.4	395.4
6/9월 절감율 (%)		20,100	155.4	84.3	239.7
		40.03 ↓	46.6 ↓	27.9 ↓	37.7 ↓
절감액 (천원)		5,567	16,783	9,104	25,888

※ 20년 단가계약 : 외부탄소원: 276.98원/Kg, 탈수케익 : 108천원/톤 적용

- 공정개선에 따른 시설 투자비는 없으며, 기술접목에 따른 슬러지 탈수케익 감량, 외부탄소원 투입 절감, 슬러지 탈수기 가동 시간 (10시간→5시간)에 따른 전기E 및 약품 응집제 절감 등 공정 전반에 선순환 예산절감 효과 발생

5-3 악취저감을 통한 민원해소 및 농가 기술이전

- 가축분뇨 처리물량(Q=200→400톤) 증가에 따라 악취방지시설 공법을 생물막 탈취시설에서 제거 효율이 높은 3단 약액 세정시설로 변경하였으며, 이와 별도로 고농도 악취 발생지점인 저류조의 악취농도 개선을 위해 80백만원의 락토-바실러스균에 의한 BM 미생물을 상반기에 투입 공정개선을 시행
- 또한 고농도 유입되는 폐수 악취 농도 저감을 위해 혐기상태에서 악취 물질인 황화수소(H₂S) 및 암모니아(NH₃) 가스 발생한다는데 착안하여 역발상으로 고농도 순산소 발생장치와 폐수 용해장치를 개발하여 용존산소(DO)가 10ppm 이상 호기 상태를 유지시키는 공정 개선을 악취농도 60~80% 저감 등 발효를 억제하는 효과를 도출하였음.

	구 분		암모니아 (ppm)	황화수소 (ppm)
	설치전	저류조 A	11.0	42.1
	설치후	저류조 A	2.1	17.0
		저류조 B (설치)	2.2	20.7
제거율 (%)		80 ↑	50~60 ↑	
순산소 발생장치 및 용해장치 설치			악취 제거 효율	

○ 현재 악취 저감을 위해 가축분뇨 처리시설에 적용한 시설을 도내 악취전문 진단기관(낙동강환경청 제1호)인 동아엔지니어링(주)와 기술 협약을 통해 환경이 비슷한 양돈농가 3개소에 적용하여 효과를 검증 중에 있으며, 지적재산권 출원 등록 및 김해시 양돈협회에 기술 이전 및 공유하여 농가의 고질 환경민원 해결도 기대됨

5-4 방류수 수질 개선

○ 20년 경상남도 점검결과 (1~3분기 평균, ppm)

항목별	BOD	COD	SS	T-N	T-P
수질기준	30	50	30	60	8
점검수질	0.6	5.6	0.6	11.2	0.114

- 안정적 공정개선으로 법정 수질기준 비해 매우 양호한 수준임.
- 악취배출시설 자가 측정결과 적합 (1~3분기)

5-5 예산절감

○ 김해시 가축분뇨처리시설 증설공사로 인한 가축분뇨 처리대란 해결은 현업부서 직원들의 브레인스토밍을 통한 획기적 아이디어를 지속적인 피드-백 과정을 거쳐 목표 이상의 결과물을 도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며, 무엇보다 수동적인 일하는 방식에서 능동적인 사고 전환을

통한 유기적 단결(팀-워 형성) 으로 일하는 방식을 새롭게 개선한 것이 큰 역할을 함.

- 처리용량 증대를 위해서는 크게 4분류 이상의 아이디어와 총 20여 가지의 공정 개선을 통한 결과물로서 20년 9월부터 증설 공사 진행 시에도 안정적으로 가축분뇨 처리는 물론 공정 개선에 따른 예산절감액은 연간 총 507,530 천원을 절감할 수 있었으며,
 - 원심탈수기 처리효율 분석을 통한 반류수 공정개선으로 연간 100,072천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원심탈수기 처리효율 분석을 통한 반류수 공정개선》

구분	2016	2017	2018	2019	증감(%)	예 산 절감액(천 원)
반입물량(톤)	69,730	73,856	76,857	78,881	2.6% ↑	-
전력량(MW)	4,458	4,354	4,179	4,089	2.2% ↓	8,550
슬러지(톤)	5,283	5,785	5,957	5,311	10.8% ↓	66,538
응집제(Kg)	37,660	31,320	30,320	24,570	19.0% ↓	24,984

※ 공정개선 효과 발생물량 2.6% , 운영인력(15명→14명) △1명, 환경부 가축분뇨 1톤당 시설설치 예산 1.5 ~ 2억원은 미반영

- 20. 7~8월 시험가동을 거쳐 9월부터 본격 가동되고 있는 미생물 자산화를 통한 외부탄소원 절감 등 공정개선을 통하여 개선전인 6월 대비연간 407,460천원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됨.

《미생물 자산화를 통한 외부탄소원 절감 등 공정개선》

월별	원 수 반입량	외부탄소원 (Kg)	슬러지발생량		
			고액슬러지	잉여슬러지	총 량
6	8,037	50,200	333.38	301.70	635.08
7	8,912	34,500	276.12	232.06	508.18
8	8,709	29,400	201.57	209.36	410.93
9	8,800	30,100	178.0	217.4	395.4
절감율 (%)		20,100	155.4	84.3	239.7
		40.03 ↓	46.6 ↓	27.9 ↓	37.7 ↓
절감액 (천원)		5,567	16,783	9,104	25,8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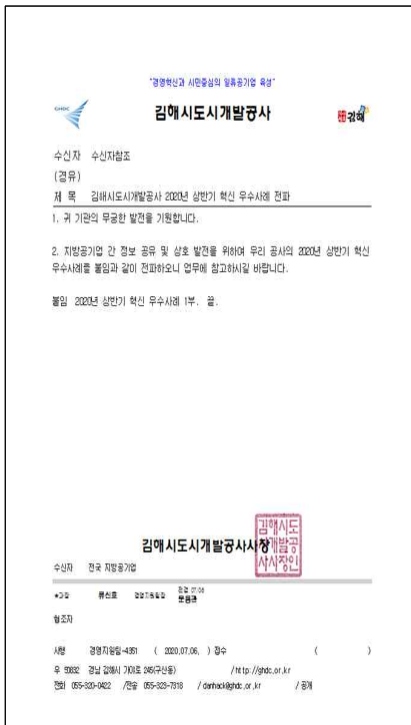
※ **총 절감액 : 月 33,955 천원 X 12월 = 407,460천원**

- 슬 러 지 : 239.7톤 × 108,000원/톤 = 25,888천원
- 탄 소 원 : 20,100kg × 276.98원/kg = 5,567천원
- 전 기 E : 60Kw × 5시간 × 100원 = 900천원
- 응집약품(절감량) = 1,600천원

○ 또한 관내 업체와 기술협약을 통해 개발된 순산소 악취저감시설은 전국적 문제인 아파트 분노악취 문제를 해결할 실마리를 제공함으로써 예산절감 이상의 행정 신뢰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6. 언론보도 내용 (사례 전파)

👉 김해시도시개발공사 혁신 우수사례 전파

 <p>“경쟁혁신과 시민중심의 활동공간 조성” 김해시도시개발공사</p> <p>수신자 수신자삼초 (공유) 제목 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20년 상반기 혁신 우수사례 전파</p> <p>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p> <p>2. 지방공기업 간 정보 공유 및 상호 발전을 위하여 우리 공사의 2020년 상반기 혁신 우수사례를 붙임과 같이 전파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길 바랍니다.</p> <p>붙임 2020년 상반기 혁신 우수사례 1부. 끝.</p> <p>김해시도시개발공사 수신자 전국 지방공기업</p> <p>사명 경향저감업-481 (2020.07.06.) 김수 () 우 0955 경남 김해시 703도 055(주산동) / http://gndc.or.kr 전화 055-320-9422 / 팩스 055-323-7918 / oem@kghn.co.kr / 공계</p>	<p style="text-align: center;">2020년 상반기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우수사례</p> <p style="text-align: center;">2020. 6. 30</p> <p style="text-align: center;">김해시도시개발공사</p>	<table border="1"> <tr> <td>우수사례</td> <td>가축분뇨처리시설 획기적 공정 개선으로 처리물량 증대 및 예산절감</td> </tr> <tr> <td>담당부서</td> <td>가축분뇨처리팀</td> </tr> <tr> <td>추진배경</td> <td>- 노후시설 130㎡ 철거로 처리용량 감소 문제 발생 (330m³/일 → 200m³/일) - 자체 공정개선으로 최소 3300m³/일 이상 처리 완료 (한원 대응)</td> </tr> <tr> <td>추진개요</td> <td>- 공정개선 총 15건 개선으로 처리물량 (200톤→350톤 개선) - 추가적 예산절감 (전기, 슬러지 발생량, 약품사용량 대폭 감소)</td> </tr> <tr> <td>추진내용 및 주요성과</td> <td>- 일 200톤 시설로 350톤 시설 용량 증설 공정개선 ⇒ 원상탈수기(100톤) 탈리여역, 역세수 반정 : 저류조 → BCS 처리수조 - 단위시설별 공정개선 추진 완료 (12건) ① 생물반응조 냉각설비 설치 (일에서 요청 완료) ② AOF(고도산화부상설비) 유입 정량펌프 개선 (처리물량 증가) ③ 원상탈수기 탈리여역 미송 배관 공정 개선 (처리물량 획기적 증가) ④ 처리물량 증가 따른 방류수 배출량표 교체(단위 시간 방류량 대차) ⑤ 생물막여과시설 (BBF) 유입배관 개선공사 (시간당 처리량 증가) ⑥ AOF(오존부상분리) 유통 증가(공정개선)에 후단 약용펌프 용량증설 ⑦ 악취방지시설 공법 변경 효율 향상 (생물막 → 3단 악취세정) ⑧ 신규 악취저감(생조분) 발굴로 슬러지발생 감량 및 효율 향상(상과공유) ⑨ 공정제어용 메인 PLC 등 이중화 선로 구축 ⑩ 생물반응조 외부탄소원 신규 발굴 집중(년 110백만원 절감) ⑪ BBF 역세수 배출라인 공정개선 외 2건 (유량조정조 → 처리수조) ⑫ 수중포기기 기존 4대 →6대 가동 (수처리시간 단축) ※ 연도별 반입물량 대비 전력 등 감소율</td> </tr> <tr> <td>기대효과</td> <td>- 원. 200㎡ 처리시설로 평균 320m³/일 (MAX 443m³/일) 처리 중 안정적 방류수질 유지 및 사업장 악취 개선 (정상운영) - 20년 하반기까지 지속 전기에너지 등 절감 노력</td> </tr> </table>	우수사례	가축분뇨처리시설 획기적 공정 개선으로 처리물량 증대 및 예산절감	담당부서	가축분뇨처리팀	추진배경	- 노후시설 130㎡ 철거로 처리용량 감소 문제 발생 (330m³/일 → 200m³/일) - 자체 공정개선으로 최소 3300m³/일 이상 처리 완료 (한원 대응)	추진개요	- 공정개선 총 15건 개선으로 처리물량 (200톤→350톤 개선) - 추가적 예산절감 (전기, 슬러지 발생량, 약품사용량 대폭 감소)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	- 일 200톤 시설로 350톤 시설 용량 증설 공정개선 ⇒ 원상탈수기(100톤) 탈리여역, 역세수 반정 : 저류조 → BCS 처리수조 - 단위시설별 공정개선 추진 완료 (12건) ① 생물반응조 냉각설비 설치 (일에서 요청 완료) ② AOF(고도산화부상설비) 유입 정량펌프 개선 (처리물량 증가) ③ 원상탈수기 탈리여역 미송 배관 공정 개선 (처리물량 획기적 증가) ④ 처리물량 증가 따른 방류수 배출량표 교체(단위 시간 방류량 대차) ⑤ 생물막여과시설 (BBF) 유입배관 개선공사 (시간당 처리량 증가) ⑥ AOF(오존부상분리) 유통 증가(공정개선)에 후단 약용펌프 용량증설 ⑦ 악취방지시설 공법 변경 효율 향상 (생물막 → 3단 악취세정) ⑧ 신규 악취저감(생조분) 발굴로 슬러지발생 감량 및 효율 향상(상과공유) ⑨ 공정제어용 메인 PLC 등 이중화 선로 구축 ⑩ 생물반응조 외부탄소원 신규 발굴 집중(년 110백만원 절감) ⑪ BBF 역세수 배출라인 공정개선 외 2건 (유량조정조 → 처리수조) ⑫ 수중포기기 기존 4대 →6대 가동 (수처리시간 단축) ※ 연도별 반입물량 대비 전력 등 감소율	기대효과	- 원. 200㎡ 처리시설로 평균 320m³/일 (MAX 443m³/일) 처리 중 안정적 방류수질 유지 및 사업장 악취 개선 (정상운영) - 20년 하반기까지 지속 전기에너지 등 절감 노력
우수사례	가축분뇨처리시설 획기적 공정 개선으로 처리물량 증대 및 예산절감													
담당부서	가축분뇨처리팀													
추진배경	- 노후시설 130㎡ 철거로 처리용량 감소 문제 발생 (330m³/일 → 200m³/일) - 자체 공정개선으로 최소 3300m³/일 이상 처리 완료 (한원 대응)													
추진개요	- 공정개선 총 15건 개선으로 처리물량 (200톤→350톤 개선) - 추가적 예산절감 (전기, 슬러지 발생량, 약품사용량 대폭 감소)													
추진내용 및 주요성과	- 일 200톤 시설로 350톤 시설 용량 증설 공정개선 ⇒ 원상탈수기(100톤) 탈리여역, 역세수 반정 : 저류조 → BCS 처리수조 - 단위시설별 공정개선 추진 완료 (12건) ① 생물반응조 냉각설비 설치 (일에서 요청 완료) ② AOF(고도산화부상설비) 유입 정량펌프 개선 (처리물량 증가) ③ 원상탈수기 탈리여역 미송 배관 공정 개선 (처리물량 획기적 증가) ④ 처리물량 증가 따른 방류수 배출량표 교체(단위 시간 방류량 대차) ⑤ 생물막여과시설 (BBF) 유입배관 개선공사 (시간당 처리량 증가) ⑥ AOF(오존부상분리) 유통 증가(공정개선)에 후단 약용펌프 용량증설 ⑦ 악취방지시설 공법 변경 효율 향상 (생물막 → 3단 악취세정) ⑧ 신규 악취저감(생조분) 발굴로 슬러지발생 감량 및 효율 향상(상과공유) ⑨ 공정제어용 메인 PLC 등 이중화 선로 구축 ⑩ 생물반응조 외부탄소원 신규 발굴 집중(년 110백만원 절감) ⑪ BBF 역세수 배출라인 공정개선 외 2건 (유량조정조 → 처리수조) ⑫ 수중포기기 기존 4대 →6대 가동 (수처리시간 단축) ※ 연도별 반입물량 대비 전력 등 감소율													
기대효과	- 원. 200㎡ 처리시설로 평균 320m³/일 (MAX 443m³/일) 처리 중 안정적 방류수질 유지 및 사업장 악취 개선 (정상운영) - 20년 하반기까지 지속 전기에너지 등 절감 노력													
<p>김해시도시개발공사 2020년 상반기 혁신 우수사례 전파 공문</p>	<p>2020년 상반기 우수사례 표지</p>	<p>2020년 상반기 가축분뇨처리팀 우수사례</p>												

경남데일리, 위클리오늘, 아시아뉴스통신 (3개 언론사)

김해도시개발공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공정 개선으로 처리량 증대 운영비 절감

김해시도시개발공사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의 공정 개선으로 처리량을 증대시키고 운영비를 크게 절감해 나가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공사는 직원 공정개선 학습동아리를 운영하며 총 15건의 공정을 개선해 일 200t 처리능력에 최대150t을 추가했다.

또 운영비도 지난해 2억3000만원을 절감한데 이어 올해 예상되는 최소 절감액 3억원을 자진 반납해5억3000만원의 비용 절감으로 시 재정 건전성 강화에 기여했다.

작년과 올해 예상 절감액은 한해 평균 운영비 25억원의 10~15%를 차지하는 수준이며 공사는 올해 반납한 예산 이상으로 운영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공사는 주요 처리공정인 생물반응조 직접냉각설비로 변경해 미생물 활성 강화 및 자산화 유도로 연간 슬러지 발생량을 10% 이상 대폭 감량시켰다.

또 원심탈수기 공정운영 분석을 통해 폐수 재처리 방법 개선 등으로 100t 정도의 처리용량 증설 효과를 냈다.

특히 공정에 사용되는 대체약품 개발과 응집 약품 특성에 기인한 공정 개선으로 약 20% 정도 약품 사용량을 줄이는 획기적인 성과를 도출했다.

이외에도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해 고효율 3단 약액처리방식으로 악취방지시설을 개선했고 새로운 악취저감제를 발굴해 사업장 추가 악취저감에도 효과를 거둬 외부인 방문 시 호평을 받고 있다.

장선근 사장은 “직원들이 뛰어난 운영기술로 지속적으로 폐수처리 원가를 개선한 좋은 사례이므로 전국 동일시설과 공유해 동종 환경시설의 기술력 향상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 대한한돈협회 업무협약 체결기술지원 체계 구축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서는 21일 축산농가 악취 저감과 동물성 전염병 예방, 밀폐 공간 안전사고를 줄이기 위해 (사)대한한돈협회 김해지부와 업무지원 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지원 협약 체결은 김해시 관내 양돈농가 사육되는 18만두에서 발생하는 분뇨 악취에 대한 관련법 강화와 동물성 전염병으로 가축사육에 어려운 실정을 조금이나마 해소해주기 위해 마련됐다. 주요협약 내용은 하절기 유해곤충인 파리, 모기 박멸을 위해 가축분뇨공공처리장에서 보유하고 있는 차량 탑재형 대형 연막소독기를 활용해 축산농가와 농가 인근 마을에 주기적인 방역을 실시하고, 방역지원 요청 시 긴급 방역지원과 악취발생 시 친환경 악취 전용 제거 약품을 분무해 축산농가 부담을 줄인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축산농가 악취저감을 위한 활성미생물 지원방안과 최근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농가 밀폐공간 질식사고 예방을 위해 가스농도측정기, 양압식 공기호흡기 송기마스크 등 필수 안전 장비를 무상지원 하는 등 영세 축산농가의 안전사고 예방과 악취 저감을 위해 공동 노력하기로 했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장선근 사장은 “이번 업무지원 협약 체결이 당해 연도가 아닌 매년 지속적인 추진으로 축산농가 주변 유해곤충 박멸과 악취 저감을 통하여 축산농가 주변에 쾌적한 환경 조성과 가축전염병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뉴스메이커

김해시도시개발공사,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전문 기술지원 운영노하우 공유

김해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김해양돈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업무협약 체결로
전문기술 지원

2020년 05월 09일 (토) 10:01:26

박민선 기자 parkmin2348@daum.net



▲ 김해시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과 김해양돈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
업무협약/박민선 기자(사진=김해시도시개발공사)

(뉴스메이커=박민선 기자) 김해시도시개발공사(사장 장선근)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7일 우리시 관내 가축분뇨 처리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김해양돈영농조합법인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은 이번 업무협약 체결로 가축분뇨처리 업무 유사성이 많은 액비생산 공동 자원화시설에 운영 노하우 지원으로 업무효율이 향상되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며, 특히 사업장 운영 기술직 전문 분야 인력을 활용한 공동 자원화시설의 긴급 사태 대응 지원과 악취 및 시설물 운영 방안 등 다방면에서 기술 지원함으로써 주민 환경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해양돈영농조합법인에서 운영하는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은 김해시 관내 24개의 돼지사육농가가 출자 설립하여 축산폐수를 액비화하여 농지에 살포하기 위한 시설이다. 농번기인 5월부터 10월까지의 액비 살포지가 부족하여 축산폐수 저장과정에서 필요한 기술과 노하우가 많이 필요한 실정으로 지금까지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이번 협약을 통하여 기술지원과 운영 노하우 공유로 어려움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장선근 사장은 “이번 업무협약 추진으로 김해시 관내 가축분뇨처리의 주요 기관인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과 가축분뇨공동자원화시설의 동반상생 기여할 수 있는 좋은 계기로 악취 등 지역 환경 개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세입증대(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2020. 12.



행 정 안 전 부
[지방재정경제실]

목 차

1. 징수불능 고질체납 끈질긴 노력을 통한 획기적인 체납징수(서울 종로구) ... 1
2. 협치와 상생의 길을 열어 체납세액을 징수!(서울 영등포구) 7
3. 빅데이터를 활용한 변호판 영치 단속(대구 동구) 12
4. 부도법인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세 16억 전액 징수(울산 울주군) 23
5. 전국최초,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 실시(경기도) 27
6. 등록이 필요없는 차량 취득세 누락세원 발굴 및 개선(경기 오산시) 35
7. '꼭꼭 숨은 부동산'을 찾아라! 공매 불가 부동산은 없다(충남 공주시) 45
8. <POST-COVID>의료법 기준강화> 대규모 확장공사 의료법인 세무조사(경북 구미시) 62

[서울시 종로구]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type="checkbox"/> 세출 효율화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입증대(지방세)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세외수입) <input type="checkbox"/> 기타
사 례 명	징수불능 고질체납 끈질긴 노력을 통한 획기적인 체납징수
기 관 명	서울특별시 종로구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type="checkbox"/> 시 <input type="checkbox"/> 군 <input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세무2과

< 요약 >

- 위 사례는 체납법인의 부도·폐업(신탁재산, 채권자, 체육시설 입회자 등) 10년 이상 복잡한 사건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로 수년째 내려온 고질체납이었음.
- 그러나 신탁사의 매각실패 사유분석과 선순위채권자의 면담을 통해 형식적인 매각, 스포츠센터 운영 관련 사실을 포착함.
- 체납자가 아닌 선순위채권자에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공매처분을 실시하였음.
- 결국, 선순위채권자, 신탁사 등 끈질긴 설득을 통해 체납자가 아닌 선순위채권자에게 체납액(1,109,812,630원)을 징수한 사례임.

위와 같이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0. 10. 6.

서울특별시(종로구청장)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징수불능 고질체납 끈질긴 노력을 통한 획기적인 체납징수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법인 : 케이비부동산신탁(르메이에르 건설) ○ 위 치 : 종로구 종로1가 24 르메이에르 지하 301호 ○ 추진기간 : 2018. 7. 3 ~ 2020. 3. 20 ○ 체납징수액 : 1,109,812,630원(2020. 3. 20. 징수) ○ 체납경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법인은 2007년 준공된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상가와 오피스텔, 스포츠센터의 회원권 분양 - 회장은 수백억원대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실형선고 복역중 - 체납법인은 반환 입회보증금 300억원, 체불임금 75억원 추정 - 종로구 지방세 중 2015년~2019년 부과분 재산세등 체납
②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7. 3 : 르메이에르 건설 관계자에게 공매진행 의사 통보 ○ 2018. 8. 10 : 케이비부동산신탁의 자체공매 18회 시행 유찰 ○ 2018. 11. 5 : 신탁사 케이비부동산신탁 방문하여 납부 독려 ○ 2018. 11. 16 : 사기분양·회원권피해자의 위원들과 방문면담 ○ 2018. 11. 22 : 당해 신탁 관련 우선수익자에게 납부 독려 ○ 2018. 11. 29 : 공매진행 관련 문제 관공과·건강도시과 협의 ○ 2019. 2. 13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진행 공문 시행 ○ 2019. 6. 15 : 신탁사의 우선수익자 납부약속 미이행 공매속행 ○ 2019. 7. 1 : 부동산 감정가 414억원부터 공매 6회 입찰 실시 ○ 2019. 9. 23 : 1차 공매 유찰로 207억부터 재공매 입찰 실시 ○ 2019. 10. 3 : 재공매 3회차시 납부의사로 공매 일시중지 결정 ○ 2019. 10. 7: 종로구 전용계좌로 일부 체납액 6억원 징수 ○ 2020. 3. 20 : 납부이행계획에 따라 전액 체납액 징수완료
③ 착안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각 실패사유 집중분석 과정에서 신탁사의 <u>자체공매 결과 형식적인 매각으로 수차례 유찰사실 포착</u> - 2018.8.10.~2018.8.17(7일) 무려 18차례 공매진행 사실 포착 ○ 체납자가 아닌 선순위채권자와 면담 중 <u>스포츠센터 운영과 연관사실 포착</u>

<p>④ 우수사례 추진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세무2과장 중심 고질·상습채납자 특별관리전담반 구성·운영 ○ 종전 고질 채납법인 현황 및 진행사항을 건별 면밀히 연구·분석하던 중에 <u>위의 착안사항 포착하게 됨.</u> ○ 위 사례는 부도·폐업 등 수많은 복잡한 사건들이 엉켜 있어 선순위채권자, 공매 진행사인 신탁사 등 끈질긴 설득을 통해 ○ <u>채납자가 아닌 선순위채권자에게 채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공매처분을 실시하였음.</u>
<p>③ 장애요인 극복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질·상습채납자 중점관리 특별관리전담반 구성·운영 개별 건별 체계적 관리 ○ 담당자가 끈질긴 채납법인에 대한 정황 및 진행사항을 수차례 면밀히 연구·분석한 결과 위와 같은 착안사항들 포착 ○ 부도·폐업(신탁재산, 채권자, 체육시설 입회자등)10년 이상 복잡한 사건으로 <u>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끝까지 징수를 포기하지 않음.</u>
<p>⑤ 추진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산관리공사는 감정가 414억원을 시작으로 2019.7.1.~2019.8.7. 6회차에 걸쳐 입찰결과 모두 유찰 ○ 2019.9.23.~2019.10.30. 매각예정가 207억원부터 6회차에 걸쳐 다시 재공매 실시 ○ 재공매 3회차시 선순위채권자의 납부약속 공매 일시중지 요청 ○ 선순위채권자 채납액 6억원 일부납부 후 2020.3.20. 전액 완납 ○ 총 1,109,812,630원 세입증대

징수불능 고질체납 끈질긴 노력을 통한 획기적인 체납징수

1. 사업개요

○ 체납현황

- 체납법인 : 케이비부동산신탁(르메이에르 건설)
- 물건소재지 : 종로구 종로1가 24 르메이에르 지하 301호
- 체납내역 및 징수액
 - ▶ 재산세(토지, 건물) : 2015년 7월 ~ 2019년 9월 부과분
 - ▶ 현·과년도 체납 : 총 10건, 1,109,812,630원(2020. 3. 20. 징수)

○ 체납경위

- 르메이에르 건설은 2007년 9월 준공된 “르메이에르 종로타운” 상가와 오피스텔을 2007년부터 2011년까지 신축분양 하였고 이에 따른 내부 스포츠센터의 회원권도 같은 시기에 분양하였음.
- 이후 수백억원대 상가의 분양대금을 가로챈 혐의로 르메이에르건설 회장은 실형을 선고받고 현재까지 복역중이며 이에 따라 르메이에르 건설은 입회보증금 300억원과 체불임금 75억원을 반환해야할 것으로 추정됨.

연암뉴스TV

르메이에르건설 회장 분양사기로 징역13년 확정
기사입력 2016.01.14. 오후 5:47

르메이에르 스포츠 종로센터



- 실정이 이렇다보니 종로구 지방세 중 2015년 7월~2019년 9월 부과분 재산세 등이 체납된 상태이었음.

2. 일정별 추진사항

- 2018. 7. 3 : 르메이에르 건설 관계자에게 공매진행 의사 통보
- 2018. 8. 10 : 케이비부동산신탁(주)의 자체공매 18회 시행 유찰
- 2018. 11. 5 : 신탁관리사 케이비부동산신탁 방문하여 납부 독려
- 2018. 11. 16 : 사기분양·회원권피해자의 운영위원들과 방문면담
- 2018. 11. 22 : 당해 부동산신탁 관련 우선수익자에게 납부 독려
- 2018. 11. 29 : 공매진행 관련 문제 관광체육과·건강도시과 협의
- 2019. 2. 13 :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부동산 공매진행 공문 시행
- 2019. 6. 15 : 신탁사측의 우선수익자 납부약속 미이행 공매속행
- 2019. 7. 1 : 부동산 감정가 414억원부터 공매 6회 입찰 실시
- 2019. 9. 23 : 1차 공매 유찰로 207억원부터 재공매 입찰 실시
- 2019. 10. 3 : 재공매 3회차시 납부의사로 공매 일시중지 결정
- 2019. 10. 7 : 체납징수 전용계좌로 일부 체납액 6억원 징수완료
- 2020. 3. 20 : 체납액 납부이행계획에 따라 전액 체납액 징수완료

3. 착안사항

- 매각실패 사실을 집중분석하는 과정에서 신탁사의 자체 공매한 결과 형식적인 매각으로 수차례 걸쳐 유찰된 사실을 포착함.
- 2018년 8월 10일부터 2018년 8월 17일까지 7일 동안 무려 18차례나 공매를 진행한 사실을 포착함으로써 신탁사의 공매실현 의지가 형식적이라 것을 인지함.
- 또한, 체납자가 아닌 선순위채권자의 방문 면담과정에서 선순위채권자가 스포츠센터 운영과 연관사실을 포착함.

4. 추진내용

- 세무2과장을 반장으로 하여 고질·상습체납자만 집중적으로 관리하는 특별 관리전담반을 구성하여 운영함.
- 종전부터 고질적으로 체납되어 오던 체납법인에 대한 현황 및 진행사항을 건별로 면밀히 연구·분석하던 중에 위의 착안사항을 포착하게 됨.
- 위 건은 부도·폐업 등 수많은 복잡한 사건들이 엉켜 있어 선순위 채권자, 공매 진행사인 신탁사 등 끈질긴 설득을 통해
- 체납자가 아닌 선순위채권자에게 체납액을 징수할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과감하게 공매처분을 실시하였음.

5. 추진성과

- 이후 자산관리공사는 감정가 414억원을 시작으로 2019년 7월 1일부터 2019년 8월 7일까지 6회차에 걸쳐 입찰하였으나 모두 유찰되었음.
- 2019년 9월 23일부터 2019년 10월 30일까지 매각예정가 207억원부터 6회차에 걸쳐 다시 재공매하기로 함.
- 재공매 3회차시 선순위채권자의 납부약속으로 공매를 일시중지해 줄 것을 요청함.
- 결국, 선순위채권자는 2019년 10월 7일 일부 체납액 6억원을 납부하고 2020년 3월 20일 전액을 납부함.

6. 장애극복

- 고질·상습체납자만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특별관리전담반을 구성하여 개별 건별로 체계적으로 관리함.
- 담당자가 끈질기게 체납법인에 대한 정황 및 진행사항을 수차례 면밀히 연구·분석하였던 것이 위와 같은 착안사항들을 포착할 수 있었음.
- 체납법인의 부도·폐업(신탁재산, 채권자, 체육시설 입회자 등)10년 이상 복잡한 사건으로 징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끝까지 징수를 포기하지 않음.

7. 향후계획

- 위 사례는 부도·폐업 등 수많은 복잡한 사건들이 엉켜 있어 선순위 채권자, 공매 진행사인 신탁사 등 끈질긴 설득을 통해 체납자가 아닌 선순위채권자에게 체납액을 징수한 것임.
- 추후에도 포기 없는 열정과 끈질긴 집념으로 체납액을 징수하는데 표본으로 삼을 예정임.
- 조속한 시일 내에 전국적으로 확대·전파하여 시행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서울시 등 각종 발표대회나 워크숍, 세미나를 통하여 적극 홍보할 것임.

[영등포구] 2020년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납징수 <input type="checkbox"/> 세무조사 <input type="checkbox"/> 벤치마킹·기타
사 례 명	협치와 상생의 길을 열어 체납세액을 징수 !
기 관 명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담 당 자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기획재정국 징수과

< 요약 >

영등포역(영중로) 인근에 소재한 2005년 신축된 대형쇼핑몰 점프밀라노월드는 건축회사의 사기분양과 폐업 청산, 진입로를 불법 점유한 노점상 등으로 신축당시부터 현재까지 마감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방치되어 있고 미분양된 411개 호 신탁재산은 2015년 부과분 재산세 등 약8억원이 체납된 상황.

영등포구의 영중로 개선·정비로 안전한 보행환경 및 도시미관이 향상됨에 따라 상권이 호전되는 상황과 공매처분 시 소액의 당해세 징수 및 공매 유찰 등으로 충당할 실익이 없음을 인식하고 신탁회사와 끊임없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관련 부동산을 매도하여 체납세액을 징수하였음

- 체납징수: 1,984건 791백만원
- 체납정리실적: '19년 지난년도 구세 징수목표액의 30.7%
- 징수활동: 압류한 부동산에 대한 공매추진으로 신탁회사를 압박함과 동시에 신탁회사와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으로 체납세액 자진납부로 체납세액을 전액 징수

위와 같이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0.10. .

영등포구청장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협치와 상생의 길을 열어 체납세액을 징수 !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대상: 영등포동3가 7 소재 점프밀라노월드 쇼핑몰 ○ 추진기간: 2019.1.1. ~ 12.31. ○ 추진내용: 「2019년도 지방세 체납관리 종합 추진계획」 「2019년도 고액·상습 체납자 명단공개 계획」 「2019년도 지방세 체납자 부동산 공매 계획」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세대상 건물 진입로인 영등포동 3가 영중로는 노점상이 난립하여 보행자들이 통행을 우회할 정도로 보행 환경이 열악함 ○ 영중로에 쇼핑몰 점프밀라노월드 1,193개 호를 신축한 법인은 사기분양과 주변 환경의 열악함으로 411개 호를 분양하지 못하고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한 채 폐업 청산하였고, 해당 부동산은 마감공사가 중단된 상태로 담보 신탁 등기된 상태임 ○ 신탁회사에게 부과된 재산세 등 1,984건 791백만원은 악성 체납으로 남게 됨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0년간 영중로를 점유하고 있던 노점상들과의 100여회의 소통과 의견조율로 영중로 불법 지장물 자진정비 합의도출 ○ 불법 노점상이 정리되어 보행자 중심의 쾌적한 도로환경이 조성되자 유동인구가 늘어나고 영중로 상권이 활성화 됨 ○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한 재산을 공매처분 추진하는 것은 납세자와 과세권자 모두에게 피해를 주기에 자진납부 독려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영중로의 보행로가 쾌적하게 정비되고 과세대상 쇼핑몰의 진입로의 통행이 원활하게 되자 해당 쇼핑몰의 가치 변화 ○ 압류재산 공매처분 시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유찰이 거듭되어 헐값에 낙찰되면 납세자는 재산상 피해를 입고, 영등포구는 공매진행비 공제 후 소액의 재산세만 배당받을 수 있어 신탁회사와 끊임없는 소통과 협의를 통해 관련 부동산을 매도하여 자진 납부할 수 있도록 독려하여 체납액 징수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재산세 등 체납세액 1,984건 791백만원 징수

협치와 상생의 길을 열어 체납세액을 징수 !

1. 과제 선정 내용

- 영등포동3가 7번지 영중로에 2005. 2.24. 신축한 쇼핑몰 점프밀라노는 사기분양 및 50년간 진입로를 불법점유하고 있는 노점상으로 인해 사용승인 후 15년이 지났음에도 1,193개 호 중 411개 호를 분양하지 못하고,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건축주 법인은 폐업 청산되고, 마감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하지 않고 흉물로 방치된 상태였고, 미분양 된 물건은 공사비 미지급으로 신탁회사에 담보신탁登記 된 상태였음.
- 분양 완료된 물건 또한 헐값에 경·공매 처분 되는 상황으로 진입로의 불법점유와 주변 환경의 열악함으로 인해 분양자와 신탁법인은 쇼핑몰에 대한 재산 가치를 포기한 상태로 미분양 된 상가에 대해 신탁회사에 부과된 재산세 체납 1,984건 791백만원이 악성 체납으로 남아 있었음

2. 문제원인 분석

- 영중로를 50년 이상 불법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 정비는 영등포구의 오랜 숙원사업이나 불법 노점상이 고착화 및 조직화 되어 통행로 점유를 정당화 하려는 경향이 있었고, 영중로에 접하여 신축한 점프 밀라노는 당초 쇼핑몰로 분양이 되었으나 영중로를 불법 점유하고 있는 노점상으로 인해 보행자들이 통행을 기피하여 쇼핑몰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 재산세는 납세자 소유 재산을 담세력으로 판단하여 부과 되는데, 점프밀라노는 쇼핑몰의 기능을 상실하였고, 건축주 법인은 신축 상가 미분양으로 인해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하여 폐업 청산하였고, 신탁법인에게 부과되는 재산세를 납부하지 못하여 악성 체납세액은 누증되고 있는 상황임.

3. 방안 마련 및 실행

- 영등포구는 영중로 보행로 정비사업을 민선7기 중점 행정과제로 선정하여 주민, 상인,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거리가게 상생 자유헌위원회”를 구성함.
- 50년이상 도로를 점유하여 불법 행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노점상들과 100여회의 지속적인 의견 조율을 통해 자율적인 정비를 이끌어 냄.
- 과세대상 쇼핑몰의 진입 보행로가 정비되자, 주변 상권이 살아나고, 신탁회사와 분양자들 또한 해당 부동산에 대한 인식을 달리하게 됨
- 영등포구청 징수과에서는 체납자의 부동산을 공매처분 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재산상 피해가 갈 수 있는 체납징수 수단이기때문에 주변상권이 호전되는 상황을 파악하여 납세자가 실제 가치로 매각하여 자진납부할 수 있도록 부동산공매 진행을 보류하여 납세자와 과세권자 모두 상생할 수 있는 체납징수 활동 추진

4. 장애극복

- 영등포구에서는 50년 이상 도로를 점유하여 불법행위를 당연하게 생각하는 노점상들과 100여회의 지속적인 의견 조율을 통해 영중로 보행도로의 자율적인 정비를 이끌어 냄
- 영등포구청 징수과에서 압류한 해당 쇼핑몰은 상가의 기능을 상실하여 환가가치가 없는 상태였으나, 영중로의 노점상이 정비되어 진입 통행로가 회복되고 주변 상권이 활성화 되자 쇼핑몰에 대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함
- '19. 8월 고액체납 징수 전담반을 구성하여, 주변환경이 변화된 압류 부동산에 대한 공매의뢰 실익을 판단하기 위하여 현장방문 후 자산관리공사와 공매의뢰 협의하고, 신탁회사에게 공매예고 통지.
- 공매진행 예고 통지를 받은 신탁회사에서는 체납세액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시작 하였고, 신탁회사와의 수차례 걸친 면담을 통해 체납세액 납부 불이행시 공매진행을 할 수 밖에 없다는 체납세액 징수의지를 명확히 전달.
- 압류등기한 쇼핑몰은 마감공사의 미진행 등으로 공매진행을 하더라도 유찰이 계속되어 헐값에 낙찰될 수 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 납세자에게는 재산상 피해가 불가피하고, 공매진행비 공제 후 체납세액의 일부만을 배당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강제징수 대신 납세자와 과세권자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체납징수를 추진하기로 체납징수 방향 결정.
- 자산관리공사에 공매진행을 보류하고 체납 신탁회사의 4개월여에 걸친 지속적인 협의와 소통을 통하여 매각을 통한 자진납부를 독려한 끝에 12.30. 체납세액 전액 징수.
- 체납징수 추진사항
 - '19. 8. 1. 고액체납 징수 전담반 구성
 - '19. 8. 2. 고액체납자 공공기록(신용정보) 등록 예고 통지
 - '19. 8.16. (주)생보부동산신탁 담당자와 체납담당, 담당팀장 협의
 - '19.11.12. 압류재산의 공매실익 판단을 위해 담당자 외1인 현장방문
 - '19.11.19. 자산관리공사 담당자와 압류물건 공매진행 협의
 - '19.12. 2. 압류부동산에 대한 부동산 공매예고통지서 발송
 - '19.12.16. 신탁회사 담당자가 구청 방문하여 공매진행 보류요청
 - '19.12.20. 신탁회사 담당자에게 연말까지 체납세액 완납 하도록 독려하고 체납 정리 불이행시 공매진행 추진됨을 통보

5. 성과

- 2019.12.30. 재산세 등 체납세액 1,984건 791백만원 징수
- 영중로 보행환경 개선 전후 사진



[대구광역시 동구]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납징수 <input type="checkbox"/> 세무조사 <input type="checkbox"/> 벤치마킹·기타 ※ 벤치마킹 사례는 “2018년, 000자치단체 000사례를 벤치마킹” 기재
사 례 명	빅데이터를 활용한 변호판 영치 단속
기 관 명	대구광역시 동구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type="checkbox"/> 시 <input type="checkbox"/> 군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세무2과
< 요약 > * ※ 절감성과 등 사례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5줄이내)	
<p>○ 연평균 160일 이상 실시한 변호판 영치 단속으로 축적된 많은 빅데이터속에서 유용한 상관관계를 분석하고, 이를 영치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호판 단속루트 위주 활동으로 전년대비 변호판 영치실적 30%정도 증가 - 행정구역이 넓고 영치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최소노력으로 영치성과를 극대화 <p>○ 자동차세 체납징수 증대를 통한 대구시 체납징수율 전국 1위 달성에 기여</p>	

위와 같이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0. 10. .

대구광역시 동구청장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빅데이터를 활용한 변호판 영치 단속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대구광역시 동구 일대 ○ 추진기간 : 2019. 3. 1. ~ ○ 사 업 비 : 해당없음 ○ 사업내용 : 수년간 축적된 변호판 영치관련 빅데이터를 체계적으로 분석·활용하여 변호판 영치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체납세액 징수증대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연평균 160일 이상 실시하는 변호판 영치 단속에서 유용한 상관관계를 연구 ○ 최근 3년간 단속한 모든 영치장소와 동(洞)별, 연도별 영치 현황을 분석, 독자적인 단속루트를 개발하여 효율적인 체납 징수활동 실시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계적인 변호판 영치 단속 프로세스의 부재로 투자한 시간·노력 대비 성과 미비 ○ 다년간 확보한 빅데이터를 분석할 전문적인 기술 부족 ○ 부서 전체의 생각을 집결해 빅데이터를 전략적으로 분석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객관적인 데이터에 근거한 변호판 영치를 통해 시간과 인력은 최소화하고 성과는 극대화 ○ 코로나19로 변호판 영치가 어려운 상황에서도 단속루트 위주로 영치 안내문을 전달하여 능동적인 체납 관리 활동 실시 ○ 후임자에게 축적된 노하우를 전수하여 효과적인 체납 징수 활동을 수행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도모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번호판 영치실적 제고로 세입증대에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년대비 변호판 영치실적 30%정도 증가 ○ 행정구역이 넓고 영치인력이 부족한 지자체에 최소노력으로 영치 성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기법 개발

빅데이터를 활용한 번호판 영치 단속

1. 과제 선정 내용

○ 변수(變數)

- 2019년부터 시작된 코로나19(COVID-19: corona virus disease 19) 사태로 인하여 전세계적인 경기 침체의 징조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2020년 9월 기준 우리나라 확진자수는 2만3천명을 넘어섰으며, 전 세계적으로는 3,200만명을 돌파하였습니다. 정부는 전염병 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인구이동을 제한하고 있으며, 이는 생산 및 소비의 감소로 이어져 경기 침체를 가속시키고 있습니다.
- 경기 침체는 자연스럽게 지방세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쳐 세입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반면, 코로나 사태를 진정시키기 위한 세출은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런 불안정한 상황 속에서 안정적으로 세입을 확보할 수 있는 체납징수의 중요성은 커지고 있으며, 효율성을 늘리기 위하여 체납징수 활동을 최적화 시키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되었습니다.

○ 늘어나는 차량, 늘어나는 체납

- 2019년 기준 우리나라 자동차 등록대수는 2,368만대입니다. 이것은 지난 10년간 574만대 증가한 것으로 연간 평균 63만대 증가한 것입니다. 지난 10년간 출생아 수가 400만명인 것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에서는 신생아 출생보다 자동차 등록이 훨씬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 자동차 등록대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자동차관련 체납도 증가했으며, [표-1]을 보면 2015년 384억이었던 대구광역시 자동차 관련 체납액이 2019년 400억으로 증가했으며, 총체납액 중 차량 관련 체납비율은 최근 5년간 50%대로 높은 수준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습니다. 우리구의 경우 2020년 7월에 자동차세 체납액이

34억에 이르고, 앞으로도 이러한 증가 추세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표-1] 대구광역시 자동차세 체납 현황



- 이처럼 늘어나는 자동차세 체납과 맞물려 이제는 자동차세와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체납 자동차 번호판 영치활동에 대하여 효율적인 징수 방안을 강구하고자 하였습니다.

○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

- 광주 광산구에 이어 전국 자치구 중 두 번째로 넓은 면적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 구청에서, 사전 준비 없이 번호판 영치단속을 나가는 것은 모래밭에서 바늘 찾기와 다를 바 없었습니다. 체납 차량 영치단속이 시작된 이래로 단속 기계 등 하드웨어 부분에서는 눈부신 발전이 있었으나, 영치단속 프로세스와 같은 내부적인 사항은 눈에 띄는 발전이 없었습니다. 이제는 영치단속 체계 등 소프트웨어 부분을 정비하여 번호판 영치에 있어서 새로운 방안을 모색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2. 문제원인 분석

○ 바다를 꿰칠 수 있을까

- 매년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세무과에 축적되고 있고, 번호판 영치 관련 데이터도 예외는 아니었습니다. [표-2]를 보면 우리구의 번호판 영치와 관련하여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축적된 차량번호 데이터만 하더라도 5,400여건입니다. 또한 연간 평균 번호판 영치 건수가 1,355건임을 고려했을 때 매년 1,300건 이상의 차량번호 데이터가 새로이 생성되고 여기서 체납자 이름, 주민 번호, 영치장소 등 기타 사항을 추가하면 번호판 영치와 관련한 데이터의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납니다.

[표-2] 대구광역시 동구 번호판 영치 건수 (단위 : 건)

구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번호판 영치(자체)	777	825	866	894
번호판 영치(타구군)	362	369	404	398
번호판 영치(전국)	154	110	127	132
합계	1,293	1,304	1,397	1,424

- 이처럼 막대한 양의 데이터가 우리 곁에 있지만 이러한 데이터를 활용하려는 구체적인 시도는 좀처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무수히 많은 정보의 바다 속에서 유용한 상관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며 이러한 연구는 마치 바다를 꿰으려는 것과 같이 막막하고 무모한 것이라고 여기기 때문이었습니다.

3. 방안 마련 및 실행

○ 단순함이 산을 옮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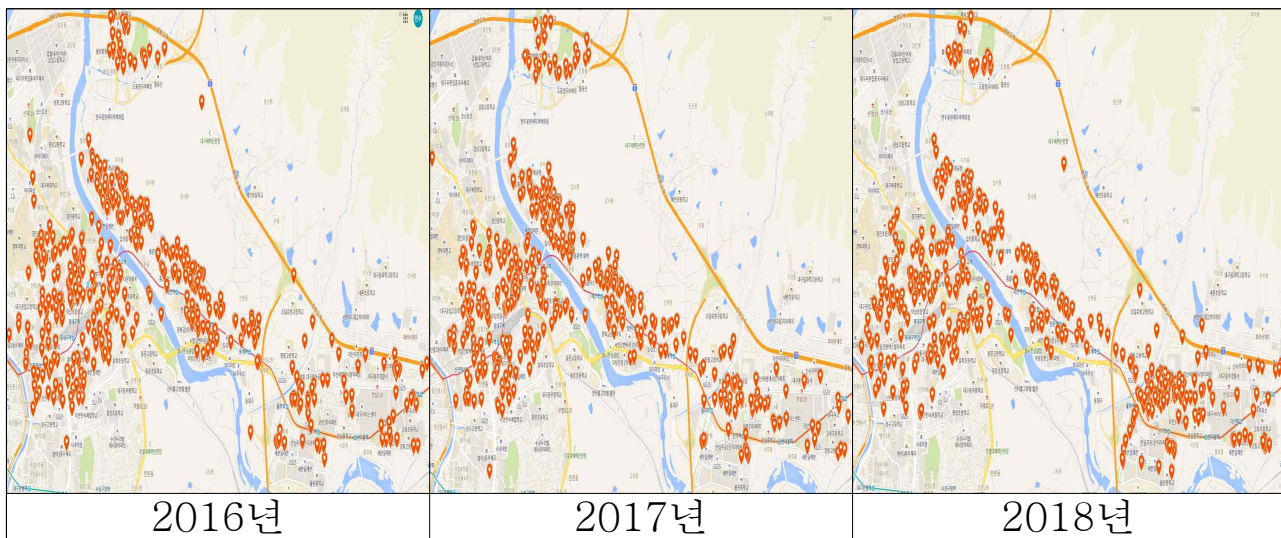
- 정보의 바다 속에서 유용한 상관관계를 찾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빅데이터를 단순화 시키는 것이었습니다. 미국의 기업가이며 애플사의 창시자인 스티브잡스는 ‘단순함이 산을 옮긴다’는 유명한 연설을 하였습니다. 복잡한 생각은 두려움을 키워 시도조차도 못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우리 구청에서는 먼저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내용을 단순화 시키고자 하였습니다.

- 막대한 변호판 영치 관련 데이터에서 우리가 주목한 것은 ‘영치 장소’였습니다. 「항상 체납하는 사람이 체납을 할 것이다」라는 발상에서 착안하여 변호판이 영치된 체납자들을 살펴보았는데, 2016년부터 2019년까지 4년간 영치된 전체 체납자들 중 약 20% 이상이 2번 이상 영치된 사람이었습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영치 장소를 분석하는 것은 충분히 실효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본격적인 분석을 실시 하였습니다.

○ 데이터마이닝

- 영치장소 분석에는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과 ‘구글 내지도 (Google My Map)’를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우선 연도별로 영치 장소를 분석하여 특별한 상관관계가 있는 지 확인하였고, ‘영치 장소’라는 빅데이터를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을 활용하여 도로명 주소로 일괄 변환해 활용하기 용이하도록 정비하였습니다. 정비한 자료를 구글 내지도에 입력하여 알아보기 쉽게 시각화 하고 내용을 분석한 결과, 특정 지역에서 변호판 영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1] 연도별 변호판 영치 장소



- 구체적으로 동대구역, 입석중학교, 방촌역, 신기역 일대에서 단속이 활발히 이루어졌고, 시간이 지날수록 신기역, 각산역, 안심역 주변으로 많은 영치가 이루어졌음을 확인 하였습니다.

- 다음으로는 번호판 영치 장소를 동(洞)별로 구분하여 영치 장소를 분석하였습니다. 우선 [표-3]에서 보이는 것처럼 우리구의 45개 법정동을 13개로 분류한 후, 각 동별로 영치 건수의 비율을 파악하는 작업을 실시한 결과, 안심3,4동, 동촌동, 공산동이 전체 번호판 영치 장소에 41.3%를 차지했고, 상위 6개 동이 전체 중에서 약 67%로 대부분을 차지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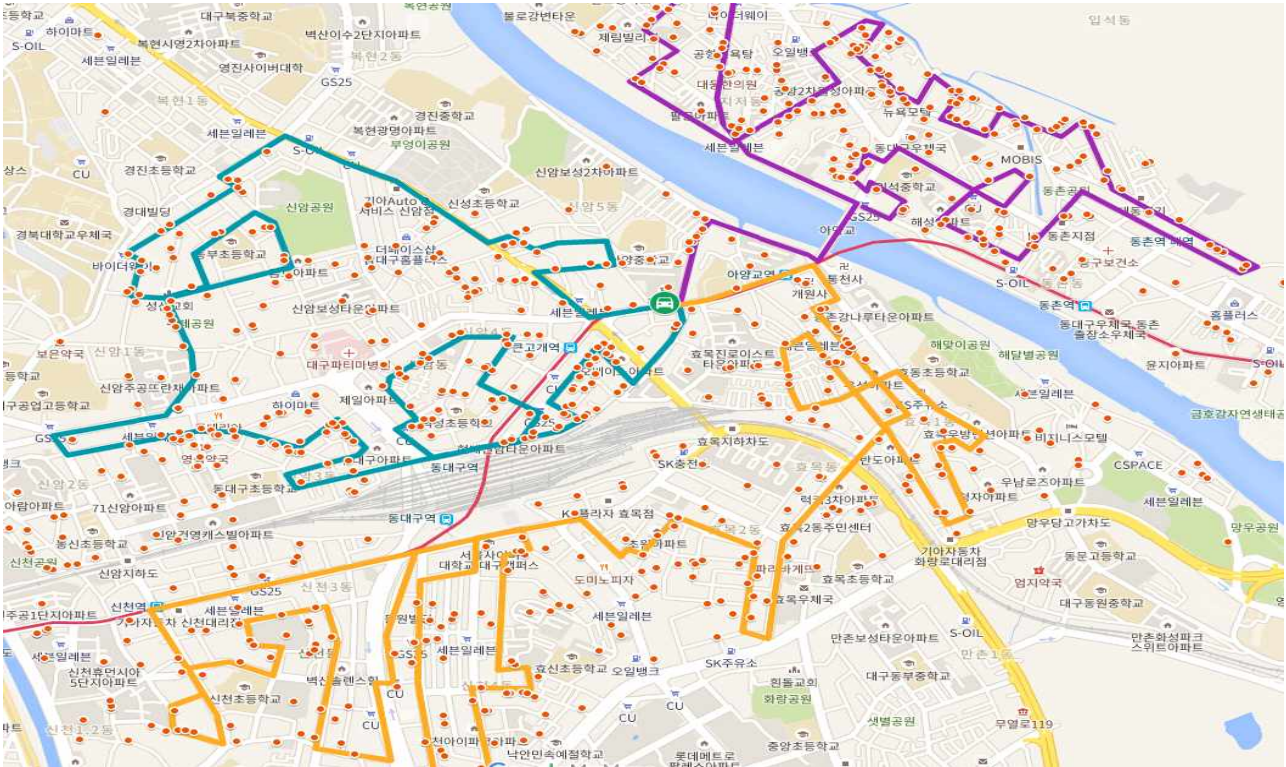
[표-3] 동별 번호판 영치 장소

동	안심3,4동	동촌동	공산동	신암동	효목동	안심2동	안심1동
영치비율	15.2%	14.0%	12.1%	9.3%	8.3%	8.0%	7.6%
동	방촌동	불로봉무동	신천동	지저동	해안동	도평동	합계
영치비율	7.1%	5.4%	4.9%	4.3%	3.4%	0.4%	100%

○ 구슬을 꿰다

-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관련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나름의 결과를 도출해 냈지만, 분석한 정보를 적절히 활용하여 실적을 내야만 비로소 빅데이터를 적절히 활용하였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 그동안 우리는 체계적인 계획 없이 임의로 동을 정하여 막연하게 체납차량 영치 단속을 하였습니다. 이렇게 사전 준비 없이 체납차량 영치 단속을 나갔을 경우에는 효율적으로 단속을 진행하지 못하고 결국은 투입한 시간, 노력 대비 성과가 미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앞서 분석한 동별 영치장소 데이터를 활용하여 단속을 나갈 동에 우선순위를 정하고, 세부적으로는 연도별 영치장소 데이터를 이용해 동 안에서 구체적인 단속 루트를 개발하였습니다. [그림-2]와 같이 우선 대략적인 루트를 정하고 구체적인 사항은 단속에 나갔을 때 골목의 상황을 보고 정하는 방식을 택했습니다.

[그림-2] 단속 루트



4. 장애극복

○ 십시일반(十匙一飯)

-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이 순탄했던 것만은 아니었습니다. 분석할 대상을 영치 장소로 국한시켰음에도 그 양은 방대했으며, 이를 어떤 기준으로 어떻게, 어떤 수단을 이용해 분석할 것인지는 여전히 물음표로 남아있었습니다. 영치 담당자 혼자가 짊어지기에는 부담감이 컸으며 문제를 바라보는 시야가 좁아져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도 어려웠습니다. 이에 부서 전 직원의 의견을 수렴하여 연도 및 동별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도로명주소안내시스템과 구글 내지도를 이용하자는 아이디어를 얻게 되었습니다. ‘십시일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열 사람이 한 술씩 보태면 한 사람 먹을 분량이 된다’는 뜻으로 한 명의 아이디어가 아닌 부서 전 직원의 생각으로 혼자서는 분석하기 힘든 빅데이터를 손쉽게 분석해낸 것입니다.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추진실적

- 우리 구에서는 2019년에 빅데이터를 활용한 변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하였고 영치 체납건수·금액 및 영치 후 납부건수·금액이 현저히 증가하였습니다. [표-4]에서 보이는 것처럼 2017년 영치 체납건수는 1,909건, 체납금액은 289백만원이고 영치후 납부건수는 1,309건, 납부금액은 199백만원이었으나, 2019년에는 실적이 현저히 증가하여 영치 체납건수는 2,602건, 체납 금액은 373백만원이고 영치후 납부건수는 1,863건, 납부금액은 294백만원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것은 전년 대비 약 30%정도 증가한 것으로 기존에 많아야 10%내외의 상승률을 보이던 것과 비교했을 때 충분히 유의미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표-4] 연도별 영치 실적



○ 지속가능한 개발

- 번호판 영치 단속을 나갈 때, 어디로 가야할 지는 항상 따라오는 답답한 문제였습니다. 특히 막 번호판 영치 담당자가 되었을 때는 ‘어디에 가면 많더라’라는 막연한 단서에 의존하여 단속을 나가기 일쑤였고, 이렇게 체계적인 준비 없이 단속을 나가면 귀중한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고 실적도 저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효율적으로 번호판 영치를 할 수 있는 단속 루트가 있으니, 신규 담당자도 손쉽게 높은 성과를 낼 수 있을 뿐 아니라 단속 루트를 이용하면서 기존의 루트를 보완하여 새로운 루트를 개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임자의 축적된 노하우를 후임자에게 쉽게 전수하고 계속 개발시켜 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적극행정 실천

- 올해는 수해, 폭염 등 자연재해와 코로나19라는 유래 없는 전염병 사태로 인하여 세출은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세입은 오히려 심각하게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안정적인 세입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으나, 강력한 체납처분 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현재의 상황입니다. 번호판 영치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 구는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주요 단속 루트에 납부 안내문을 나눠주고 있습니다. 번호판 영치 보조 인력을 평소보다 더 많이 채용하여, [그림-3]에서 보는 것과 같이 주요 단속 루트를 위주로 영치 예고 안내문을 전달함으로써 우리 구는 체납자뿐만 아니라 모든 납세자들에게 납부홍보를 하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리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한된 상황 속에서 수동적으로 지시가 내려오기를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자체적으로 현 상황을 타개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여, 업무에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자동차세 징수업무에 활용한 적극행정 실천의 좋은 사례라고 할 것입니다.

[그림-3]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예고 안내


◆ 자동차세 체납내역

성명	자동차번호	건수	금액(원)	비고

※ 상기 체납내역은 2020년 9월 일까지 납부하신 것을 기준으로 작성 하였습니다. (단, 결손금액이 있는 경우 체납내역은 변동 될 수 있습니다)

- 귀하께서는 상기와 같이 자동차세가 체납되어 지방세법 제131조 규정에 의거 자동차 등록번호판이 영치 될 수 있으니, 조속히 자진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특히 자동차세가 2건이상 체납된 경우에는 대구시 전역에서 상시 영치될 수 있으며, 4건이상 체납차량은 전국 어디서나 영치 될 수 있습니다.
- 기타 문의 사항은 동구청 세무2과(053-662-2395)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대구광역시 동구청



○ 기대효과

- 우리 구에서는 빅데이터를 이용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한 결과 2019년 기준 번호판 영치 후 자동차세 납부실적이 294백만원으로, 2017년 영치 후 자동차세 납부금액과 비교했을 때, 약 48%가량 실적이 증가하였습니다. 2018년 결산기준 전국의 자동차세 체납액이 8,591억원¹⁾으로서 지방세 체납액 중 23.4%를 차지하고 있는 바, 전국 자치단체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효율적으로 번호판 영치 단속을 실시하였을 경우에 자동차세 징수실적에 상당한 성과가 예상되며 지방재정에 있어서 큰 장애요소인 자동차 체납세를 안정적으로 징수하여 지방재정 확보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 아울러, 우리 구와 같이 행정구역이 넓고 단속인력은 부족한 다른 자치단체에서도 번호판영치 단속루트 개발을 통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면 최소의 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거둘 수 있을 것입니다.

[기관명] 2020년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checked="" type="checkbox"/> 체납징수 <input type="checkbox"/> 세무조사 <input type="checkbox"/> 벤치마킹·기타
사 례 명	부도법인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세 16억 전액 징수
기 관 명	울산광역시 울주군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type="checkbox"/> 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군 <input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 요약 >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부독려(2018.7월~현재) : 서울방문 독려 등 징수활동 전개 29회 ○ 부동산 신탁채권 압류 법원공탁을 통한 배당으로 1,205백만원 징수 ○ 지방세 환급금 압류 추심으로 394백만원 징수 	

위와 같이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0. 10. .

울산광역시 울주군수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부도법인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세 16억 전액 징수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7. 울주군 최고 고액체납 9억원 발생 - 2018. 7. ~ 2019. 11. 총 16건 16억원 체납액 이월 ○ 추진기간 : 2018. 7. ~ 2020. 8. ○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기동팀, 체납정리팀 협업으로 165건 압류, 29회에 걸친 징수활동 전개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인 본사 및 신탁회사(서울) 방문 독려 5회 ○ 납부독려 및 공탁 진행상황 확인을 위한 유선독려 24회 ○ 교보자산신탁 신탁수익금 등 압류 165건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법인 부도로 본사사무실 폐쇄 ○ 체납법인은 제2차 납세의무자 없으며, 대표는 구치소 수감 ○ 체납법인 소유 부동산 신탁으로 압류 가능재산 없음 ○ 리스보증금, 기타 공탁금 압류 실익 없음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7. 체납발생 즉시 체납법인과 접촉 실태조사 ○ 체납법인 대표와 면담, 부산지방국세청, 울산광역시와 업무 공조로 국세 신탁수익금 압류 사실 확인 후 참가압류 진행 ○ 2018. 11. 체납기동팀 신설 후 고액체납자에 대한 적극적인 현장방문 및 탐문조사 등 신속대응 가능하여 ○ 3년 경과하였으며, 울산광역시 관내에서 가장 고액체납자의 체납세를 지방세환급금 추심 및 공탁금 배당으로 체납액 전액징수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1,599백만원 징수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20. 7. 29. 울산 남구 지방세환급금 추심 394백만원 - 2020. 8. 14. 서울지방법원 공탁금 배당 1,205백만원

부도법인 끝까지 추적하여 체납세 16억 전액 징수

1. 과제 선정 내용

- 체납법인은 공동주택 건설사업 시행자로 전 시행사 및 시공사와의 법적 다툼으로 자금사정이 여의치 않아 사실상 부도업체로
- 2018년 7월 체납법인의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법인소득) 883백만원 체납을 시작으로 누적 체납액이 1,599백만원에 달하며, 이는 울주군 단일 건으로 최고 체납액으로 고액체납자에 대한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관리가 절실히 요구되는 사안이었음

2. 문제원인 분석

- 체납법인의 본사사무실 폐쇄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대상자가 없었으며, 더욱이 체납법인 대표는 구치소에 수감 상태임
- 체납법인 소유 부동산은 신탁으로 압류가능한 부동산이 없고, 자동차 및 리스보증금은 선순위 압류권자로 인해 압류실익이 없는 상태임

3. 방안 마련 및 실행

- 2018. 07. : 2017년 귀속 지방소득세(법인소득) 883백만원 체납으로 본사사무실 방문 공동주택 건설 진행 중인 사업장 및 국세 체납액(100억원 정도) 확인 후 지속 독려
- 2018. 09. : 부동산 신탁수익금 압류
- 2018. 10. : 공동주택 준공. 전 시행사 및 시공자와 민사소송 진행 중으로 납부 지연
- 2018. 11. ~ : 고액체납자 전담 체납기동팀 신설. 체납법인 주변인 탐문과 체납법인 관계자 및 신탁회사 관계자 방문
- 2019. 12. : 신탁회사(체납법인 분양대행업체) 방문하여 분양 및 입주 중 자금회수 곤란과 소송진행 중으로 납부 지연
- 2020. 04. : 부산지방국세청, 울산광역시, 울주군 합동으로 채권자 담당 변호사 사무실 방문 배당사건 속행될 수 있도록 협조

- 2020. 06. : 서울중앙지방법원 배당절차 개시 및 교부 청구
- 2020. 07. : 울산 남구 지방세환급금 압류 및 추심으로 체납 총당
- 2020. 08. :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금 배당금 수령

4. 장애극복

- 체납법인 사실상 부도로 본사사무실 폐쇄되고,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대상이 없었으며 더욱이 해당법인의 대표는 구치소 수감된 상태로
- 체납법인 소유 부동산, 자동차, 예금자산 등이 이미 처분 되었고, 리스보증금 등은 선순위 압류권자로 인해 압류실익이 없었음.
- 체납발생 즉시 체납법인 부동산 소유권 변동 분석 및 신속한 현장 탐문으로 체납법인이 울산 남구 모 아파트 개발 시행사이고 교보자산신탁회사가 분양 수탁자라는 사실을 파악하여 신탁수입금 압류 공문을 발송하고 담당자로부터 공문 접수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함.
- 몇 개월뒤 체납세 독려차 신탁회사 본사(서울시 강남구 소재)를 방문하여 법무 담당자를 만나 확인한 결과 분양팀 담당자의 잦은 변경으로 압류 공문을 전달 받지 못하여 압류가 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전 담당자를 찾아 압류순위가 바뀔 경우 형사처벌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주지시키고 압류한 사실을 재차 확인함.
- 고액체납자 전담 체납기동팀을 신설하여 신속한 현장방문, 신탁회사 전화독려 및 방문, 신탁수익금의 조속한 배당진행을 위하여
- 부산지방국세청과 울산광역시와 채권자 변호사와의 촘촘한 공조로 체납액 전액을 징수할 수 있었음.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지방소득세(법인소득) 등 16건 1,599백만원 전액 징수
 - 2020. 07. 29. 울산 남구 지방세환급금 압류 추심 394백만원
 - 2020. 08. 14. 서울중앙지방법원 공탁금 배당 1,205백만원

[경기도] 2020년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type="checkbox"/> 체납징수분야
사 례 명	전국최초,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 실시
기 관 명	경기도 본청 <input type="checkbox"/> 광역
담 당 자	조세정의과

< 요약 >

-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동산공매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 하는 등 **전국 최초**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비대면 **온라인 전자공매 실시**
- 명품가방·시계, 귀금속 등 고질적 상습 체납자의 가택수색을 통해 확보한 고가의 동산을 강제 매각하여 체납액을 징수하고 대국민 홍보를 통한 공정과세에 의지 전파
- ※ 동산압류 및 전자공매를 통한 징수액 : 641건, 10.5억원 징수
(전자공매 450건, 4.5억원 + 자진납부 191건 6억원)

위와 같이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0. 10. 10 .

경기도지사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전국최초,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 실시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추진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는 2015년부터 OFF-LINE 방식의 동산공매를 실시하여왔으나, 코로나19 상황에서는 기존의 대규모 인원이 집합하는 공매방식은 추진이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 - 이에 경기도는 전국최초로 지방세 체납자의 압류동산을 '온라인 전자공매'방식을 연구·검토하여 추진하였음 ○ 추진기간 : 2020년 5월 ~ 2020년 10월 /사업비 15백만원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05월 : 코로나19 사태 대비, 비대면 온라인 전자공매 검토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 권역별 회의(3회) ○ '20.07월 :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 계획수립(도지사) 감정평가업체 선정(3개업체중 라올스 선정) ○ '20.08월 : 전자공매 시스템 구축(정보통신부서 협업) 31개 시군 공매담당자 동산공매 교육 실시(2회) 동산공매관련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행안부건의 ○ '20.09월 : 21개 시군의 동산 압류물품 인수인계 압류물품 감정평가 실시(500건, 평가액 3.4억원) ○ '20.10월 : 방송, 신문사, 리플릿, 시민기자단 등 대국민홍보 온라인 전자공매 결과보고(도지사)
③ 장애요인 및 극복 내용	<p><문제점></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경기도는 2015년부터 매년 OFF-LINE 방식으로 동산공매를 시행해 왔으나, 2020년은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집합방식의 동산공매가 불가능함에 따라 온라인 전자공매 방식을 계획하여 전자시스템을 구축개발 하였음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자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사이트 구동방식, 보안성문제, 입찰편의제공, 공매물품 인도, 대국민홍보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였음 <p><장애극복></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온라인 전자공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정보통신부서와 협업하여 G클라우드 서버기반을 활용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안성 검토 및 시스템 동시접속인원(5천명→1만명)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와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함 ○ 경기도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내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67명)과 함께 3차례의 4개 권역별 회의를 통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개선방안을 강구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특히, 동산공매 유찰관련하여 최고가 입찰자의 낙찰포기 및 허위입찰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행안부에 건의함(경기도 조세정의과-12680호) ○ 또한, 31개 시군 공매담당자의 민원대응과 시스템 운영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 「압류동산 전자공매 업무」 및 「동산공매 운영절차」에 대한 2차례의 교육을 실시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산공매 매뉴얼」을 제작하여 시군 배포·활용 - 공매담당자간 소통을 위한 단체카톡방을 만들어 정보공유 ○ 시민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홈페이지) 경기도 및 31개 시군 홈페이지 배너 광고 게재 - (언론보도) 연합뉴스, 중앙일간지, 지역신문 등 보도자료 배포 - (방송) KBS 등 방송3사와 경인방송 홍보 - (버스광고) 경기G버스에 홍보동영상 송출 - (리플릿)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도내 공공기관에 게시 - (시민기자단) 경기도가 운영중인 시민기자단 활용, 블로거 등 게시
<p>④ 우수사례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최초,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의 비대면 온라인 전자공매시스템 구축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 명품가방·시계, 귀금속 등 고질적 상습 체납자의 가택수색으로 확보한 고가의 동산 500건을 효율적으로 매각 ○ 대국민 홍보로 경기도의 공정과세 및 성실납세자 보호의지 전파
<p>⑤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동산압류 및 전자공매를 통한 징수액 : 641건, 10.5억원 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공매를 통한 징수 : 450건, 체납액 4.5억원 징수 - 압류동산 자진납부 및 반환 : 191건, 체납액 6억원 징수 ※ 2020년 8월말 기준,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691건

전국최초,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 실시

1. 과제선정 배경

-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 직접공매(OFF-LINE)는 2015년부터 경기도가 전국최초로 실시하고 있는 주요 시책 중 하나임
-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기 위하여 OFF-LINE 동산공매를 통한 체납처분 실시는 어려운 상황에 직면함. 새로운 공매방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함
- 이에 경기도는 전국최초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에 대한 ‘온라인 전자공매’를 연구하여 전자공매시스템을 구축하고 공매를 실시하였음

2. 추진 경과

- ‘20.05월 : 코로나19 사태 대비, 비대면 온라인 전자공매 검토
31개 시군 광역체납기동반 권역별 회의(3회)
- ‘20.07월 : 압류동산 온라인 전자공매 계획수립(도지사)
감정평가업체 선정(3개업체중 라올스 선정)
- ‘20.08월 : 전자공매 시스템 구축(정보통신부서 협업)
31개 시군 공매담당자 동산공매 교육 실시(2회)
동산공매관련 「지방세징수법」 개정안 행안부 건의
- ‘20.09월 : 21개 시군의 동산 압류물품 인수인계
압류물품 감정평가 실시(500건, 평가액 3.4억원)
- ‘20.10월 : 방송, 신문사, 리플릿, 시민기자단 등 대국민홍보
온라인 전자공매 결과보고(도지사)

3. 문제점과 장애극복

< 문제점 >

- 경기도는 2015년부터 매년 OFF-LINE 방식으로 동산공매를 시행해 왔으나, 2020년 올해는 코로나19로 인해 대규모 집합방식의 동산공매가 불가능함에 따라 온라인 방식의 전자공매를 기획하여 전자시스템을 구축하였음
- 경기도가 전국 최초로 전자시스템을 구축함에 있어서 사이트 구동 방식, 보안성문제, 입찰편의제공, 공매물품 인도 등 많은 문제점을 발생하였음
- 또한, 전자공매가 처음으로 실시되기 때문에 시민들의 참여가 저조할 수 있어 대국민 홍보가 필요함

< 장애극복 >

- (시스템구축) 온라인 전자공매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하여 경기도 정보통신부서와 협업하여 G클라우드 서버기반을 활용함
 - 보안성 검토 및 시스템 동시접속인원(5천명→1만명)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부서와 수차례의 협의를 통해 확정함
- (시군협업) 경기도는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도내 31개 시군 광역채납기동반(67명)을 4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3회 권역별 회의를 통해 문제점을 분석하고 해결방안을 강구하였음



- 회의결과, 동산공매 유찰관련 최고가 입찰자의 낙찰포기, 허위입찰 등으로 유찰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하여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행안부에 건의(경기도 조세정의과-12680, 2020.8.25.)

< 동산공매 교육 현황 >

- 1차 : 2020.8.12.(수) 14시 / 경기도인개개발원 다산홀, 52명 참석
- 2차 : 2020.10.12.(월) 14시 / 경기도노인회관 회의실, 48명 참석



- (낙찰자보호) 공정한 동산공매를 진행하기 위하여 감정평가업체 선정하고 낙찰자보호를 위한 ‘낙찰자 보증제도’를 실시함
 - 낙찰 후, 가품으로 판명될 경우 낙찰금액 환불 및 감정가액의 100%를 보상하는 조건을 요구하여 확정함



- (홍보) 경기도가 전국최초로 실시하는 전자공매는 시민들의 참여율을 높이기 위한 다양한 홍보매체를 활용하여 대국민 홍보 강화
 - 홈페이지 : 경기도 및 31개 시군 홈페이지 배너 광고 게재
 - 언론보도 : 연합뉴스, 중앙일간지, 지역신문 등 보도자료 배포

- 방송 : KBS 등 방송3사와 경인방송 홍보
- 버스광고 : 경기G버스에 홍보동영상 송출
- 리플릿 : 안내 리플릿을 제작하여 도내 공공기관에 게시
- 시민기자단 : 경기도가 운영중인 시민기자단 활용, 블로거 등 게시

5. 추진 성과

- 전국최초, 지방세 체납자 압류동산의 비대면 온라인 전자공매시스템 구축으로 코로나19 위기 극복
 - 명품가방·시계, 귀금속 등 고질적 상습 체납자의 가택수색으로 확보한 고가의 동산 500건(감정가액 3.4억원)을 효율적으로 매각
 - 전자공매를 통한 징수 : 430건, 체납액 4.5억원 징수
 - 압류동산 자진납부 및 반환 : 191건, 체납액 6억원 징수
- ※ 2020년 8월말 기준, 가택수색을 통한 동산압류 691건

【 품목별 현황 】

(단위: 건)

합 계	명품가방	명품시계	귀금속	골프채	양주	기타
500	73	32	336	15	18	26

【 품목별 감정최고가 】

명품가방 샤넬 270만원	명품시계 파텍필립 330만원	귀금속 다이아반지 225만원	양주 루이13세 63만원
			

- 대국민 홍보로 경기도의 공정과세 및 성실납세자 보호의지 전파

□ 사례명 : 등록이 필요없는 차량 취득세 누락세원 발굴 및 개선
(리스 및 지입차량 중심으로)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록을 요하지 않는 차량취득세는 취득근거자료 수집이 어렵고, 취득자조차도 신고납부의무에 대한 인지도가 낮아 신고율도 낮고, 조사하여 추징하는 일도 쉽지 않음 ○ 계속 누락세원이 누증되어가고 있는 취득세를 효율적으로 징수 할 수 있는 방안이 시급하였음 ○ 리스 및 지입차량의 취득세 납세자의 취득 근거자료를 연관성 있는 업무 시스템에서 자료를 찾아 전수조사하여 추징 후 누락세원이 원천차단 될 수 있도록 매월 자료를 제출받아 납세자가 기한 내 신고 할 수 있도록 업무를 개선함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10. : 리스 차량 취득세 전수조사 ○ '19. 11. : 미신고자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 ○ '20. 01. : 리스 차량 취득세 추징 ○ '20. 06. : 지입 차량 취득세 전수조사 ○ '20. 09. : 미신고자 취득세 과세예고 통지 ○ '20. 09. : 리스 및 지입차량 과세자료 매월 제출받아 납기내 자진신고납부 안내문 발송으로 세원관리 실시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근거자료 수집의 어려움을 연관성 있는 업무시스템에서 아이디어를 찾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리스차량의 경우 리스회사로부터 납세자의 리스종료 확인서 등 과세자료수집 불가로 차량등록 시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의 차량을 저장 설정하는 점에 착안하여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상의 저장말소일자를 조사하여 미신고 취득세를 추징함 - 지입차량의 경우 등록을 수반하지 않는 지입차주 간 양도양수계약과 지입업체와 위·수탁계약만으로 거래를 한 후 운송사업 유류보조금 신청을 지입차주명의로 하는 점에 착안하여 해당부서 신청한 “유류보조금 지급 대장”을 조사하여 취득세를 추징함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납세자로부터의 취득근거자료 확보가 어려워 연관된 업무 시스템에서 자료를 찾는 아이디어로 조사를 완료하고, ○ 과세자료 확보의 어려움을 실감하고 리스이용자는 매월 저장 말소자료를 확인하여 납부여부를 확인하고 ○ 지입차주는 유류보조금 지급부서에서 매월 과세자료를 제출받아 납세자에게 취득세 신고납부안내문을 발송하여 누락세원발생을 원천 차단하고 납세편의 제공을 함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방세(차량취득세) 131백만원 발굴 ○ 전국사례전파로 약29,344백만원 지방세(차량취득세) 징수예상

등록이 필요없는 차량 취득세 누락세원 발굴 및 개선

1. 과제 선정 내용

- (현황) 차량취득세는 등록을 하면서 신고납부하는 방식이나, 등록 없이 취득을 하는 납세의무자는 신고의무에 대한 인지도가 낮고, 추징하려고 해도 과세자료 확보가 어려워 쉽게 세원이 누락되는 사례가 있는데 그중 리스 및 지입차량이 대표적임
- 리스차량의 취득세 자진신고 분야
 - (현황) 최초 리스계약차량 중 리스이용자면서 실질 취득자는 리스회사인 경우 등록면허세는 등록명의자인 리스이용자가 취득세는 리스회사가 납세의무자가 됨. 리스가 종료되면 리스이용자가 리스회사로부터 차량을 취득하게 되고 이미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되어 별도 등록절차 없이 리스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세 2%를 자진신고 해야 함
 - 리스종료 시 리스회사가 리스이용자에게 취득세신고서류와 안내문 제공받아 리스이용자는 취득세를 신고납부하고 있음
 - 리스회사는 이러한 취득과세자료를 과세관청에 제공하고 있지 않으며 요청을 해도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들어 자료제출이 안되고 있음
 - (문제점) 성실한 납세자는 안내문을 받고 자진신고를 하지만, 미신고 경우는 과세자료확보가 안되어 조사하여 부과 시스템이 갖추어있지 않아 부과를 못하고 누락되는 세원을 심중으로 의심하면서 불공평한 부과 체계임을 느끼게 됨
- 지입차량의 취득세 자진신고 분야
 - (현황) 지입계약차량은 지입회사는 등록명의자로 등록면허세 납세자고 지입차주는 실질 취득자로 취득세 납세자임. 최초 차량을 취득 후 지입회사와 계약을 하는 지입차주는 등록 당시 취득세 자진신고함

- 대부분 지입회사가 지입차주를 대리하여 등록과 현물출자 등재를 하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만 신고하거나 취득세 담당자를 통하여 신고납부안내를 받고 신고하고 있음
 - 그러나 지입회사로 등록된 차량을 지입차주 간 양도양수 하는 경우 등록을 수반하지 않으므로 신고납부가 되지 않고 있음
 - (문제점) 결국 취득세는 등록과 수반되는 차주의 취득과 현물출자 등재할 때 자진신고하게 되고, 차주 간 거래는 현물출자 기재시만 취득세담당자가 꼼꼼한 확인을 통하여 납부하게 됨. 취득세 담당자는 꼼꼼한 확인을 하여 누락된 취득세를 부과를 하면서 더욱 누증 되어 가고 있을 누락세원을 부과하지 못하게 됨을 무거운 짐으로 안고 가게 됨
- 추정 및 개선방안
- 두가지 모두 취득근거자료 수집이 어렵다는 공통점으로 각각의 연관성 있는 업무시스템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과세자료로 활용 가능한지를 조사하여 추정 및 업무개선을 하여 누락세원을 원천 차단하고 납세편의도 제공 할 수 있어 우수사례과제로 선정함

2. 문제원인 분석

- 정의
- 이용자리스 차량이란 ? 시설대여업자는 이용자와 차량리스계약 체결 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33조(등기·등록상의 특례)에 따라 대여시설이용자 명의로 등록운행하는 차량을 이용자리스 차량이라고 함.
 - 지입차량이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제40조에 근거해 운수회사 명의로 본인차량을 등록(‘현물출자’라고 함)해 운송회사 사업일부를 수탁한 차주의 차량을 통상적으로 지입차량이라고 함

○ 취득세 신고납부 개요

납세자	리스이용자	지입차주
취득일	리스종료일	잔금지급일
신고납부기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
취득근거서류	리스종료확인서 및 취득대금계산서	위수탁계약서 및 양도증명서
신고납부안내	시설대여업자가 취득근거서류와 취득세 신고납부안내문 지급	지입업체가 자동차등록 및 현물출자 기재시 대리신고, 차주간 거래 미신고

○ 전수조사 결과 취득세 신고납부 현황

구분	신고기간	신고율	신고대상				
			합계	신고자	미신고자	반납	사용본거지 이동
리스차량	2011.6.1.~ 2018.12.31	40%	194건	79건	52건	17건	46건
지입차량	2015.1.1.~ 2020.5.30	77%	1,152건	895건	257건	-	-

※ 리스차량이 지입차량보다 신고율이 낮은 이유는 최초 리스이용자 명의로 등록하고 리스종료 시 타 지역으로 진출가는 사례가 23% 정도되고 최초 리스이용자 등록지에서 진출지로의 과세자료 통보가 없어 부과에 어려움이 생김

○ 문제점(리스차량)

- 이용자리스 차량은 이용자명의로 등록 후 차량매입조건으로 계약 종료 시 리스이용자는 해당차량의 취득세를 납부하지만 등록이 필요치 않아 자진신고하지 않는 경우가 다반사임
- 당초 리스계약서상 리스계약 종료 후 차량 매입 및 반납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고 계약종료 시 차량 매입여부에 대해 리스회사의 별도 확인이 필요함. 최근 개인정보보호법 강화로 리스회사에서 과세관청의 과세자료 제출 요청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어 과세자료 수집 어려움.
- 리스계약은 리스회사와 계약자간 협의에 의해 언제든지 변경가능하고 계약종료 전 차량을 중도 매입할 수 있어 차량매입시점이 불특정함에 따라 차량 매입여부를 수시로 조사해야 함.

- 리스종료일이 취득일로 최초등록지와 리스종료시 등록지가 변경되는 경우는 최초 리스차량 취득세 납부지에서 리스종료시 변경된 납세지로 과세 자료 통보 체계가 없어 세원관리가 어려움
- 문제점(지입차량)
 - 2014.11.28.부터 운송사업자가 지입차주와 지입계약을 할 경우 현 물출자한 위·수탁차량임을 등록원부에 기재하는 것을 의무화하였으나 이행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함
 - 운수회사명의로 등록된 지입차량을 매매하는 경우 차량등록원부 상 현 물출자를 기재하지 않으면 과세관청에서 등록원부 상 차량매매 사실을 확인할 수 없음
 - 운수회사는 운수회사 내 지입차주 변경 시 취득세 신고하지 않더라도 지입차량 운행 및 유류보조금 지원을 받는 데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취득세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는 경우가 다반사임

3. 방안 마련 및 실행

- (리스차량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저당말소자료 추출)
 - 리스회사는 리스이용자로 등록 후 자동차원부 읍부에 저당설정을 한 후 리스 종료시 저당말소의 절차를 하는것에 착안
 - 리스회사가 취득한 차량(=이용자 리스 차량)에 대해 자동차관리정보 시스템에서 저당권말소 여부를 조사
 - 저당말소 후 취득세 미신고된 납세자에게 과세예고통지를 통하여 차량 매입 및 반납여부를 조사함
- (지입차량 = 교통과 유류보조금 지급내역 추출)
 - 교통과에서 지급하는 유류보조금이 지입업체가 아니라 지입차주에게 지급되는 것에 착안

- 교통과에 5년간 유류보조금 지급내역 및 위·수탁계약서 요청
- 유류보조금 지급신청일과 차량번호로 차대번호 조사 후 지입차주 취득세 신고내역 조사
- 지방세시스템 [2711]단순등록면허세(등록)상 차량번호 기재 후 등록 원인에 현물출자입력 후 부메뉴로 차량 전국과세자료 조회해 전국 과세내역 검토
- 지입회사로부터 지입차주 위·수탁계약서 및 지입료 납입내역을 제출 받아 최종 확인 후 과세예고문 발송

※ 주요추징사례

사례1. 운수회사내 지입차주 변경

▶ 등록원부

1-6	명의이전등록	성명(상호) : (주)이 주소 : 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등록일자 : 2018-02-26 이전등록구분:당차차거래이 주행거리 : 124194	110111	2018-02-
1-7	자동차검사	(주)현대오토서비스 검사구분 : 정기검사 주행거리 : 181983		2018-08-
1-8	자동차검사	운수원대서비스(주) 검사구분 : 정기검사 주행거리 : 270427		2019-09-
1-9	저당설정	구분 : 단독저당 글부번호 : 4127-2019-001758		2019-10-
	등록원부특기사항	위 차량은 김 (640523-*)와 주식회사 마 를 체결함. (110111-*)간 현물출자 위·수탁 계약		2016-09-

▶ 보조금 지급내역

유류보조금 지급내역	지입차주	운수회사(지입회사)			
접수일자	차량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사업자)번호	업체명
2017-01-27	경기82바6457	김	640523-	134511	(주)신
2019-09-24	경기82바6457	미	820221-	110111	(주)O

→ 김**으로 현물출자 기재 후 유류보조금을 지입차주 김**이 수령하다 등록원부 상 기재사항 변경없이 2019.09.24부터 유류보조금을 이▲▲이 수령한 사실을 확인함.

사례2. 직영차량의 영업용번호판을 지입차주가 매입하는 경우

▶ 등록원부

1-30	명의이전등록	성명(상호) : 주식회사 마 주소 : 경기도 오산시 동부대로 등록일자 : 2018-06-15 이전등록구분:당차차거래이 주행거리 : 5455247	110111	2018-06-15
------	--------	-------------------------------------------------------------------------------------------	--------	------------

▶ 보조금 지급내역

유류보조금 지급내역	지입차주	운수회사(지입회사)			
접수일자	차량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사업자)번호	업체명
2018-07-04	경기85바	전	890525-	110111-	(주)O

→ 2018. 6. 15.운수회사 직영으로 취득세 신고하고 유류보조금은 2018. 7. 4.지입차주 전**이 수령함. 지입차주는 운수회사의 직영차량 영업용번호를 매입한 후 취득세 신고 없이 지입회사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사례임.

사례3. 운수회사 및 차주 변동없이 차량 변경

▶ 등록원부(차량1,차량2)

차대번호	자동차등록번호	원번호	소유자	시도	사용분	거주주소	시작일	종료일	
K	057627	경기85지	이전 (주)가	경기	경기도	오산시	경기동	2016.12.29	9999.12.31
K	000266	경기85지	호말(주)가	경기	경기도	오산시	경기동	2011.01.10	2016.12.31

▶ 보조금 지급내역

유류보조금 지급내역	지입차주	운수회사(지입회사)				
접수일자	차량번호	차대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사업자)번호	업체명
2016-04-20	경기85지	K	김	730926-	134811-	(주)가
2016-12-07	경기85지	K	김	730926-	134811-	(주)가
2019-04-09	경기85지	K	김	730926-	134811-	(주)가

→ (주)가과 김**과 2015년이전부터 위·수탁계약 체결하고 2016.12.29. 동일한 차량번호로 운수회사 직영차량 신고함. 추후 유류보조금 지급내역을 확인해본 결과 김**이 중고차를 새로 구입해 현물출자한 차량임을 확인함.

사례4. 위·수탁계약 체결자와 유류보조금 수령인이 상이한 경우

▶ 등록원부

1-3	명의이전등록	성명(상호) : (주)전 주소 : 경기도 오산시 현물출 등록일자 : 2015-08-18 이전등록구분:매매입자거래이 주행거리 : 45000	131311	2015-08-18
1-9	변경등록	주소 : 경기도 용천시 서탄면 내천길 위 차량은 김 (691209-*)과 주식회사 전 (131311-*)간 현물출자 위·수탁 계약을 체결 함		2018-06-2
	등록원부특기사항	김 (691209-*)과 주식회사 전 (131311-*)간 현물출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하 고		2015-08-1
	등록원부특기사항	김 (560123-*)와 주식회사 전 (131311-*)간 현물출자 위·수탁 계약을 체결함		2016-11-1

▶ 보조금 지급내역

유류보조금 지급내역	지입차주	운수회사(지입회사)			
접수일자	차량번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민(사업자)번호	업체명
2016-12-05	경기85사	주	600805-	131311-	(주)전

→ 현물출자기재 및 취득세 신고자 원**과 유류보조금 수령인 주▲▲이 상이함. 조사결과 당초 차주 원**이 운수사업자등록 자격미달로 배우자 명의로 위·수탁계약을 운수회사와 체결함.

4. 장애극복

○ (리스차량)

-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매월 저당권말소가 실행 된 이용자리스 차량에 대해 취득세 자진신고납부 안내문 발송하여 매입 및 반납여부 확인하여 자진신고 유도

※ 저당권 유지되고 있는 리스차량 차량번호와 차대번호로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의 저당말소 자료제공 받을 수 있음



- (리스회사 협조요청) 리스회사에 이용자리스 종료시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 및 납부확인서 제출하도록 장려
- (자치단체간 과세자료 협조요청) 리스회사 취득세 과세차량 저당말소시 관할 지 변경자료 매월 과세자료 통보체계 구축 시급
- 리스차량 개선된 업무 흐름도

1단계 : 매월초 대여시설업자 납부한 취득세과세자료를 자동차정보관리시스템에 저당말소자료 요청

2단계 : 저당말소자중 취득세 미신고자에게 60일 이내 자진신고납부안내문 발송
 → 납세자는 리스종료확인서와 세금계산서등으로 자진신고하거나, 리스반납자는 취득세 납세의무자가 아니므로 리스종료확인서에 반납인지 자료만 제출하게됨
 ※ 저당말소 당시 사용본거지가 변경된 납세자는 해당 과세관청으로 과세자료 통보



3단계 : 자진신고납부대상자중 미신고자는 저당말소일을 취득일로 과세예고 통지
 → 소명자료 제출의 기회가 한번 더 주어짐

4단계 : 과세예고 대상자 중 미납자 부과지 (추징)

○ (지입차량)

- (매월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매월 교통과로부터 유류보조금 지급신청자 및 수급자격 변동자료를 요청해 지입차주들에게 취득세 자진신고 안내문 발송

※ 매월 유류보조금 지급내역 요청 공문


오 산 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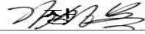
수신 교통과장
(경유)

제목 취득세 과세자료(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내역) 매월 제출 요청

1. 관련근거 : 지방세기본법 제130조 【과세자료의 수집에 관한 협조 요청】
 2. 지입차량 중 차량을 취득하는 차주는 등록여부와 무관하여 취득세를 미신고하는 사례가 많아 매월 정기적으로 “화물자동차 유류보조금 신청내역”을 확인하여 차주에게 취득세 자진신고 납부 안내 및 부과를 하는데 활용하고자 다음과 같이 자료를 요청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류보조금 신청기간	제출기한	요청자료	필수기재 사항
2015. 1. 1. ~ 2020. 5. 30.	기제출	1. 지입회사 내 지입차주 유류보조금 신청내역 2. 위수탁 계약서 또는 양도 증명서 -> 신규소유 및 지입차주 간 소유권변경만 제출	1. 지입회사명 2. 차량번호 및 차대번호 3. 지입차주 성명 및 주민번호 4. 유류보조금 신청 및 종료일
2020. 06. 01. ~ 2020. 08. 31.	9월 14일 (월)		
매월 자료 (예: 9월분)	다음달 5일까지 정기 제출 (예: 10.5.까지)		

※ 매월 자료는 정기적으로 다음달 5일까지 제출요망. 끝.

세 정 과


- 지입차량 개선된 업무 흐름도

1단계 : 매월초 교통과에서 지입차주 유류보조금지급대장 제출 받음
2단계 : 지입차주 차량 취득자증 미신고자에게 60일 이내 자진신고납부안내문 발송 → 납세자는 양도계약서등으로 자진신고
3단계 : 자진신고납부대상자중 미신고자는 유가보조금 지급신청일자를 취득일로 과세예고 통지
4단계 : 과세예고 대상자 중 미납자 부과고지 (추징)

○ 향후 건의사항

- 전국리스회사 있는 리스종료차량과 유류비지급대장 시스템을 매월 지방세정보시스템에 연계되면 자료 확보가 되어 시간과 노력이 절감 될 것으로 예상됨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오산시 차량취득세 추징세액 : 131백만원

⇒ 전국 일제조사시 오산시의 224배인 29,344백만원 추징 예상

구 분	추징건수	추징금액	조사 대상	비 고
리스차량	52건	15백만원	5년분	
지입차량	130건	116백만원	5년분	
합계	182건	131백만원		
전국추징 예상금액	182건×224배 =40,768건	131백만원×224배 =29,344백만원	5년분	2020.8월 현재 전국등록차량 오산의 224배 =전국24,130,140/오산 107,667

[공주시] 2020년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type="checkbox"/> 체납징수 <input type="checkbox"/> 세무조사 <input checked="" type="checkbox"/> 벤치마킹·기타 ※ 2019년, 충청남도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 벤치마킹
사 례 명	'꼭꼭 숨은 부동산'을 찾아라! 공매 不可 부동산은 없다.
기 관 명	충청남도 공주시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 <input type="checkbox"/> 군 <input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세무과
< 요약 > * ※ 징수성과 등 사례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5줄이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치마킹 후 장기 압류 부동산을 민사소송 및 납세담보 공매로 91백만원 징수 ○ 1999년 경매 낙찰 후 미등기된 은닉부동산을 발견하여 체납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 선순위 피담보채권 말소 등을 통해 1순위 공매처분으로 136백만원 징수 예상 ○ 전국 최초로 은닉 부동산 발굴 및 처분 기법을 개발하여 전파 	

위와 같이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0. 10. 5.

공주시장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꼭꼭 숨은 부동산’ 을 찾아라! 공매 不可 부동산은 없다.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충청남도 지방세 공동관리 T/F에서 체납처분이 어려운 장기 고액 체납자에 대한 공매 징수 기법 벤치마킹 - 공매 징수 기법 도입·실행 중 은닉 부동산 발굴 - 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등록 없이도 언제든지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 은닉 가능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 추진기간 : 2019. 5 ~ 현재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치마킹] 민사소송을 통한 피담보채권 말소 후 공매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5 ~ ‘20. 3 : 조세회피 상습·고액체납자에 장기압류재산 조사 - ‘19. 6 ~‘19. 12 : 민사소송을 통한 압류부동산에 피담보채권 말소 - ‘20. 1 ~현재 : 피담보채권이 말소된 압류부동산 전부 공매 징수 ○ [벤치마킹] 체납처분유예를 통한 납세담보등기 설정 후 공매처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6 ~ 현재 : 체납처분유예 후 압류 부동산 납세담보등기 설정 - ‘20. 1 ~현재 : 납세담보를 통한 선순위 확보 후 공매 징수 ○ [전국최초] 은닉부동산을 발견하여 복잡한 권리관계 해결 후 공매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3 : 조세회피 상습·고액체납자 은닉부동산 발견 - ‘20. 4 : 체납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으로 체납자 명의로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 - ‘20. 5 : 선순위 근저당권 2건 , 선순위 압류1건 말소 - ‘20. 6 : 체납자 은닉부동산에 공유자 지분이 잔존하여 공유물분할 판결로 간주하고 관할법원에 판결문 발급 및 열람 → 2013년 공유자가 체납자 전 소유자를 피고로 은닉부동산에 공유물 분할을 판결로 분필하였음을 확인 - ‘20. 6 : 공유물분할 판결로 공유자에게 공유지분 말소 요청→ 거절 - ‘20. 8 : 공유물분할 대위 소유권이전등기 법원에 촉탁 → 각하 - ‘20. 8 ~9 : 공유물분할에 의한 공유자 지분 말소 소송 준비 - ‘20. 9 : 체납자를 설득하여 관할법원에 체납자 승계집행문 신청 - ‘20. 10 : 승계집행문 불허가 - ‘20. 10 :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소송중

<p>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p>	<p>□ 공매처분불가 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선순위 채권 및 압류부동산에 피담보채권으로 당해세 외 공매 실익이 없어 오랫동안 체납처분을 못하는 담보상태 → 공동관리 T/F에서 민사소송 벤치마킹 후 피담보채권 말소 → 체납자와 소통을 통한 납세담보 근저당설정 후 선순위 확보 <p>□ 체납처분불가 은닉 부동산</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상 명의 상이, 선순위 채권과다 부동산 → 전국 최초로 「<u>체납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u>」으로 체납자 대위로 매각결정허가서와 배당표로 낙찰 완납증명서 없이 경매에 의한 소유권이전 대위 등기 후 선순위 압류 ○ 은닉부동산에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분할 판결로 분필해간 지분만큼 체납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 어려움 → 승계집행문을 발급받아 소송없이 진행 : 불승인 → 변호사,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자문을 얻어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소송
<p>④ 우수사례 내용</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최초로 무재산 고액·고질 체납자의 은닉부동산을 찾아 처분할 수 있는 징수기법을 개발하여 부동산 공매처분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margin: 10px 0;"> <p><징수방법></p> <o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장기 압류 부동산 권리 분석 시 등기부에 말소되지 않은 경매사건이 존재할 경우 ② 관할 법원에서 배당표를 열람하여 경매 낙찰여부 확인 ③ 낙찰 시 낙찰자의 체납여부 확인 ④ 체납자에게 은닉재산 발견했음을 최고 후, 채권자 대위통보 ⑤ 관할 법원에서 낙찰허가서 및 배당표를 발급·첨부하여 <u>체납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으로 경매로 인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u>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자와 소통을 기반으로 압류 부동산에 납세담보에 따른 근저당권설정계약으로 선순위 권리 전환을 통한 공매처분 → 담보상태인 오래된 체납세금 징수 → 정리되지 못한 체납으로 인한 체납자의 일신상의 불이익 해소 (예: 임용고시 자격제한, 정규직 전환불가, 보조금 수령 제한 등)

<p>⑤ 성과</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사소송과 납세담보를 통한 징수액 : 91백만원 ○ 은닉부동산 및 납세담보 공매처분 후 징수 예상액 : 283 백만원 ○ 은닉부동산을 발굴하여 공매처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법은 모든 지자체에서 실무에 적용 가능하며, 특히, <u>발굴 지자체가 1순위를 선점 할 수 있어</u> 부동산의 환가가치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체납·징수업무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기대됨
-------------	----------------------------------------------------------------------------------------------------------------------------------------------------------------------------------------------------------------------------------------------------------------------------------

공매 不可 부동산은 없다.
‘꼭꼭 숨은 부동산’ 을 찾아라!

I 과제 선정 내용

○ 체납처분 불가 부동산 공매 벤치마킹

- 충청남도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에서는 한국자산관리공사 담당자를 초빙하여 체납처분이 어려운 장기 고액체납자의 압류 부동산을 공매처분 했던 사례를 벤치마킹하였다
- 민사소송을 통한 공매처분, 체납처분 유예를 통한 납세담보설정 등기사례를 도입하여 체납처분이 불가했던 부동산을 공매하여 징수한 사례를 공유하고자 한다.

○ 은닉된 경매 낙찰 부동산의 공매처분

- 장기 압류 부동산 권리분석 중 무재산으로 결손된 고액체납자가 경매 낙찰 후 소유권이전을 하지 않은 부동산을 발견하였고
- 조사결과 은닉부동산으로 밝혀져 체납자 대위로 소유권 이전 후 복잡한 권리관계를 해결하여 공매처분 준비 중이며, 136백만원 전액 징수 예상하고 있어 그 사례를 전파하고자 과제를 선정하였다.

II 문제원인 분석

- 2019년 공주시 지방세 체납액이 17,503백만원 중 부동산 압류 체납액은 6,498백만원으로 37%를 차지하는 가운데, 5년 이상 장기 압류 부동산의 체납액은 4,224백만원으로 전체 부동산 압류 체납액 중 68%를 차지하고 있어 장기 압류 부동산에 적극적인 체납정리 대책이 요구되는 실정이다.

- 장기적으로 체납처분이 진행되지 않은 압류부동산은 지자체가 주로 후순위 압류로, 당해세를 제외하고 압류 실익이 없거나 압류 전 부동산에 설정된 가처분·가등기·근저당권 등으로 공매처분이 불가능하여 장기간 체납처분을 못하고 있는 경우이다.

※ 공주시 연도별 부동산 압류된 체납액 현황 (단위 : 건 / 백만원)

합계		2000년 이전		2001~2009		2010~2014		2015~2019	
체납건	체납액	체납건	체납액	체납건	체납액	체납건	체납액	체납건	체납액
732	6,498	16	110	74	636	125	3,478	517	2,274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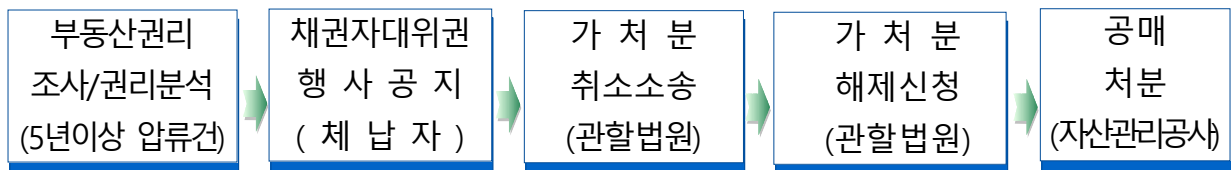
III 방안 마련 및 실행

(1) 민사소송(가처분의 취소)을 통한 부동산 공매처분

- 징수 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자 : 전주이씨**군상응파종친회 • 가처분권자 : 전주이씨**동파종중 • 체납액 : 2013~2020년 재산세 12백만원

- 세부 추진내역



– 체납자의 부동산에 있는 가처분을 살펴보니, 2006. 3. 14. **제소명령**¹⁾이 인용된 후 **제소기간이 경과**되고 가처분결정 등기일(2006. 1. 27.)로부터 13년이 지난 현재까지 가처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았음을 확인했다.

1)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채권자가 본안의 소를 제기하는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취소하여야한다.

제소명령 인용(2006.3.14.)			가처분이의 신청취하 (2006.11.9.)		
					
기본내용			기본내용		
사건번호	2006카기46	사건명	제소명령	사건번호	2006카합31
신청인	전주이씨봉무동파종중	피신청인	전주이씨덕천군상용	채권자	전주이씨봉무동파종중
제3채무자		청구금액	0원	채무자	전주이씨덕천
재판부	민사부(가)	담보내용	0원	제3채무자	청구금액 0원
접수일	2006.03.13	종국결과	2006.03.14 인용	재판부	민사부(나) (전화:041-840-5722)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접수일	2006.03.23
				종국결과	2006.11.09 신
				수리구분	제소
				병합구분	없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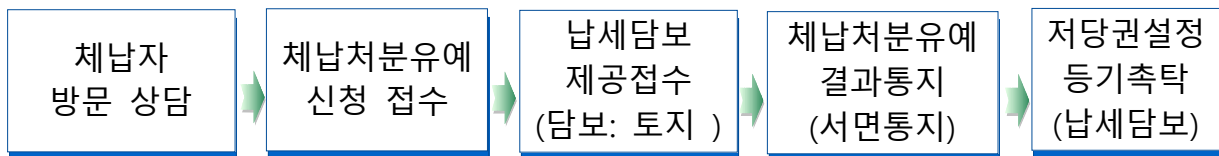
- 이는 **사정변경²⁾** 등에 따른 가처분결정 취소사유(가압류절차 준용³⁾)에 해당되므로 2020. 4. 19. 위 취소 사유로 가처분취소판결을 받아 가처분해제 후 공매 처분하여 2020. 8. 7. 종중의 체납액 12백만원 전액 징수할 수 있었다.

(2) 체납처분유예를 통한 납세담보등기 설정 후 공매처분

○ 징수 사례

- 체납자 : 오*진 / 오*준
- 체납액 : '15~'19년 재산세 오*진 19백만원, 오*준 13백만원
- 압류사항
 - 2017. 10. 27. 공주세무서 압류
 - 2017. 11. 6. 공주시청 압류

○ 세부 추진내역



2)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않으면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3) 민사집행법 제301조[가압류절차의 준용] 가처분 절차에는 가압류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 공동지분권자인 위 체납자는 오*진이 사업실패 후 행방불명된 상태였고, 동생 오*준은 대학생으로 변제력이 없음에도 체납으로 임용고시 자격 상실 등 일신상의 불이익을 받아 큰 고충을 겪고 있음을 상담을 통해 확인하였다.
- 이에, “체납처분유예에 따른 납세담보”를 받아 선순위 세무서를 우선하여 공주시가 1순위 압류권자로 공매처분하여 징수하였다.

※ 관련규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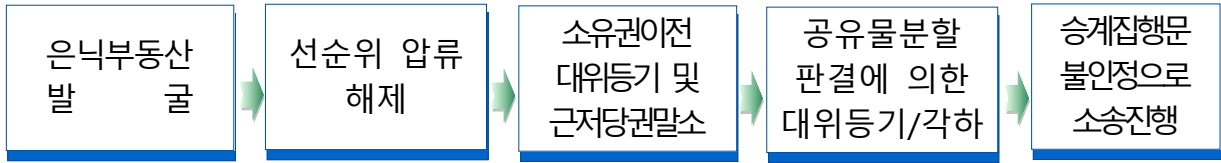
- ▶ 지방세기본법 제74조 【담보가 있는 지방세의 우선】
납세담보가 되어 있는 재산을 매각하였을 때에는 제 73조에도 불구하고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과 국세에 우선하여 징수한다.
- ▶ 지방세징수법 제105조 【체납처분 유예】 제3항
재산의 압류를 유예하거나 압류한 재산의 압류를 해제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당하는 납세담보의 제공을 요구할 수 있다.
- ▶ 지방세기본법 제67조 【담보의 제공방법】 제13항
토지, 주택, 주택외 건물, 선박, 항공기, 건설기계 또는 공장재단, 광업 재단을 납세담보로 제공하려는 자는 저당권 설정을 위한 등기 또는 등록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3) 경매 낙찰 받은 미등기 토지 체납처분

○ 징수 사례

- 체납자 : 조*천
- 체납액 : '04~'19년 지방소득세 등 131백만원 (결손)
- 결손 사유 : 무재산
- 은닉부동산 관련사항
 - 등기상 소유자 : 소*임 (2/3지분, 체납으로 인한 압류 존재)
 - 공유자 : 김*이 (1/3지분)

○ 세부 추진내역



1) 은닉부동산 발굴

- 고액 체납자 부동산 권리분석 중 압류 부동산 경매 사건이 너무 오래되어 경매사건 검색이 되지 않아 관할 법원에서 **배당표**를 열람하였고, 1999년 경매절차가 완료되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 다시 관할 법원에서 **매각결정허가서**를 발급받아 소유자를 찾아 체납 조회하니 압류 부동산 소유 체납자(소*임)가 아닌 다른 체납자(조*천)가 1998. 11. 30. 경매로 낙찰 받은 이후 등기이전을 하지 않은 상태임을 확인했다.
- 민법 제187조“경매로 낙찰 받은 부동산에 대해서는 등기를 하지 아니 한다”는 규정이 있어 제척기간에 구매받지 않고 낙찰허가결정서와 낙찰대금 완납증명서를 제시하면 언제든지 소유권을 찾을 수 있다는 사실과 체납자(조*천)가 과거 부동산 관련 사기이력이 있음을 고려하여 발견된 부동산을 은닉재산으로 판단했다.

※ 관련규정

▶ 민법 제187조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2) 선순위 기관 압류 해제

- 2020. 3. 18. 소*임으로 압류된 선순위 성북구청에 경매 소유권이전된 자료를 제공하여 부동산 압류 해제를 완료하였다.

3) 미등기 낙찰부동산에 소유권이전 대위등기 및 근저당권 말소

- 2020. 4. 23. “체납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으로 체납자(조*천) 명의의 경매 낙찰된 부동산 소유권 이전 대위등기하면서
- 경매낙찰 후 정리해야 했던 근저당 50백만원 말소하였다.

4)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공유자 지분 말소 추진내용

- 부동산 표제부 상 분할로 인하여 토지가 이기된 흔적을 확인하고 공유물분할 판결문을 열람·발급해보니, 2013년 공유자(김*이)가 공유물분할 판결로 본인 지분(1/3)만큼 분필해 갔지만 낙찰 받은 체납자(조*천)이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아 아직도 이중으로 은닉부동산에 공유자(김*이)의 지분 및 근저당권이 존재하고 있었다.
- 공유자(김*이)에게 근저당권 말소를 요청하였고, 공유자 포기 에 의한 피담보채권 말소를 할 수 있었다.
- 또한 공유자 지분 말소를 위해 2013년 공유물분할 판결문의 원고 공유자(김*이)에게 이중으로 등록된 공유지분 말소를 요청하였으나 이전 비용을 이유로 거절하였다.⁴⁾
- 다시 체납자(조*천)을 대위하여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소유권이전 대위 등기”촉탁을 하였으나 2013년 당시 공유물분할판결문의 당사자가 체납자(조*천)가 아니라 증거효력이 없다고 하여 각하되었다.
- 그 후 한국자산관리공사 및 고문 변호사의 자문으로 체납자를 설득하여 관할법원에 승계집행문을 신청하도록 하였으나 위 각하사유와 동일한 이유로 불승인되었다.
- 다시 고문 변호사 자문을 얻어 체납자(조*천)의 등기상 소유권 전부 확보를 위한“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소송”등을 진행 중이다.

4) 공유물분할판결문의 등기권리자와 등기의무자가 모두 소유권이전 등기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부동산등기법 제23조 4항)

[참고1] 경매 낙찰 부동산 대위 소유권이전 법적근거

지방세징수법	민 법
제51조[채권의 압류 절차] ②항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통지를 하였을 때에는 체납액을 한도로하여 체납자인 채권자를 대위(代位)한다.	제404조[채권자 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참고2] 대위행사 요건 및 적용대상

- 피보전채권(체납세금)이 존재하고 그 변제기(납부기한)가 경과
- 피대위채권이 존재 : 경매 낙찰로 인한 소유권이전청구권 존재
- 채권보전의 필요성 : 채무자의 무자력(채무초과)을 요구
- 채권자대위권 적용대상 : **등기신청권**, 공유물분할청구권, 상계권등

IV 장애요인 및 극복내용

○ 공매처분불가 부동산

- 선순위 채권 및 압류부동산에 피담보 채권으로 당해세 외 공매 실익이 없어 오랫동안 체납처분을 못하는 담보상태

→ 채납자를 직접 개별 방문·상담하여 채납자의 현재 상황을 파악한 뒤 체납처분유예 신청을 받아 “체납처분유예를 통한 납세담보”로 1순위로 공매 처분하여 징수할 수 있었다.

○ 체납처분불가 은닉 부동산

- 등기상 명이 상이한 경매낙찰 및 선순위 채권이 과다한 부동산

→ 전국 최초로 「**체납처분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으로 체납자 대위하여 매각결정허가서와 배당표만으로 낙찰대금 완납증명서 없이 소유권이전 대위 등기 후 선 압류할 수 있었다.

- 은닉부동산에 공유지분권자가 공유물분할 판결로 분필했으나 공유자 지분이 등기상 그대로 존재하여 체납자 명의로 지분 전체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어려운 난제에 부딪힘

→ 공유물분할 판결에 의한 기관력으로 판결문의 효력이 있다고 판단되어 소유권이전 대위등기를 하였으나 각하되었고, 체납자가 낙찰로 권한을 승계받았다고 보고 승계집행문⁵⁾을 받고자 하였으나 불인정되어,

→ 현재는 고문 변호사 자문으로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 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V 성 과

- 민사소송으로 가처분 취소 2건, 근저당권 말소 2건 판결로 체납액 41백만원 전액 징수하고, 채권자 대위 최고로 자진납부를 유도하여 체납액 20백만원 징수하였다.
- 또한 체납처분유예를 통한 납세담보에 따른 근저당권 설정계약으로 체납액 50백만원 징수하고, 체납처분유예 신청자 4명(체납액 157백만원)의 담보부동산이 공매 진행 중이다.
- 끝으로 경매 낙찰 후 미등기된 은닉부동산을 발견 후 “**체납처분에 의한 소유권 이전청구권**”으로 체납자명의로 소유권이전 대위등기 후 공매하는 방법을 전국 최초로 개발하여 충청남도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팀에 전파하였다. 부동산 환가가치가 높은 점을 감안할 때 체납·징수 업무의 파급력이 클 것으로 기대된다.

5) 민사집행법 제31조(승계집행문) 집행문은 판결에 표시된 채권자의 승계인을 위하여 내어 주거나 판결에 표시된 채무자의 승계인에 대한 집행을 위하여 내어 줄 수 있다. 다만, 그 승계가 법원에 명백한 사실이거나, 증명서로 승계를 증명한 때에 한한다.

붙임 1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 T/F 벤치마킹



2020. 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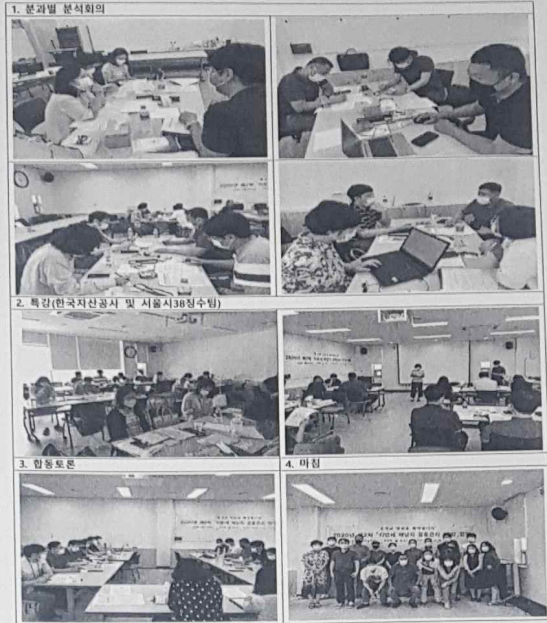
팀 장 : 행정5급 김 * * (☎3621)
담당자 : 친선6급 리 * * (☎3636)

[2020년 1차] 지방세 체납자 공동관리T/F팀 운영계획

□ 순 서

1. 개 요	1
2. 분과 편성 및 운영방안	1
3. 세부추진계획	2
4. 영정사항	3

자치행정국
(세 정 과)



인쇄 : 이순영 / 세무과 (2020-10-08 09:34:56)

예산등록번호	주무관	총무팀장	과장	역외사무국장
의 목 일				
결 재 일				
규 계 구 분	비공개(6)			
	합 조 지			

예산등록번호	세무과-6570	주무관	김수영	세무과장	서민자외국장	부시청
의 목 일	2020. 04. 17.					인결 2020. 4. 17.
결 재 일	2020. 04. 17.					
규 계 구 분	비공개(6)					
	합 조 지					

- 지방재정 확충과 지방세 체납액 일소를 위한 - 공매 不可 부동산 소유 체납자의 징수 대책

- 지방세 체납현황('19년 1월 현재 결손포함)
 - ▶ 전체 체납 : 16,887명 17,503백만원
 - ▶ 부동산 압류 체납자 : 697명 6,792백만원(38.8%)
- 압류전 설정된 부동산 권리 말소
 - ▶ 가처분,가등기,근저당권 말소 소송후 공매
 - ▶ 10년이 지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피담보채권 말소
- 기대효과
 - ▶ 민사소송을 통한 장기간 방치된 고질 체납 정리

지방세 체납자 은닉 부동산에 대한 징수 계획

세 무 과
공주시

세 무 과
공주시

붙임 2 가처분 취소판결에 따른 해제 신청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민 사 부

결 정

사 건 2019카합6 가처분취소

신 청 인 공주시

대표자 시장 김정섭

소송대리인 [인정] [인정]

피 신 청 인 전주이씨***파종중(****-3****)

공주시 계룡면 감사로 172-5

대표자 회장 이*주

주 문

1. 피신청인과 전주이씨덕천군상용파종친회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06카합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신청사건에 관하여 위 법원이 2006. 1. 27.에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은 피신청인이 부담한다.

신 청 취 지

주문과 같다.

가처분해제 신청서

사 건 : 2006카합6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채 권 자 : 전주이씨***파종중(****-3****)

충남 공주시 계룡면 [인정]

대표자 회장 이00(****-1****)

채 무 자 : 전주이씨***상용파종친회 (****-3****)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인정]

대표자 회장 이*주(****-1****)

신청인(채무자대위) : 공주시

대표자 공주시장 김정섭

충청남도 공주시 봉황로 1(307-83-03046)

위 사건에 관하여 채무자의 대위신청인 공주시가 채권자를 상대로 기한 귀원 2019카합6호 가처분결정취소사건에서 “이 법원이 2006카합6호 사건에 관하여 2006. 1. 27. 한 가처분결정을 취소한다”는 결정이 있었으며 그 결정이 2019년 5월 채권자에게 송달되었으므로 채무자의 대위신청인 별지 기재목록 부동산에 대한 가처분결정의 해제 신청을 합니다.

첨 부 서 류

1. 결정문 1부.
2. 송달증명서 / 확정증명서 각 1부.
3. 등록면허세납부서 / 등기신청수수료 납부서 각 1부.
4. 별지목록 1부.

20 . .

채무자의 대위신청인 공 주 시

대표자 시장 김정섭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귀중

붙임 3 납세담보에 따른 근저당설정 등기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29호서식)

납세담보제공서

※ 재산이 어두운 나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법인명) 오 * 준	주인(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법소) 충남 공주시 신금2길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신청(법인명)	주인(법인, 외국인)등록번호		
상호(법인명 경우 대표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영법소) 충남 공주시 신금2길			
전화번호 (휴대전화):	전자우편주소		

담보제공과 관련된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내역

대표세목	부과연월	과세번호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세납처분비
			계	지방세 가산금	
지방소득세 (양도소득)	2017	0000027	22,740,040	18,055,820	4,684,220

담보 제공 사유 : 세납처분 유예

담보의 양세 1. 충남 공주시 의당면

「지방세기본법」 제6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금 22,740,040원에 대한 납세담보를 제공합니다.

2019년 6월 일

납세담보제공자 오 * 준 (서명 또는 인)

공 주 시 장 귀하

첨부서류	납세담보 제공에 필요한 서류	수수료 납입
유의사항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 지 난에는 주요세목에 부가되는 조세(지방세, 국세)를 포함하여 가져옵니다.

210mm×297mm[복합지(80g/㎡) 또는 중질지(80g/㎡)]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채권자 김 근저당권자 공주시
 채무자 오 * 준(*****-1*****)
 근저당권설정자 오 * 준(*****-1*****)

위 당사자 간에 납세담보를 원인으로 하는 다음과 같은 근저당권 설정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 근저당설정자는 채무자가 채납처분유예 받은 금이천이백칠십사만일백일십원(W22,740,110)의 납세보증금 위해 지방세기본법 제67조 및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제46조의 규정에 의거 채권최고액은 채납처분유예 받은 금액의 120% 이상에 상당하는 이천칠백이십팔만팔천원백삼십원(W27,288,130)으로 하고, 이를 담보하고자 아래의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한다.

제2조 근저당권이 설정되는 부동산은 첫째 충남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806㎡ 지분 100분의 35 둘째로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지분 100분의 35 이다.

제3조 채무자가 약정한 이행의무를 한번이라도 지체하였을 때 또는 다른 채권자로부터 가압류·압류·경매를 당하거나 파산선고를 당하였을 때 등 채무자에 대한 채납처분 유예가 취소되는 경우 기한의 이익을 잃고 즉시 채무금 전액을 완제하여야 한다.

제4조 지당물건의 증축·개축·수리 등의 원인으로 형태가 변경된 물건과 부가 증속된 물건에도 이 근저당권의 효력이 미친다.

제5조 이 근저당에 관한 소송은 채권자 주소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6조 ① 지당권설정자는 갑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는 근저당물건을 타인에게 양도, 임대 또는 담보제공하는 등 기타 갑에게 손해를 미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다.

② 본 계약에 의하여 담보로 제공된 물건이 원인 여하를 불문하고, 변경, 멸실 또는 그 가격에 감소를 초래한 때는 지당권설정자는 즉시 그 사실을 갑에게 통지하고 근저당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추가 담보 또는 대채담보를 제공하거나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변제하여야 한다.

등기 촉탁 승낙서

부동산의 표시	1. 충남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2. 충남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등기원인과 그 연원일	20년 월 일 설정계약
등기의 목적	근저당권 설정
채권 최고액 채무자	금27,288,130원 충남 공주시 신금2길 오 * 준(9*****-1*****)

아래 채권자인 공주시에 위 부동산 근저당권설정 등기촉탁, 취하, 등기필정보 수령 및 확인에 관한 모든 행위를 위임 하는 것을 승낙합니다.

20년 월 일

위임인	의무자 : 오 * 준(*****-*****) 공주시 신금2길	의무자인
	권리자 : 공주시 307-83-03046 충남 공주시 봉황로 1	권리자인

■ 지방세기본법 시행규칙(별지 제31호서식)

납세담보에 따른 근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촉탁서

재산의 표시	충남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충남 공주시 의당면 수촌리
등기(등록)의 원인과 연월일	2019년 6월 20일 근저당권설정계약
등기(등록)의 목적	납세담보에 따른 근저당권설정 등기(등록)
채권최고액	금27,288,130원
등기(등록)권리자	충남 공주시

채무자	성명(법인명)	오 * 준
	주인(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법소)	충남 공주시 신금2길
등기(등록)의무자	성명(법인명)	오 * 준
	주인(법인, 외국인) 등록번호	
	주소(영법소)	충남 공주시 신금2길

등록면허세 비과세(「지방세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지방세기본법」 제67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제5항에 따른 납세담보 재산에 대한 저당권설정 등기(등록)를 촉탁합니다.

대전법원 공주지원 등기계 귀중

20년 월 일
촉탁공무원

공 주 시 장인

첨부서류	·지당권설정계약서 1부 ·인감증명서 1부	등기촉탁 승낙서 1부 ·납세담보제공서(사본) 1부.
접수	년 월 일 제 호	접수 기 입
		조 사 대 조 확인

직상원법

1. 납세담보재산이 선박인 경우에는 재산의 표시내에 선박의 종류 및 명칭, 선적항, 선박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과 승선자를 적고, 항공기 또는 건설기계인 경우에는 소유자의 성명과 사용목적지를 추가로 적습니다.
 2. 납세담보재산이 담보 때에는 재산목록을 별지로 첨부하고, 재산의 표시내에 "담보목적과 같음"이라고 적습니다.

붙임 4 경매 낙찰 부동산 대위등기 필요 서류

매각결정허가서	배당표																																																																
<p style="text-align: center;">매각결정허가서</p> <p>사 건 97타경4137 부동산임의경매</p> <p>낙찰인 조영진 (주소) 공주시 반포면 지동리 216</p> <p>최고가입찰가격 금 5,600,000 원정</p> <p>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하여 최고가로 입찰신고한 위 사람에게 낙찰을 허가한다.</p> <p style="text-align: right;">1998. 11. 30.</p> <p style="text-align: right;">판 사 김 성 식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20px;"> 등본입니다 서기 2020.03.13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법원주사 육은수 </p> <p style="text-align: right; margin-top: 10px;">317</p>	<p style="text-align: center;">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배당표</p> <p style="text-align: center;">97 타경 4137 부동산임의경매</p>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배당할 금액</td> <td>금</td> <td>13,187,506</td> </tr> <tr> <td rowspan="2">명</td> <td>매각대금</td> <td>12,950,000</td> </tr> <tr> <td>지연이자</td> <td>191,588</td> </tr> <tr> <td rowspan="3">세</td> <td>건대포상임</td> <td>0</td> </tr> <tr> <td>향대포상임</td> <td>0</td> </tr> <tr> <td>보증금이자</td> <td>45,918</td> </tr> <tr> <td>집행비용</td> <td>금</td> <td>1,559,900</td> </tr> <tr> <td>신체배당액</td> <td>금</td> <td>11,627,606</td> </tr> <tr> <td>매각부동산</td> <td colspan="2">별지와 같음</td> </tr> <tr> <td>채권자</td> <td>김수자</td> <td></td> </tr> <tr> <td rowspan="4">채권금액</td> <td>원금</td> <td>50,000,000</td> </tr> <tr> <td>이자</td> <td>0</td> </tr> <tr> <td>비용</td> <td>0</td> </tr> <tr> <td>계</td> <td>50,000,000</td> </tr> <tr> <td>배당순위</td> <td colspan="2">1</td> </tr> <tr> <td>이유</td> <td colspan="2">근저당권자</td> </tr> <tr> <td>채권최고액</td> <td colspan="2">0</td> </tr> <tr> <td>배당액</td> <td colspan="2">11,627,606</td> </tr> <tr> <td>잔여액</td> <td colspan="2">0</td> </tr> <tr> <td>배당비율</td> <td colspan="2">23.25521%</td> </tr> <tr> <td>공탁번호 (공탁일)</td> <td>년금제 호 (. . .)</td> <td>년금제 호 (. . .)</td> <td>년금제 호 (. . .)</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1999. 3. 26.</td> </tr> <tr> <td colspan="3" style="text-align: center;">판 사 곽 내 원 </td> </tr> </table>	배당할 금액	금	13,187,506	명	매각대금	12,950,000	지연이자	191,588	세	건대포상임	0	향대포상임	0	보증금이자	45,918	집행비용	금	1,559,900	신체배당액	금	11,627,606	매각부동산	별지와 같음		채권자	김수자		채권금액	원금	50,000,000	이자	0	비용	0	계	50,000,000	배당순위	1		이유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0		배당액	11,627,606		잔여액	0		배당비율	23.25521%		공탁번호 (공탁일)	년금제 호 (. . .)	년금제 호 (. . .)	년금제 호 (. . .)	1999. 3. 26.			판 사 곽 내 원		
배당할 금액	금	13,187,506																																																															
명	매각대금	12,950,000																																																															
	지연이자	191,588																																																															
세	건대포상임	0																																																															
	향대포상임	0																																																															
	보증금이자	45,918																																																															
집행비용	금	1,559,900																																																															
신체배당액	금	11,627,606																																																															
매각부동산	별지와 같음																																																																
채권자	김수자																																																																
채권금액	원금	50,000,000																																																															
	이자	0																																																															
	비용	0																																																															
	계	50,000,000																																																															
배당순위	1																																																																
이유	근저당권자																																																																
채권최고액	0																																																																
배당액	11,627,606																																																																
잔여액	0																																																																
배당비율	23.25521%																																																																
공탁번호 (공탁일)	년금제 호 (. . .)	년금제 호 (. . .)	년금제 호 (. . .)																																																														
1999. 3. 26.																																																																	
판 사 곽 내 원																																																																	

| 1 - 1 | |

HOME > 충남디트 > 공주·부여·청양

공주시, '민사소송·부동산 공매' 지방세 체납 강력 징수

김형중 기자 | 승인 2019.08.27 15:48



공주시가 올해 장기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를 위해 '민사소송을 통한 우선채권 확보 후 공매'라는 새로운 전문 징수기법을 도입한 결과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

HOME > 충남 > 공주·계룡·논산·아산·천안·금산·부여

공주시, '민사소송·부동산 공매' 지방세 체납 강력 징수

유환권 | 승인 2019.08.27 19:35

민사소송으로 선순위 확보 후 공매...체납액 약 3억 원 징수 기대

[동양일보 유환권 기자] 공주시는 올해 장기체납자에 대한 체납정리를 위해 '민사소송을 통한 우선채권 확보 후 공매'라는 새로운 전문 징수기법을 도입한 결과 뚜렷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27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새로운 징수기법은 지방세 체납으로 압류 후 5년 이상 된 부동산에 압류권자인 공주시가 체납자를 대신해 선순위 채권자가 설정한 부동산의 보전권리인 가처분, 가등기, 근저당권에 대하여 말소 또는 취소 소송을 거쳐 선순위 권리를 확보해 공매 징수하는 기법이다.

시는 올해 들어 민사소송을 통해 지방세 체납액 89건 1억900만원에 대한 소송 후 징수 또는 공매가 진행 중으로, 절차가 모두 마무리 되면 약 1억원의 체납액 징수가 기대된다.

이와 함께 시는 올해 20건, 8억원의 체납에 대한 부동산 공매 추진으로 현재까지 약 1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했으며, 앞으로 공매 절차가 완료되면 약 2억원의 체납액을 징수할 것으로 내다봤다.

시 관계자는 "장기간 압류상태만을 유지하던 체납액을 정리함으로써 체납액은 반드시

[기관명] 2020년 지방세 분야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type="checkbox"/> 체납징수 <input checked="" type="checkbox"/> 세무조사 <input type="checkbox"/> 벤치마킹·기타
사 례 명	<POST-COVID·의료법 기준강화> 대규모 확장공사 의료법인 세무조사
기 관 명	경상북도 구미시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 <input type="checkbox"/> 군 <input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세정과
< 요약 > * ※ 징수성과 등 사례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5줄이내)	
<p>○ 2015년 메르스 사태로 2017년 의료법이 개정되고, 코로나-19 등 신규 바이러스와 의료복지수요의 증가로 대형병원의 대규모 취득행위가 발생함으로써 의료법인의 세무조사를 통한 세원발굴 및 조사기법을 전국적으로 공유하여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하고자 함.</p> <p>○ 향후, 코로나-19 이후 더욱 증가할 의료법인의 취득행위에 대해서 누락세원을 방지하고 다양한 사례전파를 통해 의료법인의 신고시 누락을 방지하고자 함.</p>	

위와 같이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0. . .

경상북도지사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POST-COVID·의료법 기준강화> 대규모 공사 의료법인 세무조사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OVID-19·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 신규 전염병, 음압격리병실 및 의료법 기준강화에 따른 병실 증가와 의료복지수요의 증가 및 방문객 수의 증가로 주차타워 증설 등의 취득행위가 폭증, 이러한 대형병원의 취득행위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조사기법의 공유로 효율적인 세무조사 운영 필요성 제고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4. 1 : 지방세 정기세무조사 대상 선정(시장) ○ '20. 7. 13 ~ 7. 24 : B의료법인 세무조사 실시(추징완료) ○ '20. 9. 1 ~ 9. 14 : A의료법인 세무조사 실시(추징완료)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정확한 과표 산출근거를 확정하기 위하여 법인장부의 추적·역추적과 각종 전산자료 및 현장확인을 통한 끈질긴 조사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인 세무조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취득세 과표신고 적정여부 확인 : 클린룸, 건설자금이자 등 - 감면 후 미사용분, 개수(승강기,보일러) 관련 추징 - 지방소득세 및 임차법인 주민세 추징 ○ 주요 세무조사 기법 활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델하우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 누락 - 지점 보유 농업협동조합 주민세 추징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 ON) 활용 세무조사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442백만원 징수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법인 세무조사 : 116백만원 - 주요 세무조사 기법 활용 : 326백만원

POST-COVID • 의료법 기준강화에 따른
대규모 확장공사 의료법인 세무조사

- Don't give up!! 추적과 역추적을 통한 끈질긴 조사 -

목 차

I. 개 요
1. 추진배경 및 착안사항
2. 법인장부의 신뢰성
II. 의료법인 세무조사
1. 취득세 과표신고 적정여부 [사례3]
2. 미사용 감면부분 추정
3. 개수와 관련된 추정 [사례3]
4. 지방소득세 및 임차법인 주민세
5. 기대효과
III. 주요 세무조사 기법
1. M/H(모텔하우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누락
2. 지점 보유 농업협동조합 주민세 추정
3. FACTORY ON(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 활용 조사
4. 국민건강보험 자료연계 누락세원 발굴(벤치마킹)
IV. 맺음말
V. 참고자료

I. 개요

1. 추진배경 및 착안사항

○ 추진배경

- 2015년 메르스 사태로 2017년 의료법이 개정(의료시설 기준강화)에 따른 병실 침상거리 기준 확대 등으로 병실의 필요성이 증가하고,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COVID-19)·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등과 같은 신규바이러스 대비 음압격리병실 확보를 위한 건물 증축공사 시행,
-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및 실비보험가입 증가 등 의료복지수요의 증가, 방문객 수의 폭발적인 증가로 주차타워 증설 등으로 대형병원의 취득행위가 폭증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대형병원의 대규모 확장공사는 전국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세원발굴의 사례가 존재하고 이러한 조사기법의 공유로 효율적인 세무조사 운영에 도움이 되고자 합니다.

○ 지방세 및 관내 의료기관

- 인구수 및 의료기관

인구수	종합병원	병원	요양병원	한방병원	일반의원	한의원	치과의원	비고
42만명	3개	7개	7개	2개	180개	92개	104개	

- 최근 종합병원 지방세 현황

[2016~2019년도]

(단위 : 백만원)

구 분	총세액	취득세		재산세	주민세	지방소득세	기타	비고
		과표	세액					
A종합병원	2,974	1,901	25	264	925	1,756	4	
B종합병원	3,490	40,120	616	313	827	1,724	10	
C종합병원	2,084	507	18	504	431	1,118	13	

○ 착안사항

- 의료복지수요의 폭발적인 증가와 의료법 기준강화 병원의 건축물 증축, 주차타워 증설 등 대규모 취득행위에 착안
- 세무조사 대상선정기준의 강화로 지방세심의위원회의 블라인드 방식을 통한 의료법인을 조사대상으로 선정

- 다양한 조사기법을 통한 법인 장부의 추적·역추적을 통한 끈질긴 조사 및 전산자료 활용, 현장확인 등으로 정확한 산출근거를 확정하고, 기업 회계기준의 전문적인 용어에 대한 다양한 접근으로 과세대상 조사로
- 효율적인 세무조사를 위해 끊임없는 연구와 다양한 조사기법의 공유가 필요하며, 타 시군의 주요 특수시책 등을 활용하는 것이 필요

2. 법인장부의 신뢰성

- 법인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반드시 장부를 작성하고 결산을 함
- 법인의 장부는 모든 영업활동을 수치로 기장하고 매우 정교한 구조
- 지방세법에서도 법인장부를 사실상 취득가격으로 과세표준으로 인정
- 세무조사에 있어서 법인장부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고, 지방세법과 기업회계기준의 차이를 인지하여 세무조사를 시행하여야 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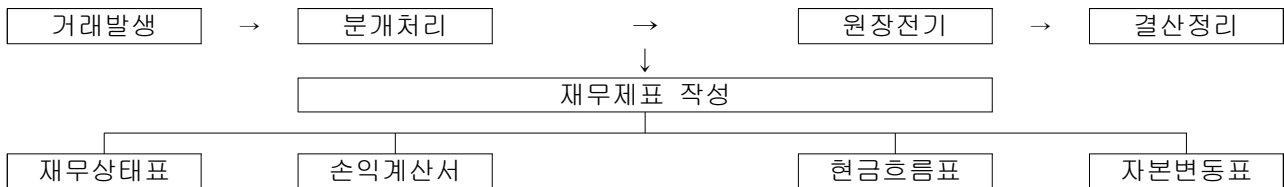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10조(과세표준)-

⑤ 다음 각 호의 취득(증여·기부, 그 밖의 무상취득 및 「소득세법」 제101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거래로 인한 취득은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제2항 단서 및 제3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사실상의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을 과세표준으로 한다.

3. 판결문·법인장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에 따라 취득가격이 증명되는 취득

<법인장부를 만드는 과정>



II. 의료법인 세무조사

1. 취득세 과표신고 적정여부 확인

[사례1. 클린룸(Clean room) - 기계장치]

○ 착안사항

- 의료법인의 계정별원장을 조사하던 중 기계장치계정에 기장된 클린룸 공사(13억)를 발견하여 추적을 시작
- 클린룸의 경우 상세내역을 확인하여 과세대상여부에 대한 파악 조사

○ 세부조사기법

- 법인의 장부에서 기계장치에 기장이 된 클린룸을 발견
- 취득세 신고여부를 확인 결과 제조시설의 클린룸과 동일하게 사례로 판단하여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신고
- 의료법인의 클린룸은 관련서류 및 현장확인으로 수술실로 확인
- 제조시설의 클린룸과 해당법인의 클린룸의 차이점을 인지시키고 누락세액 추징(건물에 부착되어 건물의 효용을 증가)
- 취득세 과표적정 여부에 대한 조사의 경우 건물 및 건설중인자산계정의 조사를 비롯하여 기계장치, 시설장치 및 비용계정(지급수수료, 세금과 공과, 이자비용, 수선비 등)의 계정조사도 병행하여 조사누락을 방지

<기계장치 계정별원장>

1220401 기계장치	2020-02-29	00183	결리됨		170,000,000
1220401 기계장치	2020-02-29	00183	결리됨		250,788,000
1220401 기계장치	2020-02-29	00183	결리됨		82,500,000
1220401 기계장치	2020-02-29	00183	결리됨		127,600,000
1220401 기계장치	2020-02-29	00183	결리됨		89,650,000
1220401 기계장치	2020-02-29	00183	결리됨		122,738,000
1220401 기계장치	2020-02-29	00183	결리됨		1,346,000,000
1220401 기계장치	2020-02-29	00183	결리됨	클린룸	30,200,000
1220401 기계장치	2020-02-29	00183	결리됨		231,200,000
1220401 기계장치	2020-02-29	00183	결리됨		89,650,000
1220401 기계장치	2020-02-29	00183	결리됨		18,518,551

◎ 쟁점사항 : 증축시 발생한 클린룸 공사의 경우 과표 산입 여부

- 과세관청입장 : 신축 및 증축과 동시에 발생한 클린룸 공사의 경우 건물과 연결되어 있고,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
- 법인입장 : 클린룸의 경우 기계장치로 기장을 하였으며, 최근 사례를 보면 취득세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맞다는 주장

<쟁점판단>

최근 판례에서 취득과표로 제외된 클린룸의 경우에는 생산시설과 연관된 클린룸으로 건축물과는 관련이 없는 생산시설로 판단되어 제외된 부분이고 병원의 클린룸의 경우는 이와는 다른 건축물의 효용가치를 상승시키는 것으로 과세표준에 포함되는 것이 맞음



<판단근거>

- 취득세 지방세운영과-75 (2017.03.10) 건축물 일부를 생산시설(클린룸)로 사용시 취득세 과표 포함 여부
 - 건축물 내부에 생산시설(클린룸)을 설치하였다고 하더라도, 건축설비 등 건축물과 고정·부착되어 건축물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설비에 해당한다면, 건축물 자체의 효용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하여야 할 것이며, 건축물과는 관련 없는 생산설비와 연관된 부분이라면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다.

⇒ 결과 : 과표누락은 인정하고 추징완료

※ 추징과표 1,223백만원, 추징세액 : 21백만원(과소신고가산세포함)

[사례2. 건설자금이자]

○ 착안사항

- 법인의 경우 건물을 증축하거나 신축할 때 차입금을 이용하게 되고, 차입금을 이용할 경우 건설자금이자가 발생
- 해당 의료법인의 경우 대규모 확장공사로 인해서 다수의 장기차입금이 발생하였고, 건설자금이자 적정신고여부에 대한 추적조사를 시행

○ 세부조사기법

- 해당법인이 신고한 건설자금이자가 장부상 이자비용의 금액이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하여 추적조사 시행
- 이자비용이 건설중인자산 및 비용계정에 분리 기장되어 정확한 금액을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발생
- 해당법인의 전체 장기차입금 대출약정서를 통해 증축관련 장기차입금을 특정하고, 차입금과 연이율을 통해 역추적하여 이자비용을 계산
- 해당 의료법인이 과소신고를 인정하여 누락세액 추정

◎ 쟁점사항 : 건설자금이자의 적정 신고 여부

- 법인입장 : 건물 증축 관련 취득세 신고시 건설자금을 계산하여 취득과표에 포함하여 신고
- 과세관청입장 : 계정별원장 및 대출약정서를 확인하던 중 건설자금이자가 과소신고납부가 되었다는 정황을 포착하고 집중조사 돌임

<쟁점판단>

법인의 경우 일반차입금으로 대출할 경우와 일반비용으로 이자비용을 계상할 경우 합당한 추정근거를 찾지 못하게 되면 추징의 어려움이 존재

<판례>대법원2017.12.7. 선고2017두57301
차입금 이자비용이 건축물 취득일 전에 발생하였더라도 부지매입에 관계된 비용이라면 건축물 신축비용으로 볼 수 없음.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금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1. 건설자금에 총당한 차입금의 이자 또는 이와 유사한 금융비용

- 추정근거 : 해당 법인의 대출약정서를 모두 확인하여 대출목적을 확인하여 관련 증축목적의 대출을 확인하여 역으로 이자비용을 계산하여 과표 차액분 계산

※ 계산방식 : 차입금액×연금리/365일×준공일까지 일수 = 이자비용

⇒ 결과 : 과표누락은 인정하고 추징완료

※ 추징과표 100백만원, 추징세액 : 2백만원(과소신고가산세포함)

[사례3. 철거비용]

○ 착안사항

- 해당 의료법인은 병원방문객의 편의를 위해서 인근 필지에 주차타워를 신축하기 위한 토지, 건물을 취득
- 대장조사 및 현장 위성지도 등의 확인을 통해 기존 건물이 철거되었음을 확인하고 철거비용이 과표에 누락되지 않았는지 추적조사 시행

○ 세부조사기법

- 취득세 신고내역 확인과정에서 기존건물에 대한 철거비용 미확인
- 해당 의료법인의 경우 철거비용을 법인의 장부에 기장을 하였지만, 취득세 신고 당시 과표산입 누락
- 건물 신축을 위한 기존 건물의 철거비용이 취득세 과세대상임을 인지 시키고 누락부분 추징

◎ 쟁점사항 : 건물신축과 관련한 철거비용의 누락

- 과세관청입장 : 법인이 토지, 건물을 매입 후 건물을 철거하고 인근필지와 같이 공작물(주차장)을 신축하였으나, 기존 건물철거비용을 취득과표에 산입하지 않고 신고함.
- 법인입장 : 기존 토지, 건물은 별도의 취득이고 철거 또한 주차장 신축 전에 철거를 시행하였기 때문에 철거비용이 취득과표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입장.

<쟁점판단>

철거비용의 경우 건물 신축을 위한 필수적인 행위로 당해 건물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을 취득과표로 하여야 하기 때문에 취득과표에 산입하는 것이 적정



<관련법령>

-지방세법 시행령 제18조(취득가격의 범위 등)-
 ① 법 제10조제5항 각 호에 따른 취득가격 또는 연부금액은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해당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직접비용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간접비용의 합계액으로 한다. 다만, 취득대금을 일시금 등으로 지급하여 일정액을 할인받은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 추징근거 : 해당법인의 취득물건을 확인하였을 때 신축 주차장 옆의 토지, 건물을 취득한 상황이 있었으나, 주차장 신축당시 신고내역에는 건물의 철거비용이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누락된 정황을 포착하여 계정별원장을 확인 후 철거비용을 누락하였음을 확인함.

⇒ 결과 : 과표누락은 인정하고 추징완료

※ 추징과표 43백만원, 추징세액 : 1백만원(과소신고가산세포함)

2. 미사용 감면부분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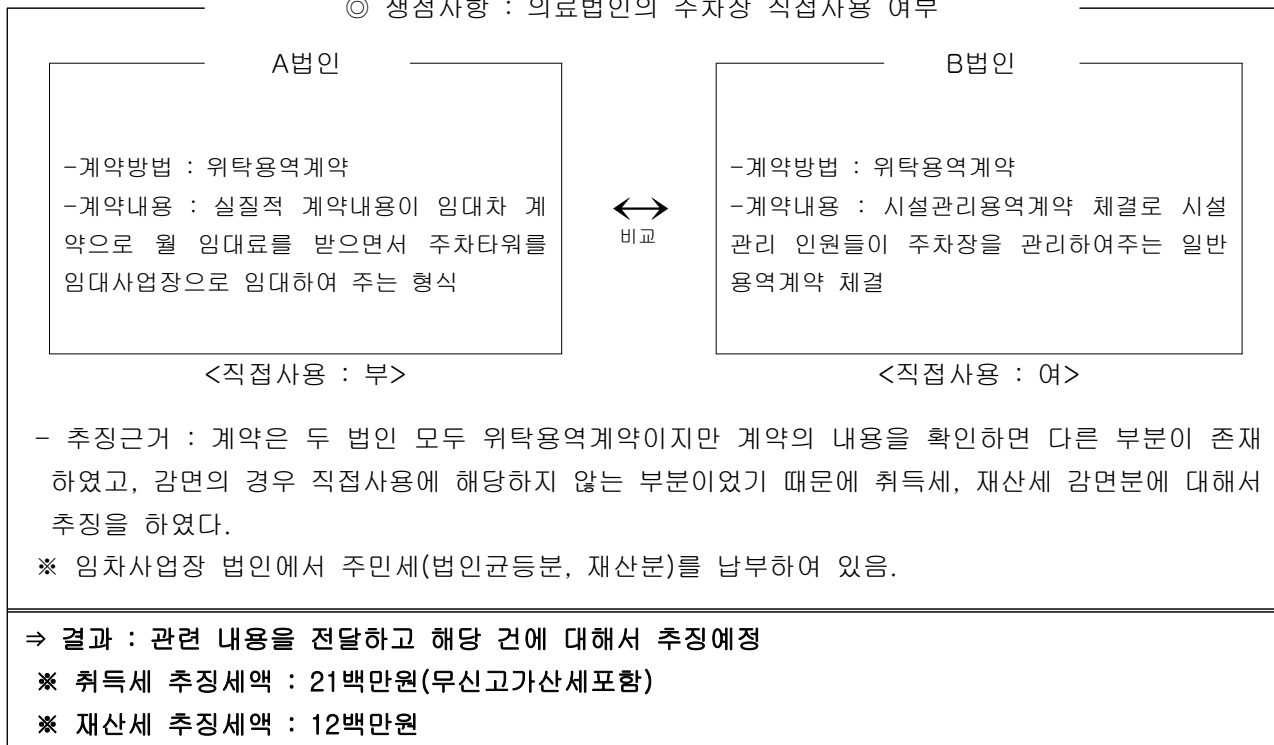
○ 착안사항

- 관내 의료법인의 경우 병원방문객의 편의를 위해서 병원부지와 인근 필지에 주차타워를 신축하였고, 취득세 및 재산세에 대한 감면을 받음
- 지방세 감면에 대해서 사후관리에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감면 물건을 고유목적에 사용 여부 및 직접사용 여부에 대한 조사를 시행

○ 세부조사기법

- 법인 제출한 임대료수익계정에서 'OO파킹'이라는 거래처의 임대료 수익이 발생하는 것을 발견
- 거래처명인 'OO파킹'에서 주차시설과 연관성을 감지하여 임대차계약서를 제출받아 검토하던 중 특이점을 발견
- 계약서 명칭은 위탁용역계약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 계약내용을 살펴보면 월 임대료를 받는 임대차 계약으로 확인
- 관내 B의료법인과 주차타워운영을 비교하니 B의료법인의 경우 일반용역계약을 체결하고 있어 차이점을 확인
-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5년)를 추정하고, 재산세 감면을 배제함으로써 미래의 세원까지 동시에 확보

◎ 쟁점사항 : 의료법인의 주차장 직접사용 여부



<임대료수익 계정별원장>

임대료수익	(07월 계)	-	-	0	16,499,995
임대료수익	구내매점 - 8월분 임대료	경리팀	구내휴게실	0	1,818,181
임대료수익	순천향복지의료기 - 8월분 임대료	경리팀	순천향복지의료기	0	818,181
임대료수익	조은죽 - 8월분 임대료	경리팀	조은죽	0	818,181
임대료수익	뫼마루식당 - 8월분 임대료	경리팀	뫼마루식당	0	1,363,636
임대료수익	주식회사 하이파킹 - 8월분 임대료	경리팀	(주)하이파킹	0	2,000,000
임대료수익	씨유순천향복지점 - 8월분 임대료	경리팀	씨유순천향복지점	0	3,636,363
임대료수익	기영약품 - 8월분 임대료	경리팀	기영약품(주)	0	2,954,545
임대료수익	(08월 계)	-	-	0	13,409,087
임대료수익	구내휴게실 - 9월분 임대료	경리팀	구내휴게실	0	1,818,181
임대료수익	휘닉스벤처서비스 - 9월분 임대료	경리팀	휘닉스벤처서비스	0	1,545,454
임대료수익	하이파킹 - 9월분 임대료	경리팀	(주)하이파킹도저비스(구 하이파킹)	0	2,000,000
임대료수익	씨유순천향복지점 - 9월분 임대료	경리팀	씨유순천향복지점	0	3,636,363
임대료수익	순천향복지의료기 - 9월분 임대료	경리팀	순천향복지의료기	0	818,181
임대료수익	조은죽 - 9월분 임대료	경리팀	조은죽	0	818,181
임대료수익	뫼마루식당 - 9월분 임대료	경리팀	뫼마루식당	0	1,363,636
임대료수익	기영약품 - 9월분 임대료	경리팀	기영약품(주)	0	2,954,545
임대료수익	(09월 계)	-	-	0	14,954,541
임대료수익	순천향복지의료기 - 10월분 임대료	경리팀	순천향복지의료기	0	818,181
임대료수익	씨유순천향복지점 - 10월분 임대료	경리팀	씨유순천향복지점	0	3,636,363
임대료수익	하이파킹 - 10월분 임대료(재계약 2016.10.01~2021.09.30)	경리팀	(주)하이파킹도저비스(구 하이파킹)	0	4,409,090
임대료수익	휘닉스벤처서비스 - 10월분 임대료	경리팀	휘닉스벤처서비스(주)	0	1,545,454
임대료수익	구내휴게실 - 10월분 임대료	경리팀	구내휴게실	0	1,818,181

< 관련 법령 >

-지방세특례제한법 제41조(학교 및 외국교육기관에 대한 면제)-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고등교육법」 제4조에 따라 설립된 의과대학(한 의과 대학, 치과대학 및 수의과대학을 포함한다)의 부속병원이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기준일 현재 의료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를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경감한다.

1. 2020년 12월 31일까지는 취득세의 100분의 50을, 재산세(「지방세법」 제112조에 따른 부과액을 포함한다)의 100분의 50을 각각 경감한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2조(정의)-

8. "직접 사용"이란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의 소유자가 해당 부동산·차량·건설기계·선박·항공기 등을 사업 또는 업무의 목적이거나 용도에 맞게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3. 개수와 관련된 추정

< 관련 법령 및 정의 >

※ 개수(個數) : 고쳐서 수정함

-지방세법 제6조(정의)-

6. "개수"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건축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대수선

나. 건축물 중 레저시설, 저장시설, 도크(dock)시설, 접안시설, 도관시설, 급수·배수시설, 에너지 공급시설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이에 딸린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을 수선하는 것(지방세법 시행령 제5조)

다.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지방세법 시행령 제6조)

⇒ 법인의 경우 개수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이 있음

○ 착안사항

- 대형의료법인의 경우 건물의 시설유지를 위해서 다양한 유지보수공사가 시행되었을 것으로 예상됨
- 관내 대형의료법인 중 해당 의료법인의 경우 인근 의료법인에 비해서 개수에 관련된 신고내역이 확연히 적다는 것을 인지하여 추적 조사 시행

○ 세부조사기법

- 법인의 계정 중 건물, 건설중인자산, 기계장치, 시설장치, 수선비, 지급수수료 등의 계정을 면밀히 조사하여 개수와 관련된 공사를 추출하여 해당법인에 관련 자료를 요청
- 개수에 대한 범위가 포괄적이고 법인이 개수와 관련한 공사를 시행하여도 전문용어로 기장을 할 경우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조사공무원의 개수에 대한 정확한 개념파악 및 다양한 용어 파악이 필요
- 승강기, 에어컨, 보일러 등 다수의 누락을 확인하여 추정

[사례1.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승강기]

<승강기 관련 사진>



-덤웨이터(산업용리프트)-

-로프교체-

◎ 쟁점사항 :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 과세관청입장 : 법인의 장부에서 확인한 엘리베이터 수선 및 설치에 관해서 지방세법 개수에 해당 되기 때문에 추정하여야 한다고 주장
 - 법인입장 : 신규설치의 경우 취득세의 대상이 맞지만, 엘리베이터의 유지보수를 위한 수선의 경우 단순한 부품교체이기 때문에 취득세의 대상으로 볼수 없다는 주장
 - ※ 법인의 장부에는 단순히 엘리베이터로 기장이 되어 있지 않고 여러 가지 용어로 기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용어에 대한 이해와 지출비용 등을 토대로 하여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사전조사로 행정안전부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을 이용하면 조사에 유용함)
- <흔히 사용하는 용어>
- 엘리베이터, 승강기, 에스컬레이터, 무빙워크, E/V, 화물용승강기, 화물용리프트, 리프트, 덤웨이터 (산업용리프트) 등의 다양한 용어가 존재하고 있다.

<쟁점판단>

지방세법상 개수의 범위가 포괄적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의 유지보수가 어디까지 개수의 대상으로 포함이 되는가? 는 것이 이번 추징의 가장 이슈로 생각이 된다.



<관련법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승강기(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그 밖의 승강시설)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엘리베이터란 고층건물 등에서 사람이나 화물을 동력에 의해 아래위로 운반하도록 되어 있는 장치를 말한다.

- 추정근거 : 지방세법상 개수가 설치하거나 수선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단순한 부품교체까지 취득세 과세대상으로 하기에는 무리. 장부를 살펴보면 정기 유지보수 및 간단한 부품교체를 제외하고 관련자료를 받아보고 해당 시설물에 필수적인 요소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 해당법인의 경우 엘리베이터 로프 및 모터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엘리베이터를 운영하는데 필수적이 요소라고 보고 추정.

⇒ 결과 : 과표누락은 인정하고 추징완료
 ※ 추징과표 94백만원, 추징세액 : 3백만원(과소신고가산세포함)

<행정안전부 과세자료통합관리시스템>

자치단체 코드	시도명	시군구명	승강기 고유번호	검사종류코드	검사종류	설치구분	승강기호기
5080000	경상북도	구미시	5008293	3	수시	교체설치	1
5080000	경상북도	구미시	5008295				
5080000	경상북도	구미시	5008407	3	수시	교체설치	1
5080000	경상북도	구미시	5008409	3	수시	교체설치	2
5080000	경상북도	구미시	5008409	3	수시	교체설치	3
5080000	경상북도	구미시	5008410	3	수시	교체설치	4
5080000	경상북도	구미시	5008411	3	수시	교체설치	5
5080000	경상북도	구미시	5010089	3	수시	교체설치	1
5080000	경상북도	구미시	5011019	3	수시	교체설치	26
5080000	경상북도	구미시	5011891	3	수시	교체설치	8
5080000	경상북도	구미시	5011895	3	수시	교체설치	2
5080000	경상북도	구미시	5021502	3	수시	교체설치	1
5080000	경상북도	구미시	5022881	3	수시	교체설치	1
5080000	경상북도	구미시	5022892	3	수시	교체설치	2
5080000	경상북도	구미시	5022893	3	수시	교체설치	3
5080000	경상북도	구미시	5022894	3	수시	교체설치	4
5080000	경상북도	구미시	5022895	3	수시	교체설치	5
5080000	경상북도	구미시	5022896	3	수시	교체설치	6
5080000	경상북도	구미시	5022897	3	수시	교체설치	7
5080000	경상북도	구미시	5000000	0	수시	교체설치	0

※ 행정안전부 과세자료통합시스템-과세자료-세목별 과세자료-승강기 완성감사에 관한 자료
 ※ 사전에 위 자료를 조회해서 승강기에 대한 내역이 있는지 확인 후 조사를 하면 더 효율적일 것이다
 But, 조사를 해보니 모든 자료가 나오는 것은 아니었다. 덤웨이터(산업용리프트)를 설치하였지만 자료에는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100% 신뢰를 하기보다는 모든 자료는 참고 사항이며 법인장부를 면밀히 확인하여야 한다.

[사례2. 보일러교체 공사 누락]

◎ 쟁점사항 : 보일러 교체공사의 과세대상 여부

- 과세관청입장 : 난방용, 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의 경우 과세대상으로 해당 법인은 관류 보일러 교체공사를 시행하였으나 해당 시설물에 대한 취득세 신고를 누락함
- 법인입장 : 해당 보일러의 경우 단순 의료용 소독 스팀용으로 사용하고 있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과세대상으로 보기는 어렵다는 입장

<쟁점판단>

해당 보일러가 법인의 입장처럼 단순 의료용품 소독용으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하여 과세대상이 유무를 판단하는 것이 쟁점



<관련법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1. 난방용, 욕탕용 온수 및 열 공급시설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난방용이나 욕탕용으로 주로 사용되는 온수 및 열 공급시설을 말한다

- 추정근거 : 법인의 입장에서 의료용품 소독용이라고 하여 관련 계약서 및 사진자료들을 다시 검토 하였는데, 해당 법인의 주장과는 다르게 보일러의 관이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되는 것을 발견하였다. 스팀배관, 숙소난방, 숙소온수, 보조난방, 식당, 본관온수 등 과세대상으로 보는 것이 맞다고 판단하여 추정하였다.

⇒ 결과 :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건에 대해서 추징예정
※ 추징과표 205백만원, 추징세액 : 6백만원(무신고가산세포함)

[사례 3. 냉난방시설 공사에 대한 누락]

◎ 쟁점사항 : 중앙집중식 에어컨의 과세대상 여부

- 과세관청입장 : 법인이 해당 건물 전체에 대해서 시스템에어컨 공사를 시행하였고 중앙집중식으로 과세대상이며, 공조기 교체공사도 시행하여 과세대상으로 추정사유에 해당된다고 보는 입장.
- 법인입장 : 일부 중앙집중식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제외하여야 한다는 입장.

<쟁점판단>

일부 중앙집중식 에어컨이 아닌 부분에 대해서 과세제외하는 것이 타당한지?



<관련법령>

-제6조(시설물의 종류와 범위)-
법 제6조제6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4. 시간당 7천560킬로칼로리급 이상의 에어컨(중앙조절식만 해당한다)
-시가표준액 조정기준-
기계장치에 의하여 자동적으로 공기의 온도, 습도 등을 조절하는 7천560킬로칼로리 이상의 에어컨을 말한다.

- 추정근거 : 1실 단위의 에어컨 및 공조기 공사를 제외하고 중앙집중식으로 운영하는 시스템에어컨 및 공조기 교체공사에 대해서는 과세대상임을 확인하여 추정

⇒ 결과 :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건에 대해서 추징예정
※ 추징과표 : 1,200백만원 추징세액 : 40백만원(무신고가산세포함)

4. 지방소득세 및 임차법인 주민세 추정

○ 착안사항

- 해당 의료법인의 경우 대규모 증축공사 및 주차타워를 신축하였는데 주민세 재산분 신고내역 및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 면적이 증축 및 신축 면적에 비해 증가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여 신고적정여부에 대한 확인 조사가 필요

○ 세부조사기법

- 건축물대장 및 지방세프로그램을 확인하여 건물면적을 확인하고, 주민세(재산분) 및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면적이 누락되었음을 확인
- 누락된 사유에 대한 자료제출을 요구하여, 주민세(재산분)의 경우 해당 의료법인에 누락되었음을 알리고 추정
- 법인 지방소득세의 경우 안분면적이 누락되었지만 조사기간동안 결손 발생으로 추정세액은 발생하지 않음. 추후 법인의 신고누락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 법인에 적정신고 안내

◎ 쟁점사항 :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적정 신고 여부 확인

- 법인 소유 건물에 대해서 대장을 확인하여 전체 면적을 확인하고 조사기간 중 증축에 따른 건물 면적증가가 주민세 및 지방소득세 신고에 적정하게 반영이 되었는지 확인
- 추정사례(1) : A법인의 경우 주차장신축 부분에 대한 주민세(재산분) 및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을 누락하였으며
- 추정사례(2) : B법인의 경우 주차장 부분을 임대를 하였는데 임대를 받은 법인에서 주민세(재산분)부분을 누락하여 과소신고 하였음.

⇒ 결과 : 관련 내용을 전달하고 해당 건에 대해서 추징예정

※ 주민세추징 : 추징세액 10백만원(과소신고가산세포함)

지방소득세 안분비율 변경 : 안분비율변경에 따라 비율증가분에 대한 추징을 하여야 하지만 해당법인의 결손에 따른 제외

5. 기대효과

- 끈질긴 추적조사로 인해 법인에 대한 지방세 인식강화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에 크게 기여
- 다양한 사례 발굴 및 연구에 따른 누락세원 추정 성과
- 세무조사를 통한 주요추징사례 및 세목별 추징세례 등의 안내로 추후 기업의 지방세 신고·납부에 도움
- 탈루세원의 추징으로 공평과세 실현 및 세수증대 기여

III. 주요 세무조사 기법

1. M/H(모델하우스) 법인지방소득세 안분누락

○ 착안사항

- M/H의 경우 아파트 신탁을 이용하는 신축과 달리 주로 시행사에서 운영
- M/H의 경우 단기간 운영하고 종료하기 때문에 지방소득세 안분 누락이 발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을 인지하고 조사

○ 세부조사기법

- 관련부서 통보자료 및 가설건축물 대장, 지방세 신고내역 등을 토대로 모델하우스 내역을 추출하여 존치기간 및 실제운영기간 등을 조사
- 해당 자료를 토대로 하여 지방세시스템에서 지방세 납부내역을 확인
- 모델하우스의 경우 짧은 기간 운영으로 지방소득세에 대한 안분이 누락 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
- 과세자료조사 후 법인 지방소득세 안분 누락부분 추정

<전산자료를 활용한 가설건축물 현황 파악 방법>

	<p>※지방세정보시스템 [1527]건축허가연계에서 허가대장구분을 가설건축물조회로 하여 기간별 가설건축물 현황을 파악할 수 있음</p>
	<p>※온나라에서 가설건축물 관련 공문을 파악하여 가설건축물 현황(면적, 존치기간)을 파악할 수 있음.</p> <p>※통보가 오지 않을 경우 해당부서에 협조요청을 하여 해당자료를 파악</p>

↓
-현장확인 및 로드뷰를 이용한 실제 운영 여부 등을 확인

- 해당 운영기간 지방소득세(법인세분) 안분 신고 여부를 파악 ⇒누락부분 추정(가산세부과)
- 취득세 신고여부 및 주민세 적정여부도 함께 파악

○ 기대효과

- 누락되기 쉬운 지방소득세 안분 조사로 지방세수 확보에 기여
- 납세자에게 적절한 신고 방법을 숙지시킴으로써 성실납세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추징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

※ 2019년, 2020년 지방소득세 추징실적 : 17건 276백만원

< 관련 법령 >

-지방세법 제89조(납세지 등)-

① 지방소득세의 납세지는 다음 각 호와 같다.

2. 법인지방소득세: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법인세법」 제9조에 따른 납세지. 다만, 법인 또는 연결법인이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각각의 사업장 소재지를 납세지로 한다.

② 제1항제2호 단서에 따라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또는 각 연결법인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법인지방소득세를 안분하여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지방세법103조의24(수정신고 등)-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를 통하여 추가납부세액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항에 따라 발생하는 추가납부세액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53조부터 제55조까지에 따른 가산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26.>

⑥ 둘 이상의 지방자치단체에 사업장이 있는 법인이 제89조제2항에 따라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신고납부하지 아니하고 하나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일괄하여 과세표준 및 세액을 확정신고(수정신고를 포함한다)한 경우 그 법인에 대해서는 제3항 후단을 적용하지 아니하되, 제4항을 적용한다.

2. 지점 보유 농업협동조합 주민세 추징

○ 착안사항

- 농업협동조합의 경우 지점 및 미곡처리장, 사료공장, 주유소 등의 다양한 형태의 지점을 보유
- 각 지점에서 회계처리를 하는 경우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인식부족에 따른 일부 지점에 대한 무신고 및 과소신고가 빈번하게 발생

○ 세부조사기법

- 지방세프로그램(1511화면)에서 해당법인 소유의 건물내역과 면적을 필지별로 파악(법인에서 제출하는 봉투에 각 지점의 표시 등 참고)
- 각 필지별 건축물대장확인 및 현장확인을 통해 연관지번의 사업장을 동일사업장으로 보고 사업장의 현황을 파악
- 해당 사업장별 주민세 누락여부를 파악하여 누락부분 추징
- 법인이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한 경우 임차사업장의 주민세 신고·납부여부에 대한 추적조사로 누락세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사

※ 2019년 임차사업장 추징실적 : 32개 법인 20백만원

3.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 ON) 활용 세무조사

○ 착안사항

- 법인의 감면에 대한 사후관리 및 주민세 재산분 신고면적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함
- 효율적인 사후관리 등을 위해 정확한 전산자료를 연구하던 중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FACTORY ON)의 경우 법인이 직접 공장등록을 신고하면서 면적을 신고하는 것을 발견

○ 세부조사기법

- 관련부서의 협조를 받아 법인에 대한 입주계약대장 및 개별공장등록대장관리 내역을 확인
- 관련 대장에서 업종, 공장부지면적, 제조면적, 부대시설면적 등을 확인하여 지방세 신고내역 및 부과내역에 대한 비교
- 감면사후관리에 활용하여 누락부분에 대한 현장조사를 병행하여 추징 및 사후관리 가능
- 주민세(재산분) 적정 신고내역 여부를 확인하고 과소신고 및 미신고 추징

<공 장 설 립 온 라 인 지 원 시 스템 >

The screenshot displays the FACTORY ON web application interface. The top navigation bar includes '온라인입원수', '법인인원등록', '민원관리', '세정명관리', '공장통합정보관리', '공장합동문서', and '등록관리'. The main content area is split into two panels:

- Left Panel: <입주계약대장조회>** This panel shows a search interface for '입주계약대장조회 (계약/변경/해지)'. It includes search criteria for '입주계약대장' (Contract Type), '조회구분' (Search Scope), and '조회기간' (Search Period). Below the search area is a table titled '입주계약등록대장' with columns for '순번' (Serial No.), '업체명' (Company Name), '대표자' (Rep. Name),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 No.), '법인(법인번호)' (Legal Entity/No.), '업종' (Industry), '주생년월' (Establishment Date), and '입주계약일' (Contract Date). A message at the bottom states '검색 결과가 없습니다.' (No search results).
- Right Panel: <개별공장등록대장관리>** This panel is for managing individual factory registration records. It features a search bar, a table with columns for '공장번호' (Factory No.), '공장명' (Factory Name), '소재지' (Location), '면적' (Area), and '등록일' (Registration Date). Below the table are sections for '회사정보' (Company Information) and '공장정보' (Factory Information), each with various input fields for details like '대표자명' (Rep. Name), '생년월일' (Date of Birth), '전화번호' (Phone No.), '팩스번호' (Fax No.), and '사업자등록번호' (Business Reg. No.).

At the bottom of the screenshot, there are three notes:

- ※ 입주계약대장 및 개별공장등록대장관리 화면에는 해당 법인의 업종, 공장부지면적, 제조시설면적, 부대시설면적 등을 확인할 수 있음.
- ※ 감면법인의 경우 감면면적과 실제 사용면적 등을 확인하여 감면 사후관리에 사용하기 용의함.
- ※ 공장의 실제 사용면적이 나오기 때문에 주민세 재산분에 대한 적정신고 여부도 함께 파악할 수 있음.

○ 기대효과

- 전산자료를 통해 추정사유 발생 시 기한 내 신고를 안내하여 기업에 가산세 관련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음
- 실질과세원칙인 지방세법 관련하여 법인이 직접 신고한 자료를 토대로 조사를 하여 조세저항이 최소화 될 수 있음

4. 국민건강보험 자료연계 누락세원 발굴(벤치마킹)

○ 착안사항

- 주민세 종업원분의 경우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사업주가 매월 자진 신고·납부하는 세금으로 누락이 빈번하게 발생
- 종업원분 면세점이 2016년부터 사업장별 종업원수 50인이하에서 월평균급여 135백만원이하 법인으로 전환되면서 미인지로 인한 신고 누락이 발생

○ 세부조사기법

- [1464]국민건강보험공단 통보자료를 기준으로 조사대상 법인 추출
- 조사대상법인 사전조사 : 사업장 소재 파악, 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및 안분내역 등을 통해서 사전 검토
- 법인자료요청 : 급여대장 등을 통해 종업원 수 및 총급여액 확인
- 신고자료와 비교 검토 후 추정 대상 확정
- 추정대상 법인에 대한 과세예고 및 부과

○ 기대효과

- 부과체척기간이 도래되기 전 조사로 세수확보와 공평과세 실현
- 납세자에게 적절한 신고 방법을 숙지시킴으로써 성실납세 및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추징에 대해서 사전에 예방

※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청 벤치마킹자료 - 기획조사 실시 예정

<년도별 종업원분 면세점 기준>

2016년까지	지방세법 제84조의4(면세점) : 사업소의 종업원수 50명 이하
2016년~2019년	지방세법 제84조의4(면세점)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1억3,500만원 이하
2020년부터	지방세법 제84조의4(면세점) : 최근 1년간 해당 사업소 종업원 급여총액의 월평균금액 1억5,000만원 이하

IV. 맺음말

○ 세무조사의 중요성

- 세무조사는 숨은세원발굴에 일원으로 세무조사로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지 못하면 부과제척기간 경과로 채권확보가 어려워지기 때문에 성실납세풍토 조성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
- 세무조사는 단순 세금추징이 목적이 아닌 추후 발생할 수 있는 기업에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사전적 세무지도의 개념으로 예방차원의 세무조사가 중요

○ 세무조사의 향후추진방향

- 법인의 경우 지방세의 중요도를 높이 평가하여 지방세 전문팀을 신설하여, 지방세 신고·납부 및 세무조사에 대응하고 있는 실정
- 지자체의 경우 서울특별시, 경기도 등 큰 도시를 제외하고는 세무조사 전문팀이 존재하지 않고, 경상북도 내에는 포항시에만 세무조사 팀이 운영되고 있어 현실적으로 세무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존재
- 전문적인 세무조사 팀을 운영하여 조사기법 연구 및 기획조사 등을 연구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누락되는 세원에 대해서 부과제척기간이 도래하기 전에 조사할 필요성이 있음
- 각 시군의 특성에 맞게 전문 세무조사 인력의 보강이 절실하고 교류를 통해 다양한 세무조사기법을 공유하여 누락세원방지하여 공평과세 구현을 이루었으면 합니다.

V. 참고자료

[참고 1] 지방세 세무조사 실무(행정안전부)

[참고 2] 2020년 지방세 실무(김의효 저)

[참고 3] 한국지방세연구원(www.olta.re.kr)

1) 2019년 지방세통계연감(행정안전부)

세입증대(세외수입) 분야 우수사례

2020. 12.



행 정 안 전 부
[지 방 재 정 경 제 실]

목 차

1. 전문성을 활용한 부동산 실거래 예상가격 제공으로 세외수입 증대(서울 노원구) 1
2. 신탁재산 채권 압류(서울 강서구) 9
3.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 이대로 포기할 순 없다(부산 해운대구) 15
4. 운행불가 차량에 대한 과태료 경감(대전 대덕구) 21
5. 「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 유상판매 사업(울산광역시) 27
6. 송전선로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권 확보(경기 안산시) 38
7. 눈을 크게 뜨면 숨어 있는 도로점용 세외수입이 보여요(경기 부천시) 45
8. 좌구산 휴양랜드와 함께 커가는 증평살림(충북 증평군) 51
9. 신용카드 활용한 지출 확대로 세외수입 증대효과(전북 김제시) 57
10. 도로점용료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누락세율(경북 포항시) 63

전문성을 활용한 부동산 실거래 예상(적정)가격 제공으로 세외수입 증대



서울특별시 노원구

우수사례 요약서

제목	전문성을 활용한 부동산 실거래 예상(적정)가격 제공으로 세입수입 증대
구분	주요 내용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문제제기)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 공유재산(일반재산)을 매각 할때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령』에 따라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u>감정평가액을 기계적으로 산술평균하여 결정</u>하며 이에 더해 감정 평가나 분할측량에 드는 비용을 포함하여 (매각가격)을 결정하고 있는게 현실임(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 (세입증대 제고)공유재산매각 결정 시, 실시간으로 수집되는 “거래 신고 가격”을 활용한 “(적정) 예상가격” 제공으로, ○ 공유재산심의회의 의사결정지원 제고를 통한 매각가(價) 현실화 추진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실거래 예상가격 제공 계획(‘14.12. 4.) ○ (관련부서) 부동산실거래 예상가격 제공 안내(‘15. 01. 21.) ○ 부동산실거래 예상가격 제공(‘15. 3월~’20년 현재)
장애요인 극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부분 매각대상이 토지만으로, 대상지와 인접지역 거래사례 부족 《20년 이상 축적된 실거래 정보와 25년 이상 전문화된 담당자 노력으로 해결》 ○ 현장조사 등으로 합리적이고 최적화된 사례 수집 ○ 국토부 개발,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하여 매각대상지와 “추출된 실거래 가액” 토지간의 가격배율 산출(☞예상가격 산정) ○ 대상지 인근 중개업소를 방문으로 사례의 적정, 매매가격 등 재검증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매각토지의 현실화율 제고 ○ (자체) 공유재산 적정 예상가격 산정체계 도입으로 세입증대 ○ 객관적인 “시장가격” 제공으로 신뢰받는 공유재산관리 행정구현
주요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존 공유재산 매각 시 감정평가액에 의존하던 방식에 더해 시장가격을 토대로 한 “예상가격” 제공으로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의사결정 제고 ○ <u>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에 횡단전개시 세입증대 기대.</u> <p style="margin-left: 20px;">※ 감정평가금액 대비, 2019년 119백만원// 2020년 353백만원 증가.</p>

전문성을 활용한 부동산 실거래 예상(적정)가격 제공으로 세외수입 증대

I 추진배경

- **공유재산심의위원회의 “의사결정지원” 으로 매각가 현실화 추진**
 - 공유재산 매각가액 결정 시 감정평가업자의 2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의존하여 결정됨.
《공유재산심의회, 매각가 결정심의회 감정평가금액이외 비교가격 부재》
 - 반면, 지방자치단체 등이 토지 등을 매입할 때에는 사인과 협의에 의해 취득하고 있음(“시장가격”으로 취득).
 - 이에 공유재산 매각가액 결정시, 지방자치단체 등이 주도적으로 의사결정에 참여하여 재정의 건전화 유도 및 세외수입 증대.

II 추진경과

- 2014. 12. 04 : 부동산실거래 예상가격 제공계획 수립
- 2015. 01. 21 : 부동산실거래 예상가격 제공 안내
- 2015. 3월~ 현재 : 부동산실거래 예상가격 제공

III 주요 추진내용

- **기존 관행 탈피, 개선방안 마련**
 - (기존 운영실태) 공유재산 매각가액 결정 시 감정평가업자의 2인 이상의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에, 측량비용 등을 더해 결정가액이 결정되고 있었음.

- 이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 돼 검증된 실제 거래가격 정보를 활용하여 예상되는 시장가격을 추정 공유재산심의회에 제공하여 의사결정지원을 제고 함.

□ 실행방법

- (실거래가격 - 추출) 부동산거래 신고로 축적된 실제가격 정보 활용
 - 정밀 입장활동을 통하여 대상지와 동일가격권내 최적의 시장 가격(2건 이상)의 실거래 사례를 추출하여 산술평균
 - 토지가격은 실제거래된 부동산(토지+건물)에서 개별주택가격 (또는 건물시가표준액)를 제외하여 산출(예시1 참조)

(예시 1)

실거래가격①	토지면적	건물가격②	토지가격(① - ②)	토지단가(③/토지면적) = 토지단가
400,000,000원	100㎡	20,000,000원	380,000,000원	3,800,000원

- (자체개발 분석체계 구축) 매각 '예상가격' 산정의 객관성 확보
 - 토지행정 및 지가조사시스템을 활용 - 매각“예상가격”산정
 - 국토부 개발“토지가격비준율”적용, 매각대상지와“추출된 실거래 가액”토지간의 배율 산출(예시2 참조)
 - 지가변동률 산출: 대상지 거래시점부터 현재 시점까지 경과일수 적용(예시3 참조)

○ “예상가격”산출식

① 실거래 토지단가 × ② 토지특성 배율 × ③ 지가변동률 × ④ 토지면적

(예시 2)

구분	토지소재지	면적(㎡)	용도지역	형상	방위	토지용도	고저	총배율	대상지 토지단가
대상지	○○동 000-90	100	2종 일반	가로장방	북동향	단독	평지	1.008	3,800,000원 × 1.008 = 3,830,400원
실거래지	○○동 000-80	100	2종 일반	세로장방	남서향	단독	평지		
배율			1.0	1.04	0.97	1.0	1.0		

(예시 3)

대상 토지	토지 면적	토지단가	지 가* 변동률(a)	실 거 래 예상단가(원/㎡)(b)	실 거 래 예상가격(c)** (c)=(a)+(b)
○○동 000-90	100㎡	3,830,400원	0.506%	3,849,782원	384,978,200원

* 실거래신고가(계약일) 대비 예상가격 산출시 까지 기간 ** 예상단가×대상면적

- 공유재산 매각가격의 적정성 확보(시장가격)
 - 현장 공인중개사의 모니터링을 통한 시장가격 재검증 - 제공

IV 문제점 및 개선사항

- 기존 “감정평가액” 으로 결정되던 관행의 한계 극복
- 실거래사례 부족으로 인한 실거래 예상가격 산정의 어려움
 - 대상지와 유사한 가격권내 중개업소를 방문하여 매매 가격 등 조사하여 재 검증을 거쳐 재산관리부서에 제공(보완)

V 주요성과

- 국·공유지 매각가격의 적정성 확보-세외수입 증가
- 실거래 예정가격 제공으로, 기존 감정평가액 대비 13.7% 증대

〈최근 3년간 추진실적〉

(단위 : 백만)

구 분	제공건수 (필지)	<기존방식> 감정평가금액(A)	<부동산정보과> 실거래예상가격(B)	공유재산심의회 결 정(C)	차액(C-A)
2018년	2	479	526	526	47
2019년	3	832	951	951	119
2020년	6	2,462	2,815	2,815	353
합 계	11	3,773	4,292	4,292	519(13.7%△)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27조 제1항》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가로 결정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가는 일반재산을 매각하거나 교환하는 경우의 해당 재산의 예정가격은 2인 이상의 감정평가업자에게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 이상으로 하며, 감정평가나 분할측량에 든 비용을 포함할 수 있다.

신탁재산 채권 압류



서울특별시
강서구

우수사례 요약서

제목	[신탁재산 채권압류]
구분	주요 내용
사업개요	○ 신탁부동산에 대한 신탁재산 채권압류
추진경과	○ '20. 2. 24. '20년 세외수입종합추진계획 수립 ○ '20. 2. 25. 고액체납 미압류자료 발체 ○ '20. 2. 27. 신탁회사에 채권압류하고 채권압류통지 및 재산압류통지 ○ '20. 8. 28. 까지 총 체납액 27,808,900원 중 24,796,800원 징수
장애요인 극복내용	○ 재산세 과세기준일 이전 취득 후 신탁회사에 신탁등기하여 재산세는 신탁회사에 건축이행강제금은 위탁자에게 부과되어 건축이행강제금 총 2천7백8십만원 체납 ○ 소유권 취득 후 신탁회사에 신탁 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신탁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체납처분을 할 수 없음 ○ 무재산자로 확인 된 미압류 자료 원인분석 결과 대상 부동산이 신탁 된 부동산임을 확인하고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대하여 체납처분이 가능함을 확인하고 채무자가 위탁자, 제3채무자를 수탁자로 정하여 체결한 부동산담보신탁계약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수탁자가 채무자에게 지급할 신탁의 수익을 압류하여 채권확보
우수사례	○ 재산조회 결과 재산이 없는 무재산자로 체납액은 미압류시 일실 ○ 미압류 원인분석 결과 신탁재산으로 확인 ○ 신탁재산의 체납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체납처분을 기피 신탁회사에 채권압류가 법적으로 가능 ○ 제3채무자인 수탁자가 채무자인 위탁자에게 지급 할 신탁수익에 대하여 채권압류 한 결과 총 체납액2천7백8십만원 중 2천4백8십만원 징수
주요성과	○ 재산조회시 확인 할 수 없는 신탁재산은 압류가 가능하지 않아 세수가 일실 될 수 있었으나 미압류 원인분석 결과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가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게 지급할 신탁수익에 대하여 압류가능하여 채권압류 한 결과 ※ 총 체납액 2천7백8십만원중 2천4백8십만원 징수

제목 신탁재산 채권압류

I 추진배경

□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압류로 세수 일실방지

- 신탁회사에 신탁등기 된 부동산에 대하여 신탁법에 의하여 직접적인 채납처분을 할 수 없지만 미압류 된 채납액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수탁자가 위탁자에게 지급할 신탁수익금과 소유권 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하여 채권확보를 통한 세수 일실을 방지하고 신탁을 통한 납세회피가 불가함을 인식시켜 납세의식을 고취시킴

II 추진경과

□ '20 세외수입종합추진계획

- '20. 2. 24. 재정건전성장화를 위한 2020년 세외수입 종합추진 계획수립
- '20. 2. 24. 지방세외수입 고액 상습 채납자명단공개 계획
 - '20. 2. 25. 고액채납 미압류자료 발취
 - '20. 2. 27. 신탁재산 채권압류 후 채권압류통지 및 재산압류통지
 - '20. 3. 9. ~ 8. 28. 채납액 중 24,796,800원 징수
 - 전체 채납 27,808,900 중 24,796,800원 징수
 - 채권압류 3건 중 2건 압류해제

III

주요 추진내용

□ 신탁법 제22조제1항

- 소유권 취득 후 신탁회사에 신탁된 재산에 대하여는 『신탁법』 제22조제1항에 신탁재산에 체납처분을 금지하고 있으나 단서 조항에 명시되어 있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 압류가 가능하여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가 위탁자인 체납자에게 지급할 수익금과 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채권압류통지 및 채무자에게 재산압류통지하여 전체 체납 27,808,900중 24,796,800원 징수

IV

문제점 및 개선사항

□ 압류대상을 체납자의 재산으로 제한

- 지방행정 제재·부과금의 징수등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압류의 대상을 체납자의 재산으로 제한
- 소유권 취득 후 신탁회사에 신탁등기 한 과세물건에 대하여 등기로 인하여 전국재산조회 결과 무재산자로 확인되면 채권미확보

□ 신탁법에 의한 체납처분 금지 대상

- 등기부등본에 소유권이 명시된 신탁재산에는 압류 등의 체납처분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여 압류를 못하고 있음
- 『신탁법』 제22조제1항에 의거 신탁회사에 신탁된 재산에 대하여는 체납처분을 할 수 없고, 다만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 체납처분이 가능하여 채무자가 위탁자, 제3채무자를 수탁자로 정하여 체결한 부동산 담보신탁계약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수탁자가 위탁자인 채무자에게 지급할 신탁수익권이나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압류가 가능

- 신탁수익권과 신탁재산소유권이전청구권에 대하여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에 채권압류통지하고 채무자에게는 재산압류통지
- 신탁재산의 채권에 대한 압류가 법적으로 가능하나 신탁재산은 체납처분이 불가능하다하여 채권에 대한 체납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지금에 신탁재산의 채권압류가 가능함을 타 지자체에도 알려 세수 일실을 방지하고 신탁재산에 대한 납세회피가 불가능함을 인식시켜 납세의식을 고취시킴

V

주요성과

□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압류가 가능

- 소유권 취득 후 신탁회사로 명의이전 된 과세물건에 대하여 재산 조회 결과 무재산자로 미압류 되어 시효소멸로 일실 될 수 있는 체납액에 대하여 신탁계약 방식에 따라 제3채무자인 신탁회사가 채무자에게 지급 할 신탁수익권이나 신탁재산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을 압류하여 채권확보를 통한 체납액 징수가 가능함을 타 지자체에서도 알려 세수 일실방지에 만전을 기함

□ 신탁을 통한 납세회피가 불가능

- 금융기관의 근저당권보다 쉽고 더 많은 대출금을 받을 수 있어 갭투자자나 부동산투자자로 이익을 보고자 하는 자들이 주로 이용하는 담보신탁등의 신탁재산에 대한 채권압류로 세수 일실방지 및 신탁을 통한 납세회피가 불가능함을 인식시켜 납세의식을 고취시킴

『지방행정제재·부과금관계법』 제9조(압류의 요건 등) ① 생략 ~ 지정된 기한까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과 가산금을 완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체납자의 재산을 압류한다.

『신탁법』 제22조 강제집행등의 금지 제1항 신탁재산에 대하여는 강제 집행, 담보권 실행 등을 위한 경매, 보전처분(이하 "강제집행등"이라 한다) 또는 국세 등 체납처분을 할 수 없다. 다만, 신탁 전의 원인으로 발생한 권리 또는 신탁사무의 처리상 발생한 권리에 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건축법』 제80조(이행강제금) ① 허가권자는 [제79조 제1항](#)에 따라 시정명령을 받은 후 시정기간 내에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건축주등에 대하여는 그 시정명령의 이행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
이대로 포기 할 순 없다!**



해운대구

우수사례 요약서

제목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 이대로 포기 할 순 없다	
구분	주요 내용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액 징수를 위한 방안으로 ○ 명의수탁자를 제3채무자로 한 '부당이득금'채권 압류통지와 ○ 수탁자 명의 부동산에 대한 가압류 신청 및 수탁자에 대한 채권자 대위소송을 통해 명의신탁자의 과징금 체납액 39백만원 전액 징수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동산실명법 위반자 과징금 부과 후 체납('14. 12.) ○ 체납자 소유 재산 확인 ⇒ 재산 전무('15~ '19년) ○ 부당이득금에 대한 채권 압류 통지(신탁자, 수탁자) ('19. 09.) ○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 제기 검토보고(구청장)('20. 01.) ○ 부동산가압류 신청('20. 03.) ○ 체납액 전액 징수('20. 08.) 	
장애요인 극복내용	장애요인	해결방안
수탁자 명의 신탁 부동산 압류 불가		신탁자는 부당이득을 이유로 매수자금의 반환을 수탁자에게 청구가능(대법원2005.1.28.선고 2002다66922) ⇒ 명의수탁자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통지
채권 압류 후에도 채무 미 이행		채권자(신탁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수탁자에)에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 제기 (변호사 자문) ⇒ 본 소 제기 전 보전소송인 명의수탁자 부동산 가압류신청(수탁자의 부동산처분 제한)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의수탁자를 제3채무자로 하는 채권압류 통지 ○ 명의수탁자에 대한 부당이득금반환 청구 대위 소송 제기 전 채권보전을 위한 명의신탁 부동산에 가압류 신청 ○ 소송 제기 통지에 부담을 느낀 체납자 과징금 전액 납부 	
주요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최근 5년 기준 체납액 2,163억 원 ※ 출처 : 행정안전부 세외수입통계연감 ○ 과징금 징수사례를 적용하여 자체단체에서 10%를 징수할 경우: 216억 원의 체납액 징수 가능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 이대로 포기 할 순 없다!

I 추진배경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특단의 징수대책 필요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 35%, 징수 안하나! 못하나! 과징금 안내면 그만!”기사처럼 전국적인 징수율이 극히 저조
- 특히 해운대구 징수율의 경우 전국평균에 크게 미치지 못한 20%임
- 체납자에 대한 체납사유 전수 조사 후 압류부동산을 조회하였으나 압류할 부동산이 없어 실질적인 징수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징수율이 낮은 이유?

- 부과일로부터 3개월 이내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이 기간 동안 납부자가 파산하거나 재산을 은닉·탈루하는 경우가 많음
- 대부분 과징금이 고액, 부동산 매매이후 법원 및 세무서에서 위반 사실을 지자체에 통보하기까지 기간이 길기 때문에 납부의지 및 능력이 있는 납부자가 많지 않음
- 부과처분에 대한 행정심판, 행정소송 등으로 인해, 제때 납부되지 않아 체납액 증가

II 부동산실명법과 부동산 명의신탁의 이해

□ 부동산실명법

-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기타 물권을 본인명의로登記하도록 해 투기·탈세·탈법행위 등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1995년 7월 1일 시행
- 부동산실명법을 위반하면 부동산 가액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의 범위에서 과징금이 부과되고, 1년이 지나도 실명으로登記하지 않으면 부동산평가액의 10%를 이행강제금으로 납부해야 함.
※ 부동산실명법 시행령은 원칙적으로 과징금 부과시의 부동산의 평가액과 의무위반 경과기간에 따라 과징금의 비율을 달리 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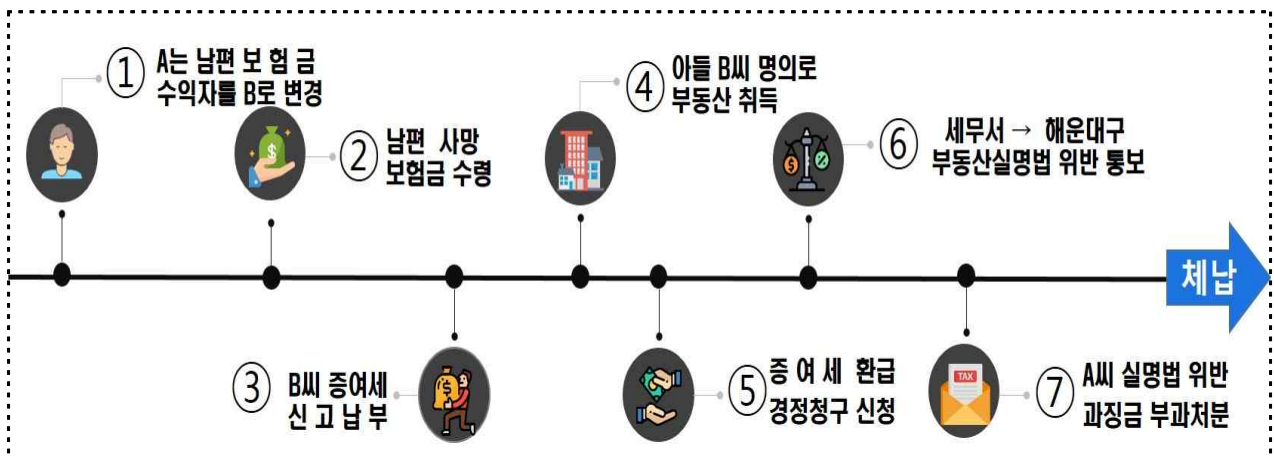
□ 부동산 명의신탁

- 부동산 명의신탁은 등기명의를 수탁자 앞으로 하되 실권리자가 관리·수익·처분 등 소유권을 갖는 것을 말함.
- 부동산 명의신탁의 유형은 양자간 명의신탁, 중간생략등기형 명의신탁, 계약명의신탁*으로 구분
 - * 계약명의신탁 : 수탁자가 신탁자의 자금으로 계약도 체결하고 수탁자 명의로 등기까지 하는 것을 말함.

III 계약명의신탁 체납사례

□ 법의 사각지대를 악용한 부동산실명법 위반 체납사례

- 명의신탁자 : 어머니 A씨, 명의수탁자 : 아들 B씨



- 명의수탁자의 부동산을 압류할 수 없는 이유 : 민법상 부동산등기는 공신력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임(등기공무원이 서류에 의할 뿐 실질적으로 심사할 권한이 없음)
- 이런 경우 체납자에게 다른 재산이 없는 경우 대부분은 징수를 포기하고 결손 처분하게 됨.

IV 추진내용 및 장애요인 극복

□ “전국 최초 부당이득금 채권 압류” 실시 (’19. 9월)

- 명의신탁계약이 무효이므로 수탁자인 아들이 신탁자인 어머니에게 돌려줘야할 매수자금(부당이득금)을 아들을 상대로 채권 압류함

[표 1] 대법원 판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명의신탁약정의 무효로 인하여 명의신탁자가 입은 손해는 당해 부동산 자체가 아니라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이므로 명의수탁자는 매수자금을 부당이득 하였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다66922 판결)

- 채권압류 가능 여부에 대한 법적논리도 판례를 인용해 해결함

[표 2] 법원 판례

채납자의 채무자는 과세청을 상대로 한 민사소송으로써 채무의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할 수 있을 뿐, 위 채권압류처분 자체를 다룰 수는 없다. (대전고법 1994. 5. 13. 선고 93구1433)

- 채권 압류통지서 및 지급청구서(채권추심의뢰) 발송('19.9월)

[표 3] 압류 물건의 표시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동 **** ** *호에 대한 부동산 명의신탁과 관련하여, 부동산 실소유자인 명의신탁자(채권자)가 명의수탁자(채무자)의 부동산 구입을 위해 지급한 부동산 매수자금(***,***,****원) 중 아래 과징금 체납액 상당액. 이상 **※ 명의신탁자의 손해는 부동산이 아닌 명의수탁자에게 제공한 매수자금임.**

(대법원 2005.1.28. 선고 2002다66922판결)

이 통지를 받은 후에는 채권자에게 채무를 지급하여도 그 지급은 무효가 됩니다.

□ **채무자를 상대로 한 소송 준비 돌입 ['19. 11월]**

- 부당이득금 채권 압류 통지 후에도 체납액 납부 거부
- 명의수탁자에 신탁자를 대위하여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 제기 필요

[표 4] 채무불이행에 따른 절차

채권 압류의 통지를 받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의 기한이 지나도 이행하지 아니 하는 경우에는 ~이하 종략~ 채권자를 대위(代位)하여 채무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국세징수법시행령 제45조제2항』

□ **소송사무처리 규칙에 따라 구청장 방침을 받다 ['20. 1월]**

- 우리 구 고문 변호사 2명에게 소송 승소 가능성 질의한 결과 충분히 승소할 수 있다는 답변을 받음.

[표 5] 변호사 답변

계약명의신탁의 경우 유일하게 인정되는 명의수탁자가 명의신탁자로부터 제공 받은 매수자금의 반환의무에 대하여 법적 조치를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대한 소제기는 귀 구청에서 검토를 구한 바와 같이 부당이득금반환청구권에 대한 대위청구를 하여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승소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명의수탁자 소유 부동산 가압류 신청 ('20. 3월)**

- 민원인을 상대로 한 소송은 최후 수단이어야 함
- 수탁자가 부동산을 은닉, 처분해 버리기 전에 보전하기 위해 명의 수탁자 부동산에 가압류를 신청함.

□ **가압류 결정에 따른 체납액 전액 납부 ('20. 8월)**

- 체납자는 아들에게 통지된 가압류결정 통지서를 받고 이후 채권자 대위소송에 대한 심적 압박을 받고 전액 납부함.
- 소송에서 승소해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 징수 사례를 남기고 싶었으나 중단하게 되어 아쉬움이 남음.

V

개선사항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액을 줄이기 위한 노력**

- 부동산실명법 과징금 납부기간의 조정: 3개월에서 2개월로
- 사전납부 감경제도 도입: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과태료만 규정되어 있는 것을 지방행정제재부과금법에도 도입
- 가산금 규정 도입: 가산금이 있는 과태료와의 형평성 논란

VI

주요성과

□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체납액 징수**

- 과징금 체납을 징수하기 위한 2년에 걸친 노력의 결실로 체납액 39백만 원을 징수함.

□ **징수사례 적용할 경우 예상 징수액 [216억 원 징수]**

- 전국 부동산실명법 위반 과징금 최근 5년간 체납액 2,163억 원
※ 출처 : 행정안전부 세외수입통계연감
- 징수사례를 적용하여 지방자치단체에서 약10%정도 징수 할 경우 216억 원의 체납액 징수효과가 있음.

운행 불가 차량에 대한 과태료 경감



대전광역시
대덕구

우수사례 요약서

제목	운행불가 차량에 대한 과태료 경감
구분	주요 내용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기간 : 2020. 2월 ~9월 ○ 추진대상 : 운행불가(차령초과말소, 경·공매 진행 중) 차량 ○ 사업내용 : 폐차장 입고 등 운행불가 차량의 의무보험 미가입 과태료 면제로 저소득층 자동차 소유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2월 26일 : 「운행불가차량 과태료 일제조사 계획」 수립 ○ '20. 3월~6월 : 자진말소 차량 폐차 입고일 조사 ⇒ 15백만원 감액 ○ '20. 5월~7월 : 공매 차량 조사 ⇒ 3백만원 감액 ○ '20. 8월~9월 : 경매 차량 조사 ⇒ 6백만원 감액
장애요인 극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태료 체납차량이 경매 차량인지 파악이 어려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 법원경매 시 차량 입고 서류는 관련 사건에 수기 편철, 자동차 집행은 사용본거지가 원칙이나 차량소재지 관할 법원에서도 가능하여 일괄조사 및 전수조사 불가 - (극복) 관내 경매법원으로 조사대상 국한, 법원경매 시 압류권자에게 발송되는 최고서 검토결과 경매를 위한 차량 보관 시 특정업체에 편중됨을 확인 후 차량보관소를 설득하여 입고내역 확보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체납과태료 감액으로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 ○ 행정관청의 적극적인 조사와 감액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 ○ 체납액 징수·결손을 부적정 자료의 감액으로 정리방법 다변화 ○ 부과 전 사전조사의 필요성을 인식, 부과부서 담당자의 역량 강화
주요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성) 100대 24백만원 감액 ○ (확산성) 전국 확대 시 63억원 정리에상, 검사과태료로 확대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동차등록대수('20년. 1월 기준) : 대덕구 9만대, 전국 2,368만대 ○ (지속성) 매년 발생하는 자동차관련 과태료에 지속적으로 적용 가능

운행불가차량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과태료 경감

I 추진배경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가장 큰 피해자는 경제적 약자인 저소득층
- 폐차장 입고 등 운행불가 차량에 대한 과태료 부과로 행정 신뢰성 저하
- 과태료 체납자의 법령 무지 및 무관심으로 경제적 불이익 심화

II 추진경과

- '20. 2. 26. : 운행불가차량 과태료 일제조사 계획 수립
- '20. 3월~6월 : 차령초과말소차량 폐차 조사 ⇒ 15백만원 감액
- '20. 5월~7월 : 공매 차량 조사 ⇒ 3백만원 감액
- '20. 8월~9월 : 경매 차량 조사 ⇒ 6백만원 감액

III 주요 추진내용

□ 차령초과말소 차량 조사

- (개 요) 최근 5년간 과태료 체납차량 중 차령초과말소 자동차 조사
- (착안사항) 말소신청 시 1개월 이내의 권리행사 등의 절차를 채권자에게 통지, 입고와 말소등록(45~60일 소요)의 두 시점의 시간적 차이가 존재

《 차령초과 자동차 입고일 조사 》

□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 활용(입고일을 말소예고통지일자로 적용)

소유자정보		자동차등록번호		50고		열람사유		
차명	QM5	차종/초소형	승용 중형 / ㄱ	최초등록일	2008.05.06	제작연월일	2008.02.19	
제원관리번호	A1 17	용도	자가용	차령만료일	-----	최초양도연월일	-----	
형식 / 모델연도	H 2008	용도상세	일반	저당건수	0	압류건수	32	
차대번호	KI 6	색상	회색	영치최고일	-----	영치/보험면제 여부	N / N	
세부코드	일	출처	전입차	말소예고통지일자	2019.05.08	예고건수	0	
최초접수번호	4E	번호판 규격	민번호판	트(천공)	말소일자	2019.06.24	특기사항건수	2
비과세적용	미적용	취득가액	0	말소구분	환가가치 차령초과(자진말소)			
말실인정 승인일	-----	주행거리	159703	정기검사유효기간	2017.05.06	~	2019.05.05	
원동기 형식	M9R	등록상태	말소	정기점검유효기간	-----	~	-----	
운수사업용 세부유형							운행정지 여부	N

□ 공매 차량

- (개 요) 최근 2년간 지방세 체납으로 공매된 자동차 조사
- (착안사항) 자동차 공매 시 자동차 보관소에 입고 후 소유권 이전까지 1~2개월이 소요되어 두 시점의 시간적 차이가 존재

《 공매대행업체 입고일 조사 》

□ 공매대행업체 프로그램 활용(입고일 적용, 영치후 공매 시 영치일 적용)

공매진행상황 | 견인신청 | **차량조회** | 차량현황 | 공고신청 | 출고/출력관리 | 낙찰SMS | 관리자Q&A | 요청자료 | 파일전송

• 차량조회 : 전체차량

차량가산출 | 입고예정/완료 | 공매진행중 | 출고예정/완료 | **전체차량** | 시세정보 | 이관/미입고 | 이관완료내역

○ 차량번호 ○ 점검서 **전체** ○ 입고일 20141103 - 20201102 ○ 차량현황 **전체**

○ 견인신청된 모든 차량의 목록입니다. (입고예정인 차량과 차량가 산출 신청한 차량은 제외됩니다) ○ 조회건수 10건씩

No	차량번호 차량명	모델 연도	차량 보관소	차량평가액	구분 (진행)	낙찰가 (공매번호)	입고일 출고일	진행상태 잔금납부일	번호관 여부	점검서 현황	채권내역
1		2015	대전 보관소	13,500,000	입찰 (1회)	15,550,000 (2019-457)	2019-04-25 2019-06-13	출고완료	앞(0) 뒤(0)	<input type="button" value="완료"/>	<input type="button" value="조회"/>

□ 경매 차량

- (개 요) 최근 2년간 법원 경매로 소유권 이전된 차량조사
- (착안사항) 자동차 경매 시 자동차 보관소 입고 후 소유권 이전까지 약 6개월 이상이 소요되어 두 시점의 시간적 차이가 존재

《 경매사건 종결 여부 조사 》

□ 대법원 경매사건검색 활용(사건 종국여부 확인)

경매사건검색

검색조건 법원 : 대전지방법원 | 사건번호 : 2018타경

사건내역

● 사건기본내역

사건번호	2018타경 [전자]	사건명	자동차임의경매
접수일자	2018.03.19	개시결정일자	2018.03.20
담당계	경매2계 전화 : 470-1802 (민사집행법 제90조, 제268조 및 부동산등에 대한 경매절차 처리지침 제53조제1항에 따라, 경매절차의 이해관계인이 아닌 일반인에게는 법원경매정보 홈페이지에 기재된 내용 외에는 정보의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청구금액	21,446,638원	사건항고/정지여부	
종국결과	배당종결	종국일자	2018.08.30
송달료, 보관금 잔액조회	<input type="button" value="잔액조회"/>		

※ 사건이 종국되고 30일 경과한 경우 기본사항만 확인이 가능합니다.

□ 과태료 체납차량의 운행불가 여부 확인 어려움

- (세외수입정보시스템 보완) 자동차관리정보시스템과 세외수입정보시스템 연계를 통해 과태료 부과 시 미운행 기간을 제외할 수 있도록 효율적 시스템 개선 필요
- (공매 차량 조사의 광역화) 공매차량 정보 조회 범위가 해당 기관으로 제한되어 정보접근 어려움, 국세청 및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협약을 통해 타 기관 공매 차량 정보 접근 가능토록 개선
 - ⇒ 공매대행업자와 사전 협의 시 정보제공 가능 회신
- (경매 차량조사를 위한 법원과의 연계 강화) 자동차 경매는 사용본거지 외에 차량 소재지 법원에서도 가능하여 대상 차량 조사에 어려움이 있어 상급기관이 법원 경매 자료를 일괄 조사하여 세외수입 시스템에 반영할 수 있도록 업무 개선 필요

□ 운행불가 차량에 대한 과태료 감면 법 개정 필요

- 법원결정(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4.11.3. 2014과1938) 등을 근거로 일부 자치단체에서 과태료를 면제하고 있었고, 2017년 12월 이전까지 국토교통부는 경·공매 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하는 것으로 유권해석 하였으나, 2018.2.23. 규제개혁신문고를 통해 과태료를 면제하도록 기존 유권해석을 변경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36조 과태료의 부과기준에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이 영치된 경우 영치된 날 이후의 일수는 과태료 부과 일수 계산에서 제외
-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에 경·공매 기간 중 과태료 면제가 가능한지에 대해 규정하지 않아 지방자치단체 업무 담당자들의 혼선 지속

정리실적

(단위: 대, 백만원)

구 분	의 무 보 험 과태료체납액 Ⓐ	총정리현황		차령초과말소		공 매		경 매	
		대	금액 Ⓑ	대	금액	대	금액	대	금액
금 액	3,194	100	24	85	15	8	3	7	6

* 총 100대, 24백만원 과태료 감액 (정리율(=Ⓑ/Ⓐ) : 0.75%)

 확산성 예측

○ (전국확대) 대덕구 24백만원 ⇒ 전국 63억원 정리 예상

※ 자동차등록대수('20년. 1월 기준) : 대덕구 9만대, 전국 2,368만대

○ (파급효과) 다양한 과목으로 확대 시 큰 효과 기대

 추진효과

○ (저소득층 배려) 체납과태료 감액으로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저소득층의 경제적 부담 경감

○ (적극행정 구현) 법령 무지 및 무관심으로 장기간 방치된 체납액을 선제적 조사와 경감으로 행정 신뢰도 향상

○ (체납정리방법 다양성) 체납처분을 통한 징수와 결손 위주의 체납액 정리를 부적정 자료의 감액으로 정리방법 다변화







『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 유상판매 사업

- 전국 최초,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 유상판매로
광고효과는 Good !, 세외수입은 Up ! -



울산광역시
(버스타็กซี่과)

우수사례 요약서

제목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 유상판매 사업 - 전국 최초,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 유상판매로 광고효과는 Good !, 세외수입은 Up ! -							
구분	주요 내용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 : 버스정류소명 유상판매(정류소명 병기) ○ 사업대상 : 버스정류소 3,079개소 플랫폼 4종* * 정류소 표지판, 정류소 스티커, 쉘터 노선안내도, 시내버스내 안내방송 ○ 사업비 : 버스정류소 명칭병기 사용료 감정평가 7백만원 ○ 계약기간 : 3년 ○ 병기방법 : 주 버스정류소명 하단에 표기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9. 30. : “공무원 연구모임” 최우수 수상 - 「버스정류소 시설을 활용한 세수증대 방안 연구」 ○ '19. 12. : 버스타키와 “공무원 연구모임” 집단 토의 ○ '20. 5. : 조례 제정 및 세부계획 수립(시장) ○ '20. 7. : 불합리한 정류소명 정비(대중교통개선위원회 협의) ○ '20. 8. : 사업자 모집 공고·선정 입찰공고 							
장애요인 극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유사사례 분석 - (전국 최소) 타 지자체 유상 병기사례 없음 ○ 타 시·도 벤치마킹 - (철도공사 방문) 서울·인천·부산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철도역사명 유상병기사업 시행 중 ○ 법률자문 협의(외부자문) - 정부법무공단 및 울산대 교수, 대중교통개선위원회 등 자문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최초 『정류소 명칭 병기』 유상판매 세외수입 발굴 및 민간사업자 이익 기여 ○ 병기방법 : 주 버스정류소명 하단에 표기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border-collapse: collapse;"> <tr> <td style="width: 50%;">기 존</td> <td style="width: 50%;">변 경 후</td> </tr> <tr> <td>울산시청</td> <td>울산시청 (OO은행 시청점)</td> </tr> <tr> <td></td> <td></td> </tr> </table>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례 제정으로 사업추진 		기 존	변 경 후	울산시청	울산시청 (OO은행 시청점)		
기 존	변 경 후							
울산시청	울산시청 (OO은행 시청점)							
								
주요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효과성) 『정류소 명칭 병기』 유상판매 실적 및 효과 - (유상판매 실적) 승차인원 1,000명 이상 정류소 43개소 확대 시, 1,032백만원 ○(개선노력도) 대중교통 이용자(시민) 편의 및 민간사업자 광고효과 창출 - 기존 버스정류소명 자연적 정리 정돈 - 사용료 수입 버스정류소 시설물 개선에 사용 ➡ 도시미관 개선 효과 ○(확산성) 전국 『정류소 명칭 병기』 유상판매 전파 ○(지속성) 계약기간 3년으로, 1회 성과가 아닌 항구적 세외수입 증대 							

『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 유상판매 사업

- 전국 최초,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 유상판매로
광고효과는 Good!, 세외수입은 Up! -

추진배경

□ 사업배경 및 필요성

○ 공무원연구모임 최우수상 정책화

- '19년 공무원연구모임 최우수 수상한 “버스정류소 시설을 활용한 세수증대방안 연구결과” 정책화

○ 세외수입 증대

- 전국 최초,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를 광고수단으로 활용, 유상판매를 통한 세외수입 발굴과 정류소 시설물 개선에 사용 효과

○ 민간이익 기여

- 유상으로 명칭 병기를 희망하는 민간사업자*는 광고효과 및 인지도 상승을 통한 이익 창출 기대

* 의료기관, 기업체 및 개인업체, 다중이용시설 등

□ 추진근거(법령별 내용 검토)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 지방자치단체는 관할 구역의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를 처리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바. 지방세 및 지방세 외 수입의 부과 및 징수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4. 지역개발과 주민의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파. 주차장·교통표지 등 교통편의시설의 설치 및 관리”

○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

-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하여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139조(사용료의 징수조례 등)

① 사용료·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버스정류소 유상판매 추진 절차

- '19년 9월 30일 : “공무원 연구모임”최우수 수상
 - 「버스정류소 시설을 활용한 세수증대 방안 연구」
- '19년 12월 : 교통건설국 “공무원 연구모임” 집단 토의
- '20년 1월 : 정류소명 병기 사례 수집
 - 울산시 관내 버스정류소 명칭 병기 사례는 총 40여개소로 파악되고, 전국 지자체 중 수도권 서울, 인천과 부산 등에도 병기 사례가 다수 있음
- '20년 2월~4월 : 벤치마킹 철도역사명 유상병기 사례 검토
 - 추진근거는 대부분 내부방침에 두고 있으며, 역명선정은 별도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하고 있고, 계약기간은 주로 3년
- '20년 3월~4월 : 사용료 법률자문(법제협력관, 법무공단, 울산대 교수 등)
- '20년 5월 : 조례 제정 및 세부계획 수립(시장)

[계약조건표]

구 분	내 용	비 고
계약기간	3년 (계약종료 후 1회 연장 가능)	
안내표지판 정비 비용	계약상대자 부담	계약만료에 따른 원상복구비 부담 : 시
계약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지급보증금	계약금액의 100분의 10 이상	
연체 요율	납부기한 연 12~15% 연체이율 적용 현금 납부	

- '20년 7월 : 불합리한 정류소명 정비(대중교통개선위원회 협의)
 - 정류소명 병기 표기문자 : 한글 및 영문표기
 - 정류소명 정비방법 : 전면교체 정비, 수정패치 정비
- '20년 7월 : 구군 교통부서 과장 초청 추진사업 설명회 개최
- '20년 7월 : 정류소명 유상판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정류소명칭 선정지침표 마련
- '20년 8월 : 사업자 모집 공고·선정 입찰공고

□ 버스정류소명 유상판매 사례 분석

○ 철도역사명 유상병기 사례 검토

- 공개경쟁 입찰방법, 역당 연평균 판매액은 1,600만원~8,800만원 정도
- 지하철 등 철도역사명 유상병기 사례

구 분	한국철도공사	서울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대구지하철공사
추진근거	철도노선및역의 명칭관리지침	내부 방침	내부 방침	내부 방침	내부 방침
시행시기	2006.6월	2016.7월	2008.1월	2007.1월	2012.3월
역명심의	국토교통부 역명심의회	역명병기유상판매심의위원회	공사 역명심의회	단순광고, 자체시행	단순광고, 자체시행
계약기간	1~3년	3년	5년	3년	3년
유상 병기 규모	58억(25.0%)	28개	12억(11.2%)	18억(62.1%)	10억(16.9%)
1억 연평균 판매액	2,100만	8,753만 (9개시범역)	5,209만	1,594만	2,173만
선정 방법	국토부 심의 결정	공개경쟁	공개경쟁	공개경쟁	공개경쟁

□ 울산 버스정류소명 사업시행 방안

○ 시범운영 대상 정류소 선정 현황

- '1일 평균 승차인원의 1%' 그룹에 속하는 정류소

구 분	승차인원(명)	승차인원 기준	
		1일 승차인원의 1%	2,000명 이상
계	50,342	-	-
1	공업탑	○	○
2	시외고속버스터미널	○	○
3	성남동	○	○
4	울산대학교	○	○
5	신북로터리	○	○
6	현대백화점	×	○
7	울산역	×	○
8	남목1동	×	○
9	울산과학대학	×	○
10	노포동역	×	관외

○ 문제점 및 대책, 사업 추진 방향 설정

- (문제점) 정류소명 유상병기 표기방식 사업을 추진하되,
(대 책) 부 정류소명만 판매대상으로 선정

기 존	변경 후
울산시청	울산시청 (○○은행 시청점)
주 정류소명	부 정류소명

- 정류소명의 공공성 확보를 위해 가칭 「정류소명 심의위원회」 운영 필요

벤치마킹 및 심의위원회 구성 등 장애극복 과정 (문제점 및 극복내용)

□ 지하철역 벤치마킹을 통한 사례분석

- (버스정류소명) 국내 타지자체 등 유상병기 사례 없음
- (지하철역명) 서울교통공사, 인천교통공사, 부산교통공사, 한국철도공사
의 철도역사명 유상병기사업 시행중



□ 법률자문 검토

- (정부법무공단) 정류소 명칭은 지방자치법 제136조(사용료)에
규정한 ‘공공시설 또는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 정류소 관련 플랫폼인 표지판, 쉘터, 노선안내도, 차내 안내방
송은 「공공시설」에 해당되며 조례를 제정하여 사업추진 필요
- (대중교통개선위원회 16명) 유사사례가 없지만 사업성은 있을
것으로 지역별 차등, 시범운영 후 확대, 공공성 등을 고려하여 추진
- (오문완·한삼건 시 미래비전위원) 조례 제정 및 의견 수렴후 추진
 - 민간업체 홍보효과와 시의 세외수입을 얻는 Win-Win 사업으로
이용객이 많은 환승정류소 등에 명칭 임대사업 필요
- (정준금 울산대 행정학과 교수) 버스정류소는 시의 공유재산으로
명칭을 병기하여 광고료를 징수하는 것은 가능

□ 「정류소명 유상판매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마련

- 위원회 구성 : 위원회 포함 7인 이내
 - 위원장 : 사업 주관 국장
 - 위 원 : 업무 관련 부서장 3, 외부전문가 2, 시 버스타시과 담당팀장

□ 정류소명칭 선정지침 마련

구 분		표 기 대 상	비고
공 익 기 관	지명 등	• 지명(동명), 거리명, 국유재산법,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상 일반 공공용으로 지정한 국유재산, 공유재산(도로, 공원, 광장, 하천, 교량, 터널, 유적지 등), 문화재관리법에 의거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문화재(사찰 등)	1
	관공서	• 정부조직법 상 중앙행정기관 및 지방자치기관과 그 하부기관, 행정기관의 부속 기관	
	공익시설	• 국민생활 복지증진을 위하여 설치한 공원, 운동장, 터미널, 도서관, 체육관, 박물관(국공립), 미술관(국공립) 등	
	공공기관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공공기관)에 해당하는 기관 중 시장형·준시장형 공기업 및 기금관리형 준정부기관	
학 교		• 고등교육법 제2조(학교의 종류)에 정한 각종학교 중 대학교, 대학에 해당하는 기관	2
의료기관		• 의료법 제3조(의료기관)제2항제3호에 정한 병원급 의료기관 중 제3조의3(종합병원), 제3조의4(상급종합병원), 제3조의5(전문병원)에 해당하는 기관 • 제3조의2(병원등)에 의거 150병상 이상 병원	3
기 업 체		•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정의)에 의거 중견기업 또는 그 이상에 해당하는 기관	4
다 중 이용시설		• 1,000세대 이상 아파트, 대형쇼핑센터 등	5
기 타		• 버스를 이용하는 고객의 안내편의를 증진시킬 수 있으며 인지도가 높고 이용승객이 자주 이용하는 다중상업시설(단, 공사양속 훼손 및 공사 이미지를 저해하거나 공중에게 안내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기관명 제외)	6

□ 사용료 및 계약기간(3년)

- 사용료 : 정류소명 원가조사산정 용역에서 결정된 예상가 이상 응찰한 금액

□ 정류소명 병기표기 및 정비방법 등

- 정류소명병기 표기문자 : 한글 및 영문표기
- 정류소명 정비방법 : 전면교체 정비, 수정패치 정비
- 정비기간 : 2개월

□ 협의 절차 후 조례 추진

- 기준·지침 마련 : 조례제정 및 세부계획 수립('20. 7월)

□ **세수증대 규모 분석** [효과성, 시도 공통사업]

◆ 사업범위를 정류소 승차인원이 1,000명 이상인 정류소 43개로 확대할 경우
 연간 사용료는 1,032,000천원으로 산출
 ≒ (연간 사용료) 24,000천원 × (정류소 수) 43개 = 1,032,000천원

- (전국 시도 재정증대) 기존 명칭에 민간사업자 상호 병기...
 차등 광고료 책정해 전국 시도 세수증대 기대

□ **정류소시설물 유지보수 예산 확보** [개선노력도, 시도 공통사업]

- (전국 시도 공통사업) 사업시행에 따른 세수증대 규모를 분석하였으
 며, 분석결과 세입금은 현재 정류소시설물 유지보수 및 개선 예산액
 보다 규모가 커서 시설물로서 정류소가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기반
 마련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세외수입 활용방안** [지속성, 시도 공통사업]

- (정류소 시설 유지보수 및 개선) 버스 이용객 정류소 이용 편의 제고를
 위한 노후 표지판 교체, 노선안내도 확대 설치
- (승강장 쉼터 우수모델 설치) 승강장 쉼터 설치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기초단체 소관 업무이나 기초단체별 디자인의 미적 기준 상이 문제
 해소 및 이용객에게 새로운 경험 제공을 위해 우수모델 설치 추진
- (공유교통수단과 대중교통 연계거점 활용) 버스 이용객의 라스트
 마일(Last Mile) 문제 해소를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위해 정류소
 시설물에 버스 베이 또는 자전거 거치대 설치 등 검토도 필요

□ **타 시도 전국 파급효과** [확산가능성, 시도 공통사업]

- (전국 언론보도) 방송사 등 '대서특필' 전국적인 홍보 파급효과 최대
- (전국 정류소명 유상판매 효과) 조례를 제정한 후 이용객이 많은
 대로변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점차 확대할 방침이며 "울산 최초,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만큼 민관이 상호이익이 되는 모범사례



정류장 판다..세수 늘리려고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가게 주름살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갈수록 지방 세수는 주는데 복지 비용은 치솟으면서 울산시 등 각 지자체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버스정류장 이름을 파는 등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데 조운호 기잡니다.

서울의 주요 지하철역 이름은 한 개가 아닌 2갓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016년부터 돈을 받고 역이름을 민간에 팔기 시작한 겁니다.

가장 비싼 충무로역의 경우 3년간 계약금이 4억 6천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울산시도 시내버스정류장 이름을 전국에서 처음으로 판매합니다.

울산지역 정류장은 모두 3천 개 남구 삼산동과 같은 요충지는 1년간 2천500만 원, 외곽은 500만 원 선을 염두에 두고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첫해 연간 50억 원의 수익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조현우/울산시 버스택시과

-'광고를 통해 벌어들인 수익은 시민들의 편의를 위해 버스 정류소 시설물 개선과 정류소 표지판 디자인을 통일화시키는 데 사용할 계획.'

유비씨 뉴스 조운호입니다.@@ -2020/10/05 조운호 작성

울산 '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민간에 판매한다

기존 명칭에 민간사업자 상호 병기
차등 광고료 책정해 세수증대 기대
市 "조례제정 후 내년 1월부터 시행"

울산의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에 민간 사업자의 상호를 병기(附加)할 수 있게 된다. 서울과 부산 인천 등에서 지하철 역명 아래에 민간 사업자의 상호를 병기하거나 한국철도공사가 철도역명 아래에 주요 기관의 이름을 괄호 형태로 덧붙여 표기하는 사례는 있지만 시내버스 정류소에 민간 사업자의 상호 병기가 추진되는 것은 울산이 처음이다.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 병기'를 통해 민간 사업자에 역 명칭을 사실상 유상으로 판매하는 계획이 처음 제안된 것은 지난해 울산시청 공무원

연구모임에서다. 당시 우수상을 수상한 '버스 정류소 시설을 활용한 세수 증대 방안 연구 결과'를 보면 정류소 명칭에 민간 사업자의 상호를 유상으로 병기하면 울산시는 세수 증대를, 민간 사업자는 광고 효과를 볼 수 있어 민관이 서로 '윈윈'할 수 있다는 제안이 담겨 있다.

울산시는 이 제안을 근거로 실무 검토에 들어가 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36조(비용료)에는 지방자치단체는 공공시설의 이용 또는 재산의 사용에 대해 조례 제정으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정부법무공단의 자문에서도 정류소 명칭은 이 법에 규정한 '공공시설 또는 재산'에는 해당하지 않으나 정류소 관련 플랫폼인 표지판, 노선안내도, 차내 안내방송은 공공시설에 해당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시 정책지원단의 한 교수는 버스 정류소는 시

의 공유재산으로 명칭을 병기하여 광고료를 징수하는 것은 가능하며, 울산 남구 삼산동 등 광고 효과가 큰 지역에는 교외에 비해 높게 광고료를 받는 등 광고료를 차등 책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시는 이를 근거로 다음 달 중 관련 조례를 제정한 뒤 11월까지 정류소 명칭을 바꾸기로 했다. 12월에는 민간 사업자 공고와 선정 절차를 거친 뒤 내년 1월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민간 사업자 상호 병기 대상 정류소는 총 3079개다. 시는 정류소 표지판과 정류소 스티커, 시내버스 대기소의 노선안내도, 시내버스 안내방송 등 네 가지 방식을 통해 민간 사업자의 상호를 병기하기로 했다. 명칭 병기 방법은 기존 정류장 명칭 아래에 상호를 괄호로 묶어 표기하는 방식이다.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사용료는 감정평

가 기관에 의뢰해 결정하기로 했다. 도심 변화의 경우 정류소 한 곳당 연간 사용료는 2400만 원으로 추산하고 있어 연간 50억~100억 원의 세외수입이 기대된다고 시는 밝혔다.

시 관계자는 "이 사업은 공무원 연구모임에서 제시된 아이디어를 사장시키지 않고 세외수입 사업으로 추진한 적극 행정의 모범 사례"라며 "정류소 명칭 유상 판매로 얻는 세외수입은 정류소 디자인이나 시설을 개선에 사용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철도공사는 철도역명 아래에 기관의 이름을 괄호 형태로 병기하는 방법으로 연간 31억 8000만 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다. 서울교통공사와 인천교통공사도 비슷한 방법으로 각각 연간 90억 원과 50억 원의 세외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재력 기자 raks@donga.com

참고 3

돈받고 시내버스 정류장 이름 붙여준다 (경상일보 언론자료 발췌)

경상일보

2020년 9월 1일 화요일 007면 사회

돈받고 시내버스 정류장 이름 붙여준다

울산시 전국 최초 유상판매 1곳당 연간 2400만원 전망

울산시가 전국 최초로 시내버스 정류소에 이름을 붙여 민간사업자에게 광고용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1곳당 연간 2400만원 정도의 세외 수입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시는 시내버스 정류소 이름을 유상 판매한다고 31일 밝혔다. 시는 의료기관, 기업체, 개인 사업체, 다중이용시설 등 민간 사업자가 광고 효과와 인지도 상승 등을 얻을 수 있는 민관이 상생하는 사업이라고 설명했다. 이 사업은 2019년 공무원 연구모임 우수상을 받은 '버스 정류소 시설을 활용한 세수 증대 방안' 연구 결과를 정책화한 것이다.

철도 역명이나 지하철 역명을 병

기해 유상 판매하고 있지만, 시내버스 정류소 명칭을 대상으로 한 사례는 없었다. 정류소 명칭 병기 방법은 기존 남구 신정3동행정복지센터를 신정3동행정복지센터(00약국)로 주 정류소명 아래에 표기하는 것이다. 울산에는 3079개에 이르는 시내버스 정류소가 있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이후 정비와 민간 사업자 모집 공고를 거쳐 정류소 명을 공정하게 입찰 방식으로 정한다는 계획이다. 계약 기간은 3년으로 하고, 안정적인 사용권을 보장할 수 있도록 사용료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결정하기로 했다. 정류소 1곳당 사용료가 연간 2400만원가량일 것으로 시는 추산한다. 시는 유상 판매로 얻는 세외 수입은 정류소 디자인이나 시설물 개선에 사용하기로 했다. 최창환기자

참고 4

울산시, 시내버스 정류장 부기 명칭 판매 (서울경제 언론자료 발췌)

- 신정3동행정복지센터 → 신정3동행정복지센터(00약국) 형태로 판매
- 3,079곳 정류장 곳곳에 광고 노출...1곳당 2,400만원 예상

울산시, 시내버스정류장 부기 명칭 판매

신정3동행정복지센터 → 신정3동행정복지센터(00약국) 형태로 판매

3,079곳 정류장 곳곳에 광고 노출...1곳당 2,400만원 예상

울산시가 시내버스 정류장 부기 명칭을 판매한다.

울산시는 '정류소 명칭병기'를 광고수단으로 활용하는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조례 제정을 거쳐 입찰방식으로 모집공고를 진행한다고 31일 밝혔다.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고, 사용료는 감정평가기관에 의뢰해 정한다. 시는 정류장 1곳 당 연간 2,400만원이 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정류소 명칭병기 방법은 기존 신정3동행정복지센터 정류장을 '신정3동행정복지센터(00약국)'으로 주 정류장 밑에 표기하게 된다.

울산에는 3,079곳의 시내버스 정류장이 있다. 정류장 표지판, 스티커, 노선 안내도, 시내버스 내 안내방송 등을 통해 광고가 노출된다.

정부식 시 버스타xito과장은 "조례 제정 후 정류소 명칭을 정비하고, 이용객이 많은 대로변을 시작으로 점차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며 "(시내버스 정류장 가운데) 전국 최초로 추진하는 만큼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모범사례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송전선로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권 확보



안 산 시

우수사례 요약서

제목	송전선로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권 확보
구분	주요 내용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경기도 안산시 대부동 ~ 성곡동 일원 공유수면 ○ 내 용 : 한국전력공사는 「전원개발촉진법」에 따라 '97년 안산 관할 공유수면 내 송전선로 설치·운영코자 점용 허가권을 부여받고도 점용료를 면제 받고 있어, 안산시는 법률자문 등을 실시하고 점용료 징수 및 취소소송에 적극 대응하여 징수권 확보 ○ 추진기간 : 2017. 1. ~ 2020. 8. ○ 신규세원 : 286억원(5년 소급: 175억원, 정기분 111억원, ※ 20. 9월기준)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7. 1. ~ 12. : 자료·법령검토, 중앙부처 질의 및 훈령 개정 건의 ○ 2018. 1. ~ 4. : 법률자문 및 행정처분(5년 소급분 부과징수) ○ 2018. 5. ~ 2020. 3. : 행정소송 수행(원고: 한전 피고: 안산시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소급분: (피고) 1심 패소(신뢰보호원칙 위반), 2심 일부승소, 3심 승소 ○ 2020. 1.~ 8. : 대법원 판결에 따른 점용료 정정 처분, 정기분 징수
장애요인 극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과거에 설치된 송전선로의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 전국사례 전무 ○ 송전선로 허가는 '길이'로 처분하여 '면적' 산정기준 필요 건의 ○ 법률자문 결과 송전선로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 제외대상 및 신뢰보호 원칙 위반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있어, 추가 질의 및 공유수면법령의 논리체계 재정립 처분의 당위성 확보 ○ 1심 패소로 내·외부에서는 법률자문이 부정적임에도 무모한 행정을 추진한 담당자 징계론 및 패소 시 연간 4억원의 이차발생에 대한 책임론에도 포기하지 않고, 원심판결에 불복하여 항소심에서 안산시 패소사유에 해당하는 입증자료 등을 변론하여 행정청의 책무를 수행하는 점용료 징수권을 확보하였음.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내·외부 질타와 시련에도 흔들림 없이 법령검토를 통해 책무 이행 ○ 송전선로에 대해 과거 '길이'로 허가된 것을 '면적'의 개념 접근하여 해수부 훈령개정 건의, 공유수면 상부 공간 점용료에 대한 생각 전환으로 4년 여간 끈질긴 노력으로 징수권 확보 ○ 지방분권 시대 지속 가능한 세원 발굴로 재정 확충
주요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효과성) 현재 총 286억 원 공유수면 점용료 세외수입 부과징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5년 소급분(2013.3~2017년 정기분: 175억 원), 정기분(111억 원) - 개선 전후 대비: 2,193% 세입증가 (기존: 1.9억 원 개선: 41억 원) ○ (확산성) 전국 최초 공유수면 내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 판례, 전국 연안 및 국유지 하천·호소·구거까지 적용 가능한 파급력 제고 ○ (지속성) 매년 40억 원의 세외수입 확보

송전선로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권 확보

I 추진배경

□ 공유수면에 떠 있는 시설물에 점·사용료 징수는 가능할까?

- 근거법령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이하 ‘공유수면법’)
 - 2017년 공유수면법 시행규칙 [별표2] 개정* 사유에 착안하여, 과거 법령이 미흡하여 점용료를 징수하지 못하였지만 매년 새로운 처분인 점용료 징수는 개정된 법령을 적용대상으로 검토

* (개정) 전력선 등 공유수면 공중공간 점용료 산정요율 추가 100의 1.5 적용

- 공유수면법상 송전선로는 ‘공유수면에 떠 있는 건축물’
- 공유수면법 점용료 징수 대상(타 법령과 비교)여부 확인

* 도로법의 경우 송전선로는 송전철탑의 부대시설로 점용료 제외(대법원 판례)

○ 송전설비(철탑 및 선로) 현황

- 사업명 : 송전선로 건설사업
- 사용자 : 한국전력공사
- 허가기간 : 1997년 ~ 공작물 존치시
- 위치 : 웅진~안산~화성~시흥
(전체 L= 38km, 안산 15km)
- 안산 점용면적 : 487,534㎡
(철탑 45기: 30,365㎡, 송전선로: 457,169㎡)
- 점용료 허가 및 점용료 징수권 : 공유수면 관할 시장·군수



II 추진경과

- 2017.1. ~ 10.26. : 해양수산부 질의, 면적산정 기준 필요성 제안
 - ※ 해수부 회신 : 송전선로에 대해 공유수면 점사용료 징수 해당
 - / 2017.12.22. 해수부 훈령(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 처리 규정) 개정 고시
- 2018.01.02. : 송전선로 점용료 부과를 위한 면적요청(시 → 한전)
- 2018.01.12. : 송전선로 면적 자료 제출(한전 → 시)

- 2018.02.21. :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 법률자문 및 판례 등 최종검토
- 2018.02.22. : 철탑 공시지가 재산정 5년 소급 점용료 부과징수(3.8억 원)
- 2018.02.22. : 송전선로 점용료 5년 소급 부과 사전예고(시 → 한전)
- 2018.03.08. : 송전선로 점용료 5년 소급 부과 의견제출(한전 → 시)
 ※ 한전의견: 도로법 판례에 따라 송전선로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징수는 불가하며, 공유수면 상부공간에 대한 점용료 부과징수 사례가 전국적으로 전무
- 2018.03.12. : 사전처분 전 의견제출 내부검토 및 점용료 부과징수(215억)
 ⇒ 최종판결에 따른 170억 원 정정처분('20.2.18.)
- 2018.05.18. ~ 2020.01.31. : 5년 소급분 부과처분취소 소송 수행
 ※ 원고 : 한국전력공사, 피고: 안산시장
 - 1심 선고(2019.01.10.) : 패소 (사유: 신뢰보호원칙 위반)
 - 2심 선고(2019.09.27.) : 일부 승소
 - 3심 선고(2021.01.31.) : 승소
- 2018.10.10. : 2018년 정기분 53억 원 ⇒ 41억 원 정정처분('20.3.12.)
- 2019.01.04. : 2018년 정기분 부과처분취소 소송 제기
 ※ 5년 소급분 부과처분취소소송 확정(2020.1.31.)에 따라 원고 소 취하
- 2019.10.08. ~ 2020.02.18. : 송전설비 점용사용 면적 협의 (16회)
- 2020.03.24. : 2019년 정기분 부과징수(34.7억 원)
- 2020.08.06. : 2020년 정기분 부과징수(35억 원)

III 주요 추진내용

- **처분(점용료 징수) 전 철저한 법령검토 및 명확한 판단**
 - (법령검토) 공유수면을 점용·사용 중인 송전선로에 대해 '허가 당시'와 '현행'공유수면법 적용기준 해석 및 사례 검토
 - (신뢰보호원칙 위반여부 확인) 오랜 기간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은 것이 신뢰보호원칙 위반에 해당하는 법률 자문에도, 시 법률자문관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판례 검토하고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

□ 3년 여간 처분취소 소송에 적극적인 행정소송 대응

- 행정처분을 시행한 담당자 직접 준비서면 작성 및 변론 참여
- 공유수면법령 등의 제·개정 취지 및 목적, 점용료 부과징수 대상 근거 입증, 공유수면 내 설치된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 최초 판례

□ 한전-시 16번의 협의와 현장점검 및 측량을 통한 면적 확정

IV 문제점 및 개선사항

□ 문제점

- (법령미흡)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 산정을 위한 기준 미흡
 - 실질적 면적으로 설치하여 점·사용하고 있음에도, 허가 시 송전선로에 대해 ‘면적’ 개념 부족으로 ‘길이’로 허가
- (부정적 법률자문) 20년이 경과 하도록 한 번도 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신뢰보호원칙 위반 및 도로법에 따른 송전선로 점용료는 부과할 수 없는 대법원 판례(서울시-한전, 2012년 선고) 적용 여지 있음. 1심 패소 후 거액의 이자에 대한 책임론과 담당자 징계론
- (한전의 법적 대응예고) 과거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한 공유수면 점·사용료 부과징수 사례가 전무 하고, 허가 당시부터 점·사용료 납부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협의 과정에서 행정소송을 예고
- (면적 합의) 판결에 따른 송전선로 직접 점용면적 확정을 위한 한전과 협의 지연 및 난항

□ 개선사항

- (면적산정 기준) 해수부 질의를 통한 점용료 징수 대상 근거자료 확보, 공유수면 상부 공간 면적산정 규정 필요성 건의에 따라 해수부 훈령 개정 (2017.12.22.: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업무처리규정)
- (신속한 처분) 부정적 법률자문에 포기하지 않고 추가 법률자문 및 시 법률자문관과 자체검토 하고 신속하게 점용료 부과징수

- (행정소송 최종승소) 3년 여간 대행공기업(대행 로펌) 상대 소송수행
 - 재판부 이해와 정확한 판단을 구하기 위해, 현장여건을 가장 많이 아는 처분담당자 직접 준비서면 작성 및 변론 참여
 - 법률자문(처분 전 6회 자문, 소송수행 중 13번 자문), 유사판례 확인
 - 과거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도 점용료 징수 대상 최초 판례
- (징수권 확보) 한전과 16번의 협의, 측량, 현장실사 및 안산시 공간 정보시스템 활용 등 다양한 방법으로 판결에 따른 면적 확정에 합의

V

주요성과

□ [효과성] 기존 대비 2,193% 공유수면 점용료 증대

- 이 사건 공유수면 점용료 징수액은 286억 원(2013~ 2020.현재)으로, 기존 공유수면 점용료 대비 연간 2,193%(기존 1.9억 원 개선 41억 원)의 세입증가로 효과가 매우 큼

□ [개선노력도] 최초 검토에서 대법원 확정판결까지 '4년의 노력'

- 처분 전 해수부 질의 및 법령의 미흡 부분 개정 건의, 법률자문, 법령검토 등 철저한 준비와 적극적인 취소소송 대응
- 다른 지역보다 앞선 검토와 처분으로 주변의 질책과 비난에도 불구하고 4년 여간 끈질긴 노력으로 최종 점용료 징수권 확보

□ [확산가능성] 송전선로 설치 전국연안 540Km

- 안산에 설치된 송전선로(L=15km)는 전국(L=540km) 연안의 2.7%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권한 확보로 전국적으로 확산 가능성 매우 큼
- 과거 공유수면(바다에 국한하지 않고, 국유지 하천·호수·구거포함)에 설치된 송전선로도 점용료 징수 대상으로 전국적인 파급효과 큼

□ [지속성] 매년 40억원 이상 세외수입 창출 (↓향후 10년간 추정금액: 억원)

년 도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징수액	37	38	40	41	43	45	46	48	50	52

‘신뢰 보호의 원칙’의 희생양 市, 한전에 215억 소송 1심 ‘패소’

市, 2017년 개정 시행령 따라 철탑 선하지 215억 점용료 징수 한전, “철탑 이외 공유수면 점용료는 받지 않기로 했다”며 소 제기 담당자 행정처리에는 문제 없어… 市, “항소 할 것” 2심 결과 주목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이화 한전에서 제기한 대부도 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파장이 일고 있다. 1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시는 지난해 한전으로부터 받은 점용료 215억5천여만원을 고스란히 토해내야 할 상황이어서 앞으로의 시의 대처가 매우 신중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수원지방법원 제5형정부(재판장 권덕진)는 지난 7월 10일 내린 1심 선고에서 안산시가 지난해 3월 한전에 부과한 점용료·사용료 215억5천522만8천720원에 대한 부과 처분을 취소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해당 소송은 시가 그간 한전이 대부도 공유수면에 설치, 사용해 온 송전철탑 47기의 철탑 부지에 대해 부과해 온 점용·사용료 이외에, 지난해 3월 한전 측이 제출한 도면에 의거해

총 47기의 철탑이 점유하고 있는 공중공간(선하지)에 대한 점용료를 추가로 부과해 납부 받은 비용을 한전 측에서 돌려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소송이다.

한전은 철탑 선하지의 점용료 부과에 대해 시의 부과 처분이 법률상 근거가 없어 이뤄졌으며, 송전철탑의 공유수면에 인접한 토지가 잘못 선정되었고, 공유수면 점용허가 당시 점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기에 위법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시가 부당한 법률상 근거에는 문제가 없으며, 해당 업무 규정은 해양수산부고시로 시행된 것으로 그 형식과 내용이 재량준칙에 불과하기에 토지 선정이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공유수면 점용허가 당시 점용료를 받지 않기로 했기에 위법하다는 한전의 주장에는 한전 측의

‘적당한 신뢰에 반하여 이뤄진 것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며 한전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 같은 판단의 근거로 ‘신뢰보호를 요구하는 개인보호의 사유가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보다 중대하다고 판단된다’고 적시해 안산시가 한전에 지켜야 할 신뢰 보호의 원칙을 정당한 행정절차에 의한 점용료 부과보다 우선적인 요소라고 판단했다.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행한 언동의 정당성 또는 계속성에 대한 보호가치 있는 개인의 신뢰를 보호하는 법원칙을 말하는데, 이번 판결로 인해 과연 한전이 안산시에 대해 개인의 입장을 위한 대상인지에 대한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시는 시정조정위원회를 열어 위 사건을 주요 소송으로 지정하고 항소에 들어갈 것”이라며, “공직자의 정당한 행정절차에 의해 진행된 적법한 부과였기에 시는 끝까지 법적 다툼을 해 나갈 것”이라는 계획을 밝혔다.

관련기사 >>> 4면
이태호기자 kazibansarimes.com

[보도일자: 2019.6.18.]

안산시, 전국 최초 공유수면 송전선로 점용료 징수

매년 40억 원 안팎 세외수입 확보...복지·시화호 해양레저 등 시민 위한 각종 사업에 투입

안산시(시장 윤화섭)가 전국 지자체로는 최초로 공유수면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 부과를 이끌어내 매년 수십억 원의 세외수입을 확보하게 됐다. 공유수면 위에 설치된 송전선로에 대해서도 사용료를 거둬들일 수 있도록 안산시가 선례를 만들 어낸 것이다.

시는 한국전력공사가 시를 상대로 낸 '송전선로 및 송전철탑 점용료 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았다고 17일 밝혔다.

부과대상은 한전이 안산시 관할 시화호

공유수면과 대부도 일원에 2004년 설치한 철탑 47기의 송전선로에 대한 점·사용료다.

시는 이를 통해 매년 주변 공시지가를 토대로 산정된 점용료를 세외수입으로 확보하게 됐다. 올해 37억 원으로 추정되는 점용료는 매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반영되면 내년에는 40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추가 확보된 세외수입을 대학생 본인부담 등록금 반값 지원 사업, 시화호 해양레저 관광지 조성사업 등 시 경쟁력을 높이는 사업에 투입할 예정이다.

이번 성과는 송전철탑 설차에 따른 회생을 감내하고 있는 안산시민에게 보상이 뒤따라

야 한다는 윤 시장의 강력한 의지와 공직자들의 적극적인 행정이 이뤄낸 결과물이다.

345kV 영흥도 송전선로 건설사업으로 시화호 수면 약 16km 길이에 걸쳐 설치된 송전선로는 영흥화력발전소에서 생산하는 전력을 경기서남부 지역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간 송전철탑에 대한 점용료는 징수돼 왔으나, 송전선로에 대한 점용료에 대해서는 명확한 규정이나 판례가 없었다.

이에 따라 시는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공유수면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근거로 법률자문 등을 통해 송전선로 선하지(전선 아래 토지 및 수면)에 대해서

도 점용료를 부과해야 한다고 해양수산부에 질의하는 등 행정조치에 나섰다.

2010년 1월 공유수면관리법과 공유수면매립법이 통합돼 제정된 '공유수면법'에서 등에서 송전선로를 '건축물'로 규정하고 있다며, 점용료 부과 근거가 명확하다는 논거도 만들었다.

시는 이 내용을 토대로 2018년 3월 한전에 점·사용료로 215억 원(2013~2018.5)을 부과하고 전액을 납부 받았고 한전이 두 달 뒤 송전선로 점·사용료 부과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면서 소송 전으로 이어졌다.

▶2면에 계속
김영민 기자

[보도일자: 2020.2. 18.]



[현장사진]

**눈을 크게 뜨면 숨어 있는
도로점용 세외수입이 보여요**



부천시

우수사례 요약서

제목	눈을 크게 뜨면 숨어 있는 도로점용 세외수입이 보여요
구분	주요 내용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부천시 신중동 관내 대형공사장 4개소 ○ 추진기간 : 2019. 1. ~ 현재 ○ 부 과 금 : 7건 / 121,886,100원 ○ 내 용 : 공중에 설치된 공사시설물 변상금 및 도로점용료 부과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1. : 도로 위 공중점용 시설물(낙하물방지망 등)에 대한 무단 점용 사례 인식 ○ '19. 1. : 도로점용허가 대상인지 법적 검토 및 국토교통부 질의 요청 답변 회신(낙하물방지망도 도로점용허가 대상 확인) ○ '19. 1. : 관내 대형공사장 특별관리대상으로 지정 관리 ○ '19. 2~현재 : 공사용 시설물(낙하물 방지망 등) 변상금 및 도로점용료 부과 징수 <div style="text-align: center;">▶ 7건 / 121,886,100원 부과징수 완료</div>
장애요인 극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사시설물(낙하방지망, 안전휀스 등)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라는 시공업체의 부정적인 인식 및 미허가에 대한 ○ 기존에는 도로점용허가 및 점용료 부과를 받지 않았다는 현장의 반발 <div style="text-align: center;">▶ 국토교통부 질의답변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시설물도 도로점용 허가 대상임”을 근거로 <u>지속적인 시공업체 현장설득 및 공감대 형성</u></div>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사용료를 신고 대상만 수동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신축 공사현장에 대한 수시 현장 확인을 통한 무단 점용사례가 없도록 능동적으로 세외수입 대상 발굴 ○ 대형 공사장의 공중 시설물도 점용허가 대상이라는 인식 개선을 통한 합법적이고 안전한 공사유도 및 도로사용료 부과 징수
주요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점용료(공중시설물 등) 세외수입 부과징수로 세수증대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상금 및 도로점용료 부과 세외수입 발굴 : 7건 121,886,100원 ○ 공중시설물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로 부과대상에 대한 인식 개선과 대상 확대 가능성 제시 ○ 지속적으로 전국에 대형공사장은 생기며, 도로점용료 부과대상도 지속적으로 발생 ○ 타 자치단체로 전파·확산 가능한 신규수입원 발굴

눈을 크게 뜨면 숨어 있는 도로점용 세외수입이 보여요

I 추진배경

□ 과제 선정 내용

- 관내에 아파트, 지상복합건축물, 오피스텔 등 대형 공사장에서 별도의 도로점용 허가 없이 공사용 시설물을 도로 위 공중을 점용하면서 공사 중에 있음을 도로순찰하는 과정에서 발견하게 됨.
- 도로의 공중에 설치된 공사용 시설물도 도로점용허가의 대상인지 여부에 대해 관련법 연찬 및 내부 토론검토

도로법 제55조【점용허가를 받을 수 있는 공작물 등】

법 제61조제2항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법 제107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에는 협의 또는 승인을 말한다)를 받아 도로를 점용할 수 있는 공작물·물건, 그 밖의 시설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8. 공사용 판자벽·발판·대기소 등의 공사용 시설 및 자재

▶ 관련법 연찬 및 내부 토론 결과 : [공사용 공중시설물도 도로점용 허가 대상으로 인지](#)

- 국토교통부 전자민원(국민신문고) 질의 내용 결과 도로법에 따라 도로점용허가 대상임을 확인

【국토교통부 전자민원(국민신문고)】

- Q. 건축물 신축공사 시 의무적으로 설치되어지는 낙하물방지망에 대해 도로 위로 점용하고 있는 공간점용에 대해 도로점용허가가 필요한 사항인지 알고 싶습니다.
(접수번호 1AA-1805-242787)
- A. 건축물의 신축공사 시 설치하는 낙하물방지망이 도로(도로구역 포함)를 점용하고 있다면 도로법 제61조(도로의 점용허가)에 따른 도로점용허가를 받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

- 관내 대형 공사장(5개소)에 도로점용허가 누락 된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변상금과 도로점용허가 유도하여 도로점용료(세외수입) 부과 절차 추진

- 기존에 공중에 설치된 공사용 시설물에 대하여 도로점용료를 부과하지 않았던 원인을 분석한 결과 건물시공 과정의 안전상의 이유로 설치하도록 의무적으로 정해진 낙하물방지 시설물이라 도로점용허가 대상인지 시공업체에서도 인지하지 못하여 신고를 하지 않았으며, 도로점용 담당자도 신청이 없으면 인지하기 어려워 도로점용료를 부과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됨.
- 공사용 진출입로 및 자재적치 등 도로면과 바로 접하는 부분은 일시적으로 공사를 위해 점용하더라도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고 점용료 부과도 누락하지 않지만, 도로면 위의 공중에 설치된 시설물에 대한 부분은 공사현장에서도 도로점용허가 대상인지 모르고 있어 도로점용허가 대상임을 현장 점검 및 출장 시 시공자에게 지속적으로 허가받도록 설득과 안내함.
- 공사용 시설물은 공사가 끝나면 도로점용 사용료를 부과할 근거가 없어 적기에 변상금 부과 및 점용허가를 신고하도록 독려해야만 세외수입 누락을 방지할 수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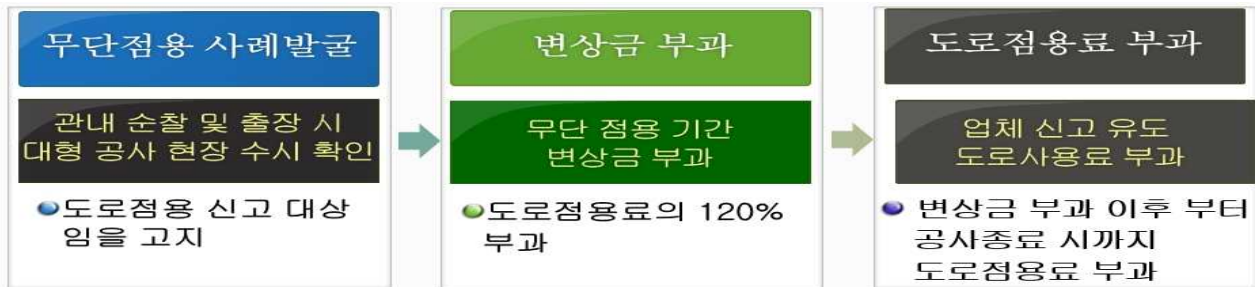
【대형공사장 공사시설물: 도로사용료 부과 대상】





III 주요 추진내용

- 도로사용료를 신고 대상만 수동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신축 공사현장에 대한 수시 현장 확인을 통한 무단 점용사례가 없도록 능동적으로 세외수입 대상 발굴**
- 도로관리팀 전원 구성원이 관내 도로순찰 시마다 불법 도로점용사례 및 신고되지 않은 지장물에 대한 모니터링
 - ▶ 1일 3회 이상 관내 순찰 및 지도 감독
- 대형 공사장의 공중 시설물이 점용허가 대상이라는 **인식 개선을 통한 합법적이고 안전한 공사유도 및 도로사용료 부과**



공중에 설치하는 공사용 시설물도 점용 허가 대상임을 시공사에 인식시켜, **합법적으로 도로점용을 유도하여 점용료 부과**

IV 문제점 및 개선사항

- “공사시설물(낙하방지망, 안전펜스 등)은 도로점용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인식으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에 어려움이 많았음**
- “공중에 설치하는 공사시설물은 전에도 도로점용 허가를 받지 않았다. 허가 대상이 아니다”라는 인식으로 **현장 시공자의 반발이 많았으며,**

대부분의 지자체나 행정복지센터에서는 공사용 공중시설물에 관행적으로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지 않아 점용료 부과에 어려움이 많았지만, **관련법에 대한 안내 및 시공자 설득으로 부과징수하게 됨.**

▶ 국토교통부 질의 내용을 근거로 “안전을 위해 의무적으로 설치하는 공사시설물도 도로점용 허가 대상임” 지속적으로 현장설득 및 공감대 형성

V 주요성과

□ **신규세외수입 성과 및 실적 : 7건 121,886,100원 세수증대**

- 변상금: 3건 6,209,400원/ 도로점용료: 4건 115,676,700원
(단위 : 원)

공사장	면적	변상금	도로 점용료	비고
계	779.88㎡	6,209,400	115,676,700	
㈜대우건설 (중동 1059번지 서측)	69.89㎡	641,500	12,276,100	변상금 부과 후 도로점용허가
㈜대우건설 (중동 1059번지 동·남측)	299.39㎡	5,173,400	-	변상금 부과 후 자진철거
㈜대우건설 (소향로 181)	273.6㎡	-	7,387,200	신청서 접수 후 도로점용허가
상훈종합건설(주) (길주로 205)	137㎡	394,500	2,342,700	변상금 부과 후 도로점용허가
현대엔지니어링(주) (중동 1154번지)	1,142.6㎡	-	93,670,700	신청서 접수 후 도로점용허가

○ 도로점용 사용료를 신고건만 수동적으로 부과하지 않고, 신축 공사현장 수시확인을 통해 무단 점용사례를 발굴하여 시기를 일실 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세외수입 대상을 발굴하여 세외수입 증대에 기여

▶ 공사용 시설물은 공사가 끝나고 철거하면 징수근거가 사라져 세외수입부과할 수 없음

□ **지속적으로 전국에 대형공사장은 생기며, 부과대상도 지속 발생**

○ 도로점용료 부과를 단순히 도로 위 지면에 놓인 시설물만 부과 대상으로 한정하지 않고, 도로법 등 관련법에 대해 검토하고 연구하여 관행적으로 놓치고 있는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에 대해 도로점용료를 부과함으로써 도로점용료 부과대상에 대한 인식 개선과 부과대상 확대 가능성**을 보여줌.

▶ 공중 시설물, 지하, 통로, 육교, 그 밖에 유사한 공작물에 대한 도로사용 점용허가 유도

□ **타 지자체 확대 전파성이 매우 높음**

○ 전국적으로 건축을 위한 대형공사장은 많으며, 타 지자체에서 누락되고 있는 도로점용료(공중낙하시설물 등)를 부과징수 확대할 수 있음.

좌구산휴양랜드와 함께 커가는 증평 살림(林)



우수사례 요약서

제목	좌구산휴양랜드와 함께 커가는 증평 살림(林)						
구분	주요 내용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증평군은 2003년 출범한 후발 자치단체로 지역자원 및 세외수입원이 전무하여 향후 지역소멸 1순위 자치단체로 평가됨으로써 생존전략 필요 ○ 2005년 행정안전부의 낙후지역(발전도 하위 70개 단체) 지원사업인 신활력 사업비를 종잣돈으로 폐교와 축사로 버려진 좌구산 일원 개발 착수 ○ 위 치 : 증평군 증평읍 솟점말길 107 좌구산휴양랜드 일원 ○ 조성배경 : 버려진 무용지물(無用之物)의 공간을 산림휴양의 유용지물(有用之物)의 공간으로 조성함으로써 세외수입원 발굴 및 주민 삶의 질 향상 ○ 주요시설 : 좌구산휴양림, 울리휴양촌(폐교), 가상증강현실체험장, 별무리하우스, 숲 명상의 집, 천문대, 휴게 쉼터, 삼기저수지 스토리텔링 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요 프로그램 : 숲해설, 생태공방, 산림레포츠, 천체캠핑, 산림치유 등 						
추진경과	연도별	2007	2009	2013	2015	2017	2019
	내 용	울 리 휴양촌 개 장	좌구산 휴양림 개 장	좌구산 천문대 개 장	좌 구 산 캠핑공원 개 장	짚라인, 현수교 썰매장, 숲 명상의 집 개장	가상증강 현실체험 시설 개장
장애요인 극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후발 자치단체의 여건상 시급한 자치 인프라 구축 욕구와 함께 지역 내에서 가장 낙후한 산간지역에 대규모 투자 사업에 대한 반대 여론 팽배 및 거부감 ○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지속적 설득과 담당 공무원(황인수)이 울리마을 명예이장이 될 만큼 장기 근무(7급→5급) 통해 공간의 체계적 조성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악(좌구산)과 호수(삼기저수지) 자원 활용 숙박시설 조성 : 31동 250명/일 수용 ○ 4차 산업 혁명시대 대비형 시설 조성 : 좌구산천문대, VR·AR체험장 조성 ○ ①좌구산천문대 ②자작나무숲 ③바람소리길 ④명상구름다리 ⑤독서광 김득신 묘소 ⑥별천지공원 ⑦좌구정 ⑧삼기저수지 둘레길 ⑨초정약수의 좌구산 구경(九景)거리 선정 장소 마케팅 ○ 매년 1,000여명이 참여하는 산악자전거 대회, 숲체험, 족욕, 꽃차체험은 물론 생태공예, 우드버닝, 천연염색, 꽃차 덕음 체험 등 다양한 체험과 즐길거리 발굴 						
주요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좌구산 자연휴양림 평균 숙박가동률 3년 연속 “충북 도내1위” 기록 ○ 산림레포츠와 힐링을 즐길 수 있는 “특색있는 휴양림”으로 선정 : 산림청 ○ 오지인 울리 마을이 연간 50만명이 찾는 중부권 최고의 명소로 변화 : 균형발전 ○ 2007년 ~ 2019년 시설 운영 누적 수입금(세외수입) : 6,695백만원 ○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직접효과(2019년) : 1,796백만원 <p style="text-align: center; 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세외수입 + 균형발전 + 일자리를 창출한 지역균형뉴딜의 전형적 모델이 됨</p>						

좌구산휴양랜드와 함께 커가는 증평 살림(林)

I 추진배경--무용지물(無用之物)을 유용지물(有用之物)로 만들자

□ 지역경제 활성화 및 자주 재원 확충 필요

- 조세 저항이 없는 세외수입 재원 확보를 위한 아이디어 발굴 주력
 - 후발 자치단체 한계 극복 및 축사와 폐교로 유향화된 무용지물(無用之物)의 낙후 마을인 율리 일원 좌구산의 자원화를 통한 유용지물(有用之物) 도모

II 추진경과 -----10년이면 좌구산도 변한다

□ 이랬던 곳이.....

- 마을경관이라고는..... ⇒ 아무도 찾지 않는 농업용 저수지뿐이었습니다.
- 마을자원이라고는..... ⇒ 방치된 초등학교 폐교뿐이었습니다.
- 마을환경이라고는..... ⇒ 냄새나는 계사, 축사 그리고 돈사뿐이었습니다.



□ 이렇게 변했습니다.

- 마을 만들기 10년! 이제는 연간 50만 명이 찾는 돈 버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 **그린뉴딜 + 디지털 뉴딜 복합형 산림휴양시설 조성**

산림휴양 주요 시설현황

- 산 림 육 장 : 교육체험지구, 체육시설, 산책로 2km, 등산로 5km
- 율리휴양촌(폐교의 재활용) : 신활력관(1동), 생활관(4실), 한옥휴양관(4실)
- 자연휴양림 : 별무리하우스(12실), 병영하우스(4실), 황토방(5동), 숲속의 집(10동), 휴게 쉼터
- 천문대 및 VR체험장 : 천문대1동(지하1층, 지상3층), 주차장 1개소, 가상증강현실체험장 1동
- 좌구정 산림공원 : 정자(亭子), 테마쉼터 3개소, 산책로 2.1km, 주차장
- 삼기저수지 생태공원 : 테마쉼터 4개소, 습지공원, 전망대 1개소, 등잔길 산책로 3km, 주차장 2개소
- 공원 : 별천지공원(49,253㎡) 캠핑공원(18,071㎡), 느림보 쉼터 및 별천지 유아숲 각 1개소
- 좌구산 명상구름 다리 : L=230M

힐링 [명상의집] 시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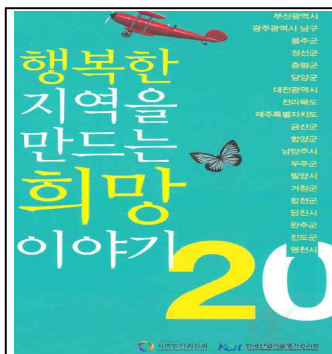
- 주요시설 : 숲 명상의 집 (지하층, 지상3층) / 강당1개소, 주차장 1개소
강당, 명상의 방, 소나무방, 자작나무방, 생태공방, 천연염색공방, 물치유실(습식), 족욕체험실(건식, 습식)
건강측정실, 휴테라피 체험실
- 주요 프로그램 : 우드버닝, 자연물 만들기, 하바리움, 나전칠기, 목공예, 천연염색 프로그램, 다도, 명상
유관기관 및 기업 세미나, 행사 및 회의 등

산림레포츠 시설

- 숲속모험시설 : 키즈코스(12종), 짚라인(78m) / 썰매장 : 87m, 6개 라인
- 하강레포츠시설(좌구산줄타기) : 5코스 / 1,200m

□ **휴양랜드 조성 문제점과 애로사항**

- 시급한 자치 인프라 구축 욕구에도 불구하고 낙후지역 투자에 대한 거부감 및 일부 거주민들의 이주에 따른 반발
- 주민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지속적 설득으로 문제 해결
- 최근에는 코로나19로 인한 운영 중단 및 세외수입 감소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숙박동을 코로나 관련 해외 입국자 격리시설로 활용함으로써 시설 활성화
- 향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 대응을 위한 비대면 관련 프로그램 발굴과 함께 꽃차, 기념품 등 온라인 판매로 세외수입 증대 모색



사고뿐이 아니었다. 사업 초기엔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았다. 특히 토지편입에 대한 토주자들의 불만이 거셌다. 대부분의 주민들은 사업의 취지를 듣고 이해해 주었으나 유독 한 사람만은 끝까지 반대하며 군은 물론 도, 심지어는 중앙청사까지 항의문을 넣었다. 만취상태에서 도끼까지 들고 황 팀장 사무실로 찾아오던 이 사람은 공사로 인해 집을 잃을 상황에 놓여있었다. 숲만 마시면 도끼를 들고 군으로 찾아오는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 사업이 진행되고 절터를 옮긴 후에도 습관적 항의는 계속되었다. 이었던 사람이 마음을 돌린 것은 불과 얼마 전. 이제는 친구가 되어버려 더

□ 좌구산 휴양랜드의 세외수입 기여도(2019년 수납액 기준)

○ 증평균 세입현황 및 항목별 비중

(단위: 백만원)

구분	합계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등	보조금	보전수입 등
금액	269,726	20,832	8,398	96,271	19,007	75,074	50,144
비중	100%	8%	3%	36%	7%	28%	18%

○ 경상적 세외수입 항목별 비중 및 휴양랜드 비중

(단위: 백만원)

경상적 세외수입 항목별 비중								사용료 수입 중 휴양랜드 비중		
구분	합계	재 산 임대수입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	사업 수입	징 수 교부금	이자 수입	계	휴양 랜드	휴양 랜드 외
금액	3,843	97	1,360	981	192	603	610	1,360	1,263	97
비중	100%	3%	35%	25%	5%	16%	16%	100%	92.8%	7.2%

□ 지역경제 활성화 기여도

○ 지역경제 측면 : 산림 휴양 인프라를 기반으로 관광객 유치

- 2019년 방문객수 52만명 돌파(2018년 대비 12,000여명 증가)

○ 지역주민소득 창출 측면 : 지역 민박 및 식당 매출 증가

-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 직접 효과: 1,796백만원(2018년 대비 488백만원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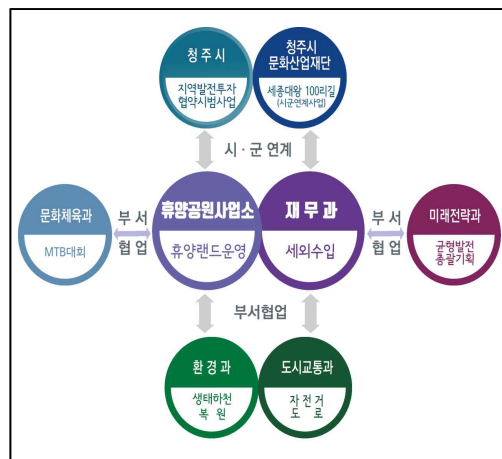
세외수입 + 균형발전 + 일자리 1석3조 효과를 창출한 **지역균형뉴딜의 전형적 모델**

□ 성공 Point는?

○ 하드웨어 사업과 함께 좌구산에 묘소가 있는 조선 최고의 독서광 김득신 스토리텔링 등 발굴·활용

○ 단기적 접근이 아닌 장기적 접근과 함께 부서 간 칸막이 없는 협업 행정 추진

○ 증평균의 좌구산과 청주시 초정약수의 “경계는 지도에만 있다”는 슬로건으로 지역간 연계 협력 사업 추진



김득신 Story	천연두를 앓아 이룬했으나 백이전을 11만 3천번 읽는 다독으로 59세에 과거에 급제한 대기 만성의 인물 → 좌구산(坐龜山) 거북의 느낌과 성실의 이미지와 접목하여 스토리텔링화
초정약수	세종대왕이 123일간 머물렀던 행궁이 있는 곳으로 좌구산과 접하고 있어 증평균과 청주시는 연계·협력을 통해 균형발전위원회의 ① 세종대왕 100리길(2013년~2014년) ② 초정클러스터 지역발전투자협약 시범사업(2019~2020년)을 공동 추진

□ **향후 계획 (확산가능성과 지속성)**

- 별천지 숲 인성학교 조성 : 2021년 준공 예정
 - 하드웨어(숙박시설, 모험 및 체험시설 등)와 스토리(김득신의 독서 이야기 + 세종대왕 이야기)를 결합한 인성 프로그램 발굴·운영
- 산(좌구산) + 수(조정약수) 연계형 관광상품 개발 모색
 - 증평군의 좌구산 휴양랜드와 청주시의 조정행궁 및 태교랜드 연계형 자원의 발굴

참고 **좌구산휴양랜드 운영 통계자료**

□ **휴양랜드 조성 후 연도별 기타사용료 수입 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2006년 (휴양랜드 조성 전)	2007년 (휴양랜드 조성 첫 해)	2013년 (휴양랜드 조성 6년차)	2019년 (휴양랜드 조성 12년차)
기타사용료	360	12,993	412,461	1,263,244

* 기타사용료 수입이 휴양랜드 조성 첫해 대비 약100배 증가

□ **연도별 휴양랜드 방문객 현황** (단위 : 명)

연도별	시설별	방문객 현황(명)						
		계	울리 휴양촌	좌구산 휴양림	좌구산천문대	캠핑장, 레포츠	명상의 집	기타방문객 (등산 등)
2007년(1년차)		3,595	3,595	-	-	-	-	-
2013년(6년차)		103,970	25,430	31,319	9,385	-	-	37,836
2019년(12년차)		526,790	20,186	46,818	26,570	22,575	43,037	367,604

* 휴양랜드 조성 첫해 대비 방문객 수 약 146배 증가

□ **가동률 현황 (3년 연속 충북도내 1위)**

구 분	좌구산휴양림	울리 휴양촌	합 계	비 고
2018년도	74.0%	46.9%	67.3%	충북 도내 1위
2017년도	69.2%	48.7%	64.6%	충북 도내 1위
2016년도	69.9%	47.7%	65.8%	충북 도내 1위

* 충청북도 평균 가동률 : (2018년) : 45% → (2019년) : 38%

□ **주민소득 및 일자리 창출 등 직접효과** (단위 : 백만원 / 명)

구 분	연간 주민소득					일자리 창출 시설관리 고용창출
	합계	매점, 주민식당, 카페	민 체 박 체험마을	주민고용 소 득	농산물 판매장	
소득 및 고용	1,797	799	230	762	6	10,000명 / 연인원

신용카드 활용한 지출 확대로 세외수입 증대 효과



김 제 시

우수사례 요약서

제목	신용카드 활용한 지출 확대로 세외수입 증대 효과
구분	주요 내용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신용카드 사용액 일정 비율의 금액이 이듬해 세외수입으로 환원 (카드사 제휴 협약 적립금 : 김제시의 경우 1%) ○ 신용카드를 활용한 지출을 확대하여 적립금 증가를 통해 세외수입 증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출업무 방식의 변화를 통해 세출 활동으로써 세입을 창출 - 정기적 지출(전기, 통신, 가스 등), 4대보험료, 지적측량 수수료 등 공공기관 대상 지출을 신용카드 결제로 변경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8. 3. : 지역신문을 통해 인근 지자체의 카드 적립금이 적음을 발견 ○ '18.11. : 전년도 '지출집행현황'을 분석 ⇒ 카드사용률 제고 방안 수립 (정책아이디어 제안) ○ '19. 1. : 김제시 법인카드 이용 활성화 계획 수립 ○ '19. 4. : 법인카드 활용한 4대보험 납부방법 개선 계획 수립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원 4대보험 납부방법을 카드결제로 변경
장애요인 극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가중 예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내 소상공인 제외한 공공기관 등으로 추진 대상 축소 ○ 직원 4대보험 납부 방식과 수수료 등의 문제 발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산·인사·지출부서의 협업으로 해결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무원 지출업무 방식의 변화만으로 세외수입 증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변화 가능한 분야의 적극적 발굴과 전파 ⇨ 전 부서의 변화 이끌 - 직원 4대보험 납부 방식의 개선 ⇨ 새로운 세외수입원 발굴
주요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적립금 62백만원 달성(전년도 12백만원 대비 5배 상승) ○ 예산 규모가 큰 지자체일수록 세외수입 증대 효과 클 것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자체 243곳 5천만원씩 증가 ⇨ 전국 세입 120억원 증가 가능 ○ 부가적으로 신용카드 결제일부터 카드 대금 출금일까지 결제대금의 자금 보유기간이 증가하여 '공공예금 이자수입' 증대 효과 ○ 공공요금, 지적측량 수수료 등 신용카드 납부 방식 정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카드 자동납부 신청 후 담당자 변경되어도 지속

신용카드 활용한 지출 확대로 세외수입 증대 효과

I 추진배경

□ 지자체 카드 사용액의 일정 비율은 세외수입 환원

- 지자체는 카드사와 제휴 협약을 통해 1년간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의 일정 비율의 금액(김제시:1%)을 이듬해 제휴사로부터 환원받아 세외수입으로 납부

- 지역신문을 통해 우리 시와 예산 규모가 유사한 타지자체의 카드 적립금이 많은 것을 발견, 인근 지자체의 적립금액 확인

※ 2018년 10월말 기준 인근 지자체 적립금 현황(계획 수립 당시 활용 데이터)

지자체	A시	김제시	B시	C시
적립금	29백만원	11백만원	47백만원	28백만원

- 우리시 보다 예산 규모가 작은 지자체에 비해 신용카드 사용액이 적으며, 해마다 사용액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을 확인

※ 우리 시 연도별 카드사용 적립금 추이

연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적립금	14.5백만원	13.7백만원	13.2백만원	12.7백만원

□ 지출집행현황 분석을 통해 문제분석

- 지방재정시스템에서 조회한 2017년 지출집행현황 자료를 토대로 통계목별(공공운영비, 시설비, 자산취득비 등)로 분석하고, 재무회계 규칙 등 법령을 확인하여 신용카드로 집행가능한 지출 자료를 추출

- 회계 관련 규정상 카드사용이 불가능하지 않음에도 다른 방식의 지출을 선호하고 있음이 확인

- 카드를 사용하는 지출을 확대한다면 적립금을 증대시킬 수 있다는 생각으로 ‘김제시 하반기 정책아이디어’ 공모

II

추진경과

□ 김제시 법인카드 활성화 방안 수립 (‘19. 1.)

- 관내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지출을 제외한 정기적으로 지출되는 공공요금, 통신요금, 각종 임차료를 카드결제로 납부방법 변경하는 것을 중점적으로 추진

□ 법인카드 활용한 4대보험 납부방법 개선 계획 수립 (‘19. 4.)

- 신용카드 결제로 납부방법 개선하여 새로운 세외수입원 발굴 효과 기대

III

주요 추진내용

□ 지출집행현황 분석을 통한 지출방식 변화 대상 발굴

- 「김제시 법인카드 활성화 방안」 수립 시행
 - 지출집행현황의 분석 자료를 토대로 2017년 신용카드 사용이 가능하였음에도 다른 방식을 이용한 지출을 분석하여, 지출방식(법인카드 활용)의 변경을 통해 2019년 카드사용 적립금을 45백만원으로 목표로 설정
- 「법인카드 활용한 4대보험 납부방법 개선 계획」 수립 시행
 - 공무원, 공무원 등 매달 인사부서에서 총괄 관리하는 직원의 4대 보험료(공무원, 공무원, 기타직 및 기간제근로자의 경우 고용·산재보험료)는 2018년 약 63억원, 2019년 68억원에 달하며, 이를 신용카드로 납부할 경우 카드결제 납부수수료(0.8%)를 제외하면 연 8백만원 이상 추가 세입 발생*
 - * 68억원 중 신용카드 결제 불가능한 국가부담금 27억을 제외한 카드결제 가능액은 41억원이며, 적립금은 카드결제의 0.2%에 해당하는 8백만원

□ 전직원 변화를 위한 노력

- 각 부서 회계담당자에게 전과교육을 통해 각 기관별 카드납부 신청 방법과 필요서류 등 정리하여 안내하고 신용카드 활용 확대 유도

- 지출부서에서 각 지출단계 검토 시 카드결제 가능 여부를 확인하여 신용카드를 사용한 지출로 변경하도록 적극적 유도
 - 공공요금, 지적측량 수수료, 대기업 대상 물품구입 등
- 업무방식에 ‘관성의 법칙’ 작용
 - 규정에 어긋나지 않는 한 기존 방식대로 유지하려 하는 경향을 보임
 - 강한 동기부여와 추진력으로 한 번 바꾸면 바뀐 상태가 계속 유지될 것으로 판단하여 신용카드 활용 우수부서 포상금 부여와 내부 게시판을 활용한 실적 공개를 통해 강한 변화의 동기부여

IV 장애요인 극복내용

□ 관내 소상공인의 카드수수료 부담

- ‘지출집행내역’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신용카드 결제가 가능했지만 다른 방식을 활용한 지출을 전부 카드결제 방식으로 변경한다면 타 지자체만큼 적립금 증가가 가능하지만, 그중 관내 소상공인과의 거래에 해당하는 지출까지 카드결제로 변경한다면 카드수수료의 부담을 소상공인에게 전가하게 됨
 - 지역경제와 상생을 위해 ‘활성화 방안’ 수립 시 카드결제 대상에서 관내 소상공인은 제외하고 정기적 지출*로 추진 대상 축소

* 정기적 지출 : 전기, 도시가스, 통신, 각종 임차료 등

□ 4대보험료 납부 방식과 수수료에 따른 문제

- 기존 방식도 여러 예산과목과 세입세출외현금이 모여서 납부가 가능한 복잡한 납부 방식이었으며, 신용카드 결제가 불가능한 ‘건강보험료 국가부담금’의 존재로 인하여 추진의 어려움 발생
 - 인사담당자, 지출담당자, 세입세출외현금 담당자 협업으로 해결

보험료 총괄 품의	사용자 부담분 - 세출예산 지출	+	근로자 부담분 - 세입세출외현금 반환	⇒	카드 결제 계좌
인사담당자	지출담당자		세외현금 담당자		

- 인터넷을 활용한 카드결제 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접 방문*
 - * 사업자등록번호별 납부가 아니라 사업자관리번호별로 별도로 가입 및 결제하는 번거로움으로 공단 직접 방문 방식 채택
- 직원 건강보험료 중 ‘국가부담금’ 부분은 납부일 당일 고지서 처리를 하고, 나머지는 대금결제 계좌로 이체
- 보험료는 신용카드 결제할 경우 카드수수료를 납부자가 부담하는 방식으로 납부액의 0.8%의 수수료가 발생함
- 예산부서와 인사부서의 협조 및 기관장 결재로 세출예산에서 부담
 - ⇒ 4대보험은 카드결제액의 0.2%의 세외수입 확보

V

주요성과

□ 신용카드 활용 지출 확대로 전년 대비 5배 증가

- 2019년 적립금은 62백만원으로 2018년도 대비 5천만원 증가

* 우리시 연도별 적립금 추이

연도	2017년	2018년	2019년	2020년(10월말)
적립금	13,240,361원	12,792,350원	62,509,910원	66,194,180원

□ 지출업무 방식의 변화로 세입 창출

- 대내적인 업무방식의 변화를 통해 세입 창출

- 업무담당자의 변화 의지만 있다면 누구나 실행 가능한 변화
- 예산 규모가 큰 지자체일수록 세입 증가 효과는 더 클 것이며,

전국 243개 지자체 변화 ⇒ 120억원 이상 세입 추가 확보 가능

- 신용카드 결제일부터 카드 대금 출금일까지 지출된 자금은 계좌에 머물러 있으므로 부가적으로 ‘공공요금 이자수입’의 증가 효과
- 공공요금 등 정기적인 지출은 신용카드 납부 신청 이후 업무담당자가 바뀌어도 지속적으로 카드납부 상태 유지

도로점용료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누락세원 발굴

우수사례 요약서

제목	도로점용료 시스템 구축을 통한 세외수입 증대방안 [새주소를 중심으로]
구분	주요 내용
사업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명칭 : 도로점용료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누락세원 발굴 ○ 추진기간 : 2019. 5. 1 ~ 2020. 6. 30 ○ 추진내용 : 도로점용료 실태조사를 통해 누락세원을 발굴하고 시스템을 구축하여 세입 확보
추진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 5. 도로점용료 전수조사 ○ 진출입로 : 1,038건 / 1,926백만원 ○ 도시가스배관 : 150백만원
장애요인 극복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도로구역 내 도로점용료 전수조사 ○ 도로관리부서에서 실태조사 누락 ○ 새주소 자료를 연계한 실태조사로 도로관리 시스템 구축
우수사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모든 건물에 새주소가 있다는 점을 착안, 진출입로 전수조사로 도로관리 시스템 구축 ○ 도시가스 배관의 경우 지하에 매설되어 실태조사가 불가능하였으나 구청, 시청, 사업자간 업무 협조로 누락세원 발굴 ○ 전국적으로 누락이 발생되고 있으나 새주소 자료를 연계한 실태조사가 이루어지면 세입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됨.
주요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탈루세입 효과 : 연간 20억원 이상

도로점용료 통합시스템 구축을 통한 누락세원 발굴

I 추진배경

□ 추진배경

- 도로점용료는 진출입로, 가스배관 등 건물의 진입로나 도로 지상, 지하의 시설물에 대해 부과하고 있으나 세입누락 발생
- 도로 지상에 있는 모든 시설물에 대해 실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지하매설물은 전문지식 부족으로 부과 누락이 발생되고 있음
- 별도의 도로만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해 통합적으로 관리하면 도로점용료 누락을 사전에 예방하면 민원해소도 되고 세입증대 효과도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있습니다.

□ 문제원인 분석

- 진출입로 도로점용료 누락
 - 도로 구역 내 진출입로는 도로사용허가 받은 후 절차에 따라 진출입로를 개설해 사용이 가능
 - 도로점용료의 부과대상인 진출입로, 전주, 시설물, 가스배관 등에 대해 세외수입에서 건별로 부과하고 있으며 전산화 과정에서 세외수입시스템에서 대장누락이 발생되고 있음
 - 전주, 도시가스관, 통신주, 진출입에 대해 관리 대장도 없고 근거가 없으며 누락되어도 파악이 불가능함
- 한국전력공사나 영남에너지 같이 대규모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합산과세 하지 않고 건별로 과세하여 업무 효율성이 떨어집니다.

□ 도로점용료는 무단점유가 발생할까

- 자전거 도로나 인도 추가로 개설
 - 건물이 먼저 들어서고 이후 자전거 도로나 인도가 개설되어 기존건물에 대해 진입로를 허가 절차 없이 개설
 - 도로점용료 부과와 도로개설 부서의 업무 협조가 안되어 행정기관에서 무단사용을 용인
 - 당초에는 읍면동에서 점용료를 부과 조사 하였으나 업무가 구청으로 이관되면서 담당자 1명이 수만 건을 처리하기에는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이 있음
- 모든 사용료에는 근거를 가지고 과세
 - 영남에너지 가스관 대장을 토대로 내역을 산출하여 과세 (관경, 길이 등 자료를 근거로 과세)
 - 지하에 매설되어 조사할 확인 방법이 없어 영남에너지로부터 자료를 받아 과세

□ 포항시 도로점용료 현황

- 도로점용료 종목별 부과 현황

구분 (백만원)	진출입로		전주		통신주		가스배관		기타	합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금액	계
금액	3,886	1,048	3,120	15	16,774	7	15,421	457	126	1,653
	(64%)		(1%미만)		(1%미만)		(27%)		(7%)	(100%)

II

조사방법

□ 도로구역 내 진출입로 전수조사

- 모든 건물에는 새 주소가 있다는 점을 착안하여 도로명 주소 시스템을 활용하여 새주소 자료추출
- 도시계획도로와 연계하여 인도가 설치된 자료 추출
 - ☞ 지적과 항공영상이 겹치진 오버랩 시스템 활용

- 새주소 자료중 인도가 설치된 자료와 도로점용료 부과자료 대조 후 누락분 추출
- 현장에서 진출입로 면적, 새주소, 자료를 조사하여 지방세 및 세외수입 대장을 자료와 연계해 실태조사 자료 구축
 - ☞ 도로 실태조사 시스템은 진출입로 면적, 현장사진 도면까지 한눈에 파악이 가능함.

□ **지하매설물 도시가스 배관 조사**

- 도로점용료 전산작업 과정에서 구 대장에 자료에 과세내역 없음
- 10년 동안 같은 금액으로 부과되어 행정기관과 사업자간에 과세 자료 요구에 분쟁이 발생
- 사업자와 업무 협업을 통해 자료를 제공받아 과세대장구축
 - ※ 영남에너지 도시가스 배관 현황

포항시 전체연장	시유지 연장(전체)	하천하월연장 (하천구역)	국유재산 연장	시유지연장 (도로구역)	징수 비율
676,547	557,650	3,261	14,666	539,723	80%

※ 도로점용료 도시가스 배관개선 비용

남구청

(부가세 별도)

구분	단가(원)(A)	길이(M)(B)	비용(원) (AxBx0.1)	감면율	최종비용(원)
지름 0.1m 이하	200	93,554	20,581,828	50%	10,290,914
지름 0.1m 초과 ~ 0.2m이하	400	142,473	62,688,292		31,344,146
지름 0.2m 초과 ~ 0.4m이하	850	62,473	58,411,976		29,205,988
지름 0.4m 초과 ~ 0.6m이하	1,250	3,556	4,889,807		2,444,903
합계		302,056			73,285,951

기존납부

77,680,780

차이 **4,394,829**

복구청

(부가세 별도)

구분	단가(원)(A)	길이(M)(B)	비용(원)(AxBx0.1)	감면율	최종비용(원)
지름 0.1m 이하	200	59,028	12,986,214	50%	6,493,107
지름 0.1m 초과 ~ 0.2m이하	400	110,885	48,789,180		24,394,590
지름 0.2m 초과 ~ 0.4m이하	850	64,131	59,962,840		29,981,420
지름 0.4m 초과 ~ 0.6m이하	1,250	5,690	7,823,509		3,911,754
합계		239,734			64,780,871

기존납부 **12,984,510**

차이 **51,796,361**

기존 합계 **90,665,290**

개선 후 **138,066,822**

차이 **47,401,532**

III

추진경과

□ 도로점용료 전수조사 데이터 구축

- 한국지방재정 공제회 실태조사 사업을 신청하였으며 실태조사원 2개조 4명을 편성 10개월에 걸쳐 도로구역별 조사 실시
- 도로점용과 관련된 실태조사표, 항공영상, 지적, 건축물관리대장, 연도별 현장사진을 한번 클릭해 보여주는 도로점용과 관련된 자료를 융합해 구축하였습니다.
- 조사결과를 과세대장 비교 등재되지 않은 무단점유, 불법시설물에 대해 실태조사를 통해 누락세원 발굴

□ 도시가스배관 도로점용료 누락으로 과세대장 정비

- 지하 도시가스배관의 경우 실태조사가 불가능하며 영남에너지에 배관자료를 요청 하였으나 가스관 자료 있으나 시유지에 얼마나 저축되는지 확인이 어려움
- 영남에너지에 배관 자료를 제공받아 도시가스 배관 통합 관제시스템에 시유지 비율만큼 부과

□ 도로점용 시스템 발굴

- 현장에서 조사한 자료를 지방세, 세외수입과 연계하여 납세 의무자를 확정하고 조사한 면적을 관리대장에 등재하여 세액을 산출
- 도로점용료 관리대장을 시스템으로 구축해 실태조사표, 현장사진, 면적 산출내역, 도면 등을 한번 클릭에 모두 확인이 가능한 시스템구축
- 진출입로 조사 절차



○ 도로점용료 실태조사 방법

도로 진출입로 실태 조사표						
재산의 표시	면적지 재산 지번	소유자	주민등록번호		부과여부	
	북구 장성동 1370-4	권태환	590425-1788011		부	
조사 내용	사업자 상호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영향처	
	성명					
	진출입로 개설근수	점용료 산출내역			납부자 지정	
	1번 출입로	길이	폭	면적	비율일자	
		5	2.5	12.5		
	2번 출입로	길이	폭	면적		
			0			
3번 출입로	길이	폭	면적	건축일자		
			0			
납세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세액	
					0	
재산 조사	1번 면적	2번 면적	3번 면적	합계 면적	공시지가	종 재산 과표
	12.5	0	0	12.5	1,130,000	14,125,000
점용료 조사	당초면적	조사면적	증가면적	내용		
	0	12.5	12.5	허가없이 무단사용		
부과시작일	부과종료일		점용료			
2015-1-1	2019-12-31		254,250			
물법시효를 갖지	종류		누락세액			
			1,271,940			

현장에서 할 일

- ① 길이 x 폭 = 면적 산출
- ② 진입도로 건물의 새주소
- ③ 건물 상호
- ④ 사진 촬영

사무실에서 할 일

- ① 새 주소를 지번 주소로 변환
- ② 지번 주소로 지방세에서 소유자 연계
- ③ 도로점용료 부과 자료 대조
- ④ 누락 여부 판정

○ 도로점용료 관리시스템 활용방법



목록관리

주소: [장성동] 검색: [전체 목록 보기] [다중 인쇄] [닫기]

번호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담초면적	조사면적	증가면적	특이사항	부과
1	이영민	611205-1703015	장성동 113-1	30	45	15	공시지가	부과
2	이영민	611205-1703015	장성동 113-1	0	21	21	허기없이	부과
3	이영민	510521-1780710	장성동 116-1	18	18	-0	공시지가	부과
4	이영민	471205-2347618	장성동 1252	7.8	23.4	15.6	공시지가	부과
5	이영민	730729-1779419	장성동 1259	13.5	14.5	1	공시지가	부과
6	이영민	690816-2701614	장성동 1368-4	24.5	15.6	-8.9	공시지가	부과
7	이영민	690904-1703716	장성동 1368-5	25	13.5	-11.5	공시지가	부과
8	이영민	530515-2682912	장성동 1370-6	15	35	19	허기없이	부과
9	이영민	70062	장성동 1370-6	95	-5	-100	공시지가	부과
10	이영민	13011	장성동 1370-6	95	15	-80	공시지가	부과
11	이영민	75020	장성동 1370-6	12.5	12.5	-0	공시지가	부과
12	이영민	340620-2703021	장성동 1373-1	12.5	12.5	-0	공시지가	부과
13	이영민	620221-1696410	장성동 1373-2	19.54	25	5.46	허기없이 무단사용	부과
14	이영민	790406-2710617	장성동 1373-2	5.75	10	4.25	공시지가	부과
15	이영민	521216-1785418	장성동 1373-2	12.5	12.5	-0	공시지가	부과
16	이영민	740902-1682925	장성동 1373-8	12.5	12.5	-0	공시지가	부과
17	이영민	700415-1783923	장성동 1374-3	15	15	-0	공시지가	부과
18	이영민	681025-1535511	장성동 1374-4	12	17.5	5.5	공시지가	부과
19	이영민	541201-2702811	장성동 1374-5	12.5	12.5	-0	공시지가	부과
20	이영민	720926-2782817	장성동 1378-14	20	18	-2	공시지가	부과
21	이영민	571012-2623111	장성동 1378-2	12.5	15	2.5	공시지가	부과
22	이영민							부과

상세정보

지번: [복구 장성동 1370-4] 소유자: [김민환] 주민등록번호: [530425-1783011] 부과여부: [부]

상호: [성흥권면회사] 대표자: [] 주민등록번호: [] 연락처: []

1번 출입로
길이: [5] 폭: [2.5] 면적: [12.5] 취득일자: []

2번 출입로
길이: [] 폭: [] 면적: [0] 건축일자: []

3번 출입로
길이: [] 폭: [] 면적: [0] 취득일자: []

해당 과세내역 열람 및 정해진 형식으로 출력 가능

납세자: [] 주민등록번호: [] 주소: [] 납부한세액: [0]

재산조사
1번면적: [12.5] 2번면적: [0] 3번면적: [0] 견제면적: [12.5] 공시지가: [1,190,000] 과세표준: [14,125,000]

담초면적: [0] 조사면적: [12.5] 증가면적: [12.5] 세액: [254,250] 누락세액: [1,271,940]

부과시작일: [2015-01-01] 부과종료일: [2019-12-31] 무단사용기간: [1826일]

특이사항: [허기없이 무단사용]

[맞면 인쇄] [틀림 인쇄] [닫기]

현장사진:

항공사진:

□ 실태조사 추진사항

- 도로구역 내 진출입로 도시계획도로 라인을 기준으로 전수조사 실시 무단사용자 추출
 - 과소신고·무단사용자에 대해 변상금 부과
- 영남에너지 도시가스 배관에 대해 과세내역이 없어 구청과 영남에너지 간에 자료요구로 갈등이 있으나 업무 협업을 통해 누락된 도로점용료 부과

□ 도로점용료 활동사진



□ 도로점용료 회의사진



IV

장애극복

□ **장애요인**

- 도로점용료는 구청에서 담당자 1명이 도로점용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인력부족 등 실태조사가 미 실시로 세입누수현상이 발생
- 도로점용료는 구 대장으로 관리 하던 중 전산화 과정에서 누락이 발생되었으며 도시가스배관은 육안 확인도 어려워 실태조사가 불가능함

□ **장애극복**

- 도로구역 실태조사팀이 새주소자료를 토대로 도로구역을 중심으로 전수조사 실시 무단사용자 발굴
- 지하매설물인 도시가스 배관은 영남에너지와 협업을 통해 세외수입 대장에 자료를 구축해 부과
- 수차례 구청 담당부서와 회의 끝에 시청과 업을 협업하여 부과할 수 있도록 지원

V

추진실적

□ **도로구역 내 시설물 조사로 신규누락세원 발굴 및 재정확충 기여**

- 진출입로 조사 : 1,038건 , 19,963㎡, 1,926백만원
- 도시가스배관 조사 : 539,723㎡, 150백만원
(당초대비 60백만원증가)
- 송전철탑 선하지 조사 : 5년 변상금 155백만원
- 도로구역 내 진출입로 조사 현황

(단위: 건, ㎡, 백만원)

구분	조사대상		기 부과			무단사용			비고
	필지수	면적	필지수	면적	금액	건수	면적	금액	
전체	3,156	80,023	2,118	60,020	867	1,038	19,963	1,926	
남구	1,985	50,235	1,289	41,151	470	696	9,113	985	
북구	1,171	29,788	829	18,869	397	342	10,850	941	

○ 영남에너지 가스배관

(단위: m², 백만원)

구분	도로점용료 부과액		도시가스 배관현황			비고
	당초 부과액	실태조사후 부과액	포항시 전체 배관	사유지 배관	사유지의 배관	
전체	91	150	676,547	539,723	17,927	

○ 송전철탑 선하지

(단위: 백만원)

변상금 부과금액	2015년 ~ 2019년 변상금 부과금액					2020대 부료	비고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155	29	30	31	32	33	28	

VI 향후계획

도로점용료 실태조사 지속 실시

- 매년 발생하는 도로 구역내 시설물을 지속적으로 조사하여 세입 증대
- 도로 공사 시 도로점용료 부과 부서와 협조 누락방지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도로점용료 프로그램 구축

- 실태조사 결과물로 도로점용 프로그램 구축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하천점용료도 전수조사하여 시 재정수입도 확보 예정

세외수입 세입 발굴 전담 부서 신설 요구

- 세외수입의 경우 담당자의 잦은 인사와 전문성 부족으로 세입 누락이 발생
- 지방세보다 발굴분야가 광범위하여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세입 확보가 기대됨

기타 분야 우수사례

2020. 12.



행 정 안 전 부
[지방재정경제실]

|| 목 차 ||

1. 대형폐기물 Smart 배출관리 시스템(서울 동대문구) 1
2. 기존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여 승용차요일제 감지기 설치비용 대폭 절감(부산광역시) 8
3. 투자심사!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해도 '지방재정' 대폭 개선된다(인천광역시) 15
4. 숨은 공유재산 찾기 프로젝트(경기 김포시) 25
5. 소규모 관급공사 과소설계 개선(적정공사비 확보)(충청남도) 31
6. '두레'의 현대적 재해석! 우리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600사업(전남 보성군) 38
7. 민자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창의적인 업무 개선으로 혈세 낭비 막았다!(경상남도) 48

(서울 동대문구)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type="checkbox"/> 세출 효율화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지방세)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세외수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 2017년 서울시 영등포구, 2019년 성동구 스마트폰 대형폐기물 신고를 벤치마킹
사 례 명	대형폐기물 Smart 배출관리 시스템
기 관 명	서울시 동대문구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type="checkbox"/> 시 <input type="checkbox"/> 군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기획예산과

〈 요약 〉

동대문구는 신고필증 구입·부착 의무로 인한 폐기물 신고절차의 번거로움과 수거 여부 관리의 어려움으로 인한 도시미관 저해 등 대형생활폐기물 배출로 인한 주민 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반응형 웹페이지를 이용한 『대형폐기물 Smart 배출관리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으로 신고필증(스티커) 부착 없이 폐기물을 배출할 수 있게 되어 **연평균 480만원의 제작비용이 절감**되고 절차 간편화에 따라 배출 신고가 증가하여 대형폐기물 **무단투기가 감소**하고 인터넷 신고분 수수료 세입이 **전년도 대비 2배인 50,281,420원으로 증가**하는 등 다양한 성과가 도출되고 있다.

위와 같이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0. 9. 29.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청장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대형폐기물 Smart 배출관리 시스템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서울시 동대문구 관내 ○ 추진기간 : 2018. 04. ~ 2019. 12. ○ 사 업 비 : 21,912천원 (월1,826천원x12개월) ○ 사업내용 : 반응형 웹페이지를 사용하여 주민들이 기기불문하고 대형생활폐기물을 간편하게 배출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04. 11. 및 2019. 09. 19. 벤치마킹 우수사례 도입 검토 : 타 기관과 우리구의 여건이 상이하여 해당 사례 직접 도입 불가. 이에 구청-주민센터 뿐만이 아닌, 각 동별 대행업체까지 포괄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 2019. 10. 15. 대형폐기물 배출관리시스템 추진계획 수립 ○ 2019. 11. 27. 대형폐기물 배출관리시스템 관련 회의 및 교육 시행 (동주민센터 대형폐기물 담당 및 폐기물 수거 대행업체 대상) ○ 2019. 12. 09. 대형폐기물 배출관리시스템 시행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대행업체에서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어서 시스템 도입 시 업체와의 협의, 교육 등이 필요하여 즉시 도입은 어려웠음 ○ 계획 수립시 구청-주민센터-대행업체를 총괄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전에 대행업체와 각 동 담당자 교육을 실시하여 시스템을 원활하게 도입하고자 함.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반응형 웹페이지를 이용하여 PC, 스마트폰 구분 없이 누구나 어디서든 대형폐기물 배출신고가 가능한 배출관리시스템 구축 ○ 신고필증 부착 없이 폐기물 배출 가능 및 수거여부 알림 문자 수신 기능을 추가하여 주민편의 증대 ○ 인터넷과 동주민센터 방문 접수건을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여 민원정리 및 수거업체 관리·감독 기능 강화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신고필증(스티커) 미사용으로 인한 예산 절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기준 4,795,000원이 제작비용으로 사용되었으나,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2020년 신고필증(스티커) 미제작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증가로 인한 무단투기 감소 및 세입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년 1분기 대비 인터넷 신고분 수수료 수입 약 2배 증가 ('19. 1분기 : 25,375,210원 → '20. 1분기 : 50,281,42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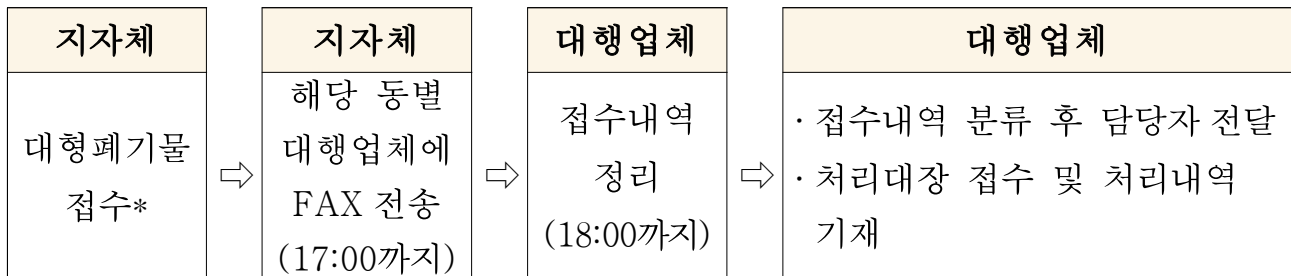
대형폐기물 Smart 배출관리 시스템

1. 과제 선정 내용

- 동대문구의 폐기물 수거 방식은 주민이 홈페이지에서 직접 접수 시 회원가입이 필수이고 PC외의 모든 기기에서 사용이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었으며, 14개 동 주민센터와 인터넷으로 각각 접수되는 폐기물 신고를 일괄로 관리할 수 없고, 수거 또한 동별 담당 업체에서 진행해서 처리상황을 바로 알 수 없는 등의 관리상의 문제점이 있어 왔다.
-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방안을 찾던 동대문구는 언론보도에서 발굴한 타 기관의 스마트폰을 활용한 폐기물 배출 시스템을 분석하여 적용하고자 하였으나, 타구의 경우 수거시스템이 직영 위주로 운영되는 등 대행업체 위주로 운영되는 우리구와는 상이하여 직접 적용할 수 없었다.
- 이에 동대문구는 대행업체까지 통합하여 모든 접수, 처리내역을 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주민들이 홈페이지 주소를 모르더라도 다양한 기기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동 주민센터 및 구청 담당부서의 관리기능과 수거 대행업체의 효율성 향상까지 도모할 수 있는 『대형폐기물 Smart 배출관리 시스템』을 구축·도입하게 되었다.

2. 문제원인 분석

- 기존 대형생활폐기물 처리 절차 (~ 2019. 12.)



- *접수 및 배출방식
- 관할 주민센터 방문 접수 후 신고필증 스티커를 부착하여 배출
 - 구청 홈페이지 인터넷 접수 후 신고필증 출력물 부착하여 배출

○ 기존 방식의 문제점

- 주민 측면

기존 폐기물 배출 처리 방식은 동대문구청 홈페이지 회원가입자에 한해서 온라인 상 배출신고가 가능했으며, 정상적으로 신고했지만 신고필증 출력물을 품목별로 각각 부착하지 않으면 수거가 지연되어 프린터를 보유하지 않은 주민들에게 큰 불편을 초래했다.

- 자치구 측면

인터넷 및 각 동 주민센터로 접수된 신고내역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없어서 민원 처리에 한계가 있었으며 접수 민원 전달을 위해 매일 해당 동 담당 대행업체에 FAX를 보내야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 또한 수거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없어서 대행업체 관리·감독의 어려움 등 다양한 문제점이 발생했다.

3. 방안 마련 및 실행

- 주민 측면에서도 자치구 측면에서도 여러 불편함이 있었던 기존 폐기물 처리 방식의 개선이 필요한 상황에서 타 기관의 스마트폰 활용 배출 관리시스템은 우리구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좋은 선례였으나, 우리구는 폐기물 수거 시 여러 대행업체를 사용한다는 점과 타 기관의 스마트폰 앱의 활용성 문제 등의 차이점이 있어 해당 사례를 적용할 수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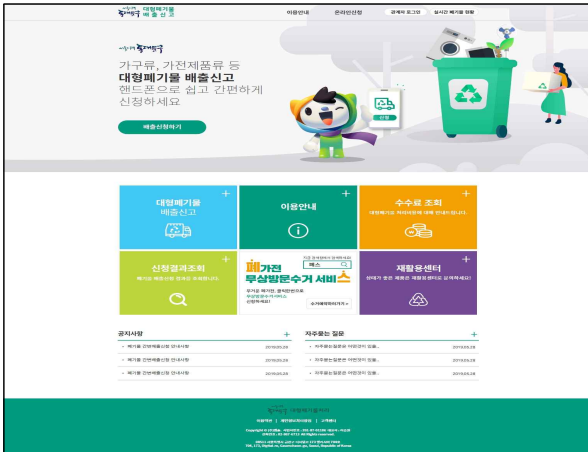
이에 동대문구는 수거업체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고, 여러 경로로 접수되던 신고접수 내역을 통합 관리하여 주민들에게 편리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구청-주민센터-대행업체를 통합 관리하는 시스템**을 마련하고, 전국 최초 폐기물 위치를 표시하는 「**폐기물 지도**」를 활용하여 장기간 방치되는 폐기물로 인한 민원을 방지하고자 하였다. 또한 주민들의 편의 도모를 위해 「**반응형 웹페이지**」¹⁾를 구축하고 「**QR코드**」²⁾를 활용하여 웹페이지 접근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등 타 기관과 다른 우리구의 상황을 반영한 대형폐기물 신고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였다.

1) 단말의 종류와 화면 크기에 실시간 반응하여 웹 페이지를 최적화된 화면 구성으로 보여주는 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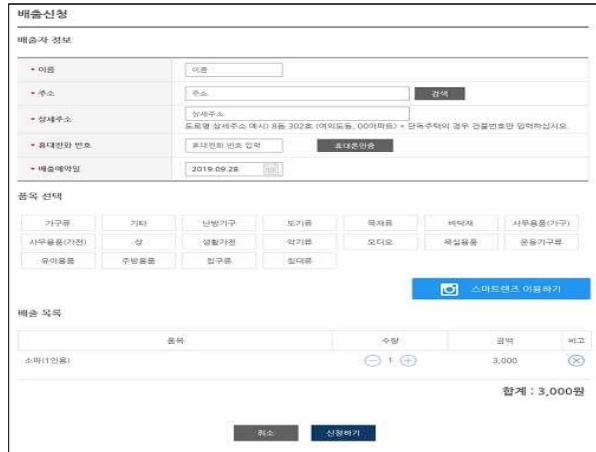
2) 'Quick Response'의 약자로, 흑백 격자무늬 패턴으로 정보를 나타내는 매트릭스 형식의 이차원 바코드

○ 변경된 폐기물 처리 시스템 구성 (2019. 12. 이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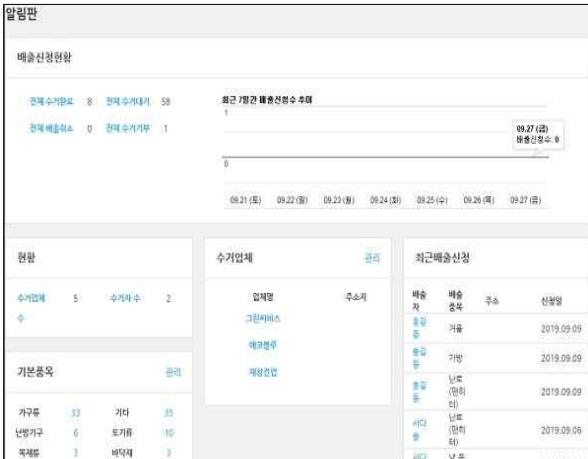
<초기화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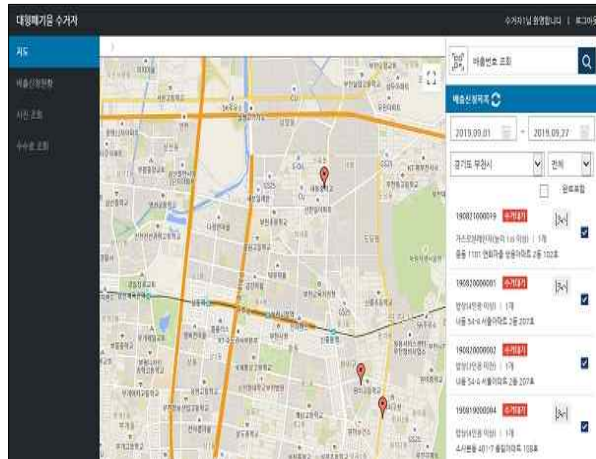
<배출신청(주민)>



<지방자치단체(관리자)>



<대형폐기물 수거자>



※ 미수거 기간에 따라 지도상 색깔 변경 (1일: 초록, 2일: 노랑, 3일 이상: 빨강)

○ 개선사항

- 주민 측면

구청 홈페이지 회원 가입여부와 상관없이 **반응형 웹페이지**를 이용해서 pc·스마트폰·태블릿 등 기기불문하고 누구나 배출 신고가 가능한 시스템으로 구축하였으며, **사진 업로드 기능**을 추가하여 신고필증 출력물 부착 없이 기재된 배출번호 혹은 업로드된 사진으로 신속한 수거가 가능하도록 개선하였다. 그 외에도 **QR코드**를 활용한 홈페이지 접속 기능을 추가하고 수거 후 **알림문자 발송**을 통해 주민 편의를 증대하고자 하였다.

- 자치구 측면

통합관리시스템 도입으로 구청-주민센터-대행업체 간 접수내역을 실시간으로 공유할 수 있게 되고 수거 여부도 즉시 확인이 가능하여 폐기물 배출관리 담당부서의 관리·감독 기능이 강화되었으며, 배출관리시스템과 결제시스템을 연계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를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배출된 폐기물의 위치와 수량을 지도상에 표시해주는 **폐기물 지도**를 활용하여 대행업체 측면에서도 효율적인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개선하였다.

이외에도 동 주민센터 신고 시 교부하던 신고필증(스티커) 제작을 중단하고 인터넷 접수와 동일한 방식으로 배출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신고필증 제작비용을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4. 장애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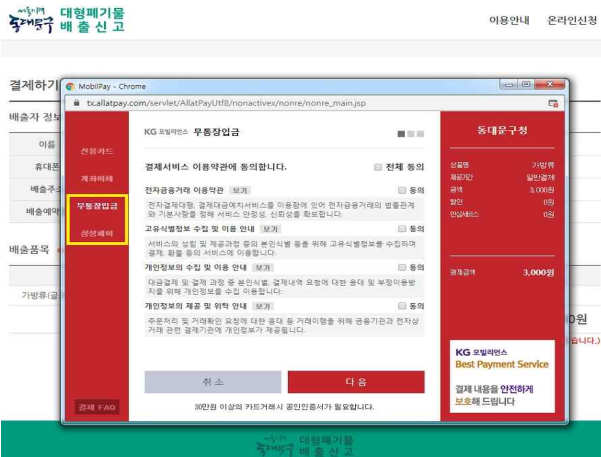
- 2018년 4월에 추진한 우수사례 벤치마킹 검토 시 타 기관은 폐기물 수거 처리를 직영 위주로 운영하여 시스템 구축이 원활했으나 동대문구는 대행업체에서 폐기물을 수거하고 있어서 시스템 도입에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2019년 10월 수립한 시행계획에서는 구청-주민센터-대행업체의 실시간 접수내역을 공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하고 사전에 대행업체와 각 동별 담당자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여 시스템 도입 후 현장에서의 혼란을 방지 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주민 측면
 - 삼성페이(간편결제), 가상계좌 등 **결제수단을 다양화**하여 주민편의를 증대시켰으며, **수거완료시 알림문자 발송**으로 처리결과를 즉시 확인 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업무의 신뢰성을 제고시켰다. 또한 **QR코드를 활용**하여 스마트 기기로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 행정효율성 측면

- 구청-주민센터-대형업체의 연계로 접수내역과 처리내역의 실시간 확인이 가능하도록 개선되어 수기작업이 불필요해졌으며 **폐기물 지도를 통한 배출위치·수량 확인** 기능이 추가되어 대형업체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할 수 있고, 자치구는 대형업체 관리·감독이 용이해졌다는 장점이 있다.
- 신고필증(스티커) 미사용으로 인한 예산 절감
 - 2019년 기준 4,795,000원이 제작비용으로 사용되었으나, 통합 관리시스템 도입으로 2020년 신고필증(스티커) 미제작
- 대형폐기물 배출신고 증가로 인한 무단투기 감소 및 세입 증대
 - 2019년 1분기 대비 인터넷 신고분 수수료 수입 약 2배 증가
(2019. 1분기 : 25,375,210원 → 2020. 1분기 : 50,281,420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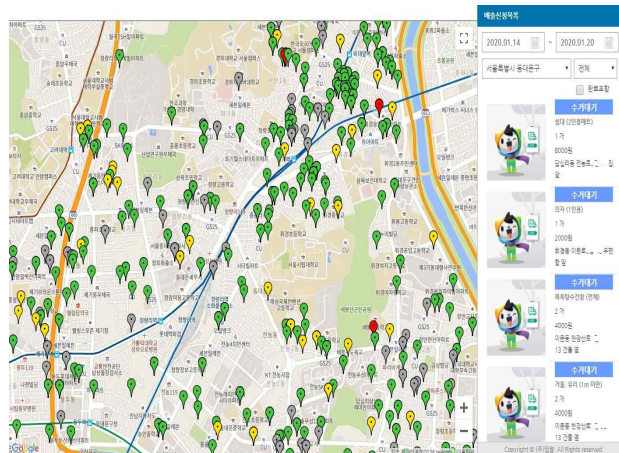
<결제수단 추가>



<수거완료 알림문자>



<대형폐기물 신고 홍보-QR코드>



<폐기물 지도>

[부산광역시)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type="checkbox"/> 세출 효율화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지방세)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세외수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사 례 명	기존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여 승용차요일제 감지기 설치비용 대폭 절감 [5백만원 지출 ⇒ 10억여원 투자한 효과 거양]
기 관 명	부산광역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광역 <input type="checkbox"/> 시 <input type="checkbox"/> 군 <input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공공교통정책과

< 요약 > * ※ 절감성과 등 사례내용을 간략하게 작성 (5줄이내)

-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 도로 운행 감지 RFID리더기 대수 부족으로 각종 문제가 야기되나 RFID리더기 신규설치에 막대한 예산 소요됨에 따라 추가 설치 애로
- 이에, 타 업무용으로 사용 중이던 차번호인식 CCTV(AVI CCTV) 106대를 연동, 도로 운행 감지기로 활용하여 RFID리더기 신규 설치비용 대폭 감소(10억원 절감효과)

위와 같이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0. 10. .

부산광역시장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기존 인프라를 공동 활용하여 승용차요일제 감지기 설치비용 대폭 절감
 [5백만원 지출 ⇒ 10억여원 투자한 효과 거양]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기간 : 2019. 2. ~ 6. ○ 사업비 : 5백만원 ○ 연동대상 : 타업무용(방법용,교통정보수집용) 차번호인식 CCTV(총 106대) ○ 추진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에서 수집되는 차량정보와 승용차요일제 시스템을 연동 - 요일제 참여차량 도로운행 감지기로 활용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9.2. : 차번호인식CCTV와 승용차요일제 시스템간 연동방안 검토 ○ 2019.3. : 추진계획 수립, 보안성 검토 및 계약 추진 ○ 2019.4~6. : 차번호인식CCTV와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연동 개발 ○ 2019.6~7. : CCTV 목적 추가를 위한 행정 예고 ○ 2019.7~9. : CCTV를 통한 요일제 운휴일 위반감지 기간 유예 ○ 2019.10. : CCTV를 통한 요일제 운휴일 위반 적용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타업무로 사용 중인 CCTV에 대한 개인정보보호 위반여부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탓에 CCTV를 공동으로 활용하는 사례가 없었음 - 법률검토,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 등을 통해 방안을 강구하여 해결 ○ CCTV 주관부서*가 상이하고 대용량 정보처리 및 자료 수합 애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각기 다른 곳에 위치한 CCTV 관리서버를 연동하여 CCTV 수집 정보를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 있는 '교통정보수집서버'에 집중화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5px;">* 방법용CCTV(재난현장대응과), 교통정보수집용CCTV(교통정보서비스센터)</p>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요일제 차량 도로운행 감지기 대폭 확대(106대)로 감지 사각지대 해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감지기 : 64대(RFID감지기 64대) → 170대(RFID감지기 64대, CCTV 106대) - 1일 평균 감지실적 : 기존 10,000여건 → 30,000여건, 3배 증가 - 특히, 강서구와 기장군과 같이 넓은 지역 감지 해소에 큰 효과 ○ 차량 운행감지기능 고도화 및 참여자 도덕적 해이 방지 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CCTV를 요일제 차량 운행감지기로 활용한 전국 첫 사례로서,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를 탈착하여도 차번호로도 위반감지가 가능하게 됨 - 위반시 참여자가 이를 인지토록 즉시 통지한 결과 전년 대비 위반자가 44% 대폭 감소하는 효과 <p style="font-size: small; margin-top: 5px;">※ 5회 위반 탈퇴자 : ('18년) 2,713대 → ('19년) 1,530대 ⇒ △ 1,183대 (△ 44%)</p>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 954백만원 예산 절감(투자한)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FID신규 감지기 설치비용 1대당 9백만원 소요(장비구입 및 설치비) - 별도 비용부담 없이 기존 인프라(총106대)를 연동한 결과, 약 10억을 투자한 효과 거양

기존 인프라를 공동활용하여 승용차요일제 감지기 설치비용 대폭 절감
[5백만원 지출 ⇒ 10억여원 투자한 효과 거양]

1. 과제 선정 내용

- 승용차요일제란 참여자가 선택한 운휴일(월~금요일 중 하루)에 차량을 미운행하면 세금감면 등의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로써, 운휴일에 차량 운행 위반유무를 감지하기 위해 시내 곳곳에 RFID감지기(차량에 부착된 RFID스티커 정보를 읽는 리더기)가 설치되어 있음.
- 그러나, 기존 64대 감6지기로는 부산시 전역을 감지하기에 역부족인 탓에 감지 사각지대(특히, 지역이 넓은 강서구와 기장군 등)가 발생하고, 위반을 피하기 위해 참여자가 RFID 스티커를 탈착하거나 우회 운행하는 등 도덕적 해이가 우려되는 상황.
- 이를 해결할 수 있는 절대적인 방안은 감지기 대수를 늘리는 것이나, 추가 설치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대당 9백만원)되어 예산 확보 어려움.
- 이와 같은 승용차요일제 운영상 애로사항과 예산 반영의 어려움을 타계하기 위해 그간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본 결과, 감지기를 신규로 설치하지 않고도 기존 인프라(차번호인식CCTV)를 활용할 수 있는 대체 방안을 찾았으며 2019년도에 이를 추진하게 되었음.
- 이렇듯 창의적이고 혁신적으로 발상을 전환한 결과 전국에서 처음으로 CCTV(총106대)로 요일제 차량 운행을 감지(타 시도 벤치마킹 사례로 부각)하게 되었으며, 효율적인 업무수행과 더불어 감지기 신규 설치에 필요한 약 10억원의 예산이 투자(절감)된 효과를 거양.

2. 문제원인 분석

- 승용차요일제 차량의 도로 운행을 감지하는 기존 방법은, 시내 주요도로 교통시설물에 설치된 감지기(RFID리더기)가 차량에 부착되어 있는 RFID태그(스티커)를 읽어 들이는 방식임.

차량 부착 RFID태그(스티커)	RFID리더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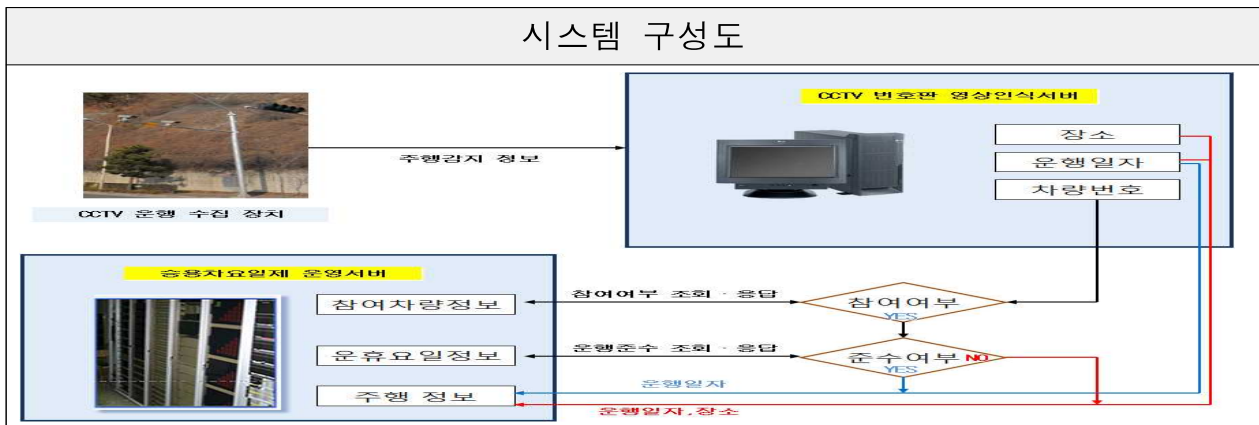
※ RFID(Radio-Frequency Identification, 전자태그) : 무선 주파수를 이용하여 물건이나 사람 등과 같은 대상을 식별하는 기술

- 차량에 부착된 스티커를 탈착하거나 우회 운행할 경우 이를 감지할 방법이 없으며, RFID리더기 또한 대수가 부족하여 사각지대가 존재.
- RFID리더기 추가 설치 외에 다른 방안이 없는 듯 하였으나, 최근 차량번호를 읽어 들이는 CCTV(AVI CCTV) 기술이 저변화되고 우리시에서도 타 업무에 활용되고 있는 사례에 착안하여 이를 활용할 방안을 강구하게 되었음.

3. 방안 마련 및 실행

- 우리시에서 방법용과 교통정보수집용으로 차번호인식 CCTV를 활용하고 있음을 파악한 후, 교통정보서비스센터 담당자와 기술적으로 연동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방안 모색함.
- 그 결과 교통정보서비스센터에 설치되어 있는 교통정보수집 서버로 차번호인식 CCTV정보를 수집하고 이 서버와 승용차요일제 시스템을 연계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찾았으며,

- 이를 구현하기 위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2019년도 “승용차요일제 시스템 기능개선 용역” 과업에 이러한 사항을 추가하여 2019.4~6월 까지 용역을 추진함.(해당 용역비 20백만원 중 5백만원 정도 소요)
- 그 결과, 기존 방법용과 교통정보수집용으로 사용 중이던 총 106대의 차번호인식 CCTV를 승용차요일제 시스템과 연동 완료하여,
- 차량에 RFID태그 부착 유무와 상관없이 해당 차번인식 CCTV 설치 구간을 지나가는 요일제 참여차량의 **차량번호를 읽어 운휴일 위반 유무를 감지**할 수 있게 되었음.



4. 장애극복

- 전국에서 처음으로 시행하다 보니 타 업무로 사용 중인 CCTV를 공동으로 활용한 사례가 없어,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되지 않는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음.
- 이를 위해 관련 법률을 검토하고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자문을 요청하고 협의하였으며, CCTV보유 목적을 추가하면 법에 위배되지 않고 추진 가능하다는 결론을 얻어 정상 추진하게 됨.
- 또한, 총 106대의 CCTV 관리부서가 상이하고 수집되는 정보량이 방대하여 승용차요일제 시스템과 효과적으로 연계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으나, 교통정보서비스 센터에 있는 수집용 서버를 활용하고 최소한의 정보만 연동토록 개발하여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였음.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별도 감지기를 구입·설치하지 않고 기존 인프라를 공동 활용함에 따라, 5백여만원 예산만 지출하여 106대 신규 감지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 약 10억을 투자(절감)한 효과 거양함.
- 요일제 유휴일 감지기가 기존 64대에 106대가 추가되어 총 170대로 대폭 늘어남에 따라 감지 사각지대가 해소되었으며, 특히 기존 문제시 되었던 강서구와 기장군과 같이 넓은 지역 감지 해소에 큰 효과가 있었음.
 - ※ 64대(RFID감지기 64대) → 170대(RFID감지기 64대, CCTV 106대)
- 늘어난 감지기로 인해 1일 평균 감지실적도 기존 1만여건에서 3만여건으로 3배정도 증가하였으며, 90일 이상 운행이 감지되지 않을 경우 차량을 가지고 기관을 방문하여 스티커 정상부착 유무 등을 점검 받아야 하는 민원불편 사항도 상당수 해소되어 읍면동 담당자 업무량 감소 및 대민서비스 질이 향상됨.
- 또한, 유휴일 위반이 감지되면 참여자가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즉시 카카오톡으로 전송토록 기능을 구현한 결과, 전년도 대비 5회 위반 탈퇴자가 44% 대폭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음.
 - ※ 5회 위반 탈퇴자 : ('18년) 2,713대 → ('19년) 1,530대 ⇒ △ 1,183대 (△ 44%)
- 전국 최초로 CCTV를 요일제 차량 운행 감지기로 사용하는 기술을 선보였으며, 타 시도의 벤치마킹 사례가 되어 문의가 많고 다른 업무(배출가스5등급 차량 운행감지 등) 부서에서도 이를 참고하여 활용할 수 있는 좋은 본보기가 됨.
- 참여자가 차에 부착된 요일제 스티커를 탈착하여도 CCTV로 위반을 감지한다는 점과 사각지대가 없다는 점이 참여자에게 인지되어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었음.

[별첨]

RFID리더기 설치비용 원가계산서(참조)

원 가 계 산 서(분리형, 일체형 각 1대 식 총2대 설치)					
1. 품	명	승용차요일제 RF태그 설치			
2. 도 급 금 액		일근일원죽백사십삼만육천사백삼십팔.오오육삼일삼이백경 (₩ 16,436,439)			
승용차요일제 RF태그 설치					
		구 분	금액	비 고	
순공사비	재 료 비	직접재료비	9,344,398		
		간접재료비	-		
		기 타 재 료 비	-		
		소계	9,344,398		
	노 무 비	직접노무비	4,567,841		
		간접노무비	456,784	직접노무비의 10.00%	
		소계	5,024,625		
	경 비	직접경비	47,556		
		산재보험료	-	노무비의 3.70%	
		고용보험료	-	노무비의 0.79%	
		건강보험료	-	직접노무비의 1.70%	
		연금보험료	-	직접노무비의 2.49%	
		산업안전보건관리비	130,758	[재료비+직접노무비] x 0.91%	0.91%
		노 인 장 기 요 양 보 험 료	-	건강보험료의 6.55%	
		퇴직공제부금비	105,060	직접노무비의 2.30%	
		기타경비	-	[재료비+노무비] x 0.381%	0.38%
		소계	283,374		
		순 공 사 비	14,652,397	재료비+노무비+경비	
		일반관리비	-	순공사비의 5.50%	
	이윤	289,821	노무비+경비+일반관리비의 8.86%		
	총원가	14,942,218	순공사비+일반관리비+이윤		
	주요자재비	-			
	SW개발비	-			
	합 계	14,942,218			
	부가가치세	1,494,221	합계의 10.00%		
	총공사비	16,436,439			

※ 2018.4월 기준, 분리형과 일체형 각 1식 총 2대 설치(대당 약 8,200천원)시 소요예산임.

2020년 인건비 상승 등을 고려할 때 1대당 약 9,000천원 소요 추정.

※ 출처 : 삼원FA(주) 견적가(2018.4월)

[인천광역시]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type="checkbox"/> 세출 효율화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지방세)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세외수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사 례 명	투자심사!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해도 '지방재정' 대폭 개선된다.
기 관 명	인천광역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광역 <input type="checkbox"/> 시 <input type="checkbox"/> 군 <input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인천광역시 재정관리담당관실

< 요약 > 투자심사 제도 혁신으로 '재정절약의 보물창고'로 거듭나다.

-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실시되는 투자심사는 사전계획 미흡과 투자심사 부실 운영 시 재정집행의 비효율성 발행이 우려됨에 따라 市는 사업 계획 초기단계에서부터 사후관리 까지 프로세스의 필요성 인식
- 사전점검 시스템화,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마련, 사후관리 프로그램 실시 등 투자심사 新 패러다임 제도마련하여 실무담당자가 바뀌더라도 지속가능성 확보
- 이러한 제도개선으로 인하여 市는 재정운영 효율성에 크게 기여하게 됨
 - 사업비 조정 절감 : 58,980백만원(19년 17,721백만원, 20년 41,259백만원)
 - 부실사업 차단 : 22.8%(센터 설립전 18.8%, 설립후 22.8%)
 - 공무원교육, 투자사업(사전) 지원 50건, 전문가 검토 활성화(91건)

<사례>

- ◆ 市 '씨사이드해수풀장 조성사업'의 경우 검토결과 사업성 검토 자료 없이 심사의뢰 되었으나, 자체 전문가 분석결과 경제성이 전혀 확보되지 않아 재검토(사업비 절감 255억원)
- ◆ 동구 "치매안심통합센터"의 경우 합리적인 사업비 조정(안)을 제시(사업비 절감 50억원)

위와 같이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0. 10 . .

인천광역시장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투자심사!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해도 '지방재정' 대폭 개선된다.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국 243개 자치단체에서 실시되는 투자심사는 투자사업의 사전계획 미흡과 투자심사의 부실 운영 시 무분별한 사업 추진에 따른 공공서비스를 적시에 공급하지 못하는 재정집행의 비효율성 발행이 우려됨 (계획 단계에서 타당성 조사, 사전검토 등 심사제도 강화 필요) ○ 투자심사이후 사업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부재로 투자심사 통과 조건 이행여부 확인 어려움, 사업추진 중 문제점 확인 등 자치단체별 환류(feed back)체계 관리 필요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 9. : 지방재정 효율성 제고를 위한 투자심사제도 개선방안 연구 ○ '19.6~'20.8 : 공공투자사업 전문검토를 위한 분야별 전문인력 확충(6명) ○ '19.9~ : 전문인력 활용, 투자심사 이전 사업계획 집중검토 ○ '19.12. :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1) 마련 - 사업계획 수립 및 투자심사 시 활용(사업부서, 군구, 투자심사 위원 배부) ○ '19.12~ : 「비용산정 기준」市 지방재정 투자심사 시 적용 시작 ○ '20. 9.~ : 市 투자심사 대상사업 사후관리 실시 2015~2019 (진행중)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장애1) 주요사업 비용 산정 기준부재로 사업예산 과다편성 ↳ 인천시 투자심사 매뉴얼을 통해 객관성·구체성 확보 ○ (장애2) 투자심사 위원회에 자료 제한적 제공, 부실심사 우려 ↳ 각 분야별 전문가의 사전 검토 자료 제공으로 전문성·객관성 확보 ○ (장애3) 공사비 단가기준이 통일되지 못하여 예산 과다 편성, 예산 규모에 따라 사업 규모가 커지는 등 비합리적 사례 발생 ↳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2019)」 마련 ○ (장애 4)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는 규제라는 공무원의 인식 팽배 ↳ 주요사업 사전 컨설팅과 자체교육으로 지속적인 인식개선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요불급한 사업 차단으로 市 재정운영의 효율성 기여 ○ ①절차, 매뉴얼 등 투자심사 사전점검 시스템화 ②객관적인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마련 ③ 지난 5년 사업 사후관리 프로그램 실시 등 투자심사 新 패러다임 제도마련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市 재정운영 효율성에 크게 기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비 조정 절감 : 58,980백만원(19년 17,721백만원, 20년 41,259백만원) - 부실사업 차단 : 22.8%(센터 설립전 18.8%, 설립후 22.8%) ○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전문성·객관성·효율성 확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적 컨설팅 지원) 공무원교육, 투자사업(사전) 지원 50건 등 - (객관성 효율성 확보) 전문가 검토 활성화(91건) 재정낭비 사전차단

투자심사! 이것 하나만 제대로 해도 '지방재정' 대폭 개선된다.

1. 과제 선정 내용

- 지방재정법령에 근거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및 “타당성 조사제도”는 건전재정과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필수, 의무 절차임(‘92년부터 시행)

< 지방재정 투자심사·타당성 제도 운영 취지 >

1. 사업 타당성 사전 분석·평가	⇒ 중복·낭비 억제 및 부실화 사전 예방
2. 국가계획·정책과 지방재정계획의 연계	⇒ 지방재원의 효율적·계획적 운용
3. 적정 투자사업 심사·선정	⇒ 집중적 재정지원 및 적기 완료 도모

자료 : 행정안전부(투자심사 및 타당성조사 매뉴얼) 재구성

- 투자심사는 행안부 중앙심사와 243개 지방자치단체 심사로 구분(각각 실시)
 ※ 2018년 전국 심사실적(244개 기관) : 4,888건, 60조 6,965억원 심사 실시
- 그러나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들은 투자사업의 사전계획과 투자심사의 효율적 운영에 한계(전문 인력, 체계적 운영 시스템 부재 등) 존재

심사구분	심사기관	심사대상 (일반투자사업 기준)
계	244개 기관 (자체심사 : 243개, 의뢰심사 : 18개)	
자체심사	17개	광역시·도
	4개	4시(수원, 창원 등)
	222개	71시·82군·69구
의뢰심사	17개	광역시·도
	1개	행정안전부

- 또한, 투자심사 시 사전절차의 이행, 사업비 적정성 검토, 투자심사 이후 예산확보 방안 및 신속 집행 등과 연계한 검토 수행 한계
 ※ 사업부서는 기본계획수립(기관장결재)만 되면 예산확보는 예산부서에서 알아서 해결한다는 인식 팽배
- 특히, 사업부서에서 무분별하게 추진하는 사업은 예산(재정)부서의 투자심사 사전점검 등 안정적 제도운영 필요(재정 필터링의 최종단계)
 - 계획 단계에서 타당성 조사, 사전검토 등 사전심사 제도 강화 필요
- 투자심사이후 사업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부재로 투자심사 통과 조건³⁾ 이행여부 확인 어려움과, 사업추진 중 문제점 확인 등 자치단체별 자체 환류(feed back)체계 관리 필요

3) 투자심사는 '적정, 조건부추진, 재검토, 부적정, 반려' 등 결정됨(행정안전부 부령, 지방재정투자심사 규칙 제5조)
 - 조건부 추진은 사업의 타당성은 인정되나 선행 절차 이행 등 조건 충족 후 추진해야 할 사업

2. 문제원인 분석

- (사전검토 절차 부재)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등 선행 행정절차 미이행 및 재원조달불투명, 사업내용 불명확 등 사업 준비상태 미비
 - * 인천시 지방재정투자사업('12~'15, 207건) 심사 결과 25%가 반려·재검토
- (심사자료 한계) 투자심사 심사위원들에게 제공되는 자료는 심사의뢰서와 재원조달능력 판단조서 등 제한적 자료만 제공되어, 전문적·객관적 투자심사에 한계가 존재
 - 객관적으로 사업 타당성·필요성 및 시급성·주민 수용성, 사업 규모 적정성, 경제적·재무적 타당성 파악에 한계
- (비용산정 기준 부재) 비용산정 기준 부재로 예산이 과다 편성, 이에 따라 예산 규모에 사업규모가 변경되는 등 불합리한(과다) 재정지출 초래

< 시설 규모 및 용도 대비 과도한 공사비 책정 사례 >

구분	OO시국민체육센터	인천시 투자심사의뢰 사례
조 감 도		
유 형	복합형체육시설	단일체육관
총공사비	21,856 백만원	15,977 백만원
㎡당 공사비	284만원	390만원
세부시설	수영장, 다목적체육관, 배드민턴장, 헬스장, 유아풀, 요가실 GX룸, 요가실, 스피닝실, 문화교실, 체육용품점, 카페	체육관(배드민턴장 6면), 탁구장, 헬스장, 카페, 다목적실

* 위원회에서는 동일용도의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사업비 단가가 각각 달라 사업비 적정여부 판단에 혼란 초래('19년 3월 부터 지속 지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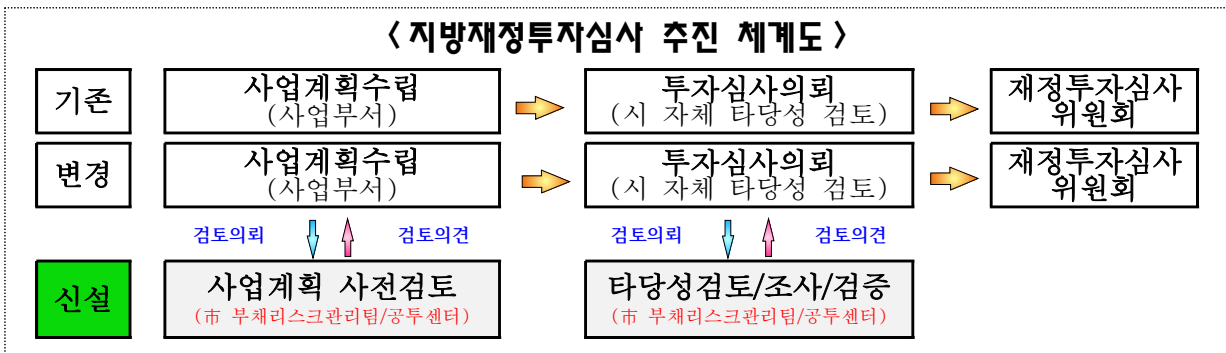
- (공무원 인식 문제) 사업부서에서는 사업계획 수립 위주로 검토
 - 사업비 절감 및 확보 노력이 미흡하고 사전절차는 규제란 인식
- (자체심사 사업 환류체계 미흡) 투자심사이후 사업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부재로 적정수준의 사업비 증액 규모* 및 투자심사 통과 조건 이행 여부* 확인 곤란, 유사사업 심사시 환류(feed back)체계 미흡
 - * 구월농수산물 도매시장 이전건립 사업의 경우 최초 투자심사 사업비가 2,470억 이었으나, 사업 추진과정에서 3,210억 으로 증가
 - ** 계양 실내체육관 건립사업의 경우 사업비 삭감(40억) 조건부 승인 하였으나 이행여부 확인 곤란
 -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 필터링뿐만 아니라 사업의 완성 과정까지의 관리 필요

3. 방안 마련 및 실행

◇ 절차, 매뉴얼 등 투자심사 사전점검 시스템화^①, 객관적인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마련^②, 지난 5년 사업 사후관리 프로그램^③ 실시 등 투자심사 新 패러다임 제도마련

① 지방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제도 프로세스 개선

- (사업계획 수립 단계) 사업계획 수립 단계에서 사전검토를 통해 사업 계획의 구체성 및 시급성 등을 보완·검토
 - 사업계획을 사전에 검토함에 따라 제한적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
 - * 인천삼산유수지 상부 활용계획(체육센터건립계획 등 약 676억)과 관련하여 사전검토 절차를 활용 사업비, 사업계획, 사업시기, 추진방향 조정
- (투자심사 의뢰) 투자심사 의뢰 전까지 의무적으로 사업계획에 대한 전문가의 타당성 검증*을 실시하여 투자심사 의뢰서에 반영
 - * 사전검토 필요 자료는 기본계획 내용과 총사업비 및 운영비에 관한 자료
 - 또한, 투자심사 의뢰서 작성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부서 담당자 이해 도모를 위해 市 대표적 사업유형 중 주차장 사업과 공공청사 건립 심사의뢰서 작성 사례 제시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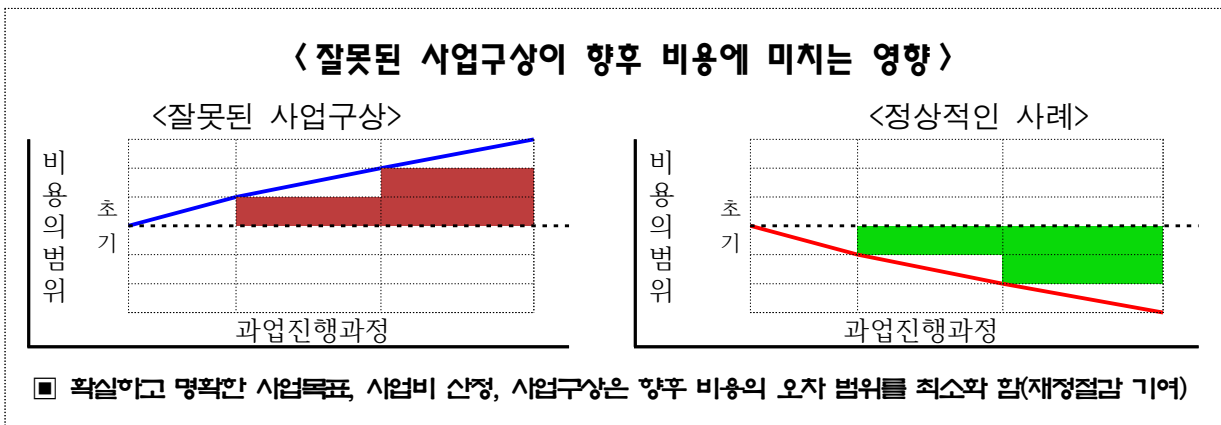


② 투자심사 위원회의 전문성 제고

- 투자심사 의뢰서 제출 이후 분야별 전문가가 사회·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하여 투자심사위원회 투자심사 기초자료 제공
 - 전문가 제시한 의견은 투자심사 위원들의 최종 사업 추진 여부 결정을 지원

③ 市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 마련

- (공사비 단가 제시) 지방투자사업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투자심사에서 건설비용은 타당성 판단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
 - 건설비용은 객관적인 산정방법과 실적자료를 바탕으로 사업구상 단계에서 추정되는 건설비용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필요가 존재
 - 사업 구상단계에서 건설비용을 정확하게 산정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 사업 목표에 따라 적정하게 계획되어야 함
- ⇒ 간편하면서도 객관성을 유지할 수 있는 비용추정 방법과 표준 단가 제공을 목표로 하여 비용산정 기준을 제시



- 또한, 사업부서 실무자들이 사업비 산출에 적용하기 쉽도록 유형별 공사비 단가(㎡당)와 적정 규모 및 비용 산정 프로그램 제공

④ 투자사업의 사후관리 실시

- 투자사업 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부재와 투자심사 통과 조건 이행 여부 및 유사사업 심사시 환류(feed back)체계 확보를 위해 투자심사 이후에 대한 사후관리 필요
 - * 대규모사업, 지연사업 등 문제사업 위주 원인분석 및 중점관리로 재발방지 방안 마련
- ⇒ 투자사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 5년간 시행한 투자사업에 대한 이력관리를 위한 연구 추진

4. 장애극복

- (장애요인 1) 사업부서는 재정 또는 민간투자사업을 추진하거나 투자심사 의뢰를 위해 사업담당자 단독으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 전문적이고, 구체적인 사업계획 수립에 한계가 존재
 - ☞ 「인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투자심사 매뉴얼」을 통해 사전검토 절차를 신설하여 사업부서를 지원하여 사업의 객관성·구체성 확보
- (장애요인 2) 투자심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담당 인력 부족 (담당팀장, 주무관 1명)으로 전문적인 검토자료 제공에 한계 발생
 - ☞ 공공투자관리센터에 분야별 전문가를 채용, 외부 전문가 자문 강화
- (장애요인 3) 유사사업의 공사비 단가기준이 통일*되지 못하여 예산 과다 편성, 예산 규모에 따라 사업 규모가 커지는 등 비합리적 사례 발생
 - * 행정복지센터와 같은 동일 사업유형도 사업부서에 따라 참고하는 유사 사례가 상이하여 공사비 단가적용에 차이 발생
 - ☞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2019)」을 제시하여 재정투자사업의 사업비 산정 표준화 및 기준으로 활용
- (장애요인 4)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는 규제라는 공무원의 인식 팽배
 - ☞ 주요사업 컨설팅과 자체교육을 통해 사전절차 이행은 향후 신속한 사업추진의 중요성 집중 부각

5. 성과

- ◇ 불요불급한 사업 차단으로 인천시 재정운영 효율화에 기여하였으며,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의 전문성 및 공정성·객관성을 확보
 - ① 사전검토 절차 운영으로 부실사업 사전 차단
 - ② 인천시 표준공사비 단가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 효율화 기여
 - ③ 전문적 검토 지원을 통해 투자심사위원회 지원
 - ④ 사전컨설팅 및 교육을 통해 사전절차의 중요성 인식전환에 기여
- ⇒ **사업비 조정을 통한 예산 절감 58,980백만원, 부실사업 차단 22.8% 전문적 컨설팅 지원(교육포함) 등 50건, 전문검토 의견 제공 91건**

① 불요불급한 사업 차단으로 재정운영 효율성에 기여

- (사전검토 절차 운영) 사업계획수립 및 투자심사 의뢰 전 전문인력 사전검토를 받도록 하여 무분별한 투자사업에 대한 필터 역할 및 부실사업을 사전에 차단

구분	전문인력 확충 이전 (2011~2018)	전문인력 확충 이후 (2019. 3차 ~2020.12)
계	18.8% (85건)	22.8% (21건)
재검토	13.7% (62건)	12.0% (11건)
반려 및 철회	5.1% (23건)	10.9% (10건)

- (市 표준공사비 단가 활용) 유형별 사업비 산정에 표준 기준을 제시하여 사업비 산정의 객관성 확보와 재정 효율화에 기여

(단위 : 백만원)

구분	계	2019년 3차	2020년 1차	2020년 2차	2020년 3차
조정절감 금액	58,980	17,721	6,898	34,361	심사 중

- (주요 재정검색 사이트를 통한 사전검증) 주요사업 추진시 사업부서에서 객관적인 자료작성 및 검증을 위한 사이트를 제공*하여 자체 검토 및 市 재정부서 추가검토(검토의 가외성⁴⁾)

* 市 전문인력 확보 : 6명(경제학박사 1, 공학박사 2, 도시계획 박사1, 토목공학사1, 도시공학 석사 1)

② 재정투자사업 투자심사 전문성·객관성·공정성 확보

- (전문적 검토 지원) 투자심사위원회의 전문적 기능 강화를 위하여 인천시 재정투자사업 유형 분석을 통해 빈번한 사업유형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고 투자심사 전 사업계획 검토를 지원

* 총사업비 산정, 관광객 수요추정, 공공시설물 운영 등 : 5개 분야 7개 사이트(참고 : 붙임자료)

< 주요 재정사업 검토 등 성과('19.6 ~ 20.8) >

구분	구분	2019년도	2020. 8월말 기준	비고
재정투자사업	사전검토	12건	38건	
	투자심사(정기)	33건	58건	
	투자심사(수사)	-	6건	
	민간투자사업	-	3건	
	기타 주요 자문, 검증 등	-	23건	

- 전문적 의견은 市 투자심사위원회에서 사업의 효과가 미비한 투자사업 진행을 예방하는 등 재정낭비를 사전에 차단

4) 가외성(加外性, redundancy) 여러 기관에 한 가지 기능이 혼합되는 중첩성(overlapping)과 동일 기능이 여러 기관에서 독립적으로 수행되는 중복성(duplication) 의미. 행정상의 모든 제도는 불확실한 상황에서의 오류 발생 가능성을 최소화하고 체제의 신뢰성과 적응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가외적 기능의 원칙 적용됨

< 투자심사 결과 및 전문검토와 투심결과 간 의견 일치 현황 >

구분	2019년 3차		2020년 1차		2020년 2차	
	전문 검토	투심 결과	전문 검토	투심 결과	전문 검토	투심 결과
적정	9	8	2	1	2	3
조건부 추진	20	22	11	17	5	5
재검토	4	2	5	0	3	2
철회 등	-	1	1	1	2	2
의견 일치율	91%		76%		90%	

주) 의견 일치율 기준은 재검토 조건부(적정)를 의견 불일치로 분류함

- (인식전환 기여) 사전컨설팅 및 공무원 교육을 지속 실시하여 사전 절차의 중요성을 집중 부각하여 인식전환에 기여

< 사전컨설팅 및 공무원 교육 실시 현황 >

구분	자체 교육 실시	자체 사전컨설팅	자체 주요사업 점검
건수	2회(집합 및 교재)	12건	10회

※ 150여명/회 참석(2020년은 코로나로 인해 교재 배포로 대체)

③ 투자사업의 사후관리 실시

- 투자심사 후 사업집행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최근 5년간* 투자심사 결과 분석을 통한 이력관리 연구과제 분석 진행중

* 市 투자심사 사업(2015년~2019년) : 469건/ 16조 3,570억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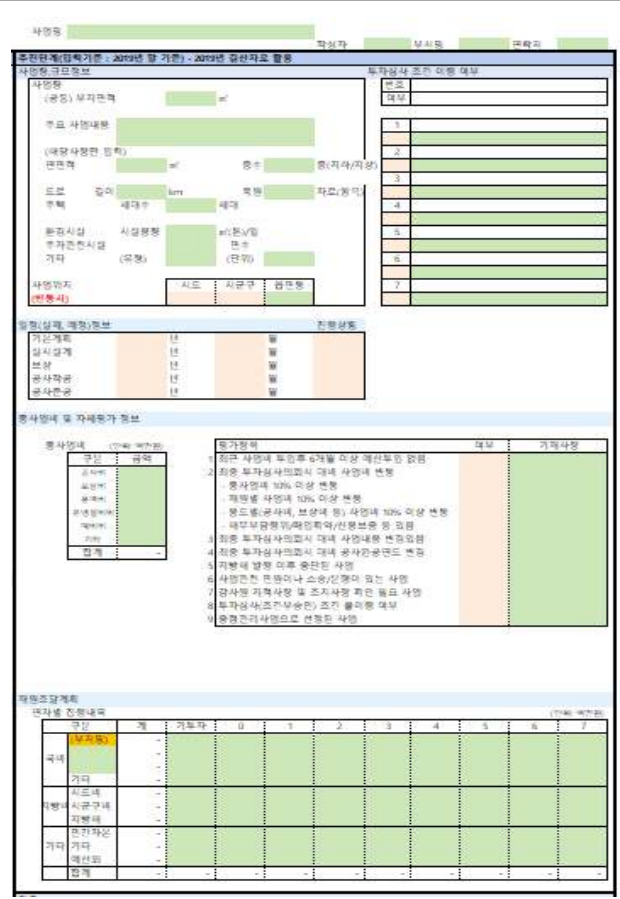
⇒ 사업진행 과정에서 증액(추가)되는 사업비에 대한 적정 규모 관리

<참고1> 인천광역시 투자심사시 활용하고 있는 정보 검색사이트 현황

검색사이트	주요 확인 가능 내용 및 활용방법	운영주체
<총 사업비 산정> 인천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2019)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에 관한 일반지침 (http://limac.kfira.re.kr/)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 보완 연구 (http://pimac.kdi.re.kr/)	◇ 투자사업에 대한 타당성 조사 일반지침 및 총 사업비 산정 방식 제공 ◇ 활용방법 지방재정 투자사업에 대한 공사비 및 보상비 등 총사업비 산정시 객관적인 기준 산정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 투자심사 의뢰서에 건축비, 보상비는 "어느 기준이 적합하여 00지침을 준용하여 산정하였다"는 등으로 객관성 확보 필요	인천광역시 LIMAC PIMAC
관광지식정보시스템 (https://www.tour.go.kr)	◇ 자치단체 주요 지점별 관광객 현황 - 월별 유료, 무료관광객 현황 - 월별 내국인, 외국인 관광객 현황 ◇ 활용방법 자치단체 주요시설에 대한 수요예측 및 시설운영에 따른 수입 산정시 객관적인 방문객 확인 가능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지방재정 365 지방재정통합공개시스템	◇ 자치단체 공공시설물 운영 현황 - 주요 공공시설물의 건립, 운영방식, 면적, 관리인력,	행정안전부

검색사이트	주요 확인 가능 내용 및 활용방법	운영주체
(http://lofin.mois.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립비용, 운영수익, 운영비용, 순손익 등 활용방법 자치단체 내 유사 공공시설 검토시 투자심사의뢰서 작성의 적정성 검토 ; 운영손익 추정시 이용객의 객관적인 수요가 반영되었는지 검토 가능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http://www.law.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체육시설 등에 대한 설치 기준제시 - 전문체육시설의 설치기준을 제시 (별표) 활용방법 자치단체 주요 체육시설 건립계획 수립시 전문 체육시설 생활체육시설을 구분하여 시설 규모 확정시 적용 	문화체육관광부
고용노동부 '고용영향평가 가이드 라인' (http://www.moel.go.kr)	<ul style="list-style-type: none"> 자치단체 투자사업에 대한 고용효과 분석 활용방법 투자사업 추진으로 직접고용, 간접고용을 사업 추진단계에서 객관적인 기준으로 산출 	고용노동부

〈참고2〉 인천시 비용산정 기준 및 사후관리 서식

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	투자사업 사후관리 서식
 <p>인천광역시 지방재정 투자사업 비용산정 기준 I</p>	 <p>투자사업 사후관리 서식</p> <p>주요 사항: 사업명, 사업기간, 사업예산,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효과, 사업추진계획, 사업추진진행도, 투자사업에 대한 기대효과, 투자사업에 대한 자재평가 정보, 투자사업 실적평가</p>

[경기도 김포시)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type="checkbox"/> 세출 효율화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지방세)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세외수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사 례 명	숨은 공유재산 찾기 프로젝트
기 관 명	경기도 김포시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checked="" type="checkbox"/> 시 <input type="checkbox"/> 군 <input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김포시 회계과

< 요약 >

각종 개발사업 및 공공사업을 추진하면서 사업 완료 후 공부가 제대로 정리 되지 않고 소유권 이전 등의 후속 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되는 등 재산관리에 소홀한 경우 다수 발생.

김포시 공간정보시스템 활용과 각종 공부 및 등기전산자료 대조 조사를 통해 미등록 재산을 발굴, 등록하고, 미관리 공유재산을 공유재산 관리시스템에 등재 및 현행화하여 효과적인 재산관리 및 재정 확충코자 함.

또한 등기자료 확인에 따른 등기정보자료 요청시 중앙행정기관 및 법원행정처 승인 과정이 장기간 소요되어 대주민 서비스 지연 및 행정력 낭비 등의 비효율을 초래 시도·서울내부행정시스템(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부동산 등기전산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한 협업체계 구축을 제시하고자 함.

위와 같이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0. 10. .

김포시장(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숨은 공유재산 찾기 프로젝트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김포시 관내 공유재산 대상 ○ 추진기간 : 2019 ~ 2020(연중 추진) ○ 사업내용 : 공유재산 시스템, 지적공부 및 등기전산자료 및 공간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불일치 자료를 추출하고 누락재산을 발굴하여 공유재산의 현행화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등기전산 자료 확인(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승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18. 10월 ~ 11월 <div style="display: flex; justify-content: space-around; align-items: center; margin: 10px 0;"> <table border="1" style="border-collapse: collapse; text-align: center;"> <tr> <td style="padding: 5px;">행정안전부 심사 요청 (2018.10.15.)</td> <td style="padding: 5px;">심사 결과통보 (2018.10.24.)</td> <td style="padding: 5px;">법원행정처장 승인신청 (2018.10.24.)</td> </tr> <tr> <td style="padding: 5px;">지자체 ⇒ 중앙행정기관</td> <td style="padding: 5px;">중앙행정기관 ⇒ 지자체</td> <td style="padding: 5px;">지자체 ⇒ 법원행정처</td> </tr> </table> ⇒ </div>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법원행정처장 승인 및 자료제공 (2018.11.15.) ○ 법원행정처 ⇒ 지자체 (전산 자료 직접 수령) ○ 공유재산 시스템, 지적공부 및 등기전산 자료를 크로스 체킹하여 오류자료 추출 : 2019. 2월 ~ 4월 ○ 누락재산, 미등기 재산의 권리보전과 멸실 등기 및 시스템 정비 - 2019. 5월 ~ 2019. 10월 	행정안전부 심사 요청 (2018.10.15.)	심사 결과통보 (2018.10.24.)	법원행정처장 승인신청 (2018.10.24.)	지자체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지자체 ⇒ 법원행정처
행정안전부 심사 요청 (2018.10.15.)	심사 결과통보 (2018.10.24.)	법원행정처장 승인신청 (2018.10.24.)					
지자체 ⇒ 중앙행정기관	중앙행정기관 ⇒ 지자체	지자체 ⇒ 법원행정처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 불일치 재산등 중 미등기 상태가 너무 오래되었거나, 이미 개발사업 등이 오래전에 완료되어 조합등이 해산한 상태라 소유권 관련 자료 확보의 어려움 발생 ⇒ 관련기관과 협력하여 증빙자료 확보 및 등기절차 진행 ○ 등기자료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필지별 등기부등본 발급이 원칙으로 누락 재산 확인을 위해 필요한 김포시 소유 전체 등기부등본 발급 불가 ⇒ 등기전산 자료를 통해 지적공부와의 대조조사 업무의 능률 향상 및 누락 재산 발굴이 용이해짐 ※ 단, 등기전산 자료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및 법원행정처의 승인을 받아 전산자료를 직접 수령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 발생 						

구 분	주 요 내 용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 불일치 대상을 파악하고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누락재산 발굴 및 미등기 재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완료 ○ 공유재산 시스템과 지적공부의 일치로 정확한 공유재산 데이터베이스 확보 및 행정업무의 신뢰성 제고 ○ 등기정보 자료 요청시 중앙행정기관 및 법원행정처 승인에 따른 행정절차의 장기간 소요(1~2개월)로 대주민 서비스 지연 및 행정력 낭비 등 비효율이 초래됨에 따라 공유재산 시스템과 부동산 등기전산자료의 연계구축을 위한 기관간 협업 체계 구축 협의(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신뢰성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미관리(누락) 공유재산의 발굴 및 현행화로 공유재산 증가 ※ 731필지, 1,758,434㎡, 약 5,200억 (2019년도 공유재산 증가액 4,700억 대비 70% 차지)

숨은 공유재산 찾기 프로젝트

1. 과제 선정 내용

-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이 차지하는 비중과 역할은 점차 증가하는 추세로 2018년말 기준 공유재산은 740조로 세출예산 대비 24배로, 앞으로 그 활용가치는 훨씬 더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공유재산의 관리 정책 또한 단순 유지·보전에서 활용 및 개발로 전환이 진행되고 있음.
- 이러한 공유재산의 관리·활용의 정책 변화에 부합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공유재산의 정확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이 선행되어야 함.
- 형식적인 실태조사에서 벗어나 현재 공유재산에 대한 전수조사 (지적공부 및 등기자료 대조조사) 및 재산의 공부상의 정보와 실제 정보를 일치시키는 과정을 통해 정확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각종 정책에 필요한 기본 자료를 제공하여 국민의 편익증진 및 세입증대 등의 기틀 마련

2. 문제원인 분석

- 공유재산 관리 담당 직원의 부족
공유재산의 활용가치 및 수입은 점차 증대되고 있지만, 각 부서의 공유재산 담당자는 타업무에 병행하고 있으며, 감당할 수 없는 공유재산 관리 대상과 근무여건은 매우 열악함
- 각종 개발 사업 후 소유권 이전 절차 미이행
각종 개발사업 및 공공사업을 추진시 공유재산의 취득 사유가 발생하였으나, 소유권 이전등의 후속조치를 이행하지 않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발생하였고, 사업완료 후에는 공유재산의 보존조치가 어려움에도 사업추진 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련 절차를 이행하지 않아 공유재산 관리에 문제점 발생

3. 방안 마련 및 실행

- 공유재산 관련 시스템, 지적공부 및 등기전산자료 쌍방향 대조조사 (일제전수조사)
 - 자료 추출이 쉬운 공유재산 시스템 및 지적공부 자료로 1차 조사 실시하였으나,
 - 공유재산 관련 정확한 대조조사를 위해서는 김포시 소유 전체 등기 자료가 필요하였으나 필지별 등기부등본 발급이 원칙임에 따라 김포시 소유 전체 등기부등본 발급 불가로 대조조사의 한계점 봉착
⇒ 등기전산 자료 요청 및 승인으로 통해 지적공부와와의 대조조사 업무의 능률 향상 및 누락 재산 발굴이 용이해짐
 - ※ 단, 등기전산 자료 확보를 위해 행정안전부 및 법원행정처의 승인을 받아 전산자료를 직접 수령해야 하는 등 행정력 낭비 발생
- 관련기관 협조를 통한 미등기 재산 소유권 이전완료
 - 지적공부와 부동산등기 불일치 재산 중 미등기 상태가 너무 오래 되었거나, 이미 개발사업 등이 오래전에 완료되어 조합 등이 해산된 상태라 소유권 관련 증빙 자료 확보가 어려운 상황이었음.
 - 관련기관(지적부서, 담당부서, 등기소)과 협조하여 개발관련 문서 및 전산전 토지대장 자료 등을 찾을 수 있었으며 등기소와 협의하여 필요 서류를 구비하여 미등기 필지에 대한 등기 절차 이행

4. 장애극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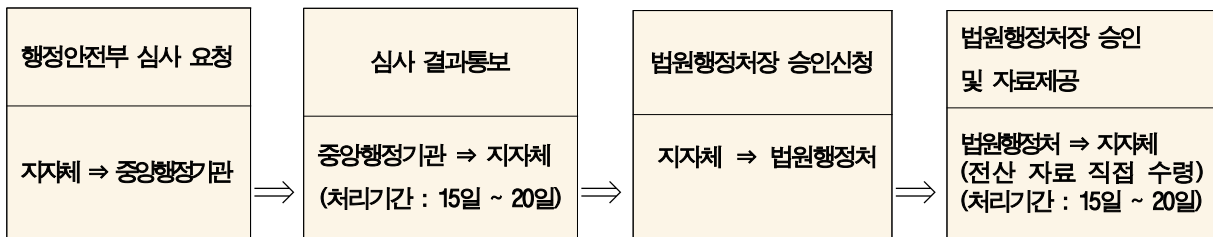
- 공유재산시스템 및 부동산 등기 전산정보시스템 연계구축을 위한 협업 제안
 - 등기정보 자료 요청시 중앙행정기관 승인이 장기간 소요(1~2개월) 되어 대주민 서비스 지연 및 행정력 낭비 등 비효율이 초래됨에 따라, 앞으로 공유재산 시스템과 부동산 등기전산자료의 연계구축을 통해 지자체 공유재산이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

이를 위한 기관간 협업 체계 구축 협의(행정안전부, 법원행정처)

- 법원행정처의 지자체장의 승인 절차 간소화 등의 법률개정과 시도·서울내부행정시스템(공유재산관리시스템)과 부동산 등기전산 정보시스템의 연계를 통해 체계적인 재산관리 및 효율적인 행정업무 수행 지원 필요

※ 등기 전산 정보 신청 절차

- 「부동산 등기법」 제109조 제2항 및 「부동산등기규칙」 제163조 의거)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공유재산관리시스템 현행화로 공유재산 관리업무의 신뢰성 제고 및 효율적인 관리체계 구축
- 공유재산 현행화 현황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취득(등록) 완료
731필지, 1,758,434㎡, 518,348백만원
 - 공유재산관리시스템상 처분(삭제) 완료
544필지, 246,158㎡, 37,500백만원
 - 미등기 공유재산 소유권 이전 완료 재산 현황
통진읍 마송리63-2등 57필지, 187,262㎡
- 미관리 공유재산의 발굴 및 현행화로 세수확보 및 재정확충
 - 731필지, 1,758,434㎡, 약 5,200억
 - 2019년도 공유재산 증가액 7,400억 대비 70% 차지

[충청남도]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type="checkbox"/> 세출 효율화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지방세)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세외수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사 레 명	소규모 관급공사 과소설계 개선(적정공사비 확보)
기 관 명	충청남도 <input checked="" type="checkbox"/> 광역 <input type="checkbox"/> 시 <input type="checkbox"/> 군 <input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감사과

< 요약 >

- (배경) 공공공사의 특성상 예산절감이라는 그릇된 실적지표 설정과 건설산업의 오래된 관행으로 인하여 그동안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노력없이 낮은 예정가격을 산정함
 - 저가수주로 인하여 공공공사의 안전성 등이 담보되지 않고 있으며, 결국 모든 피해는 하도급 및 건설근로자 등 사회적 약자에 전가되어 사회적 갈등 유발
 - 중소기업체들의 도산 등 경영난으로 제도개선 및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굴 필요
- (실행) 충남도 소규모 건설공사 실정에 맞는 “충남형 설계기준” 마련, 소규모 건설공사의 적정공사비 반영으로 건설공사 품질향상 및 공정경제로 중소기업체들의 경영 활성화 기대
 - 4억 미만 소규모건설공사에 ‘충남형 설계기준’ 마련, 효율성 증대(기존 대비 10~20% 증액)
 - 실행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과소설계 및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관행 감사시행(‘19~’20년)
 - 예정가격(과소설계 등) 산정 부적정 등 229건, 하도급 대금지연 등 불공정 관행 306건
- (성과) 안전확보, 제도마련, 소규모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반영을 통한 연간 기대 파급효과
 -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 : 701억원 - 취업·고용효과 : 584명
- (전국확대) 국민권익위원회(경제제도개선과)에서 충남의 사례를 전국 행정기관으로 확대 시행계획(’20년 12월까지)
 - 건설공사에 대한 철저한 사전심사(예정가격 산정 등)를 통하여 세출 예산의 효율화 실현

위와 같이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0. 10. .

충청남도지사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소규모 관급공사 과소설계 개선(적정공사비 확보)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추진배경 : 건설공사의 적정한 공사비 미반영으로 품질 및 안전 미확보와 사회적 약자인 하수급인과 현장근로자에게 전가되어 사회적 갈등 유발 및 민간을 상대로 한 부당한 요구 및 부담을 전가하는 일종의 갑질 등 불공정관행 근절 ○ 추진기간 : 2019 ~ 현재 ○ 추진내용 : 시·군 감사 추진, 현장 점검, 관련부서 등 협업추진, 제도개선 방안 마련 등 건설산업 활성화를 위한 정책발굴 추진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4. 15 : 대한전문건설협회 1차 간담회(애로·건의사항청취) → 적정공사비(과소등) 반영, 불공정 하도급, 설계부실 예방 등 ○ '19. 11. 20 : 대한전문건설협회 2차 간담회(추진사항 설명 등) ○ '20. 2. : “충남형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마련·배포 * 19년~현재 : 6개 시군 종합감사 및 4개 시군 특정감사 추진 / 관련부서 협업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공사 공사비 증액의 부정적인 인식으로 인하여 적정공사비를 반영 등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고민하였으나, 업계 등 의견을 수렴하여 서로 공감하는 제도마련의 필요성하다고 인식전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 값 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상생 문화 정착 및 안전성 확보라는 시공자와 사용자의 상생목표로 추진 ○ 인력과 예산 부족의 문제로 추진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도 관련 부서의 업무지원 등 협업을 통하여 극복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문건설협회 등 건설관계자의 의견청취로 불공정 관행 등 문제점 파악, 감사에 반영하고 추진사항에 대한 피드백 실시로 불공정 관행 개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예가산정 부적정(과소 설계 등) 확인 : 174건(328백만원) ▪ 감액위주 계약심사 사례 확인 : 55건(427백만원) ▪ 하도급 대금지연 등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확인 : 306건 ○ '20년 적정공사비 적용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을 마련하여 시군 등 배포로 “지역특성을 반영한 설계표준”을 제시한 정책 발굴 개선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도 실정에 맞는 “충남형 설계기준” 마련, 표준화하여 효율성 증대 및 데이터 구축으로 건설공사 품질향상 및 영세한 건설업계의 현장목소리 반영으로 공정경제 등 중소건설업체 활성화 기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권익위(경제제도개선과)에서 충남의 사례를 전국 행정기관으로 확대 시행계획('20.12월까지) ○ 소규모 건설공사에 적정한 공사비를 반영시 기대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년 충남 기준 소규모 건설공사로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 701억원 및 취업·고용효과 584명

소규모 관급공사 과소설계 개선(적정공사비 확보)

1. 과제 선정 내용

- 서울 송파구청에서 2019년 발주한 “송파둘레길 성내천 백로정 설치 공사”의 기초금액은 2억 8248만원이었으나 낙찰된 업체에서 실제 소요되는 비용을 산정한 결과 6억 9,190만원으로 확인, 결국 업체는 계약을 포기하는 등 예정가격 산정 부적정으로 계약을 포기하는 건설공사 지속 발생
- 포스코건설은 안전과 품질 차원에서 업계 최초로 ‘최저가낙찰제’를 폐기하기로 결정⁶⁾하는 등 적정공사비 지급을 통하여 안전사고 및 시공 품질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가고 있음
 - ※ 현재 사회전반에 걸쳐 비용절감을 이유로 최저가 낙찰제 활용 중
- 도 감사위원회에서는 대한전문건설협회 세종·충남도회 및 건설현장 방문 등을 통하여 의견 수렴, 건설업계 실태를 확인하였고 건설산업 시장의 문제점 개선의 필요성에 대하여 공감하고
- 또한, 민선7기 출범이후 도지사 지시사항으로 불법하도급, 사회적 약자의 권익보호(체불 등) 등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으로 인한 부실 시공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개선 방안 마련 주문이 다수 있었음
- 이에 건설산업 시장에 만연한 예정가격 산정 부적정(과소설계 등) 및 하도급 부적정 등에 대하여 발주자와 시공자의 상생 및 건설공무원의 인식 개선을 위한 제도마련에 주안점을 두고 관련부서와의 협업 추진하였으며,
- 건설경기 침체 등 어려운 여건속에서 코로나19로 피해가 가중된 영세한 전문건설업계의 애로사항 해소 등 현장목소리 반영으로 건설산업 활성화 정책 발굴로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5) 건설경제신문(2020.08.07.) 송파구청 시설공사 ‘혈값 발주’ 갑질 논란

6) 건설경제신문(2020.03.24.) 포스코 발 ‘저가하도급 근절’ 훈풍 부나

2. 문제원인 분석

- 최근 10년간 건설수주물량 감소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체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기업경영이익 급감(경영악화) 지속 증가세
 - 충남지역 수주물량 '08년(10.5조원) → '18년(8.0조원) 감 2.5조원
 - 전문건설업체 '08년(2,576개사) → '17년(2,975개사) 증 399개사
- 공공공사의 특성상 예산절감이라는 그릇된 실적지표를 설정하여, 적정공사비 확보를 위한 노력은 배제하고 낮은 예정가격을 산정함으로써, 공공공사 비중이 100%인 업체들의 영업 이익율이 급감하고 있는 실정임
 - (건설업체 영업이익) - 5.73%(2005년) → - 24.57%(2016년), △ 18.84%
- 건설산업연구원이 건설업계 128명을 대상으로 국내 공공공사 공사비의 적정성 수준에 대한 설문조사⁷⁾ 결과,
 - 84명(64.6%)의 응답자가 공사비의 적정성 수준을 '낮음' 혹은 '매우 낮음'으로 평가하였고, "보통"은 34.6%였으며, '높음'으로 평가한 건 1명(0.8%)에 불과함.
- 국토부에서도 업계의 문제점을 인식하고 있어, 적정공사비 현실화를 위해 공사원가 개선과 타부처에도 업계의 의견을 건의하는 등 노력하고 있으나 적정공사비 반영에 이견이 있어 반영이 안되고 있으며,
 - '20. 5. 15. 조달청장 간담회시 건의사항⁸⁾ (대한건설협회)
: 적격 및 종합심사낙찰제 낙찰율 상향, 공사원가 제비율과 자재단가 현실화 등 '공공공사의 적정공사비 지급'요구
- 특히, 소규모 관급공사는 발주시에 공사 수량과 단가누락 등 과소설계로 인해 공사품질 저하, 안전사고, 기업도산 등 전문건설업 존립 위협 요인으로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의 피해가 심각한 실정임

7)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공공공사비 산정 및 관리실태와 제도적 개선방안' / 2018.3.

8) 국토일보(2020.05.15.) 조달청 "건설 적정공사비 지급 개선할 것"

3. 방안 마련 및 실행

① (업계의 의견 수렴) 대한전문건설협회 및 도 발주 건설공사 현장 방문하여 애로사항, 하도급 개선 등에 대한 의견 청취

○ (대한전문건설협회) 전문건설협회와 간담회(년2회 이상)를 실시하여 건설업계의 건의사항 및 불공정 관행 문제점을 파악하고 충청남도 감사위원회의 노력사항에 대하여 피드백 실시

- ① (1차 간담회) '19.4.15 (감사위) / 건의사항 청취 등
 - 공공 및 민간부분 하도급을 제고, 설계 및 공사원가 적정산정, 설계부실 예방 행정지도 강화 요청 → 소규모건설공사 설계기준 마련 추진계획 수립
- ② (2차 간담회) '19.11.20 (감사위) / 감사추진 상황 및 애로사항 청취 등
 - 적정공사비 산정 노력(표본감사 실적), 예산절감 위주 계약심사 지양(감사실적)
- ③ (정기총회) '20.2.12 (전문건설협회 주관) / 유관기관 참여
 - 적정공사비 반영을 위한 설계기준 마련, 건설공사 불공정관행 개선 노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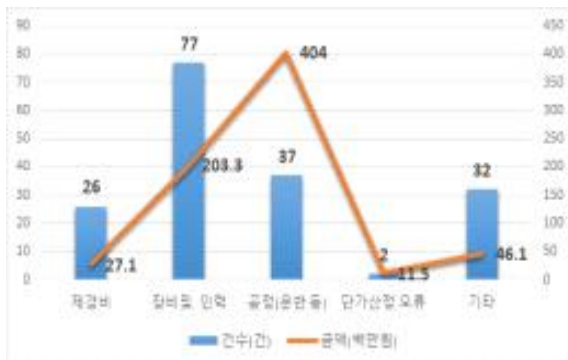
○ (현장관리) 도 발주(1억 이상) 건설현장 분기별 방문 점검 및 의견수렴

- ① '19년 도 발주 현장(1억원 이상, 63개소) 분기별 순회방문, 지역하도급 권고 및 애로사항 청취
- ② '20년 도 발주 현장 하반기 방문 : 유보 (코로나19로 인한 현장방문 제한)
 - 코로나19 지침상황 주의하여 연말(12월) 방문 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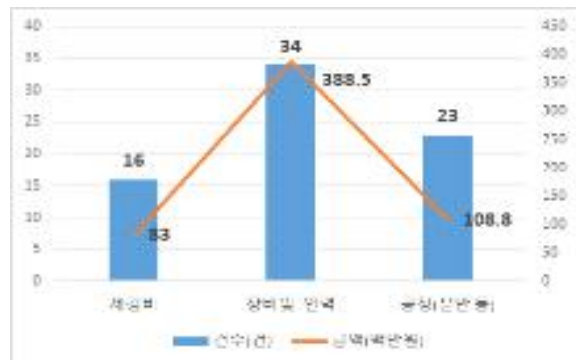
② (감사시행) 공공건설공사 분야 적정공사비 확보에 대한 인식 개선을 위하여 시군 등 감사시 관련분야 감사 추진(종합감사 6개 시·군, 특정감사 4개 시)

○ (과소설계) 5가지 유형 174건 확인(328백만원) * 적정예기대비 10.3%과소설계

○ (감액위주 계약심사) 3가지 유형 73건 확인(427백만원)



< 과소설계 현황 >



< 감액위주 계약심사 현황 >

○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하도급 대금 미조정 등 306건 확인

- ① 하수급자 권익 미보호 사례 133건(하도급 검토, 하도급 대금 미조정 등)
- ② 노무비 및 장비 사용료 지급 부적정 171건(근로계약서 및 임대계약서 미작성 등)
- ③ 기공식 등 발주처의 행사비 시공사에 전가 2건(24백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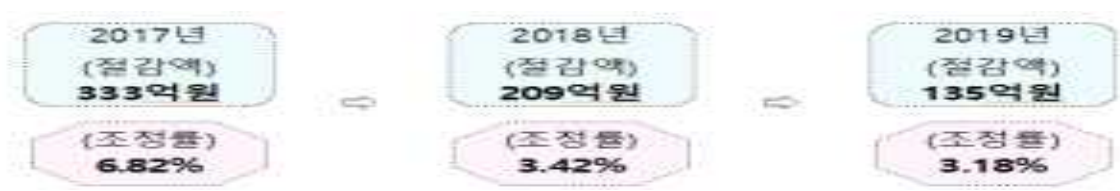
③ (협업추진)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개선의 추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 관련부서 업무협업 실시

○ (건설정책과) “건설공사 하도급개선방안” 마련 및 지역특성을 반영한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충남형 설계기준)” 마련

- ① (하도급 개선방안 마련) 불공정 하도급 개선방안(정책 방향 제시) 마련을 위한 연구
용역 추진 → 종합계획 수립 후 단계별 시행 중
 - '19.04. ~ '19.10. / 한국건설산업연구원 / 2개분야 28개 정책발굴
- <설문조사 결과>

 - 대상 : 최근 3년 내 지역공사 참여 경험 업체
 - 결과 : 응답자의 88.6%가 공정 평가 → '적정공사비 미지급' 개선 최우선
 - 불공정원인 ① 적정공사비 미지급 ② 하도급자간 과도한 수주 경쟁
③ 원도급자의 우위의 수직적 계약관행
- ② (소규모 건설공사 설계기준 마련) 건설공사 적정공사비 산출을 위한 설계기준 마련배포
 - '19.11~'20.2. / 한국산업경쟁력연구원 / 소규모 공사 설계기준 17개항목 기준제시 등
 - 설계기준 15개 시군 및 공공기관 등에 배포('20.2.27)
 - 4억 미만 소규모건설공사 적용(기존 예정가격 대비 10~20% 증액)

○ (조사과) 일상·계약심사시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하여 감액위주 심사 탈피
→ 절감액 하향 추세(원안·증액심사 ↑)



- ① '19년 계약심사(증액) 사례 : 도 42건(6.0억원) / 시·군 45건(1.7억원)
- ② 일상계약심사 점검 강화
 - 계약심사 : 10개 시군 적정가격 산정 여부 등 점검 → 증액심사 6개 시군 45건
 - 일상감사 : 4개 시군(18년 일상감사 부진시군), 처리기간 미준수 등 44건 미흡사례
확인하여 전파

4. 장애극복

- ① (인식전환) 건설공사 공사비 증액의 부정적 인식으로 인하여 적정 공사비 반영이 타당한가에 대하여 고민하였으나, 건설업계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서로 공감하는 제도마련의 필요성을 인식함
 - 건설관계자(협회, 건설현장)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당면한 건설업계의 불공정 관행 등 위기상황 인식과 발주자 위주의 공사계약 갑질 문화 개선으로 건설 및 안전시공을 위하여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전환 필요
 - 감액위주 감사 행정의 틀을 벗어나 “제 값 주고 제대로 시공”하는 건설 상생 문화 정착 및 안전성 확보라는 시공자와 사용자의 상생의 기회 마련
- ② (인력 및 권한의 한계) 인력과 예산 부족의 문제로 추진의 어려움이 있었으나, 도 관련부서의 업무협업을 통하여 극복함
 - 건설정책과, 조사과 등 건설공사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한 업무를 공동 대응 추진하였으며, 필요시 도 관련부서 경험자를 지원받아 업무를 처리함.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① (안전 확보·제도마련) 우리도 실정에 맞는 “충남형 설계기준” 마련 (‘20.2. 배포)으로 표준화하여 효율성 증대 및 영세한 건설업계의 현장 목소리 반영으로 공정경제·안전한 건설환경 및 중소 건설업체 활성화 기대
- ② (경제·고용 효과) '19년 충남 전문건설업체 공공기관 수주액 중소규모 건설공사비율에 대하여 적정공사비 반영시 경제 파급효과 분석 결과, 생산+부가가치 유발효과 701억원 및 취업·고용효과 584명

* (적용기준) 국토연구원 국토정책 브리핑자료 중 SOC예산 투자시 경제고용부분 파급효과 참조

- 2019년 충남 공공기관 전문건설협회 수주물량 : 5,662억원 (실적신고자료)
- 2019년 대한전문건설협회 5억 미만 건설공사 비율 : 28%
- 2019년 충남 공공기관 소규모 건설공사 금액 : 1,585억원
- 2019년 기준 적정공사비 반영 증가액(15% 적용) : 238억원

- ③ (전국 확대) 국민권익위원회(경제제도개선과)에서 우리도 사례 자료 수집하여 금년 12월 중 전국으로 확대 전파 추진 중임.

[전라남도 보성군] 2020년 지방재정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신청서

참가유형	<input type="checkbox"/> 세출 효율화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지방세) <input type="checkbox"/> 세입증대(세외수입)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사 례 명	‘두레’의 현대적 재해석! 우리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600사업
기 관 명	전라남도 보성군 <input type="checkbox"/> 광역 <input type="checkbox"/> 시 <input checked="" type="checkbox"/> 군 <input type="checkbox"/> 구
담 당 자	기획예산담당관

< 요약 >

- 보성군 관내 600개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특색있는 마을을 가꾸면서 마을 주민들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직접 마을을 가꾸고 꽃을 심으며 인건비를 절감
- 일부 마을(미력 샘골마을) 소득 작물을 재배하고 전량 수매하여 마을의 공동소득으로 활용
- 코로나19로 상실감에 빠져있던 마을 주민들에게 활기를 불어넣고, 침체에 빠져있는 소상공인과의 상생협력체계를 구축
- 인부 고용을 통해 사업을 추진했을 시 마을 당 500천원이 소요된다 가정하면 285개 마을 전체를 볼 때 142,500천원의 예산절감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위와 같이 2020년도 지방자치단체 재정개혁 우수사례 발표대회 참가를 신청합니다.

2020. 9. .

보 성 군 수 (관인생략)

행정안전부장관 귀하

□ 사례명 : **두레 의 현대적 재해석! 우리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600사업**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보성군 관내 일원 ○ 추진기간 : 2019. 8. ~ 2020. 12. ○ 사 업 비 : 1,500백만원 ○ 사업내용 : 주민참여를 통한 스스로 마을 가꾸기 ○ 사업대상 : 자연마을 602개 - 2020년 추진 : 285개 마을
② 추진 경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8. 23. : 우리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600사업 기본계획 수립 ○ '19. 9. ~ 10. : 협업부서 간 실무회의 개최(5회) ○ '19. 10. 22. : 읍면, 마을단위 추진단 및 홍보단 구성 ○ '19. 11. 19. : 이장단 협의회 대상 보성600사업 선포식 ○ '20. 3. 12. : 사업비 읍면 재배정 및 사업 시행 ○ '20. 3. 16. : 2020년 주요업무 자체평가 계획 수립 ○ '20. 3. 29. : 사업현장 방문 및 군민 애로사항 청취 ○ '20. 6. ~ : 사업추진 성과 홍보 및 현장관리 ○ '20. 8. ~ : '21년 사업 신청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별 간담회 개최 및 홍보단, 추진단 구성으로 마을 주민의 긍정 참여 유도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주민 노동력 활용으로 인건비 지출 예산 절감 ○ 민관 거버넌스 추진으로 주민의 긍정 참여 확대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직접적 경제효과 : 인건비 절감을 통한 세출예산 효율화 - 285개 마을 * 500천원 = 142,500천원 ○ 간접적 경제효과 : 관광객 유입 증대를 통한 세입 증대 - 2,850명 * 14,387원 = 41,003천원

‘두레’의 재해석! 우리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600사업

1. 과제 선정 내용

○ 새로운 변화와 추진계획 수립

- **(변화모색)** 기존의 마을가꾸기 사업은 행정에서 주도하고 일부 마을을 선정하여 해당 마을에 예산을 투입하여 마을을 성장시키는 방식이었다. 하지만 민관 협력 거버넌스라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에 부응하기 위해 주민이 주도하는 방향을 모색하게 되었다.
- **(추진계획)** 이에 기존의 틀에서 벗어나 마을 주민들이 주도하고 아름다운 마을을 만들기 위해 함께 고민하며 마을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를 높이기 위한 ‘우리동네 우리가 가꾸는 보성600사업’(이하 600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게 되었다.

○ 여건 분석

- **(마을가꾸기)** 국내에서 추진중인 마을가꾸기 사업은 모든 마을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닌 일부 마을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공모사업을 위한 수단으로서의 성격을 띄고 있다.
- **(특색 전략)**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성군만의 특색있는 전략은 전국 최초로 모든 자연마을을 대상으로 추진한다는 점과 정부에서 추진중인 민관 협력 거버넌스와 발 맞춰 주민들이 스스로 결정하고 노동력을 제공하는 데 있다.
- **(세출 절감)** 마을 주민들의 노동력을 활용한다는 점에서 용역을 통해 인부임을 제공하는 것과 비교하였을 때, 인건비 부분에서 약 142,500천원의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예상된다.

2. 문제원인 분석

- (인구소멸)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에서 발표한 지역소멸위험지수에 따르면 보성군은 위험지수 0.2로 소멸위험지역으로 분류된다. 600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핵심은 마을 주민이 스스로 마을을 가꾼다는 것인데 인구가 고령화되어 일할 인구가 부족하다는 것이 600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제로 제기되었다. 일할 사람이 없을 경우 인부를 고용해 인건비를 주며 마을을 가꾸게 해야하는데 이는 사업의 취지와도 맞지 않을뿐더러 추가적인 예산투입이 된다는 점에서 문제가 발생하였다.
- (민관협력) 20세기 행정이 주도하는 사회에서 21세기 행정과 민간이 주도하는 패러다임으로 변화함에 따라 사업을 추진할 때 주민은 빼놓을 수 없는 주체이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민간과 행정은 추구하는 바가 상이하고 입장이 다르기 때문에 조화가 쉬운일이 아니다. 또한 그동안 행정이 주도하는 것에 익숙한 민간에서는 아직까지는 인식개선에 미온적인 반응이다. 이에 먼저 군정의 주체는 주민이라는 점을 인식시켜야 했다.
- (분석결과)
 - 현재 민관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수도권과 대도시를 중심으로 협치를 위한 조직 신설, 인력 고용 등이 활발히 이루어지며 점차 전국으로 확산될 것으로 전망된다.
 - 보성군의 지역적 특성과 경제여건 등 제반상황을 고려해 볼 때 한꺼번에 협치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전환될 가능성은 낮다고 판단되지만 시대적 흐름에 발 맞춰 작은 것부터 주민이 군정의 주체라는 인식을 심어주기 위해 민간 주도의 600사업을 추진할 것으로 검토하였다.

3. 방안 마련 및 실행

○ SWOT 분석

외부 환경 내부 역량	【강점 : Strength】 ▶제석산, 주암호, 울포 해변 등 산·강·바다가 어우러져 있는 천혜의 입지요건 ▶별교, 회천, 주암호 권역 등 권역별로 다른 특색을 제공	【약점 : Weakness】 ▶인구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이촌향도 추세로 보성을 떠나는 인구 증가
	【기회 : Opportunity】	SO 전략
▶2023년 남해안 고속철도 건설로 수도권과 반나절 생활권 구축	① 산·강·바다 테마의 마을을 조성해 관광객 유치	② 국내 주요지역과 반나절 생활권 구축으로 자신이 원하는 특색이 있는 마을로 귀농귀촌 유도
【위협 : Threat】	ST 전략	WT 전략
▶지자체 간의 관광객 유치를 위한 경쟁 치열 ▶위락시설 부족 등으로 보성군 방문 연간 관광객 수 정체	③ 마을 인근의 관광지 와 연계 프로그램 개발 (ex 마을 스탬프 투어)	④ 홍보 및 마케팅 활동 강화

○ 세부 분석

① 산·강·바다 테마의 마을을 조성해 관광객 유치

- 제암산·일림산, 주암호, 울포해변 등 천혜의 입지요건을 가지고 있는 보성군의 특성을 홍보하는데 미흡한 점이 있다.
- 주요 관광지 인근 마을에 주변 자연환경은 물론 마을 이름 유래 등에 관련한 묘목 식재, 벽화 그리기 등을 통해 천편일률적인 마을 모습이 아닌 마을만의 독특한 테마를 설정해 관광객이 어떤 마을을 방문하더라도 흥미를 가지고 더 많은 마을로 발걸음을 옮길 수 있게 노력하였다.

② 국내 주요지역과 반나절 생활권 구축으로 귀농귀촌 유도

- 2023년 보성군에 남해안 고속열차가 개통됨에 따라 수도권까지 2시간 30분, 부산지역까지 2시간 내에 갈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 이에 전국 반나절 생활권이 현실화되고 그동안 보성군을 방문하고 싶어도 시간·거리상의 문제로 방문을 주저했던 사람들을 보성으로 이끌 수 있다. 또한,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사람들이 보성군 여러 마을을 다니면서 마을별로 어떤 특색이 있는지 보고 자신이 생각하던 이미지에 맞는 마을을 골라 귀농귀촌을 시도할 것으로 예상된다.

③ 마을 인근의 관광지와 연계 프로그램 개발

- 서울 등 외부에서 보성군을 방문코자 할 때 관광객이 여러번 방문하게끔 하는 유인책이 부족하다.
- 보성군 관광지와 콘텐츠를 연계하여 여러 마을을 방문하게끔 할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소설 '태백산맥'과 연계하여 별교, 울어 등 소설의 배경지가 되는 마을마다 스탬프를 비치하고 그 마을을 쭉 따라 이동하면 태백산맥의 스토리를 이해할 수 있게 하는 프로그램 등이다.

④ 홍보 및 마케팅 활동 강화

- 마을별 홍보단 구성을 통해 SNS, 입소문등으로 자기 마을을 홍보하게 하고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홍보 마케팅 활동으로 그 의미를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4. 장애극복

- (사업필요성) 보성하면 녹차와 꼬막 등의 특산물 이미지가 강하게 구축되어 있으나, 재방문을 유인할 또 다른 연계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 보성군 주요 관광지인 보성녹차밭, 한국차박물관, 소설태백산맥문학관, 비봉마리나, 울포관광단지, 제안산자연휴양림, 일림산 등과 연계한 관광프로그램이 개발되고 운영되고 있다.
 - 관광지 인근마을에 관광지와 연계하여 방문가능케 하고, 관광지와 어울리는 마을로 조성하면 국내·외에서 관광객이 많이 방문할 것으로 판단된다.
- (주민이해 유도) 인구 고령화로 인해 마을 일손이 부족해지는 상황에서 마을의 주민들의 노동력을 활용하는 것에는 마을 주민들의 이해와 참여가 필수적이다.
 -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되고 마을 주민들의 소통이 어려워지는 동시에 주민들 개개인의 생계활동으로 인해 참여가 불확실한 상황에서 참여도를 높이기 위한 대책 강구가 필요하다.
 - 주민들의 참여도를 높이기 위해 마을별 간담회를 수차례 개최해 사업의 취지를 설명하고 마을별로 추진단, 홍보단을 구성해 스스로가 사업의 주체라는 인식을 가지게끔 노력하였다.

○ 추진 사진



마을주민 간담회



추진단, 홍보단 간담회

○ 구성 현황

붙임 2 추진단 및 홍보단 구성 현황

- 읍면별 추진단 : 1,200명
- 마을 홍보단 : 606명

(단위 : 명)

읍 면	추진단	홍보단	비 고
계	1,200	606	
보성읍	158	64	
별교읍	139	141	
노동면	57	53	
미력면	65	16	
겸백면	90	31	
울어면	63	22	
복내면	57	17	
문덕면	27	10	
조성면	168	99	
득량면	162	72	
회천면	130	52	
웅치면	84	29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경제적 편익

- (예상지출)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이 2018년 발표한 국가별 건설인력 인건비를 살펴보면 일반 기능인력의 시간당 평균 인건비를 시간당 약 27,000원으로 산출했다. 인부를 고용하는 경우 인부 1인당 하루 4시간 근무하고 100천원을 지급한다 가정하고 마을마다 5명씩 고용시 예상되는 인건비 지출은 150,000천원으로 산출된다.
- (세출절감) 인부를 고용하지 않고 마을 주민들의 노동력을 활용하여 인건비 명목의 150,000천원이라는 예산을 절감할 수 있었고 마을을 더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필요한 곳에 더 투자할 수 있었다.

○ 사회적 편익

- 600사업을 통해 마을별로 어떤 특색이 있는지 보러 오는 관광객 증가로 발생하는 수익은 사회적 편익으로 볼 수 있으며, 관광객이 지출하는 교통비, 숙박비, 식비, 입장료 등을 포함한 편익이 사회적 편익이자 관광체험 편익이다.
-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한국관광공사, 2016)에 따르면 전라남도 방문객 1인당 평균지출액은 당일기준으로 118천원을 기준으로 추정한 보성군 방문객 1인당 편익은 14,387원으로 산출되었다.
- 600사업을 실시한 마을 당 연간 10명의 관광객이 더 온다고 가정할 시, 연간 2,850명의 관광객이 더 방문할 것으로 보이므로 관광객 1인당 소득 14,387원을 곱하면 약 41,003천원이 산출된다.

참조 : 국가별 건설인력 인건비 및 생산성 비교와 시사점(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8 김윤주 연구원)
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서(한국관광공사, 2016)

□ 사례명 : 민자사업의 효율적 운영과 창의적인 업무 개선으로 혈세 낭비 막았다!

구 분	주 요 내 용
① 사업 개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위 치 : 경남도 소관 민자도로 3개소 -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간도로 ○ 추진기간 : 2019. 1. ~ 2020. 9. 현재 ○ 사업내용 : - 민자도로 무료통행 손실보전금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로 예산 절감 - 마창대교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예산 절감(재정지원금 절감)
② 추진 경과	<p>(민자도로 무료통행 손실보전금 부가가치세 면제)</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9. 1. : 민자도로 무료통행 손실보전금 부가가치세의 보전(지원)에 대한 법령해석을 통한 문제점 인식 ○ '19. 4. : 관할 세무서에 무료 통행에 대한 통행료 부가가치세 납부에 대한 문제의견 제시 → 기존 관행대로 납부 요구 ○ '20. 3. : 민자도로 무료통행 손실보전금 부가세 관련 질의(국세청) ○ '20. 4. : 민자도로 통행료 부가세 관련 회신 ○ '20. 4. : 기 납부 부가가치세 환급 경정 청구 ○ '20. 6. : 민자도로 무료통행 손실보전금 부가세 면제 법적 근거 마련 개정 건의(도→기재부) ○ '20. 7. : 기 납부 부가가치세 환급 완료 <p>(마창대교 운영방식 개선)</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20. 2. :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의 재정지원 운영방식 상 예금계좌변경 통한 수입증대 방안 착안 ○ '20. 3.~ 6. : 민자사업자와 운영방식 개선 협의 및 금융시장조사 ○ '20. 6. : 적립계좌 거래은행 변경 등 운영방식 개선
③ 장애요인 극복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소극적 문제 인식 및 해결 방안 의견 차이 - 지자체 소관 민자도로의 손실보전금 부가가치세에 대한 사업시행자와 관계기관(관할 세무서, 국세청 등) 명확한 문제 인식 부족에 대한 이견발생 ☞ 관계법령의 해석과 기존 유사사례 등을 지속적인 설명으로 원만한 협의 방안 모색 - 마창대교 운영방식 개선에 대해 민간투자사업 시행자의 대주주 동의를 얻기 위한 지속적인 설명과 설득을 통한 문제점 인식 및 협의 도출
④ 우수사례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련 법령의 적극적인 검토로 관계 중앙부처로부터 근거 질의회신을 통해 민자도로 운영기간동안 무료통행 정책 시행 시 손실보전금 부가가치세 총 7,058백만원 재정 절감 ※기 납부 손실보전금 부가가치세 금271백만원 환급 완료 ○ 민자도로(마창대교) 재정지원금 운영 및 실시협약에 근거하여 운영방식 개선을 통한 새로운 수입원 창출로 운영기간('38년까지)동안 총 385백만원 재정 절감
⑤ 성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민자도로 운영기간('16.~'50.) 손실보전금 총 7,058백만원 예산 절감 - 기 납부 부가세 환급(271백만원) 완료(지방세입 증가) ○ 마창대교 운영기간 총 385백만원 예산 절감 ☞ 기존 재정보전방식에 대한 문제점 인식 및 개선 의지로 예산 집행의 효율성 제고

민자사업의 효율적인 운영과 창의적인 업무 개선으로 혈세 낭비 막았다!

1. 과제 선정 내용

□ 민자도로 손실보전금 부가가치세 면제

- 경남도는 주무관청으로 관리운영 중인 민자도로에 대해 정부 고속도로 통행료 무료화 시책에 맞춰 고향을 방문한 도로이용자 편의 증진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17년 추석('16. 5. 6.임시공휴일포함)부터 통행료 무료화를 추진해 왔음
- 정부 시책과 발맞춰 선도적 시행으로 높은 도로이용 만족도를 제공함에도 지자체 소관 민자도로는 무료 통행에 따른 손실보전금을 전액 지자체 예산으로 추진되어 지방재정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실현임
- 정부 고속도로는 통행료의 부가가치세가 감면되어 민간투자사업자에게 지원되는 반면, 지자체 운영 민자도로는 명확한 근거 법률의 해석 및 사례의 부재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손실보전금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절실하였음

□ 민자도로(마창대교) 운영방식 개선

- 마창대교 민간투자사업은 최초 '08년부터 최소운영수입보전(MRG)방식으로 운영되던 것을 '17년 변경실시협약으로 수입분할관리방식으로 변경하여 지방재정을 절감하였으나, 올해는 코로나19 영향으로 통행수입 급감에 따른 재정보전에 대한 추가부담으로 재정부담 완화를 위한 새로운 수입원 창출이 절실한 실정임

2. 문제원인 분석

□ 민자도로 손실보전금 부가가치세 면제

- 민자사업의 손실보전금 지원은 전적으로 지자체 재정 부담으로 사업시행자 및 관계기관의 소극적 문제 인식으로 해결방안에 대한 이견 발생
- 명확한 근거 법령 및 유권해석의 부재로 사업시행자 및 관할세무서와 협의 시 민간투자사업 설명 등 이해·설득 과정 애로

□ 민자도로(마창대교) 운영방식 개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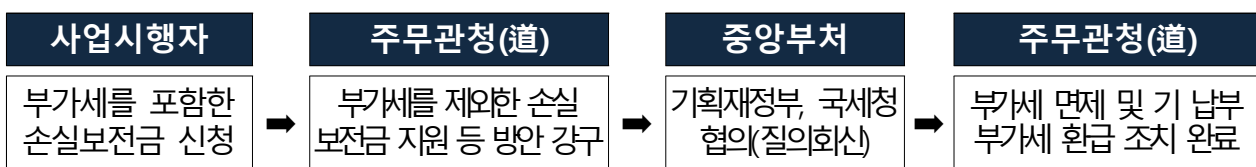
- 마창대교의 '17년 변경실시협약서를 살펴본 결과 선순위 대출(건설사업비 조달)을 위한 대출약정 상 부채상환적립계좌를 의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었고, 해당 계좌 적립금이 연 20억원정도 임에도 보통계좌 가입으로 낮은 금리(연 0.05%)에 따른 연 이자수입이 저조한 실정임

3. 방안 마련 및 실행

□ 민자도로 손실보전금 부가가치세 면제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유료도로법」 및 「부가가치세법」의 관계법령 유권해석 및 사례로 질의를 통한 명확한 근거자료가 필요한 실정으로,
- 관련 중앙부처의 신속한 협조(질의회신)를 근거로 예산 절감은 물론 '16년~'19년 납부 완료된 부가가치세도 환급 조치하게 됨

<부가가치세 면제 조치 주요 협의 과정>



□ 민자도로(마창대교) 운영방식 개선

- 시중은행의 금리운영(연 0.8%~1.05%) 현황을 조사로 가장 높은 이자율을 제시할 수 있는 지역은행으로 정기예금으로 변경 가입하고, 가입 과정에서 추가 금리를 협상함으로써 당초 시장조사 때 보다 높은 금리(연 1.07%)로 추가 수입원을 확보함

4. 장애극복

□ 민자도로 손실보전금 부가가치세 면제

- 관계 중앙부처(국세청 등)에서는 유권해석에 대한 법률 및 사례 검토에 대한 절대적 시간 부족으로 신속한 질의회신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하였으나,
- 민자사업시행자는 세금 등 회계 관련 사항에 민감하여 중앙부처의 유권해석 질의회신이 매우 중요한 사항임을 지속적 설득으로 빠른 시간 내 근거 회신을 받을 수 있었음

□ 민자도로(마창대교) 운영방식 개선

- 마창대교는 민간투자사업으로 사업시행자((주)마창대교)가 주무관청(道) 수입 개선을 위한 운영방식에 대해서도 대주주의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며, 열악한 지방재정 수입 개선을 위한 필요성 및 공감대 형성을 위해 지속적 협의 과정을 통하여 예금방식(보통→정기)을 변경하는 결과를 도출함

5. 성과(성과지표 및 목표와 연계)

- (부가세 면제) '16~'50년까지 민자도로 무료 통행에 대한 손실보전금 **총 7,058백만원 지방재정 절감**

- (마창대교) '16~'38. 7.까지 손실보전금 총 1,528백만원 예산 절감
- (거가대로) '16~'50.12.까지 손실보전금 총 4,548백만원 예산 절감
- (창원~부산간) '16~'45.12.까지 손실보전금 총 982백만원 예산 절감

※ **통행료 부가가치세 환급 현황**(2016년~2019년 추석)

(단위 : 천원)

구 분	합계	마창대교			창원~부산간도로			비고
		소계	부가세	이자	소계	부가세	이자	
환급금 합계	271,161	191,048	190,935	113	80,113	79,924	189	
2016	임시공휴일(5/6)	17,842	12,729	12,722	7	5,113	5,101	12
2017	추석 연휴	54,600	37,579	37,557	22	17,021	16,981	40
2018	설 연휴	48,715	34,013	33,993	20	14,702	14,667	35
2018	추석 연휴	50,947	36,482	36,460	22	14,465	14,431	34
2019	설 연휴	46,315	33,152	33,132	20	13,163	13,132	31
2019	추석 연휴	52,742	37,093	37,071	22	15,649	15,612	37

※ 거가대로는 비용보전방식으로 분기별 재정보전금 지급 시 정산 반영

⇒ 향후, 민자도로 통행료와 관련한 정책 추진 시 손실보전금의 부가가치세 면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 (운영방식 개선) 마창대교 운영기간(2038년까지) 재정지원금 **총 385백만원 지방재정 절감**

※ **마창대교 부채상환적립계좌 변경 현황**

구 분	예치금액	이자율	예금종류	예치기간	비고
당 초	1,930백만원	연0.05%	보통예금	기한없음	발생이자수익 약 97만원
변 경	2,000백만원	연1.07%	정기예금	1년씩	발생이자수익 약 2,140만원

민자도로 무료 통행 손실보전금 발생 추이 현황

(단위 : 백만원)

운영 기간	발생 손실보전금 총액			민자도로별 발생 손실보전금			비고
	합계	공급가액	부가세	마창대교	거가대로	창원~부산간도로	
계	77,642	70,584	7,058	16,811	50,032	10,799	부가세 7,058 (마창 1,528 거가 4,548 창원~부산간 982)
2016	706	642	64	140	510	56	'16.5.6. 임시공휴일면제
2017	1,245	1,132	113	340	715	190	추석부터 시행
2018	2,345	2,132	213	640	1,385	320	
2019	2,560	2,327	233	786	1,450	324	
2020	1,211	1,101	110	380	672	159	추석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미시행
2021	2,730	2,482	248	830	1,510	390	
2022	2,730	2,482	248	830	1,510	390	
2023	2,730	2,482	248	830	1,510	390	
2024	2,730	2,482	248	830	1,510	390	
2025	2,730	2,482	248	830	1,510	390	
2026	2,730	2,482	248	830	1,510	390	
2027	2,730	2,482	248	830	1,510	390	
2028	2,730	2,482	248	830	1,510	390	
2029	2,730	2,482	248	830	1,510	390	
2030	2,730	2,482	248	830	1,510	390	
2031	2,730	2,482	248	830	1,510	390	
2032	2,730	2,482	248	830	1,510	390	
2033	2,730	2,482	248	830	1,510	390	
2034	2,730	2,482	248	830	1,510	390	
2035	2,730	2,482	248	830	1,510	390	
2036	2,730	2,482	248	830	1,510	390	
2037	2,730	2,482	248	830	1,510	390	
2038	2,315	2,105	210	415	1,510	390	마창 운영종료('38.7.)
2039	1,900	1,727	173	-	1,510	390	
2040	1,900	1,727	173	-	1,510	390	
2041	1,900	1,727	173	-	1,510	390	
2042	1,900	1,727	173	-	1,510	390	
2043	1,900	1,727	173	-	1,510	390	
2044	1,900	1,727	173	-	1,510	390	
2045	1,900	1,727	173	-	1,510	390	창원~부산간도로 운영 종료('45.12.)
2046	1,510	1,373	137	-	1,510	-	
2047	1,510	1,373	137	-	1,510	-	
2048	1,510	1,373	137	-	1,510	-	
2049	1,510	1,373	137	-	1,510	-	
2050	1,510	1,373	137	-	1,510	-	거가 운영 종료('50.12.)